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954-01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3. 12. 22.

연구수행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 구 책 임 자 남미자(경기도교육연구원)

연 구 원 김범주(경기도교육연구원)

김병준(경기도교육연구원)

김시연(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온)

마한열(사단법인두루)

배경내(인권교육센터들)

정용림(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명동)

정찬송(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온)

황혜신(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C O N T E N T S

▶ 요약_i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1. 연구 내용	12
2. 연구방법	14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1.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2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2

제2장 |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제1절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25
1. 주거권의 의의	25
2. 청소년 주거권의 개념	47
제2절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63
1. 주거 관련 법 검토	63
2. 아동 · 청소년 관련 법에서의 주거 관련 내용 검토	70
3. 계류 중인 청소년 주거권 관련 입법안	76
제3절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80
1. 흠리스 청소년 관련 법령과 공공 지원	80
2. 흠리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민간 사례	90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97

제3장 |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제1절 분석의 개요	103
1. 분석의 대상	103
2. 분석기준	105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110
1. 주거환경	110
2. 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	114
3. 건강/심리적 특성	116
4. 교육포부/수준	122
5. 진로/직업	124
6.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128
7. 지원 서비스 필요도	131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4

제4장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제1절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143
1. ‘그 가정’의 주거 위기	143
2. 탈출하거나 쫓겨나거나	151
제2절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157
1. 불안정한 주거	157
2. ‘그 가정’과 ‘시설’ 사이	162
3. 주거 선택의 권리 없음	167
4.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175
5. 위협받는 안전	182
6. 관리와 통제의 시공간, 시설	186
제3절 ‘그 가정’ 바깥의 삶	192
1. 경제적 취약성	192
2.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198
3. 교육의 기회 제한	203
4. 아플 수 없는 몸	207

5. 사라지는 관계들	213
6.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218
제4절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체계	227
1. 신뢰할 수 없는 제도	227
2.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234
3.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239
4. 사회적 관계망과 단절된 지원	243
제5절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247
1. 생존의 방식들 1: 숨기기	247
2. 생존의 방식들 2: 자신을 갈아 넣기	250
3. 생존의 방식들 3: 타협하기	255
4. 생존의 방식들 4: 저항하기	259
5. 새로운 길 찾기	262
제6절 소결	265

제5장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제1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271
1.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	271
2.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	272
3.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	273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정책 개선안	274
1.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의 확대	275
2. 통합적인 주거 기반 서비스	286
3. 주거 복지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정책 개선안	295
4.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법·정책 개선안	306
5. 탈시설을 위한 정책	313
제3절 소결	317

▶ 참고문헌 _ 321

▶ 부록1 연구 참여자 설명서 _ 331

▶ 부록2 면담질문지 _ 336

표 목차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 1-1〉 연구 참여자 개요	17
〈표 2-1〉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	47
〈표 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	49
〈표 2-3〉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2022)	49
〈표 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49
〈표 2-5〉 각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별로 청소년의 주거권 실현	62
〈표 2-6〉 청소년 주거권과 동반하는 핵심 권리들	63
〈표 2-7〉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73
〈표 2-8〉 쉼터퇴소 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	74
〈표 2-9〉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원주택 관련 법안	79
〈표 2-10〉 유럽 험리스 단체 연합 – 험리스 및 주거 배제 상태 유형화	87
〈표 3-1〉 분석자료 개관	104
〈표 3-2〉 연계 · 비교 문항의 출처	105
〈표 3-3〉 비교 · 분석의 기준 영역 및 내용 요소	106
〈표 3-4〉 주거환경 영역	108
〈표 3-5〉 1) 하룻밤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 여부 및 횟수	111
〈표 3-6〉 2) 최초 탈가정 경험 연령	111
〈표 3-7〉 3)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	112
〈표 3-8〉 4) 집을 나와서 주로 생활했던 곳	113
〈표 3-9〉 5) 가출팸 경험 여부	113
〈표 3-10〉 6) 보호자(양육자) 방임 –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다	114
〈표 3-11〉 7) 보호자(양육자) 방임 –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115

〈표 3-12〉 8) 보호자(양육자) 폭력 · 학대	115
- 내 몸에 명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	
〈표 3-13〉 9) 보호자(양육자) 폭력 · 학대 –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	116
〈표 3-14〉 10)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여부	116
〈표 3-15〉 11)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	117
〈표 3-16〉 12) 주관적 건강 상태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118
〈표 3-17〉 13) 주관적 건강 상태 –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118
〈표 3-18〉 14) 자신의 삶(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119
〈표 3-19〉 15) 사회적 역량 –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119
〈표 3-20〉 16) 사회적 역량 –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120
〈표 3-21〉 17) 사회적 역량 –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120
〈표 3-22〉 18) 자아존중감 –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21
〈표 3-23〉 19) 자아존중감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21
〈표 3-24〉 20) 자아존중감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122
〈표 3-25〉 21) 희망하는 교육 수준	122
〈표 3-26〉 22) 직업훈련 경험 여부	123
〈표 3-27〉 23)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123
〈표 3-28〉 2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124
〈표 3-29〉 25) 일(아르바이트)을 해 본 경험	125
〈표 3-30〉 26)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 형태	125
〈표 3-31〉 27) 그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	126
〈표 3-32〉 28)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126
〈표 3-33〉 29)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여부	127
〈표 3-34〉 30) 앞으로 3년 이내 진로에 관한 계획	127
〈표 3-35〉 31)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는지 여부	128
〈표 3-36〉 32)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	128
〈표 3-37〉 33) 생활형 청소년쉼터	129

〈표 3-38〉 34) 청소년자립지원관	129
〈표 3-39〉 35) 청소년전화	130
〈표 3-40〉 3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0
〈표 3-41〉 37) 학교 Wee클래스	131
〈표 3-42〉 38)~45)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인식(빈도)	132
〈표 3-43〉 38)~45)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인식 비교(t-test)	133
〈표 5-1〉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영역과 내용	276
〈표 5-2〉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등 개정안	281
〈표 5-3〉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정안	293
〈표 5-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293
〈표 5-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개정안	295
〈표 5-6〉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개정안	295
〈표 5-7〉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개정안	296
〈표 5-8〉 지원주택 관련 입법안	297
〈표 5-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선우 발의)	298
〈표 5-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상정 발의)	298
〈표 5-11〉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장혜영 발의)	299
〈표 5-12〉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기상 발의)	299
〈표 5-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안(최혜영 의원)	301
〈표 5-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개정안	302
〈표 5-15〉 「주거급여법」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개정안	303
〈표 5-1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개정안	305
〈표 5-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00조 행위능력 특례 개정안	308
〈표 5-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개정안들	312
〈표 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개정안	315
〈표 5-20〉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 요약	315

**그림
목차**

P I C T U R E S

[그림 2-1] 2023 청소년분야 사업안내, 259쪽	53
[그림 5-1]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실현 방안	275
[그림 5-2] 보호아동 자립지원 단계	283

1. 서론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가출(탈가정)’이라는 말은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것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을 반영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우범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원가정 복귀에 치중하게 함.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더 다양한 가정 밖 청소년의 삶을 통해 다양한 거주 형태와 정책을 상상할 수 있음.
- 가정 밖 청소년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배제되어 의식주와 일상의 안전 등 헌법상 권리가 제한되며, 성별이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위기에 놓임. 따라서 다층적 맥락에서 청소년의 주거 상황과 주거와 관련된 삶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주거권은 공간에 대한 점유나 소유의 권리를 넘어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로서 의미가 있음. 장소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과 연결되며, 나아가 공동체로서 살아가며 필연적으로 시민권과 연결되는 곳임. 장소라는 관점에서 시설은 주거로 보기 어려우며 탈 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리나 원칙에 따라 가정 복귀와 쉼터 입소 외의 대안이 필요함.
 - 장소(Place)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을 말하지 않으며, 유무형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실천(practice)을 포괄하는 실존적이고 관계적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개인의 경험에 의한 개별성으로서 정체성과 연결됨.

- 자립준비청소년 지원 외에 청소년을 위한 주거 정책이나 법은 충분하지 않고, 지원주택을 비롯한 주거 관련 법과 정책이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하지 않음.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대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함.

2)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위기와 이로부터 파생된 중층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그동안 배제된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함.
- 이 연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침해 상황을 살피고 사회구성원으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권 등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국제인권규범, 「대한민국 헌법」 등을 바탕으로 인권적 측면에서 청소년 주거권을 재규정함.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련한 국내 법령을 분석함.
- 청소년 홈리스 개념이 비교적 명확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해외사례를 검토함.
- 기존의 가정 밖 청소년 연구와 위기 청소년 및 전체 청소년 대상 통계조사를 비교 분석함.
- 가정 밖 청소년 연구 참여자의 다층적인 주거상황과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함.
- 다양한 전문가와의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을 바탕으로 정책안을 도출함.

2) 연구방법

○ 선행연구 검토

- 탈가정 청소년, 위기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다양한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 도서 등을 분석함.

○ 해외사례 검토

-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사례들을 살펴봄.

○ 법률분석

- 국내의 현행법과 국가의 정책 기본계획,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 주거권 개념 및 관련 법률과 정책을 분석함.

○ 통계자료 재분석

- 김희진 외(2018)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황여정 외, 2022) 및 비슷한 시기에 9세~24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실시한 2017년과 2021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김기현 외, 2021)와 비교·분석함.

○ 면담

- 연구 참여자는 현장기관과 아웃리치에서 만난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연령, 지역, 법적 성별, 가정 외 보호 유형,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43명을 선정하였고, 각 1회 내지 2회의 면담을 실시함.
- 연구 참여자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연구 윤리를 특별히 고려하고,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만들어 연구 참여자들에게 미리 공유함. 연구 참여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면담 진행하도록 하고, 면담일지를 작성하고 연구자 내부에서 공유하여 연구자들이 서로 관점과 초점을 맞추어 나갔음.

- 모든 면담이 종료된 후 면담 내용을 전사한 후 이를 개방형으로 코딩하였고, 코딩 결과를 분류하여 각 영역의 주제를 도출하고 분석함.

- 초점집단면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다.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 ‘가출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출’이라는 일탈 행위의 원인을 탐구 함으로써, 가정폭력 및 학대, 물질적·정서적 불평등을 드러내지만 낙인을 발생시킬 우려 및 구체적인 맥락과 개입의 지점까지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
- 주거권 관점의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최근의 연구 경향은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가정 밖의 구체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있음.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이번 연구는 현장 기관의 특성과 지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의 ‘가정 밖’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청소년의 주거권 관점에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짐.

2.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가.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며, 주거공간을 가질 권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 구제받을 권리, 불안정 주거로부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될 권리를 포함함.
 -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에서는 공간을 점유할 권리나 공간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너머 지역사회나 공동체, 도시에 대한 권리, 정체성과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권리로 주거권을 확장해 옴.

- 주거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명, 존엄, 안전은 심각한 훼손을 입을 가능성이 급증하고, 생명이나 존엄,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거 불안이 가속되거나 주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 주거와 생명은 삶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하나의 권리임.
- 가정 밖 청소년은 원가정에서부터 심각한 주거 위기로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았고, 탈가정 이후에도 불안정한 주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위험하고 불리한 근로를 감내하면서 존엄이나 신체의 안전, 생존을 지속적으로 위협당함.
 - 청소년 역시 주거권의 주체이며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마땅함.
 - 주거권은 차별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지원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권 보장은 매우 취약함.
 - 탈시설화는 국내외의 주요 인권정책 흐름으로 볼 수 있음. 시설을 주거라고 보기는 어려움.
-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 및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각각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지 다음의 <표-1>와 같이 정리함.

〈표-1〉 각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별로 청소년의 주거권 실현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별 청소년의 주거권 실현			
의미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		
보장 원칙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특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		
권리의 내용	주거공간을 가질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거정책 -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공공임대 등 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의 법적 안정성 -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 - 주거비용 적정성 - 물리적 거주 적합성 - 사회적 접근성 - 주거입지의 적절성 - 문화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법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권원이 필요함. - 비주택 비적정 주거에서 적절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무상 공공주택 확대와 부담가능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필요함
	구제받을 권리 (구제절차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 제한 - 장애, 연령 등을 고려한 주거공간 요구 - 침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로부터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에 접근 가능해야 함 - 자기에게 맞는 주거로 변경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불안정 주거로부터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차별, 낙인으로부터의 자유 - 주거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보호 요청을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 시설이 아닌 주거에서 생활함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존중 - 거소 결정권 - 가족구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와, 어디에서 살지에 관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결정권으로 행사하여야 함
	공동체 · 지역 사회와 연결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자립생활 - 포용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외의 대안을 적극 제공해야 함 -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나.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 주거 정책에 관련된 법률인 「주거기본법」,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움.
- 주거복지와 관련된 「주거급여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에는 일부 가정

밖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이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 이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아동·청소년 관련 법은 가정 밖 청소년을 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하는 요건을 갖추어 퇴소할 때 비로소 자립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과는 큰 차이가 있음.

다.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 일본의 경우 경찰을 중심으로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등 ‘요보호아동’에 해당할 경우 일시보호를 제공함. 다만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이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참고점을 발견하지는 못함.
-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유럽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음.
 - 가출보다 포괄적인 ‘홈리스(Homeless)’ 개념을 사용하며, 홈리스 청소년 정의에 청소년쉼터, 지인 집 등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불안정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함. 홈리스를 ‘사회적 배제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보고, 청소년 홈리스 이슈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함.
 - 청소년에게 전환 주거와 지원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음.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도움.
 - 주거 지원의 과정이 직업 훈련 및 교육, 의료 지원,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지원서비스를 동반함. ‘하우징퍼스트’ 프레임은 안정적인 주거가 곧 자립의 필수적인 기반이며, 여기에 개별 청소년에게 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함께해야 한다고 보는 것임.

- 영국의 경우, 청소년의 자립지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이행을 재촉하기보다는 청소년이 일궈온 기존의 관계망과 지역사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공공과 지방자치단체가 홈리스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추가적인 시사점으로 홈리스나 주거 불안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구금시설, 정신건강 보호시설, 위탁보호종료아동을 위한 홈리스 예방 프로그램이나 청소년 성소수자(LGBTQ)를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점을 꼽을 수 있음.

3.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가. 분석의 개요

○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가정 내 갈등 · 학대 · 폭력 · 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가정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까닭에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의 추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함. 분석 자료는 아래 <표-2>와 같음.

<표-2> 분석자료 개관

구분	조사명	조사시기	조사대상	표본크기
김희진 외 (2018)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	2018년 6~9월	청소년쉼터 · 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 ¹⁾ 하는 15~24세 청소년	730명
백혜정 외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년 6~9월	다단계증화집락추출에 의해 표본으로 선정된 9~24세 청소년 7,676명	7,676명
김기현 외 (2021)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11월~ 2021년 2월	다단계증화집락추출에 의해 표본으로 선정된 9~24세 청소년 7,170명	7,170명
황여정 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2021년 8~11월	2021.1.~2021.1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²⁾ 에 입소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9~18세 청소년	4,203명

1) 해당 조사는 종장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나, 지역 여건상 종장기쉼터의

나.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 가정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및 전체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위기 청소년의 32.6.%가 가정 밖 생활(탈가정) 경험이 있었으며, 탈가정의 주된 이유는 가족과의 갈등, 가정 폭력 등 원가정 문제임. 특히 보호자(양육자)의 방임은 가정 밖 청소년이 전체 청소년에 비해 최대 10배가량 높게 나타남.
 - 가정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 상태 인식 등 건강 및 심리적 특성이 전체 청소년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밖 청소년의 주된 고민이나 걱정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음.
 - 가정 밖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에 비해 학력 수준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취업/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경험도 36.5%로 전체 청소년에 비해 최대 9배가량 높게 나타났음.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전체 청소년 집단에 비해 많았음. 생계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비율은 84%로 전체 청소년(24.2%)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 생활형 청소년쉼터 경험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비율은 85.5%로 매우 높게 나타나,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주거 제공임을 확인함.
- 가정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및 전체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가정 밖 청소년에게 생활형 청소년쉼터 이외의 대안적 주거 제공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쉼터는 장기 주거지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취업지원 등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 함.

부재로 일시 및 단기쉼터에도 오랜 기간 가정 밖 청소년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들 시설의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모두 조사에 포함시켰다(김희진 외, 2018: 148).

- 2) 해당 조사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등을 적시하고 있다(황여정 외, 2022: 6-8).

-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 밖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위한 보건 서비스 확대가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가정 밖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희망 학력 수준이 낮은 까닭은 경제적 취약성 때문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자립지원 및 취업뿐 아니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함.

4.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가.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탈선과 비행에 의하여 탈가정하게 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가정 밖 청소년들의 탈가정은 가정에서의 폭력, 학대, 방임 등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그 가정에서 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하게 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음.
- 가정 밖 청소년은 대개 원가정에서 이미 주거위기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았으며, 주거위기 등을 이유로 보호자로부터 탈가정을 강요받기도 함.

나.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는 불안정하며, 여기저기를 떠돌게 됨. 그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선택지는 청소년쉼터 등 시설 말고 찾기가 어려움. 하지만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는 원가정 복귀라는 단편적 접근을 하고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를 더욱 위태롭게 함.
- 가정 밖 청소년 열 명 중 여덟, 아홉 명이 청소년쉼터 이용 경험이 있을 만큼,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된 주거지임. 하지만 청소년쉼터에서는 입소, 전원, 퇴소 등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와 반하는 의사결정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소수자 청소년은 입소 거부를 경험하기도 함. 또한 청소년쉼터의 상당수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부 규칙을 가지고 있었음.

- 문제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나오더라도 적절한 주거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 있음.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주거 계약 자체가 불가하며,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어짐. 대개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든 아니든 현재의 주거지를 “내 집”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었음.

다. ‘그 가정’ 바깥의 삶

- 가정 밖 청소년들은 탈가정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끼니를 짖거나 대중교통 대신 걷는 것은 일상적이었음. 하지만 청소년쉼터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엄격한 규칙과 통제로 인하여 아르바이트가 불가하고 고시원,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베는 돈의 대부분이 월세로 지출됨.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견뎠음.
-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이유-예컨대, 생계유지를 위한 일, 통학거리가 먼 쉼터 거주 등-로 탈학교 하게 되며, 경제적 취약성은 학교교육 이외의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도 포기하게 됨.
-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당수가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그 밖의 신체건강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가정 밖 청소년은 불안정한 주거 상황 속에서 소속감을 잃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스스로 관계를 차단하고 고립하도록 만들기도 함. 여성 및 성소수자 가정 밖 청소년은 성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큼.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가 나이, 성별, 성적지향 등과 탈가정 상황이 교차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었음.

라.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체계

- 그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 경찰, 행정기관 등은 사회적 지지체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음. 예컨대 교사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거나 청소년쉼터 등의 종사자로부터의 폭언, 차별 등을 경험하였음.
-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체계가 미흡하지만 그나마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정보와 연결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음. 대개의 경우 우연한 계기로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원가정과의 단절을 증명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음.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대부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음.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관계적 지원이며 이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방식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마.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남과 다른 자신의 일상을 숨겼음. 주거지를 밀하지 않거나, 핸드폰에 청소년쉼터 종사자를 엄마로 저장하기도 했음. 이는 혈연관계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에 의한 것임.
- 가정 밖 청소년이 자신의 생존을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은 자기 자신뿐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긁어 모으고, 일터에서 사나워지고 악바리가 되는 등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혼자” 버틸 수밖에 없음.
- 가정 밖 청소년은 주어진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삶의 전략은 다른 가정 밖 청소년을 돋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돋는 일을 진료로 정하도록 이끌기도 함.
- 소수이지만 일부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나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 일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저항하기도 했음.

5.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함.
 -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이므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함.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기 쉬우므로 더욱 두텁고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함.
-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차별 없이 보장해야 함.
 - 가정 밖 청소년은 탈가정 경로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부처별, 탈가정 경로별 자립과 주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함.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이나 부처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자립과 주거를 지원해야 함.
-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를 지향해야 함.
 -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시설이 정규 주거가 될 수는 없음. 주거권의 주체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를 지원해야 함.

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 · 정책 개선안

-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해야 함.
 - 이용한 시설이나 보호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자립준비청년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지원 등 자립지원의 필요함. 이미 존재하는 자립지원정책에 차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도할 수 있음.
- 통합적인 주거 기반 서비스가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취업, 건강, 진로 등의 주거 기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수요자

에게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책 수립의 어려움이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주거지원법」의 실태조사 규정을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나 상황을 파악해야 함.

○ 주거 복지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해야 함.

-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거권 주체, 주거약자로 가정 밖 청소년을 명시하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령 기준을 삭제해야 함.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단독 가구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행위능력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처럼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독립적으로 급여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는 방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 기관 등이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방안, 친권에 관련된 다양한 사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연계하거나 자립지원기관 등이 권리옹호활동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한편, 거소지정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담과 동행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사법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구조나 권리옹호 등의 지원을 마련해야 함.

○ 범정부 가정 밖 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함.

- 관계부처 협동으로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 가야함.
- 단기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청소년복지시설이 포함되도록 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의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상향해야 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가. 주거 관련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가정 밖 청소년

‘가출(탈가정)’이라는 용어는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것이 반사회적 행동이라는 관점을 토대로 가출 청소년은 우범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탈가정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이러한 인식에 기반을 두고 대개 원가정 복귀에 치중되었다. 하지만 탈가정 청소년들은 집을 나오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와의 문제를 지목하였으며, 이때 부모와의 문제는 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경험이 주를 이룬다(허민숙, 2021). 청소년들이 집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쉽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며, 이들의 ‘가출(탈가정)’을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다.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살아가는 원인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따라서 단순히 ‘가출(탈가정)’이라는 행위 자체보다는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결정문, 2016. 11. 24.).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가정 밖’ 상황에 주목하여 지원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 용어의 개정을 권고하였고, 2021. 3. 2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 밖 청소년’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³⁾ 즉 가정 밖 청소년은 ‘탈가정(가출)’한 경우 외에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로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이미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과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등 가정이 아닌 형태에서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듯 ‘가정 밖’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정 밖 청소년의 사례는 훨씬 다양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가정 밖’을 여전히 9세~24세 사이의 청소년 중 탈가정(가출)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가정 밖 상황을 탈선과 비행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은 원가정 복귀의 프레임을 넘어설 수 없다.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 관련 정책은 원가정 복귀 또는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 입소라는 유이(有二)한 선택지밖에 없으며, 이 두 선택지 바깥에 존재하는 청소년의 권리는 문자 그대로 제도 ‘바깥’에 놓인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개념을 기준의 ‘가출’ 개념과는 다른, 보다 포괄적인 가정 바깥의 상황에 처한 청소년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김지연·정소연, 2014). 그래야만 가정 밖 청소년을 범죄화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가정 또는 시설 이외에 가정 밖 청소년의 다양한 거주 형태를 상상할 수 있다.

나. 가정 밖 청소년의 삶에 관한 다층적 이해의 필요성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으로의 복귀와 이탈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고 지위가 매우 변동적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김희진 외, 2018:29). 황여정·이정민(2020)은 9세~24세까지의 경찰청 실종가출인 신고접수 현황과 청소년쉼터 이용자 수를 토대로 탈가정 청소년을 추계하였는데, 9세~24세 가운데 실종가출신고는 32,584명(2019년 기준)이었으며,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자 수는 27,843명(2019년 기준)이었다. 이와 같은 추계에서 실종가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청소년쉼터나 자립지원관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한 번이라도 탈가정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5,741명(2021년 기준)이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21). 모든 탈가정 청소년들이 장기간 가정 밖에 머무는 것은 아니지만 수치로 파악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가 상당할 수 있고, 현재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라도 언제든 가정 밖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숫자가 3만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 등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여러 이유로 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문제는 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거나, 필요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황여정 외, 2022)에 따르면, 위기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기보다 친구 또는 선후배의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의 비율도 적지 않았다.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 밖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들이 가정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생활비 부족(54%), 갈 곳이 없음(42%), 우울, 불안, 좌절 등 심리적 어려움(33%) 등이었다.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비롯하여 일상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헌법상 권리(기본권)를 제한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비춰볼 때, 청소년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상황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가정 밖 경험은 매우 성별화되어 있는데(정용림, 2021:12), 상대적으로 가정 밖 상황에서 여성 청소년들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성소수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정 내에서 위기와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2021). 특히 가정 내에서 성적지향 또는 성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원치 않았지만 알려지는 경우, 청소년들은 그로 인한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며 나답게 살기 위해 탈가정을 결정하기도 한다(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비행 청소년 혹은 피해자라는 이분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주거를 비롯한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을 단



선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이 왜 가정 밖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가정 밖에서 경험하는 구체적 삶의 양상은 어떠한지, 그 과정에서 그들의 전략은 사회(구조)와 어떻게 연결되거나 연결되지 못하는지 등 다층적인 맥락 속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상황과 주거와 관련된 그들의 삶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 주거에 대한 장소적 접근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주거’, 즉 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하여 “주거를 단지 머리 위에 지붕이 있는 거주지와 동일시한다든가 순전히 하나의 상품으로만 여기는 등 좁은 의미 또는 한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견해를 밝히며, 주거권을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라고 해석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19-25). 이는 집에서 살 권리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 주택가격의 안정화, 주거보유 가능성 확장을 넘어서 이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거권은 계약을 통해서만 공간을 소유하거나 점유한다는 개념을 초월하여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place)’로서 집에 대한 권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장소(place)’는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을 말하지 않으며, 유무형의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실천(practice)을 포괄하는 실존적이고 관계적 개념이다(서동진 · 김주연, 2022; 정현목, 2013). 즉 장소는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개인의 경험에 의한 개별성으로서 정체성과 연결되며, 그런 깊이에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Relph, 1976/2005:290)”은 개인의 정체성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거권은 주거 기반의 삶을 유지하고 보장받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감의 권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주거는 공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넘어 집과 집 사이에서 연결되는 관계와 공동체로서 살아갈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Sharma(2009)는 난민캠프와 같이 삶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작동하는 공간을 비장소로 개념화하는데, 그러한 비장소를 “의미의 일회성, 유동적 정체성, 일시성의 영속성(Sharma, 2009:130)” 등의 속성을 가지며 배제성과 폭력성이라는 논리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쉼터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임시 주거 공간 역시 난민캠프와 같이 장

소의 정치가 작동하는 공간으로 사회에서 예외적으로 위치 지어짐으로써 살아감의 권리와 연결된 장소로서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주거권은 시민 사회 내지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이며, 필연적으로 주거권은 시민권과 연결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최종견해에서 한국 정부에게 시설보호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적 있다. 동시에 가출 아동에 대한 선별적이고 비정별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아동의 필요와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호 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등도 함께 권고한 바 있다.⁴⁾

제65회 유엔총회에서는 2009년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맞이하여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을 결의했다(A/RES/64/142, 2009). 위 지침에서도 가급적 시설 보호를 회피하고, 시설에서의 대안 양육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시설 양육을 제공하는 시설은 소규모여야 하고,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하며, 가정에 가까운 환경 또는 소규모 그룹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대안 양육의 주거 장소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보호자는 아동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⁵⁾

- 4) 32. 당시국이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정별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 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 5) 90. 모든 대안 양육의 주거 장소는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93. 모든 보호자는 아동의 나이와 발달 정도에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22. 시설양육을 제공하는 시설은 소규모여야 하고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가정에 가까운 환경 또는 소규모 그룹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설양육의 목표는 일시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아동의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가족환경을 제공하거나 입양이나 회교법의 카말리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주거권 보장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가정 밖을 여전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정의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해결해야 할 상황으로 대하는 이상, 주거 지원은 가정복귀 또는 쉼터 등의 시설 입소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는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가정 복귀와 쉼터 입소가 불가능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선택지도 남지 않는다.

라. 주거권 등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 · 제도 마련의 시급성

최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함께, 주거와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로부터 자립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은 동일하지만, 생활하는 시설이 아동복지시설인지 청소년복지시설인지에 따라 주거 등 자립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고,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아동 · 청소년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정책이 부재하다. 예컨대 2년간 청소년쉼터 거주를 요건으로 자립수당을 지원하고 있긴 하지만, 다수의 청소년들은 청소년쉼터를 연속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하거나, 자립 및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는 제정안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의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주거 관련 법에서는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주거기본법」 등에는 아동 ·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아동 · 청소년 주거권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한편 지원주택은 독립적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아울러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하고, 정신적 · 육

체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해왔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장혜영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원주택법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이나, 이들 지원주택 조례와 법안에도 가정 밖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사회와 연결되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취약한 부분은 타인에게 의존하며 견뎌야 하지만, 유독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또는 독립 주거 가능성에는 더 가혹한 기준을 제시하며 ‘로빈슨 크루소’처럼 혼자서 책임감 있게 삶을 감당할 것을 요구한다.⁶⁾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설에 거주하게 한다면, 시설에서 보호·격리함으로써 ‘주류 같은’ 사람과 소수자를 구분하고 시설에 남겨지는 소수자는 ‘주류가 아님’을 재차 확인하게 된다. 즉 시설이라는 기제로 불평등한 구조가 유지되며, ‘자립’이 주류의 관점과 기준에서 기획되는 한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의 자립은 불가능한 조건이 된다(장애여성공감, 2021:199).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주거 위기 문제 해결은 시설을 중심으로, 더 나은 시설 환경과 규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19:7). 하지만 자기결정권이 부재하고 정치적 자유가 배제된 시설이라면 그곳에서 시민으로서 존엄이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대안 모색에 있어서 시설화를 넘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상호적 권리로 주거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거권은 모든 시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아동·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아동·청소년들은 대개 독자적인 주거 선택권이 없으며, 주로 세대원으로만 위치된다. 그런 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주거 위기는 생존과 안전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또한 주거 약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의 실질적인 주거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때 아동·청소년의 주거 위기는 당사자의 선택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주거 보장 제도와 정책의 미비와 같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6) 장혜영, “세바시 891회, 당신에게 장애인 친구가 없는 이유” (<https://youtu.be/T3lluuOr0G0>)

청소년이 자신에게 필요한 주거를 선택하고, 선택한 거주지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인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에서는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으로서 주거권,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조건 없는 주거, 다양한 주거, 적절한 주거, 권리로서의 보호,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결되기 등으로 정하고 있다.⁷⁾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 보장 정책과 제도에는 이러한 원

7)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

아동·청소년 주거권은 '집다운 집에서 살 권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즉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삶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아래에서 정의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이 실현되지 않은 모든 주거 상태를 주거 위기로 정의한다. 특히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유지하거나, 타인의 임시적 호의에 기대어 잠자리를 해결하거나, 보육원이나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심각한 주거 위기로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아동·청소년 주거 위기를 탈가정, 비행 등 당사자의 선택과 도덕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국가의 주거보장 시스템 부재, 사회적 책임 회피, 가정 내 폭력 등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주체들이 미망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한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실질적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향과 원칙을 제안한다.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주거권은 모든 인간 개개인의 권리다.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존재가 아닌 독자적 개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권리보장을 유예해선 안 되며, 즉각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권한은 아동·청소년 자신에게 있다.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대안이 열려야 하며, 각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선택의 과정에서 외압이나 강제가 없어야 하며, 주거 대안을 찾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선택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시행착오나 문제제기를 인정하고, 다시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3.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어떠한 주거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국가는 정체성이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혐오나 낙인, 차별이 뒤따르지 않도록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이 사는 집이나 지역·사회가 물리적·정서적 폭력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각종 폭력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 공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을 위한 지원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전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 조건 없는 주거: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제 조건 및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주거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Housing First). 위기의 심각성을 비교하고 경쟁시켜서는 안 되며, 나이, 학력, 소득 등을 이유로 차등적, 선별적으로 주거를 제공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거주기한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양한 주거: 주거 지원이 원가정과 시설 입소로 양분되는 지금의 아동·청소년 거주 현실을 넘어서야 한다. 주거 형태, 동거인 유무, 접근성, 주변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거 모델이 확립되고 실제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대안을 설계하고, 주택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6. 적절한 주거: 주거권의 핵심 요소를 고려해 '최소'가 아닌 '적정' 주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제공해야 한다. 신체·정신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자낼 수 있어야 하며(주거의 수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점유의 안정성). 또한 소득에 비춰 주거비용이 지나치게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주거비가 책정되어야 하며(적정 주거비), 입주자 특성이나 입주 경로에 따른 차별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비차별 원칙).
7. 권리로서의 보호: 긴급한 위기 상황으로부터 탈출한 아동·청소년이 대안적 주거를 찾기 이전 임시로 머무는 거주 공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이 주거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보호기간 동안 '통제로서의 보호'가 아닌 '권리로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보호 공간은 보호를 명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제약해선 안 된다. 아동·청소년이 권리에 기반한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유롭게 문제제기 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8.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주거는 삶의 안정을 위한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다. 교육, 일자리, 상담, 동행 지원

칙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에 대한 다층적 분석

이 연구에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침해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생계유지, 주거 위기, 불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권 등에 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으며, 그들 삶의 구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의 이용 경험이 없어 기존 연구에서 포착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와 실태는 거의 드러난 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정해진 거처 없이 거리 생활을 하거나(비정착성), 쉼터나 타인의 주거와 같은 임시적인 공간에 머물거나(비정규성), 고시원,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 환경에 머물고 있거나(비적정성), 보호가 필요한 아동 또는 위기청소년으로 보호를 받았거나, 보호가 종료된 상황”을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정의하고, 이들의 주거권 등 인권침해 상황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양한 유형의 가정 밖 청소년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개인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주거권 상황, 그리고 주거권의 위기로부터 파생된 증증적인 인권침해 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연구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상황과 삶의 양태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동안 정책과 제도의 대상화로 인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가정 밖 청소년들이 발화의 주체가 됨으로써, 현재 주거권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된 비청소년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맞이하

등 아동·청소년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통합적 서비스를 동시 지원한다.

9.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결되기: 아동·청소년은 미성숙하고 결핍된 존재가 아니며, 쉽게 하대해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니다. 오롯한 권리를 가진 존엄한 한 명의 시민으로서 타인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에 동등하게 포함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주거 안정은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이자 시작이다. 집을 뿌리 삼아 인정적인 정착을 이루고, 이를 토대로 자기 삶의 생태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는 논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나.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관련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

또한 이 연구에서는 시민권적 접근을 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제도와 정책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가정 밖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주거권 등 인권 침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시도했던 지원 요청은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요청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현재 제도 및 정책과 연결하여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가정에만 의존하는 돌봄과 시설 중심의 대안 양육을 넘지 못하는 현재의 제한된 선택지를 확장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 주거권의 의미를 단지 주거 공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체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거권을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권으로 확대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2절 |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가. 청소년 주거권의 재규정

「유엔 아동권리협약」,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관련 일반논평, 대한민국에 대한 관련 권고, 세계주거회의(Habitat)에서 채택된 각 선언,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 등 주거 및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된 국제인권규범과 문서와 「대한

민국 헌법」을 청소년 주거권 측면에서 검토하고 청소년 주거권 개념을 인권의 측면에서 재규정하였다. 재규정된 청소년 주거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거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에게 주거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 보장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령 분석

국제인권법과 인권 규범이 제시한 기준과 시사점을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현행 국내법과 정책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국가 책무 이행을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아동·청소년 관련 법, 「주거기본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거 관련 법, 그밖에 정부의 아동·청소년 정책 및 주거정책의 기본계획 등을 분석하여 현행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원주택법안을 분석하였다.

다.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에 관한 해외사례 검토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정책이 원가정 복귀로 수렴되지 않는 청소년 홈 리스 개념이 비교적 명확한 미국, 영국 등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가정 복귀 이외에 다양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라. 가정 밖 청소년 관련 통계 조사 재분석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김희진 외(2018)의 연구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과 전체 청소년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을 입체적이고 다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

가정 밖 청소년을 동질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처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주거 위기 및 대처 경험, 주거 위기로부터 파생된 인권 침해 경험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가 포괄하지 못했던 가정 밖 청소년, 예컨대 성소수자, 보호 종료, 보호 시설 비이용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상황 등을 다층적으로 드러내고자 했다. 다양한 맥락의 가정 밖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주거권 등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주거 상황을 중심으로 한 삶을 사회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마련

각 부처 업무 담당자, 학계 전문가, 주거 분야 활동가 등과의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지금까지 국내 정책, 해외사례, 심층면접의 결과 도출된 현황과 정책 제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1) 선행연구 검토

탈가정 청소년, 위기청소년, 성소수자 청소년 등 다양한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보고서, 논문, 도서 등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들이 가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2) 해외사례 검토

해외의 가정 밖 청소년 개념과 대상의 범위, 지원 제도를 개괄하고 국내 사례와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더홈리스허브(The Homeless Hub) 등에

서 흠티스 청소년(Homeless Youth), 탈가정 청소년(Runaway Youth) 혹은 RHY(Runaway Homeless Youth)를 키워드로 도출된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검토하였다.

3) 법률 분석

국내의 현행법과 국가의 정책 기본계획,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 등을 수집하여 가정 밖 청소년 관련 법률과 정책, 주거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정리하여 분석하고,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국가의 책무와 전달 방법, 현재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그 법적 근거 등을 정리하였다. 현행법과 정책들을 이 연구에서 정의한 청소년 주거권 개념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 통계자료 재분석

‘가정 밖 청소년’ 용어는 2021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되었으나,⁸⁾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적시한 “보호자로부터 이탈” 상태를 판단하거나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준거를 여타 법령이나 정부의 지침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 즉 ‘가정 밖 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 하므로 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추정하려는 정책 대상의 규모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보호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가정을 벗어나 있는 경우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보더라도 조사하는 시점을 벗어나 대상을 특정하지 못하거나 거소의 특수성으로 조사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김희진 외(2018)의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인 2018년에 수행되었고, 가정을 벗어나 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15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 대상으로 특정되지

8) 2021. 3. 23.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일부개정되면서 제2조(정의) 제5호에 다음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같은 조 제4호는 본 장에서 비교하려는 조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위기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못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을 추정하고, 나아가 보고된 조사 결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문항을 활용한 다른 조사 결과를 참조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은 “가정 문제” 요건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김희진 외 (2018)의 조사 결과를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9세~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황여정 외, 2022) 및 비슷한 시기에 9 세~24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실시한 2017년과 2021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김기현 외, 2021)와 비교분석하였다.

다. 면담

1) 연구 참여자 선정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한 가정 밖 청소년은 9세~24세의 “가정 내 갈등 · 학대 · 폭력 · 방임, 가정해체, 기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을 말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은 크게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 및 대안 가정에서 생활하는 경우, 가정이나 양육시설 외 청소년복지시설⁹⁾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위탁 · 운영하는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경우, 그리고 어떠한 보호체계에도 포함되지 않고 거리나 비적정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김희진 외, 2018: 24-27).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상황은 매우 광범위하다.

지금까지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 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쉼터, 교육부 Wee센터, 법무부 자립생활관, 아동복지시설 등 시설 거주 여부, 주거지로서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의 거주 여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이 적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가

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근거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을 의미한다.

정 밖 청소년의 삶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위기 지원 단체,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 및 지원 단체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밖에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에서 이루어진 아웃리치 활동에서 만난, 라포가 충분히 형성된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이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고 현재 시설에 거주하지 않거나 고시원이나 원룸텔 등 비적정 주거환경에 머물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연령, 지역, 법적 성별, 가정 외 보호 유형, 쉼터(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경험 여부, 아동양육시설 경험 여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43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대략적인 특징과 거주 경험은 다음과 같다.

〈표 1-1〉 연구 참여자 개요

지역	연령	법적 성별	가명	과거 거주지	현 거주지	비고
수도권	20대	여성	찬선	보육원, 그룹홈, 의료 소년원, 6호 소년보호처분시설, 성매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쉼터	공공임대주택	성소수자, 면담 2회
			은수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친족성폭력쉼터, 종교시설	원룸	
			효선	쉼터, 그룹홈	자립지원관	면담 2회
			강솔	청소년쉼터(단기) 2회	아파트 (공공임대)	
			수현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장기)	원룸 (공공임대)	
			해린	청소년쉼터(단기)	빌라 (공공임대)	
			강민	청소년쉼터(일시)	원룸 (월세는 애인이)	성소수자, 청소년쉼터(일시에서 9일만)
			혜진	지인집	원룸 (공공임대)	성소수자, 면담 2회
			남성	호수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전세임대(원룸)



		주혁	아동양육시설	어머니 집	(자립 후 전세임대에 거주하다가 지역을 옮기면서 잠시 어머니 집 거주 중, 곧 다시 전세임대 구해서 자립할 예정)
		지성	청소년쉼터(단기)	전세임대(원룸)	성소수자, 면담 2회
		희강	쉼터	고시원	
		해수	공장 숙소, 작업실(근린시설)	자취방	
		희봄	원룸	전세임대 (공공임대)	
10대	여성	다은	미혼모시설, 청소년쉼터(단기), 6호 소년보호처분 시설, 지인집, 언니집, 고시원	원룸	성소수자
		효주	그룹홈,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쉼터(임시)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성소수자
		다미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쉼터	성소수자
		해서	쉼터	쉼터	
		송선	그룹홈, 청소년쉼터(임시)	그룹홈	
		고유	청소년쉼터(단기) 2회, 일시쉼터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미나	청소년쉼터(단기)	고시원	
		채선	-		성수소자
	남성	유성	보육원, 6호 시설, 청소년쉼터(단기), 노숙, 가출팸, 원룸(지인 명의), 반지하	원룸	
비수도 권	여성	이수	일시 쉼터	원룸	성소수자, 면담 2회
		미영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자취방	
		시영	지인집, 고시텔, 원룸, 종교시설	원가정	
	남성	현빈	청소년쉼터(일시/단기)	원가정	성소수자, 면담 2회
		강선	친척집, 노숙, 소년원, 청소년쉼터(단기)	원룸(시설 소유)	면담 2회
		우중	지인 집	1.5룸 (애인과 동거)	성소수자, 면담 2회
		해은	지인 집, 원룸, 고시원	원룸 (지인과 동거)	
	여성	혜미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양육시설, 지인 집,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원룸	성소수자
		효림	청소년쉼터(일시/단기),	1.5룸(지인명의)	성소수자

			가출팸		
장선			청소년쉼터(일시/단기), 성매매피해청소년쉼터	고시원	성소수자
			-	자취방	
			언니집, 지인집	원룸(지인명의)	
남성		회원	청소년쉼터 (단기)	청소년쉼터 (단기)	
		채운	단기 쉼터	고시원	성소수자
		선기	일시 쉼터	친구 집	성소수자
		수명	청소년쉼터(단기/중장기), 친척집, 노숙, 가출팸	원룸	
		준호	청소년쉼터(일시), 노숙, 지인집, 원룸, 고시원	반지하	성소수자
		동우	지인집	원룸	
		희준	지인집, 친척집, 모텔	원룸	

참여자 이름은 모두 가명임.

지역(수도권/비수도권)은 원가정을, 연령(10대/20대)은 현시점을 기준으로 함.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외에도 청소년 지원 현장(아웃리치기관,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자립전담요원 등) 활동가를 현장별로 구분하여 보조 연구자로 선정하고 이들 현장 활동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이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청소년으로서 취약한 연구 참여자라는 점에서 연구 윤리의 측면을 특별히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 방법, 연구 참여 방식 등 연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의 동의를 구했으며,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진 회의에서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가정 밖 청소년의 개인적 상황, 그들의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 상황, 참여자들이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한 노력, 이와 관련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의 경험, 자체적인 노력, 주거권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언, 요구사항 등)를 구성하고 이를 면담 이전에 연구 참여자와 공유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연구자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회당 1~2시간가량 진행하고 연구 참여자에 따라 1회 또는 2회의 면담을 수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하고, 이를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들은 모든 면담 이후 면담 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연구자들끼리 공유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연구 관점과 초점을 맞춰가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자들은 면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 면담일지를 토대로 일차적 분석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면담에서 집중해서 다룰 이야기 주제를 논의하였다. 모든 면담이 종료된 후에 연구자들은 면담의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방 코딩을 진행하였으며, 개방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권 및 주거관련 인권의 각 영역에 따라 코딩 결과를 분류한 뒤 각 영역에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에 대한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맥락, 제도와 정책 등의 거시적 관점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과정에서도 연구 참여자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연구 참여자에게 분석 결과를 검토받음으로써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라. 초점집단면담 및 자문회의

선행연구, 통계자료 분석, 정책분석, 국제인권규범, 해외사례, 면접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연구자 회의 등을 통해 정책 제안 초안을 작성하고 가정 밖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 및 연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제3절 |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및 관련 연구 분석

가. ‘가출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가출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가출’이라는 일탈 행위의 원인, 즉 청소년이 집을 나오는 요인으로서 개인, 학교 및 또래, 가족 요인을 탐구하였다. 예컨대 청소년의 원가족 갈등 또는 역기능을 분석한 연구들은(고순청 · 김다은 · 이창한, 2016; 김승경, 2010; 허순희 · 김순옥, 2010) 가족의 구조적 · 기능적 ‘결손’, 부모의 양육태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청소년이 가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은 일견 가출의 기저에 놓인 가정폭력 및 학대, 물질적 · 정서적 불평등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으나, 낙인화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 청소년이 ‘왜 가출(탈가정)하는가’를 넘어서서 구체적인 맥락과 개입의 지점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나. 주거권 관점의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출이라는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원인을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가출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를 대체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7. 1. 24.). 이러한 문제 제기와 흐름을 같이 하며 최근의 이론적 · 실천적 경향은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가정 밖’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지연 외(2020)는 ‘적절한 주거에서 살 권리’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 · 청소년의 관점에서 주거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의 방안을 도출하였다. 문헌연구 및 아동 · 청소년 주거권 보장 실태조사, 심층면접과 전문가 의견 조사 등 혼합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비주택거주/시설거주 아동 · 청소년,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임대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시설 거주 집단의 경우 삶의 만족도, 신체적, 정신적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였다는 결과와 함께, 청소년쉼터 퇴



소 후 주거 지원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는 임대주택 신청 자격을 차별 없이 부여하고 관계 기반의 주거 지원 서비스를 확대 및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탈가정 청소년 및 범죄·비행 연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가정 안팎의 생활 경험, 일상생활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심리·정서적 특성 및 관련 행동, 정책적 수요와 일반적 특성을 조사한 연구(황여정·이정민, 2020)는 위기청소년의 가정 밖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그밖에 10대 청소년이 원가정을 나오게 된 맥락과 그 이후의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들이 심각한 주거 취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삶을 질적으로 보여준 연구(추추희, 2016), 성소수자 청소년의 탈가정에 주목하여 그들의 경험적 맥락을 분석하여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이 탈가정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과 그들의 취약성을 드러낸 연구(띵동, 2021) 등이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정 밖 청소년 또는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황적 맥락에 주목하여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가정 및 시설 밖,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폭넓은 범위를 조사 대상으로 포괄하지 못하였거나,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의 수요와 필요를 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현장 기관의 특성과 지원을 활용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소년의 ‘가정 밖’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청소년의 주거권 관점에서 실천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2장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관련 법제도

제1절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제2절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제3절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제2장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이 장에서는 청소년과 주거를 연결함으로써 청소년의 권리와 주거권의 의미를 심화하고, 청소년 주거권을 정의함으로써 청소년인 시민들에게 어떤 힘을 부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주거권을 정의하고 주거권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청소년 주거권의 개념을 재규정하려 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와 주거권사이의 상호의존적 특징을 드러냄으로써 청소년의 인권 실현에서 청소년 주거권이 가지는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법이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해외의 청소년 주거권 보장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

1. 주거권의 의의

가. 국내법에서 주거권의 의미

1) ‘주거권’의 등장과 확장

급격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으로 기존 주택들을 철거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강제퇴거 문제는 주거와 관련된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강제퇴거는 사회적 약자의 주거 불안을 가속화하고, 주거문화 공동체를 와해하며,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하성규, 1999). 강제퇴거는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와 안전에 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 노동할 권리 등 여러 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박병수 2009). 이처럼 강제퇴거가 시민들의 생계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기본적 인권으로 긴급하

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서 주거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주거권은 강제퇴거로부터 주거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자, 주거문화 공동체 또는 도시공동체(하성규, 1999)를 지키기 위한 저항의 언어였다. IMF 이듬해인 1998년 “IMF 시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제토론회”에서 에두아르도 호르게 안조레나(Eduardo Jorge Anzorena) 신부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다양한 차원의 계획과 결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서종균, 1998).

1997년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에는 대량실업과 경제위기 등으로 노숙인이 증가하면서, 홈리스 운동이 새로 조직되기 시작했다(미류, 2010). 2008년에는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1997년만큼 거리 노숙인의 수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비주택 형태의 허름한 주거 공간(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 여관·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찜질방이나 사우나실,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이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김현옥, 2010). 비적정 주거환경은 삶의 근간을 흔든다. 홈리스는 기본적인 주거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다. 홈리스가 되면 언제 무엇을 먹고, 언제 어디서 씻을 것인가와 같은 일상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어떠한 인권도 제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 심각한 개인적인 실패의 느낌을 갖게 만든다(서종균, 2005). 홈리스 상황 또는 주거 불안은 삶의 불안을 가중하고, 삶의 기회와 재건을 방해하며, 치명적인 신체적·정서적 위험을 유발하는 것이다. 홈리스 운동과 비주택 주거에 대하여 적정한 주거를 요구하는 운동은 사람과 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한다. 주거권은 강제퇴거에 저항하는 힘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삶의 근간이자 삶을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이기도 하다.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삶을 위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중심으로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이자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운동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탈시설 운동은 시민권의 확장이자 주거권의 실현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시설은 자원의 한계나 공동생활이라는 특성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물리적·사회적으로도 지역 사회와 거리를 두거나 분리되도록 만든다. 반면 탈시설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게 되면 다시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합류하게 된다. 따라서 탈시설 운동은 시설 밖으로 나가는 운동이면서 동시에 시민사회에 다시 재합류하는 운동으로도 볼 수 있다.

전통적인 주거권은 점유하고 있는 집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이면서 적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 공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출발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시민사회의 운동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주거권의 의미를 확장해 왔다. 주거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일 뿐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권리, 정주하여 삶을 살아갈 권리,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시민으로 포용될 권리가 실현되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주거권은 단지 적절한 공간을 안정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외부와 의미 있게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지속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헌법상 주거권의 해석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주택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주거로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실현할 장소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 사실 주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직접 열거된 권리는 아니다. 대신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와 그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 조문에 두고 있다.

예컨대 제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제16조에는 주거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를 각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주택개발정책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고려할 국가의 책임을 부여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고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에 대한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제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 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가18 결정).” 거주 이전의 자유는 인간이 어디에서 살지 결정할 자유를 보장하지만, 현재까지의 헌법 해석으로는 결정과 이동을 방해받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자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권리를 설명하기 어렵다.

제16조의 주거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는 주거를 개인의 은신처로 보아 외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 주거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다(한수웅, 2022). 즉 개인의 은신처로서 인간이 집에서 누려야 하는 평온과 자유로운 삶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자유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내용으로 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주거권과는 구별된다(신명호 외, 2004). 주거의 자유는 주거를 전제로 하고, 이 주거 공간에 대하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만으로 주거권을 설명하기 어렵다(서지연 · 김상겸, 2022).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주택개발정책을 추진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한다.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권리 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제1항).”라며 환경권을 규정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제35조에서 주거권을 도출할 때는 주거를 환경권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은기, 2016). 동조의 기본취지가 환경권이라는 점에서 주거생활이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고문현, 2021).

한편 제35조는 주택정책에 대한 의무를 정하였을 뿐 주거에 대한 권리로는 충분하지 않다면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적극적인 권리를 도출하는 견해(서지연 · 김상겸, 2022)도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 주거는 주거의 적절성이나 강제퇴거, 자기결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구체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장은혜, 2014). 헌법재판소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구체적인 권리로 직

점 발생시킨다고 보지 않고, 법률적 차원의 권리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3헌가14 결정).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후단).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구성하는 권리들을 열거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기본권임을 확인하여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주거권을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 따라 열거하지 않았지만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설명하기도 한다(신명호 외, 2004).

기존의 헌법상 기본권 목록이 주거권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 개헌 시에 주거권을 「대한민국 헌법」에 별도로 설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문현, 2021; 임숙녀 · 박희원, 2016). 주거권이 헌법으로 규정되면 시민들은 국가에 대해 주거권으로 규정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매개를 갖게 된다(서종균, 1995).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통해 주거권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은 주거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밝히고, 각 기본권들의 특성을 통해 주거권의 내용이나 성질을 비교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 등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주거권과 주거권의 내용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기본권을 도출하는 조항을 특정할 실무상의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부터 제39조에 이르는 권리와 의무의 조항들을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나누어 마치 한 개인이 여러 개의 인격으로 파편화되고 분절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김연미, 2015). 마찬가지로 주거권을 소극적 권리나 적극적 권리로 구분하여 도출한다면, 그 어떤 조항으로도 주거권을 모두 담기는 어렵다. 유엔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19호는 당사국들에게 사회권을 인권과 마찬가지로 존중, 보호, 실현할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E/C12/GC/19, para 43).¹⁰⁾ 이는 인권이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적극적으로

10) 존중의 의무는 당사국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보호의 의무는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3자가 권리의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실현의 의무는 권리가 완전히

요구하는 것으로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다양한 권리의 양상이 결합된 유사한 사례로 이미 노동권과 교육권과 같은 인권들이 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¹¹⁾나 구치소의 과밀수용¹²⁾에 대한 판단에서 존중과 보호, 실현의 복합적인 권리 이행을 요구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이주영, 2019).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공동체적 책무가 분절되지 않고 존중, 보호,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거를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은신처이자, 강제로 이동당하지 않을 자유와 안정성을 지닌 장소이자, 쾌적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는 주거권 내용을 구성하는 규정들은 주거 공간의 획득과 보전에 대한 권리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인간다운 삶(제34조)이나 환경권(제35조)에 대한 규정에서 주거의 범위가 확장되긴 하지만, 이 역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의 권리라는 점, 쾌적한 환경이라는 “공간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주거를 공간에 대한 정태적 권리로 보는 경우, 거주지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한 종단적인 시간의 권리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도시에 대한 권리로의 확장하기 어렵고, 정체성과 연결되는 곳으로서 주거의 장소적 의미까지 살피기 어려워진다.

3) 「주거기본법」의 주거권

국내 법제에서 주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법률은 바로 「주거기본법」이다. 2015년 국회에서는 임대차 비용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를 구성하여 주거 관련 법의 패러다임을 주택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큰 그림에 협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체 주거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자는 제안과 주택법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신설하고 제명을 「주거기본법」으로 개정하자는 제안이 있었다(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2015).

실현되도록 돋고(축진), 교육하거나 인식을 높이고(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1)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 병역제도 개정이라는 적극적 이행을 요구한다.

12) 신체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구금시설 개선이라는 적극적 이행을 요구한다.

주거복지기본법안(2012. 11. 2. 이미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9)
제10조 (주거 보장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이하 “주거복지사회보장수급권”)을 갖는다
1. 임대주택 공급 신청권
2. 주택 임차보증금·임차료 등 보조금 신청권
3. 주택 개량 지원 또는 주택 개량비 지원 신청권
4. 그 밖에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주거 복지 관련 사회보장 수급권
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2015. 1. 29.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3855)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주거기본권) ①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현재의 「주거기본법」은 위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두 법안을 절충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당시 제안된 두 개의 법안에는 없었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제2조에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라는 주거권의 정의가 추가되었다. 조항의 문구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의 문언에서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기 힘들지만(김희정, 2019), 헌법상 추상적 권리로 여겨지던 주거권을 실정법상의 구체적 권리로 자리매김했다는 의의가 있다(이은기, 2016). 나아가 헌법상 권리인지 모호했던 주거권이 구체적 권리로 규정될 수 있었다.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주거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는 각 생리적·안전욕구, 경제적 욕구, 사회적·문화적 욕구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신명호 외, 2004). 미루어 보건대 최초로 현재의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을 제안한 사람은 인간의 욕구단계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다만 권리와 권리는 폐려야 뗄 수 없고 상호의존한다는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주거권을 구성하는 안전, 안정, 적정과 같은 내용적 요소들이 단계적으로, 순위에 따라 보장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우위에 있게 되면, 두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 항상 선순위 권리가 실현되고 후순위 권리는 양보하게 되므로, 종국에는 후순위 권리가 사실상 제거되는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한수옹, 2022).



한편,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의 정의에서 위에서 언급한 헌법상 주거권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조금씩 중첩되는 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제14조, 주거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에 관한 제16조, 주택정책과 환경에 관한 제35조 중 하나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쾌적한 주거’는 제16조와 제35조 외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제34조와 함께 설명할 수 있고, ‘인간다운 주거생활’도 제34조 외에 사생활을 영위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 받을 때 의미가 있다. 이처럼 현재의 주거권 정의는 헌법상 주거와 관련된 복수의 권리들을 각각 부분적으로 포함하거나 중첩적으로 엮어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주거권을 분절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권리들과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기본법」상 주거권의 정의와 보장 범위는 여전히 한계가 많다. 가장 먼저 주거권을 적정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는 ‘공간’ 중심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삶과 정체성, 관계 등을 일구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기 어렵다. 또한 주거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국민이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권리의 내용도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안으로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¹³⁾

나. 국제인권규범에서 주거권의 의미

1) 세계인권선언과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주거권

조약이나 협정은 이를 비준하거나 동의한 국가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대한민국은 주거권에 대한 조약이나 협정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비준하거나(제73조)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제60조 제1항) 대통령이 비준한 조약은 국내법의 효력이 부여된다.

13)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 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상황으로 인한 생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명시한다. 선언의 내용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김수갑·여경수, 2005).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본 조항은 주거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국제규범에서 기본 준거로 삼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기에 선언의 국제법적 효력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개별 국가의 인권 관계법 제정에서 갖는 정치적·도덕적 중요성이 크고, 상징적·실천적 의미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김용창, 2013).

대한민국에서 1990. 3. 국회의 동의를 얻어 7. 10.부터 발효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이 조항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간의 권리가 파생된다(E/1992/23, 1991, Para 1). 같은 날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 규약”)은 제 12조에 이동·거주·출입국의 자유를 제17조는 사생활·명예·평판의 존중을 규정 하여 주거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와 주거를 간섭당하지 않을 권리로 확인하고 있다.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의 전문은 공통적으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라며 두 규정이 보장하는 권리를 구분하지 말고 모두 보장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조효제, 2018).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적정한 주거의 권리의 도출할 수 있다. 또한 협약 당사국에게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 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며 주거에 대한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실현할 의무를 부과한다.

국제인권법은 인권의 주체를 ‘모든 인간’으로 호명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이를 위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 역시 주거권의 주체임을 의미한다.

2)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국제인권법이 말하는 주거권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규약이나 협약에 후속으로 작성된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논평을 작성하여 발표한다(김용창, 2013). 199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일반논평 4: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발표하였다. 이 논평은 사회권규약 제11조 제1항의 적당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에서 파생된 적절한 주거에 대한 인간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문서이다(E/1992/23, 1991). 이 일반논평에서는 “주거를 단순히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장소와 동일시하거나, 하나의 상품으로만 여기는 식의 좁거나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한다. 대신에 주거권을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해석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주거권이 다른 인권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규약이 전제로 하는 기본원칙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para 7). 바로 생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 평화, 존엄이 실현되는 복합적인 장소로서 주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일반논평 제4호는 적정한 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legal security of tenure) ②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availity of services, materials, facilities and infrastructure) ③ 주거비용 적정성(affordability) ④ 물리적 거주적합성(habitability) ⑤ 사회적 접근성(accessibility) ⑥ 주거입지의 적절성(location) ⑦ 문화적 적절성(cultural adequacy) 총 7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E/1992/23, 1991).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

점유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점유의 안정성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 자유의 원리를 근거로 하기에 소유권자와 정당한 임대차 계약 관계를 설정한 경우에만 보호되고 있다. 의사에 반하여 강제퇴거나 강제철거를 당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한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 요청된다(하성규, 1999).

사회권위원회에서 1997년 발표한 <일반논평 7: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강제퇴거>는 강제퇴거의 문제를 짚고, 이에 대한 원칙을 제안하고 있는 문서이다 (E/1998/22). 강제퇴거의 관행은 생명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 가족과 가정의 사생활 불간섭에 대한 권리, 그리고 소유물의 평화적인 향유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다(para 4).

위원회는 강제퇴거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입법을 촉구하면서, 법률에는 (a) 주택 및 토지의 점유자에 대해 최대한으로 가능한 점유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b) 규약을 따르며, (c) 강제퇴거가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을 엄격히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Para 9). 또한 강제력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퇴거 대상자들과 협의하여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하며 법적 구제 및 절차가 퇴거 명령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피해를 입은 모든 재산, 동산과 부동산 모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Para 13).

위원회는 적절한 절차적 보호 및 적법절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a) 퇴거 대상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기회, (b) 예정된 퇴거일 이전에 모든 퇴거 대상자들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인 통지, (c) 제시된 퇴거에 관한 정보,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토지나 주거가 어떤 대안적 용도로 이용될지에 대한 정보를 모든 퇴거 대상자들에게 합리적 기간 내에 제공, (d) 특히 집단들이 관련된 경우 정부 관리, 혹은 정부 대표들의 퇴거 현장파견, (e) 모든 퇴거 집행자의 신원 제시, (f) 퇴거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는 악천후 시, 혹은 야간에 퇴거 감행의 금지, (g) 법적 구제의 제공, (h) 법

원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 법률 구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능한 경우 이를 제공할 것을 제시한다(para 15).

②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적절한 주택은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에 필수적인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권의 모든 수혜자는 천연의 공동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위생과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 시설, 비상 서비스 등에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 임차가구들은 과밀에 시달린다(하성규, 1999). 특히 거리 노숙인이나 비주택 주거자들은 씻고 빨래를 하기 어렵고, 옷을 말리거나 보관할 곳이 많지 않다. 이러한 여건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지키며 생활하기는 쉽지 않다(김현옥, 2010).

③ 주거비용 적정성

주거와 관련된 개인 또는 가정의 비용은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 및 충족을 위협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비주택 거주민은 낮은 수입 때문에 하루 1,000원, 2,000원의 차이도 중요하게 따지며 거처를 옮길 만큼 주거비에 민감하다. 비주택은 사람이 살만한 거처라고 볼 수 없는 곳이지만, 여기서 사는 사람 대부분(75.6%)에게 주거비 지출은 생활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 달 수입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사람이 80.6%이고, 50%를 넘는 사람도 29.6%에 이른다. 이런 부담 때문에 결국 식생활,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다른 중요한 생활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김현옥, 2010). 주거 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주거 관련 비용이 소득 수준의 적정성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전찬희, 2020).

④ 물리적 거주 적합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험,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해야 한다. 인간을 외부 물리적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방어 및 보호해주는 것은 주거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그러므로 인간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공간 규모가 확보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는 벽과 지붕이 있는 공간을 넘어서 추위와 습기뿐만 아니라 더위와 비바람 등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전찬희, 2020).

대한민국은 최저주거기준을 마련하여 (1) 주거 면적, (2)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3)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주거기준을 ‘적절한’이나 ‘충분한’처럼 추상적인 기준으로 규정하여 실제 주거 지원 시책으로의 연결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제도를 도입하여 전반적인 주거기준의 후퇴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민태욱, 2013).

⑤ 사회적 접근성

적절한 주거는 권한을 갖는 자들 모두가 접근 가능해야 하며, 특히 혜택을 받지 못한 집단에게 적절한 주거 지원에 대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계층과 사회 빈곤층의 토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주거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주거 관련 비용이 소득 수준의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모든 사람은 주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나, 현실에서는 소득 수준, 장애, 연령, 고용상태 등에 따른 거주 상의 차별이 존재한다(하성규, 1999). 경제적 적절성과 연결되어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임대료의 주택을 찾기 어려운 점도 사회적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다(하성규, 1999).

⑥ 주거입지의 적절성

적절한 주거는 직장 선택, 보건의료 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과 근접한 지역이나 오염지역에 주택이 신축되어서는 안 된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 외곽지역에 배치된 공공임대주택이다. 도시 내에서 는 택지를 구하기 어렵거나 지가가 비싼 까닭에 도시 외곽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주거와 직장이 분리되고, 도시 내 다른 지역과도 구분이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입지 문제 때문에 주택을 매입임대형식으로 공급하거나, 도시 내 주택

건설 사업시행자에게 임대주택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개선을 도모하기도 한다(민태욱, 2013).

⑦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택의 다양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거는 생존적 삶의 기초 이상의 물질적·정서적·정신적 발전 과정과 관련된다 (김희정, 2019). 주거에서 공동체적 문화 요소를 가벼이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웃 간의 유대와 상호부조 문화가 더 발달한 지역 공동체의 주거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하성규, 1999; 전찬희, 2020). 대한민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원주민 정착률이 20% 이하여서 사회적 자본이 파괴되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민태욱, 2013).

적정한 주거에 관한 일반논평 제4호는 주거권을 안전하며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 정의하는 한편, ‘적정 주거’를 구성하는 7가지 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잠자리로서의 주거 공간 제공 정도에 그친 기존의 주거권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강제퇴거나 위험한 환경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되고 있어 가정폭력이나 학대, 정체성에 대한 부정(denial)이나 차별, 시설과 같은 거주 공간에 대한 낙인 등으로 인해 주거 불안이 야기될 수도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세계주거회의(Habitat)

유엔이 개최한 제1차 세계주거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 Habitat I)는 1976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전 세계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주거빈곤, 불평등, 삶의 질 저하 등이 대두되었다. 유엔은 주거문제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을 촉발하고자 해비타트 회의를 개최하였다(박세훈, 2016).

제1차 해비타트에서 채택한 「인간 정주를 위한 벤쿠버 선언」(1979)에서는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는 기본적인 인권이고,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

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주거를 기본적 인권으로 재확인하고 있다. 또한 차별 없이, 존엄 및 사회 정의의 틀 안에서 주거 보장에 대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데서 시작해 삶의 질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원칙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자국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와 개인별로 정주지를 선택할 권리의 인정 및 보호”를 보장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삶의 질에 대한 보편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1996년 제2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다. 당시에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슬럼과 비공식 주거지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모두를 위한 적정한 주거 등이 핵심과제가 되었다(박세훈, 2016).

1996년 제2차 세계주거회의의 결과 해비타트 의제가 작성되었다. 해비타트 의제는 주거권 및 주택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제문서로 적절한 주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용창, 2013). 더불어 적절한 주거를 공간, 시설, 환경 등 다차원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박병수, 2009). 이를 위해 인간 정주에 대한 공정성, 인간 정주, 빈곤 퇴치, 지속가능한 개발, 가족 단위의 사회구조, 모든 국가 및 시민단체의 동참과 연대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김수갑 · 여경수, 2005). 11문단에서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이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할 권리와 생활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권리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적절한 음식과 의복, 주택, 물, 하수처리 등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라며 주거의 권리를 적절한 수준의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권리에서 찾고 있다(신명호 외, 2004). 또한 모든 사람의 적절한 주거를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적절한 주거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주택을 거주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하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para 60).

- ① 적절한 규제장치와 시장 유인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
- ②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보조금과 임대료 및 다른 형태의 주택자금지원을 통해 부담능력을 향상시킨다.



- ③ 지역사회에 기반한 협동주택과 비영리 임대주택, 자가주택 사업을 지원한다.
- ④ 허리스와 그 밖의 취약한 집단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⑤ 주택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재정과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자원들을 혁신적으로 활용한다.
- ⑥ 민간부문에서 경제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자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기반한 각종 유인책을 만들고 장려한다.
- ⑦ 일자리, 재화와 서비스,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공간개발과 교통체계를 장려한다.

2016년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제3차 세계주거회의(Habitat III)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발표하였다. 2차 회의 이후 20년간 전지구적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주거에 대한 권리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로 확장된 것이다. 새로운 도시 의제는 도시를 보다 포용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지속가능하게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박세훈 외 2016). 새로운 도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공간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경제를 보장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para 14).

- (a)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 이는 극빈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을 퇴치하고, 평등한 권리와 기회, 사회경제적 및 문화적 다양성, 도시공간에서의 통합을 보장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또한 HIV/AIDS, 결핵, 말라리아의 퇴치를 포함하여 생활여건, 교육, 식량안보 및 영양, 보건 및 복지를 향상하고, 안전을 증진하며 차별과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고, 모두에게 물리적 및 사회적 기반시설, 기초서비스, 적정하고 저렴한 주택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 (b)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경제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생산성, 경쟁력, 혁신 등 잘 계획된 도시화에 따른 집적의 이익을 활용한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두에게 경제적 및 생산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또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안전한 토지점유를 촉진하며, 도시 축소(urban shrinkage)를 관리한다.
- (c)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도시발전에서 청정에너지 및 토지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증진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도입하는 등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호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을 촉진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구축하며, 재해의 위험을 낮추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한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 번에 걸친 세계주거회의의 주요 의제는 주거에 대한 권리에서 그 주거를 둘러싸고 있는 도시에 대한 권리로 확대되고 있다. 제1차 세계주거회의가 이동과 정주의 자유, 법적 안정성과 주거의 물리적 적합성을 강조했다면, 제2차 세계주거회의는 이에 대해 주거를 둘러싼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까지 포함하여 주거정책이 펼쳐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세계주거회의는 주거를 둘러싼 도시의 다양성, 통합성, 포용성,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하여 차별 문제와 지속불가능성의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의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거권의 의미는 건축물에서 주거환경, 타인과 연결된 공동체에 대한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주거권에 대한 의제가 강제퇴거에서 홈리스 그리고 지역사회 자립으로 확장되어가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주거권의 보호영역이 공간에서 장소로, 점유에서 정체성과 공동체로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주거와 생명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2016년 '적정 생활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적정한 주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총회에 제출하였다(A/71/310, 2016).

파르하는 생명권은 인권의 어느 한 분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생애 경험을 통해 생명권은 안전한 거주지에 대한 권리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안전한 거주지에 대한 권리는 존엄성 및 안전을 존중받고, 폭력 없이 살 권리라는 맥락에서만 온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Para 27.). 전세계 사망의 3분의 1이 빈곤 및 비적정 주거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며, 비적정주거나 홈리스 상태가 생명, 안전 및 존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Para 11.). 홈리스의 사망률은 홈리스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두 배에서 열 배정도 높고,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의 기대수명이 80인데 비해 홈리스 여성의 기대수명은 43세에 불과하다고 한다. 거리의 아동들은 제대로 된 잠자리를 누리지 못하고 성 취침 등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성병 등을 통한 생명의 위협 또한 겪게 된다(Para 12-14). 비공식거주지에서는 화재의 위험 및 오염된 식수로 인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는다(Para 15-16). 여성과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집은 가장 위험한 장소



가 되고 몇몇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밀주거지와 열악한 주거상태도 가정 폭력 발생빈도를 높인다(Para 24.). 그러나 주거나 금융자원이 없으면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이주, 자연재해, 분쟁 후 상황, 금융 및 주택위기 등으로 주거 위기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거 위기는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것이다.

레일라니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2018년 한국에도 방문하였는데, 30만 명 이상이 비공식 거주지에 주거하는 점을 지적하며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국제 인권법상의 최소 적정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모든 주거지의 품질과 안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준 미달 주거지를 개선한 결과 부담가능성의 감소, 흠티스의 증가, 가난한 사람들의 시설 수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권고하였다(A/HRC/40/61/Add.1, 2019).

한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거리 상황의 아동에 관한 일반논평 제21호를 발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거리상황의 아동들이 범죄피해, 유해한 노동, 교통사고, 약물사용, 성착취,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 적절한 영양, 보건, 주거 접근성 결여로 인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거리 환경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며, 감염병 노출, 오염, 교통사고 등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서도 주거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주거와 생명·안전은 이처럼 불가분하고, 강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거리 상황의 아동에 관한 일반논평 제21호	
29.	거리 상황의 아동은, 특히, 국가 요원에 의한 비사법적 살해(extrajudicial killing)를 당하거나, 이른바 자경단의 정의(vigilante justice)와 관계되거나, 개별 범죄자나 폭력집단에 연루 또는 표적이 되거나, 국가가 그러한 범죄를 방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살해를 포함하여, 성인이나 또래에 의해 살해되거나, 유해한 형태의 아동 노동, 교통사고, 약물 사용, 상업적인 성 착취, 안전하지 않은 성 행위와 관련된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조건들에 노출되거나, 적절한 영양, 보건 및 주거지의 접근성 결여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크다. 생명권은 협의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은 자신의 외인사(unnatural death)나 조기 사망을 야기하고자 의도하거나 그러한 사망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나 부작위로부터 개인이 자유로울 수 있고 존엄성을 지닌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53.	거리 환경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약물 남용, HIV와 기타 성병 감염, 임신, (또래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 폭력, 자살 의사 및 자살, 규제되지 않은 약품의 자가 투여 및 감염병에 대한 노출, 오염, 교통사고 등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58. 거리 상황의 아동은 성폭력과 성적 착취에 특히 취약하며,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는 특히 이들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거리 상황의 아동에 관한 일반논평 제21호는 이어서 구걸, 배회, 부랑, 가출 또는 생존 행동을 막기 위해 탄압적으로 검거하거나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며, 거리 상황의 아동에 관한 사법재판의 무관용 정책 시행을 우려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거리 상황의 아동에 관한 일반논평 제21호

26. 차별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차별에는 구걸, 배회, 부랑, 가출 또는 생존 행동(survival behaviours)을 막기 위해 탄압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홈리스를 해소”하려는 지나친 정책적 접근 방식들, 가령, 비행(status offence)의 형사 처벌, 거리 청소 또는 “검거”, 경찰의 특정 대상에 대한 폭력, 괴롭힘 및 강탈이 포함된다.
50. 주거권은 거리 상황의 아동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제27조의 주요 요소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이 권리가 안정, 평화 및 존엄성을 갖춘 곳에서 살 권리로 꼭 넓게 해석하여 왔으며, 거주와 관련하여 “적합성(adequacy)”의 개념은 보유기간의 법적 안정성, 서비스, 물자, 시설 및 인프라의 가용성, 비용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 거주가능성(habitability), 접근가능성, 위치, 문화적 적합성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60. 거리 상황의 아동은 청소년 및 성인 사법제도에서 대상이 되거나, 범법자가 되거나, 결국 사법제도의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성인이 없기 때문에 전환제도(diversion), 감금 대체 제도 또는 회복적 관행(restorative practice)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논평 제21호는 거리 상황에 놓인 아동을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가족에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설입소 방식의 대안 양육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거리 상황의 아동에 관한 일반논평 제21호

45. 거리에서 벗어나 대안 양육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적극적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는 개입조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아동이 이탈하거나 배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 아동은 종종 다시 거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거리 상황의 아동을 낯선 곳으로 보내 잘 알지도 못하는 친지와 함께 살도록 하면 배정은 실패하게 된다. 각국은 대안적 선택 방안들을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생존 및/또는 발달을 거리와 연결된 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배정을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법률, 규제 및 정책 지침을 통해 배정 관련 결정, 양육 계획의 개발 및 검토, 가족 방문시에 아동의 견해를 구하고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시설 입소를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는 확립된 국제 규정(international parameters)을 존중하고, 아동이 불필요하게 대안 양육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대안 양육이 제공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 및 최선의 이익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각국은 국가 및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보호소 및 시설이 안전하고 양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거리 상황의 아동과 직접 상의한 결과 가족에게 배정하는 것이 그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측에서 세심한 준비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종종 거리와 장기적배정 사이의 과도기 단계가 필요하기도 하며, 그 기간은 해당 아동에 맞추어 사례별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안 양육 시설 부족을 이유로 경찰이나 기타 구금실을 이용하여 아동을 수용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5) 유엔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과 탈시설

제65회 유엔총회에서는 2009년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맞이하여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한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을 결의하였다.¹⁴⁾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에서 국가는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추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para 31~47). 불가피하게 아동과 부모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가정에 가까운 환경이어야 하며,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para 122).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

31. 국가는 가족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고, 부모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유기, 친권포기,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는 근본원인을 다루어야 한다. 특히, 출생 등록할 권리, 적절한 주거와 기초건강,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빈곤, 차별, 소외, 낙인화, 폭력,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 약물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의 능력을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지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가족 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33. 국가는 아동유기, 친권포기, 가족과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은 가족이 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발달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태도, 기술, 역량, 도구를 통해서 가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 비정부기구, 지역사회기관, 종교적 지도자, 언론 등을 포함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상호보완적 역량은 이러한 목적 때문에 관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 조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a) 부모교육과 강좌, 긍정적 부모자녀관계와 갈등해결기술에 대한 홍보, 취업 및 소득창출 기회제공, 필요한 경우 사회지원과 같은 '가족강화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 b) 주간탁아, 조정과 화해 서비스, 약물중독치료프로그램, 금전적 지원, 장애를 가진 부모와 자녀를

14) 유엔총회, “UN Guidelines for the Alternative Care of Children(A/RES/64/142)”, 18 Dec 2009.

- 위한 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급적 통합적이고 비방해적 속성을 가져야 하고, 지역사회 단계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c) 아동정책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의 도전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도전은 아동이 부모의 슬하를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을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예비부모가 아동의 성적·생식적 건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예비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한다.
122. 시설양육을 제공하는 시설은 소규모여야 하고 아동의 권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또한, 가능한 가정에 가까운 환경 또는 소규모 그룹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시설양육의 목표는 일시적인 양육을 제공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아동의 가족 재결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할 경우, 대안가족환경을 제공하거나 입양이나 회교법의 카팔라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탈시설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국제적인 인권 정책이다. 대한민국에 대한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서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32(a)]. 동시에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탈가정)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Para 32(b)].

제5-6차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가능한 한 모든 아동들의 가정 기반 양육을 지원 및 촉진하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아동을 위한 가정위탁의 질을 향상 및 확대하기 위한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
 -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 (c) 아동의 필요, 최선의 이익 및 견해에 따라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대안 양육 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 대안 양육의 질에 대한 주기적 검토 및 진정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 가족 재결합 지원을 강화하고 성년에 이른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d) 보호자 보호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호자의 보호 능력을 강화할 것.



다. 주거권의 의의

시민사회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외치며 공간을 점유할 권리나, 적정한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에 머물지 않고, 그 공간에서 삶을 유지하고 지속할 권리, 그 공간을 기점으로 지역사회나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요구해 왔다. 국제사회에서 정의하는 주거권도 공간에 대한 점유권이나 적정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서 출발했지만, 세 차례의 세계주거회의를 거치면서 시설과 환경, 도시에 대한 권리로 확대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주거권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주택'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존엄과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며 시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권리로 볼 수 있다.

한편, 주거는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주거는 단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을 엮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명이나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폭력이나 재난 등으로 생명과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공간을 주거라고 부를 수 없고,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삶은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폭력이나 차별의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은 적정 주거의 외양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불안정 주거인 까닭에 주거권이 보장된 상태로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주거와 삶, 생명은 서로 맞닿아 있는 하나의 덩어리이다.

주거권에 관한 시민사회의 요구, 헌법적 근거와 「주거기본법」상 주거권 규정, 국제적 인권 규범에서 다루는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에 대한 권리를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2-1〉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		
의미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	
보장 원칙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특히 생명과 안전과 직결	
권리의 내용	주거공간을 가질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거정책 - 지속가능성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유의 법적 안정성 -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 - 주거비용 적정성 - 물리적 거주 적합성 - 사회적 접근성 - 주거입지의 적절성 - 문화적 적절성
	구제받을 권리 (구제절차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퇴거 제한 - 장애, 연령 등을 고려한 주거 공간 요구 - 침해 구제
	불안정 주거로부터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 차별 · 낙인으로부터의 자유 - 주거 안전망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존중 - 거소 결정권 - 가족구성권
	공동체 · 지역사회와 연결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자립생활 - 포용도시

2. 청소년 주거권의 개념

가.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의 의미

‘청소년 주거권’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생소했지만 감동이었어요.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라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생긴 거잖아요. 나는 집 안에서 이런 폭력을 당해서 나왔어. 그래서 지낼 곳이 없었어. 근데 나와서도 지낼 곳이 없어. 이러면 ‘뭐 어쩌겠니? 네 팔자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하지 않아도 ‘나도 주거권이 있는데 이게 보장되지 않았어. 이건 국가 책임도 있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알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창립 축하 청소년 인터뷰 중(2023. 1.)

“청소년”과 “주거권”을 연결한 합성어로서 ‘청소년 주거권’이라는 단어는 일견 당연해 보인다. 청소년도 인권의 주체이자 「주거기본법」에서 주거권 보장 주체로 언급되는 국민이므로 주거권의 향유 주체로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소년 주거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따져보면 두 단어의 연결은 한국사회에서 아직 생소하다. “청소년” 정책에서 주거를 찾기 어렵고, “주거” 정책에서 청소년을 찾기 어려운 까닭이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 청소년에게도 주거는 생존과 안전을 위한 은신처이고, 개성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사적 영역이며, 삶을 재건하고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거점이 된다. 그런 까닭에 주거가 보장된다는 것은 시민임을 확인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주하여야 지역의 주민이 될 수 있고, 정주하지 못하면 다른 시민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은 주거권을 보장받을 때 시민으로서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 많지만, 주거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일 것이다. 그들은 대개 가정폭력, 학대 또는 비적정 주거환경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권은 긴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나.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긴급성

1) 탈가정과 주거 위기

가정 안에서도 주거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다수 존재한다. 좁은 방에서 부모 형제들과 함께 지내는 경우도 있고, 평소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해 사생활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중 제일 심각한 주거 위기는 폭력과 학대, 방임의 상황일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기청소년의 44.4%가 보호자로부터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적이 있었다(여성가족부, 2022). 보호대상아동 중 학대피해로 인해 분리되는 아동이 48.2% 정도이므로(보건복지부, 2022) 집을 나서는 청소년과 보호대상아동의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견디거나’,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오거나’ 하는 것을 청소년에게 주어진 선택지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어떤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더라도 외부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차악이 있을 뿐이다. 자기결정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타인의 강압이나 강요가 아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는 결정이어야 한다(김현철, 2015).

〈표 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 실태조사

부모님(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심하게 맞거나 신체적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					
평생 경험한 적 없음	경험한 적 있음	일주일에 1~2회	1달에 1~2회	1년에 1~2회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55.6	44.4	3.3	4.6	8.2	28.3

〈표 2-3〉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2022)

보호대상아동	
소계	학대
2,289	1,103

청소년들은 즉흥적으로 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집을 떠나기 전 주변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묵살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후에도 긴 고민 끝에 준비를 거쳐 집을 나오게 된다.

〈표 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실태조사

부모(또는 보호자)로부터의 학대 경험을 알린 경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알린 적 있음	가족, 친척 또는 이웃	친구 또는 선후배	학교	청소년기 관/시설	외부지원 기관	경찰	기타
38.7	61.3	14.5	27.2	18.1	15.0	10.9	16.9	0.7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학대나 폭력을 피해 급히 집에서 대피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받은 후 경찰이나 학대전담공무원 등이 청소년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시설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친족간 성

폭력 상황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¹⁵⁾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호 및 제3호,¹⁶⁾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¹⁷⁾). 그런데 이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다. 청소년만 피해자인 경우뿐 아니라, 보호자 중 1인이 공동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집을 떠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응급조치(제12조)나 임시조치(제19조), 피해아동보호명령(제47조)에서는 학대 행위자를 격리하도록 되어있지만 아동·청소년을 주거에서 분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아동복지법」 등에 따로 긴급 주거 등의 규정이 없어서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대해 권고한 탈시설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거주 시설은 임시적 공간이지 삶이 이루어지는 주거 공간으로 보기 힘들며, 적절한 주거로 보기에도 어렵다. 시설은 주거권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다.

2)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

「아동복지법」이 정의하는 보호대상아동¹⁸⁾과 가정 밖 청소년의 원인은 크게 다르

- 15)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16)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 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3.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5.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17) 제36조(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청소년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피해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조, 제8조, 제29조 및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8)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뜻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를 받는 경우와 가정 밖 청소년이 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립지원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복지심의원회나 사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조치를 한다. 보호조치는 1호와 2호를 먼저 검토한 후,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3호 이후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

「아동복지법」

- 제15조(보호조치)** ①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 · 행동 · 발달 장애, 성폭력 ·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보호대상아동이 배치되는 시설은 아래의 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고,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려 할 때 자립지원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연계된다.

「아동복지법」

-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 ·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 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11. 제10조의2에 따른 보장원
12.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로 구분되는데, 일시쉼터는 7일 이내, 단기쉼터는 3~9개월, 중장기쉼터는 3~4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쉼터: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2.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아동복지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제1항) ‘다수인 보호시설’에 해당하지만(「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청소년쉼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방문조사 시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거소지정권(민법 제914조)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가는 경우 가정폭

력 피해 사실 등이 없는 이상 약 72시간 내외로 보호자와 연락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은 법적 행위능력 제한으로 인해 계약이나 교육, 의료, 행정, 주거 등 일상생활의 전반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 단, 24시간 후에도 보호자 연락을 거부하는 청소년의 위기 정도를 진단하여 위기상황*으로 판단되면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위기상담 진행 및 필요조치 실시

- * 청소년이 학대를 호소하는 경우** 또는 지속적인 설득에도 보호자와의 연락을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로서, 위기상황 진단(위기 스크리닝 척도 활용(서식 20)) 결과 '가정 영역' 2점이상(위험군) 해당 시 한편, '위기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는 경우 상담자가 반드시 직접 작성해야 하며 또한 내담자에게 작성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

** 단, 학대 정황이 발견될 시 즉시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쉼터용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활용(서식 21))

- ▶ 청소년과 신뢰관계(라포)를 형성하고 보호자 연락 거부 이유 등에 대한 심층 상담 ※ 입소동의서, 초기면접 기록지 등에 청소년의 위기상황, '보호자 연락' 유예 경위 등을 상세히 기록
- ▶ 72시간 내외로 보호자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 ▶ 위기상황 정도, 쉼터 퇴소 시 발생가능한 위험 등을 고려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 연계 등 적절한 지원 방안 강구

[그림 2-1] 2023 청소년분야 사업안내, 259쪽

기초생활보장 수급의 경우 원가정과의 단절을 증명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수급을 받기 어렵다. 특히 주거급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원칙적으로 따로 받을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리 지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비행이나 가출 등의 낙인이 찍히기도 한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가출하는 경우를 우범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가출을 문제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불량'하다고 하는 낙인이나 편견을 조장한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청소년들은 「소년법」의 우범규정으로 인해 시설에서 강제퇴거를 경험한다. 사회복지시설장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의 통고¹⁹⁾를 통해 우범소년을 시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이후 청소년의 복귀를 거부하여 청소년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도 한다. 2022. 8. 광주에서 목숨을 잃은 자립준비청년도 시설에서 통고된 후 18세 이전에 자립을 했던 청소년이었다(시사인, 2022. 9. 29). 2017년 전체 통고 342건 중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통고가 101건으로 29.53%를 차지했다(김시아, 2021).

3) 탈가정 이후의 삶과 재건의 불가능성

인권은 인간의 취약성에서 시작한다. 인간이 취약하지만 존엄하지 않다면 규범적 이상으로서 인권을 정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존엄하지만 취약하지 않다면 인권을 규범으로 정하지 않아도 존엄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인권을 규범으로 보장하는 배경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 인간은 언젠가 죽으며 외부의 위협에 취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Anna Greal, 2010). 그런데 청소년이 주거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자체로 둘 이상한 취약한 사유(연령, 주거위기 및 기타 소수자성)가 발생하여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가)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적절하지 않으면 우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수입 때문에 거처를 자주 옮기게 된다. 한 달 수입의 25%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사람이 80.6%이고, 50%를 넘는 사람도 29.6%에 이른다. 이런 경제적 부담은 결국 식생활,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다른 중요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현옥 2010). 가정 밖 청소년이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려고 하더라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소지가 필요하고, 원가정에서 부양하지 않는 사유도 증빙해야 하는 등 장벽이 많아 기초생계급여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 나) 노숙인 또는 홈리스 중에는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일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경력과 기술을 쌓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김현옥 2010). 안정적인 정착지가 없으

19)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므로 규칙적으로 통근하기도 쉽지 않다.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람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데, 친권자나 후견인과 관계가 단절된 탈가정 청소년은 이를 갖출 수 없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예를 들어 쪼개기 계약이나 4대 보험 없이 일하는 경우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 다)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얻거나, 주거지를 위해 기존 지역을 멀리 벗어나는 경우 교육을 이어가지 못하고 탈학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시설에 머무는 동안 시설에서 허용하는 학원만 다닐 수 있고,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만 참여해야 하므로 진로 선택의 폭과 교육의 기회도 좁아진다.
 - 라) 레일라니 파르하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적정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주거권’ 보고서에서 주거와 생명은 구분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거리에서 사는 아동은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고, 위생 시설에 가지 못 하며 제대로 된 잠자리를 누리지 못한다. 또한 성 착취에도 노출되어 성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도 겪는다(A/71/310).
 - 마) 여성 및 아동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원가정의 집은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고, 몇몇 경우에는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집에서 벗어나더라도 홈리스로서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결과적으로는 거리에서 더 심한 폭력에 시달릴 수 있다. 안전과 주거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A/71/310).
 - 바) 주거는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권리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 형제애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헌법」은 서문에 인도와 동포애를 언급한다. 이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서로 협동을 통해 더 큰 자유 속에서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조효제, 2011). 그러나 주거가 자주 변동되거나 시설에 입소하여 외부와의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어렵다.
- 주거가 안정되지 않으면 교육이나 노동도 안정되기 어렵고, 경제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삶이 황폐해진다.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기에 타인에게 주거와 생활을 의지하게 된다. 이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소위 헬퍼20에게 착취당하는 관계를 맺거나 성범죄, 폭행, 사



기, 감금 등의 폭력 피해를 입는 상황도 발생한다. 헬퍼가 아니라도 주거비 부담 때문에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정서적인 고립감이나 우울로 자살 및 자해 위기를 겪기도 한다. 이처럼 주거 불안정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다.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

1)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

「대한민국 헌법」에서 청소년을 주어로 하는 기본권 목록을 찾기는 쉽지 않다. 대신 자녀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제31조 제2항),²¹⁾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제32조 제5항),²²⁾ 국가가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제34조 제4항)²³⁾가 「대한민국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이 청소년의 권리라고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권리는 언제나 당연히 청소년의 권리다. 「주거기본법」의 주거권 규정(제2조)의 주어는 국민이지만, 이 역시 청소년이 포함된다고 봄이 마땅하다.

국제적인 인권규범을 살펴보더라도 청소년은 주거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삶과 상황을 고려하여 더욱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인간 정주를 위한 벤쿠버 선언」(Habitat I)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이 정치, 경제 사회 활동, 특히 인간 정주 제안의 계획과 이행 및 모든 관련 활동에 완전하게 통합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인간 정주를 위한 이스탄불 선언」(Habitat II)은 안전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아동 및 청년의 특별한 소요를 인정하며 모든 사람을 위한 적정한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의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에 대한 키토 선언」(Habitat III)은 “참여적이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며 모든 거주자 간 소속감과 주인의식을 불러

20) 연합뉴스TV 2023. 6. 9.자 “도와줄게” 기출 청소년 노리는 ‘검은 헬퍼’

2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22)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23)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일으킨다.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환경적이며 가족 친화적인 양질의 공적 공간에 우선순위를 둔다. 적절한 사회 및 세대 간 상호작용, 문화적 표현 및 정치 참여를 증진하며 모든 주거자의 요구가 충족되는 평화롭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사회적 유대, 포용 및 안전을 강화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의 특별한 요구를 인식한다.”라고 명시했다.

유엔 해비타트는 2015년에 “아동의 경우 적절한 주거의 부재가 건강과 안전을 포함한 성장과 발달, 전체적인 인권 향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거 빈곤으로 고통받는 아동은 특별한 집단으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유엔 해비타트, 2015).

이상과 같이 벤쿠버 선언 아래로 유엔 해비타트는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일 뿐 아니라, 주거권에 관하여 특별히 고려할 주체로 보고 있다.

청소년은 주거권의 주체로서 주거권의 모든 내용을 있는 그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제4호가 밝힌 적정한 주거의 내용인 ① 점유의 법적 안정성, ②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 ③ 주거비용 적정성, ④ 물리적 거주적합성, ⑤ 사회적 접근성, ⑥ 주거입지의 적절성, ⑦ 문화적 적절성은 청소년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와 주거 위기에서 구제받는 절차에 대한 권리나,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역시 주거권을 구성하는 내용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공간으로서 주택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공간에서 삶을 지속하고 존엄과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시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적 권리가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생명, 안전, 존엄, 정체성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므로 주거권을 긴급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2) 비차별

인권은 차별 없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²⁴⁾ 자유권

24)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규약 제2조 제1항,²⁵⁾ 사회권 규약 제2조 제2항²⁶⁾은 모두 비차별이나 차별금지를 인권의 중요한 원리로 밝히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 없이 아동권리협약 상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제2조 제1항). 인권은 생득적이므로 인간인 것 외의 다른 조건을 두어 권리 실현의 차등을 두지 않는다. 인권의 생득적인 특성은 필연적으로 비차별 원칙과 연계된다. 한편 인간이 규범으로서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된 공감과 연민, 자신과 동등한 타인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회적 연대가 있기 때문이다(김연미, 2015). 동일성과 동등함에 대한 인식이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인류적 진보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비차별 원칙은 인권 보장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도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비청소년이 만든 제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위기를 마주하는 경우는 보호대상아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의해 분리되면 학대피해아동쉼터(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만일 경찰 신고 없이 탈가정을 하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으로서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거나 거리에서 주거 위기와 마주하게 되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보호체계 내 보호대상아동은 부모의 학대(40%), 부모의 이혼(29%)과 미혼부모 및 혼외자(29%) 등을 원인으로 보호조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족해체 및 가족갈등이 46%로 입소 사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보호대상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문제로 인해 보호체계에서 대리 양육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퇴소나 보호종료 후 부모나 원가족으로부터 자립을 위한 지원이나 지

- 25)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밖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밖의 신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로 약속한다.
- 26) 제2조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지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동일하다(이상정, 2020). 신고를 통해 분리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탈가정을 한 것인지가 유일한 차이점인데, 아동보호 체계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은 자립정착금 여부, 자립수당의 기간, 공공임대 신청자격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뿐만이 아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도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 배치할 수 있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장애인 등록을 한 후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시키면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애초에 아동학대가 아닌 장애인학대로 신고하면 처음부터 학대피해장애인아동 쉼터에서 임시보호를 받게 된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2 제2항).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은 18세~24세에 달하는 경우를 보호종료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애초에 자립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

만일 학대와 함께 친족간 성폭력이 있었다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고, 불안정한 주거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성매매 피해가 발생했다면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경찰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우범소년으로 송치하거나,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아동을 통고하게 되면 소년보호재판을 거쳐 소위 '6호 시설'이나 소년원에 갈 가능성도 있고, 이후에 갈 곳이 없다면 법무부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배치된다.

상황에 따라 시설과 대상자의 명칭만 달라질 뿐,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법」의 보호대상아동처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제3조 제4호)에 해당한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주거를 포함한 자립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 외의 다른 시설 거주 청소년에게는 별다른 지원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3) 탈시설화

상술한 많은 시설들은 시설마다 대상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을 구분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존재는 정작 다르지 않다. 수요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기보다 어느 전달체계에 편입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체계



안에서 서비스를 받게 하는 방식은 수요자인 당사자의 인생을 체계에 끼워 맞출 우려가 있다. 만일 이용자가 된 당사자가 전달체계에 맞지 않거나, 부적응하면 「소년법」상 통고처럼 배제되거나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처럼 시설 중심으로 설계된 전달체계가 갖는 한계는 뚜렷하다.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을 비롯해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과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탈시설을 중요한 인권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시설은 아동·청소년 보호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설은 장소로서 주거라고 보기 어렵다.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적정한 공간이 되기 어렵고, 규정 준수나 프로그램 참여가 거주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도 한다.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곳이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지도 않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내부 규정, 위치, 낙인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니는 경우 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와 연결될 권리로서 주거권을 실현하기 어렵다. 애초에 시민 중 누군가 시설에서 살아도 되고, 누군가는 시설 밖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면, 시설은 이미 시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또한 시설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거라고 부르기 어렵다. 청소년 각 개인의 서사나 맥락은 배제되고, 시설의 지원 대상으로만 존재함으로써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러한 비(非)장소성 때문에 시설 보호를 주거권의 실현으로 볼 수 없다.

다수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환경적 제약, 규정 준수에 대한 강제, 불안정성, 시설이 주는 차별적 낙인감, 시설의 비장소성 때문에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오게 된다.

4)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의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

민간단체들의 연대체인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2023년부터는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이라는 단체를 설립해 활동)은 2019년부터 청소년 활동가를 비롯해 거리

아웃리치 기관, 대안학교, 성폭력 상담소 등 청소년 지원 현장들과 인권활동가, 연구자, 법률가 등이 모여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삶의 위기를 주거권에서 찾고, 청소년들에게 원가정과 거리 외의 주거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는 2020년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을 발표했다. 이 9가지의 원칙은 ① 보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 ② 주체성과 자기결정권, ③ 차별과 혐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주거, ④ 조건 없는 주거, ⑤ 다양한 주거, ⑥ 적절한 주거, ⑦ 권리로서의 보호, ⑧ 삶을 위한 지원이 함께 가는 주거, ⑨ 동등하고 존엄한 시민으로서 지역, 사회와 연결이다. 이상의 원칙들 역시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비차별, 탈시설화라는 같은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라. 청소년 주거권과 관련 인권

청소년도 당연히 주거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은 탈가정 전에도 심각한 주거 위기로 인해 생존이나 안전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주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학대나 폭력, 빈곤으로 인해 안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았던 원가정의 집에서 주거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집을 나서더라도 아동복지시설을 거치지 않으면 주거를 포함한 자립지원을 받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의 탈가정은 가출이라는 이름으로 「소년법」상 처분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청소년은 탈가정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안정적으로 노동이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또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으며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한다. 주거 위기는 청소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해야 하고, 청소년이 진입한 전달체계와 관계없이 그리고 차별 없이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인권 정책에 맞추어 탈시설화를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표 2-5〉 각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별 청소년의 주거권 실현

주거권의 의미와 내용별 청소년의 주거권 실현			
의미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		
보장 원칙	권리의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특히 생명과 안전에 직결		
권리의 내용	주거공간을 가질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주거정책-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공공임대 등 주거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유의 법적 안정성- 주거기반시설 및 제반 생활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주거비용 적정성- 물리적 거주 적합성- 사회적 접근성- 주거입지의 적절성- 문화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이 법적으로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권원이 필요함.- 비주택 비적정 주거에서 적절한 주거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무상 공공주택 확대와 부담기능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필요함
	구제받을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퇴거 제한- 장애, 연령 등을 고려한 주거공간 요구- 침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퇴거로부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에 접근 가능해야 함- 자기에게 맞는 주거로 변경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함.
	불안정 주거로부터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차별, 낙인으로부터의 자유- 주거 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의 보호 요청을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시설이 아닌 주거에서 생활함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 존중- 거소 결정권- 가족구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와, 어디에서 살지에 관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결정권으로 행사하여야 함
	공동체·지역 사회와 연결될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시설 자립생활- 포용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이외의 대안을 적극 제공해야 함-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함

모든 권리는 불가분하고 상호 연관성이 있다. 주거 위기는 인간의 삶 자체와 존엄을 총체적으로 흔든다.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거 위기가 존엄과 안전, 특히 생존 그 자체를 침해할 위험이 높다. 청소년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을 때 동반 침해되는 핵심적인 권리들은 아래와 같다.

〈표 2-6〉 청소년 주거권과 동반하는 핵심 권리들

청소년 주거 관련 인권	경제적 안정	생존을 위한 생계 보장이 어려움
	노동권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증대
	교육권	탈학교 및 교육 선택의 폭이 축소
	건강과 안전	비위생적인 환경, 불안정한 삶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별정체성, 지정성별로 인한 위험이나 차별, '가출' '자퇴·퇴학' 청소년이라는 낙인
	사회적으로 연결될 권리	관계의 단절 또는 지역사회 정착의 어려움

제2절 |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1. 주거 관련 법 검토

주거와 관련된 법률들은 「주거기본법」을 중심으로 「주택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등이 종합적인 법률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이하에서 살펴볼 주거 관련 법률이나 주거 정책에서는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다.²⁷⁾ 청소년은 주거권의 주체이지만 실체법적인 권리 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주거 관련 법에는 청소년이 보이지 않는다.

가. 「주거기본법」

1990년대 후반부터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어 왔다 (서종균 1998, 이은기, 2016, 하성규, 1999). 2014년 말 국회에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5년 「주거기본법」이 통과되어 전체 주거 관련 법령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7) 소년소녀가정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18세에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긴 하지만, 예외적인 허용으로 보이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주거 관련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급여도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따로 살아도 독립가구로 보지 않고, 예외적으로 원가정이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분리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정하면서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기 하였으나 청소년을 배제하지는 않았다(제2조). 다만, 주거 우선지원이 필요한 ‘주거지원필요 계층’에 청년과 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제3조 제2호). 주거 약자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만 예시하고 있으며(제3조 제7호, 제16조 제1항) 별도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비주택 거주자, 학생 등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이 명시되어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제20조 제2항).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제16조(주거약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기존의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에 따른 노숙인 등 지원 정책은 주거, 일자리 지원 등 자활 프로그램과 예방 및 지원 정책이 미비하여 노숙인이 시설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노숙인과 부랑인의 정의와

행정체계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통합하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숙인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생활하는 사람, 적절하지 않은 주거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제2조 제1호). 그런데 이 법률의 시행규칙은 노숙인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18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다(제2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다.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에는 주거약자를 위한 실태조사(제7조), 주거약자용 최저주거기준(제8조)과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제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주거에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제정된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제17조)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주택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삶을 지속하는 권리로서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거 기반 서비스가 필요하다. 주거지원센터는 주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주거약자를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와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주거약자로 정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약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주거약자의 범위)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라.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관련 법

1) 「주거급여법」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주거급여법」 제1조).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대해 통합급여 체계로 지원되었으나,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개편으로 생계, 교육, 의료, 주거 각 개별 급여로 독립하였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가구원 수, 거주 형태, 부담 수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임차

급여와 자가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2018. 10. 1. 부터 부양의무자 요건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장 단위를 개별가구로 보고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 및 제4조 제3항). 30세 미만 19세 이상 미혼자녀는 보장 가구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원가정도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주거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이 외에는 보장 가구의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이 양육자와 세대 분리를 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주거급여법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급여의 기준 등) ③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 등재(登載)된 사람(동거인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나.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4.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2)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은 입주자의 자격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입주자 자격을 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민법의 성년자인 만19세를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예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자만 성년자로 의제하고 있다(제2조 제2호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 ①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실무에서 지침으로 작용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로 자립준비청년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또는 퇴소한지 5년 미

만인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 다만 2년 이상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p>제7조의3(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자인 청년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혼인 중인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1호에 2인 이상 거주(이하 이 조에서 "공동거주"라 한다)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전세임대 주택의 일부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나.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를 포함하며, 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자립준비청년"이라 한다)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제2조제7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이라 한다) 제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p>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제1항 후단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거주를 신청하는 때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가 앞서는 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p> <p>④ 공공주택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 등에도 불구하고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범위에서 자립준비청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p>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p>제10조(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개량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나.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제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제3순위는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행복

주택(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2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2의2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 1호에 2인 이상 거주(이하 이 조에서 "공동거주"라 한다)를 희망하는 청년에게 매입임대주택의 일부를 따로 공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거주 신청자 중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가 앞서는 사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2. 「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마. 2022년 주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5조 제1항). 주거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야 하고(제2항), 10년 단위 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해야 한다(제3항).

10년 단위의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은 2013년 12월에 수립되어 2022년까지 진행되고 있다.²⁸⁾ 그러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안에 청소년이나 아동에 관한 주거 계획은 따로 없다. 가장 최근의 연도별 계획인 2022년 주거종합계획에도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주거정책이 따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2.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서의 주거 관련 내용 검토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사업 안내를 펴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에 관해 종합적인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²⁹⁾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법은 가정 밖 청소년을 주

28)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발표 일정을 고려하면 제3차 장기주택종합계획도 2023년 12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29) 「아동복지법」 제38조는 18세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자립지원을 하도록 개정되었

로 시설에서 보호하고, 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하는 요건을 갖추어 퇴소할 때 비로소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에는 보호종료를 전제로 하지 않는 주거 지원 규정이 없다.

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아동복지법」에 주거 지원이 등장하는 부분은 제38조의 자립지원 부분이다. 기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게 되면 이후의 자립을 위하여 주거 지원을 하고 있었다. 2023. 8. 8. 제38조 제2항을 개정하여 18세 이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관련 지침을 준비 중이다. 지침의 내용에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를 받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동복지법」

-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23. 8. 8. 개정, 2024. 2. 9. 시행)

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은 복지시설 퇴소후 주거 등 지원을 하도록 신설·개정되었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만 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가정 밖 청소년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2023. 10. 24. 개정되어 제32조의3에 주거를 포함한 자립지원 규정이 추가되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2조의3(자립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 10. 24. 개정, 2024. 4. 25. 시행)

청소년에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주거 등의 지원을 하도록 개정된 점에서 이전보다 한 걸음 나아가긴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위 규정은 ‘자립에 필요한 주거’라고 한정하고 있지만 주거는 자립에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모두에게 권리로서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처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라는 조건을 걸고 차등적·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주거를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므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강제하는 요인이 되는 한편,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배제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 아동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관련 사업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될 예정이거나 보호종료한 사람과 아동복지시설 중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할 예정이거나 퇴소한 사람이다. 다른 시설(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법무부 자립생활관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통로는 닫혀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동이 기관에서 추천을 받으면 미성년자여도 자립준비청년으로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다.

〈표 2-7〉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LH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 청년주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종료 예정자 및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대상자의 경우 미성년자여도 신청·계약 가능 - 개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모집 기준에 따라 당첨자 선정 <p>※ 건설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추천은 입주 기준 1회 지원</p>
청년 전세임대 주택	<p>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p>※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자립준비청년에 한하여 신청 가능</p>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임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청년 매입임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p>※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우선입주자로 선정: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p>
희망디딤 돌센터	이용대상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시설(자립 생활관)	<p>이용대상 : 만 18세 ~ 24세 이하</p> <p>운영목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자립준비청년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인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상담지원, 자립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입소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자립준비청년) 중 취업중인 사람(우선) - 자립준비청년(자립준비청년)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해당사유 이용 자확대 독려) - 자립준비청년으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여성가족부가 발간하는 2023년도 청소년사업 안내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사업 중 주거 지원 대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

〈표 2-8〉 쉼터퇴소 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

LH공공 임대주택	<p>○ 지원 대상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청소년으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무주택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전세임대) 18세 이상 미혼인 자 * 24세 퇴소 시 29세까지 신청 가능- (건설임대) 나이 및 결혼 여부 관계 없이 신청 가능
--------------	--

청소년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3)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세 종류의 주거 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아동분야 사업안내는 자립준비청년 외에도 소년소녀가정처럼 전형을 다양화하거나, 희망디딤돌센터, 자립생활관처럼 주택 유형이나 주거 기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처럼 보호대상아동과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게 된 경위가 매우 유사한데 도 자립지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3)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사업을 하며, 임대주택 10호당 1명의 자립상담원을 배치하고 있다(93쪽). 이 주거 지원 사업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도 대상이 되며 입주 우선순위에 속한다. 주거 지원은 아니지만,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중 일반, 장애인,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1년 이상 보호를 받고 퇴소하는 경우에는 5,000,000원의 퇴소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170쪽). 진학이나 취업으로 인해 조기에 퇴소하는 18세 이상인 자도 지급 가능하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보호 후 퇴소하는 경우에도 5,000,000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동반 가족에게 지급한다(341쪽).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p>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4.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직업훈련 등 자립 · 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5. 법률구조 및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공
6.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7. 가정폭력의 예방 ·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평가
8.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9. 가정폭력 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 · 지원체계 구축
10.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신체적 ·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 치료프로그램 제공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 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 · 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 · 시행 및 평가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여성가족부, 2023)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공동생활형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1호당 2가구 또는 주택규모나 가족구성원에 따라 2호당 1가구가 생활할 수 있다(325쪽). 자립과 관련하여는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 1인당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학습지원 연 15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177쪽).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 패키지를 운영하여 상담 및 심리 · 정서 지원, 출산 및 양육 지원, 멘토링, 친자검사비, 교육 ·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운영, 공공주택 지원을 포함한 정부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한다(341쪽).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 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원장으로 하여금 사회정착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당해 업무를 소년보호협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의2 제1항, 제3항).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 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1998년 12월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생활태도가 모범적인 무의탁 출원생, 자립생활관 퇴소생 중 주거가 불안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교회 및 네이버 해피빈 등 민간후원금을 활용하고 있다(이승현 외, 202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45조의2(사회정착지원)** ①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등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장학·원호·취업 알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정착지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정착지원”이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51조에 따른 소년보호협회 및 제51조의2에 따른 소년보호위원회에게 사회정착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회정착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제51조(소년보호협회)** ① 보호소년등을 선도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감독하에 소년 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되는 소년보호협회를 둘 수 있다.

「사회정착기금 운영규정」

- 제8조(기금의 사용)** ② 이사장은 소년원 재·출원생, 자립생활관 입·퇴거생, 사회정착지원센터 입학 및 졸업생을 위해 다음각 호의 목적으로 기부된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재·출원생 등에게 장학금(등록금, 학업장려금, 학원비, 기초생활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지원
2. 출원생 등의 취업지원 및 주거지원금 지원
3. 사회정착에 성공한 취업생에 대한 취업성공지원금 지원
4. 출원생 등의 창업지원금 지원 등
5. 긴급 생계비, 긴급 의료비 등 긴급한 경우에 대한 우선 지원 등

3. 계류 중인 청소년 주거권 관련 입법안

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20대, 제21대 국회에 윤후덕 의원이 거듭하여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자기책임 및 사회적 연대의식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제안되었다(안 제1조).

이 법안의 주목할만한 특징은 자립지원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의하는 것(안 제2조 제1호), 개인지원자를 배정하고 개인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안 제2조 제4호, 제5호, 제16조, 제20조), 만 15세부터 24세까지 자립지원 연령을 확대한 것(안 제2조 제3호, 제19조) 등이 있다. 특히 민법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지만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급여의 처분, 이의에 관해서는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며, 개인지원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3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자기책임 및 사회적 연대의식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2.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일정기간 위탁되는 가정을 말한다.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별지원”이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개인별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그에게 개인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지원자가 전담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별지원자”란 개인별지원 대상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하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을 개인별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하여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6조(개별지원자의 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개별지원자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한다.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개별지원자는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 급부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개인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17세 이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2.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14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으로서 가정복귀가 되지 않았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돌봄이 취약하여 성인기로 전이하는 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개인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

제20조(개별지원계획 수립 등) 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개별지원자를 배정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에 따라 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개인별지원의 내용 · 범위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신청인,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를 면담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을 면담할 수 있다.
② 개별지원자가 수립할 개인별지원계획에는 경제적 지원(부양청구권 행사의 지원을 포함한다), 교육적 지원,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개인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이 거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행위능력) ① 「민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신청 · 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은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개별지원자는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신청 · 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이 그 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정해진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 · 청소년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임시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2023. 7. 10. 21대 국회에서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윤후덕의원의 법안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공기업 · 공공기관 의무고용이나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등 고용과 관련된 지원이 강화되었고, 청소년복지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노숙인복지시설까지 보호시설로 포괄하여 자립지원 대상으로 정하였다. 다만 행위능력에 대한 특례를 두지는 않았다.

나. 지원주택법안

지원주택은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을 말한다. 서울특별시는 2016년부터 주거가 불안정하고, 정신적 · 육체적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지원주택 사업을 시범 추진해 왔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 시행하고 있

다. 이로써 장애인, 정신장애인, 흄리스, 노인 등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인 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고, 탈시설화 및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에 기여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지원주택조례는 아직 서울과 경기도에만 마련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어, 지원주택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장혜영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지원주택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심의하였다.

〈표 2-9〉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원주택 관련 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비고
2111977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국토교통부	2021. 8. 10.	
2109605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1. 4. 20.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9608호)과 함께 제출
2109608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부	2021. 4. 20.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9605호)과 함께 제출
2124719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국토교통부	2023. 9. 26.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청소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주거를 중심으로 주거유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 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비적정 주거 거주자를 포함하는 지원 대상의 확대, 시설보호 대신 주거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 전략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이다. 아동·청소년 또한 여성,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등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주거기본법」 제2조).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흠리스 청소년 관련 법령과 공공 지원

가. 미국

홈리스 청소년(Homeless youth)의 개념과 지원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미국의 법령을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연방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청소년의 탈가정과 홈리스 이슈에 개입하려는 목적에서 1974년 「탈가정 및 홈리스 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³⁰⁾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같은 부처 내 가족·청소년 복지국이 실시하는 탈가정 및 홈리스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고 있다. 거리 아웃리치(Street Outreach Program, SOP), 기본 서비스 지원(Basic Center Program, BCP), 그리고 후술할 관리 수반 아파트(Supervised Apartment Living)를 포함하는 전환 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이 그 예이다.

한편 미국 교육부가 1987년 제정하여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맥키니-벤토 홈리스 지원법」(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³¹⁾은 홈리스 청소년을 특정 연령대를 벗어나 보다 광범위하게 ‘고

30) <https://www.acf.hhs.gov/fysb/law-regulation/runaway-and-homeless-youth-program-authorizing-legislation>, 2023년 9월 19일 확인.

31) <http://uscode.house.gov/view.xhtml?path=/prelim@title42/chapter119/subchapter6/partB&edition=prelim>, 2023년 9월 19일 확인.

정적, 정기적이며 적절한 야간 거주지가 없는 개인'으로 정의한다(권영실 외, 2020: 351). 미국의 경우 주(州)별 법령에서 정의하는 홈리스 청소년의 개념과 지원 범위는 다소 상이하지만, 이처럼 '홈리스'를 쉼터나 기한이 정해진 거주지를 포함하여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미국 보건복지부 〈탈가정 및 홈리스 청소년법〉
〈Runaway and Homeless Youth Program Authorizing Legislation〉
 Publication Date: May 31, 2018 Current as of: May 31, 2018

(3) 홈리스 청소년(Homeless youth)

'홈리스'는 청소년 개인을 일컬으며 다음과 같은 대상을 의미한다.

(A)

- (i) 21세 이하, 또는 위에서 규정된 센터에서 쉼터를 찾는 청소년의 경우 18세 미만, 또는 센터가 위치한 주에서 요구하는 아동 · 청소년 지원 시설에 대한 면허 요건, 지역 법률과 규정의 최대 연령 미만인 경우
- (ii) 파트 B의 목적상 16세 이상 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22세 미만 또는

(II) 22세 이전에 거주를 시작한 경우

(B) 친척과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C) 다른 안전한 생활 방식이 부재한 경우

(4) 탈가정 청소년(Runaway youth)

탈가정(runaway)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허락 없이 집 또는 법적 거주지를 떠난 18세 미만의 청소년 개인의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 교육부 〈맥킨니-벤토 홈리스 지원법〉
〈McKinney-Vento Homeless Assistance Act〉

아래와 같은 상황 중 하나에 놓인 아동 · 청소년

- 주거 상실,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타인과 주거를 공유하는 경우
- 적절한 대안 주거 공간이 부재하여 모텔, 호텔, 트레일러 공원 또는 캠핑장에서 생활하는 경우
- 긴급 쉼터 또는 전환 주거에 거주하거나, 병원에 유기된 경우
- 인간의 수면을 위한 일반적인 숙소로 설계되지 않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공 또는 민간의 야간 거주지에서 지내는 경우
- 또는 자동차, 공원, 공공장소, 버려진 건물, 표준 이하의 주택, 버스나 기차역,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경우

또한 미국의 경우 구금시설, 정신건강 관리 시설 등에서 퇴소했거나 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홈리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Homeless in Europe, 2016: 28). 청소년이 홈리스가 되는 주요한 요인이 가정폭력, 빈곤, 복지 제도에서의 배제라면, 이에 대해 학교 및 아동 복지 체계 내에서 가족 이슈 개입, 적절한 비용의 주거, 교육·직업 훈련, 지지적인 성인들과의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Homeless in Europe, 2016: 28-29)

홈리스 위기에 처해 있거나, 홈리스 상태인 청소년에 대한 주거 지원은 전술한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1) 긴급 주거

긴급 주거는 긴급하게 잘 곳이 필요한 홈리스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일시쉼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일시청소년쉼터와 유사한 형태로서 24시간, 또는 1일에서 7일 까지의 주거를 제공한다. 샤워 및 세탁, 식사,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는 드롭인센터(Drop-in Center)와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2) 전환 주거(Transitional Housing)/전환 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Grant Program: TLP)

전환 주거는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16세~22세의 홈리스 청소년에게 안전한 거주 공간과 함께 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그룹홈(group home), 위탁가정(host family home), 모자보호시설(Maternity group home),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공동 숙소 또는 관리 수반 아파트(Supervised Apartment Living, SAL)가 있다(권영실 외, 2020: 353). 이중 관리 수반 아파트는 관리자의 정기 방문, 사례관리를 통해 거주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의 ‘지원 주택’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권영실 외, 2020: 353).

이는 홈리스 청소년에게 시설이 아닌 곳에서 독립적인 주거를 보장하되, 사회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차별금지규정 중 제12957조 주거차별 (e)항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주택”을 “홈리스 청소년이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고, 자립 적이고 자급자족적인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긴급 주거, 전환 주거(Transitional Housing) 또는 영구 주거”로 정의한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19: 63-66).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관리 수반 아파트는 사회복지기관 또는 지역사회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지와 함께 자립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생활 기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기관 종사자와 같은 관리자는 생활인의 거주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지만 자립 정도와 기간에 따라 주 1회, 월 1회로 점차 방문 횟수를 줄여나가게 된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해당 거주지에서 그대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다(권영실 외, 2020: 353).

3) 영구 지원 주택

영구 지원 주택은 흠티스 청소년이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정적, 지속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과 함께 저렴한 거주지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환 주거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거나, 당사자가 별도의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게끔 지원한 다음 임차권 보장과 강제퇴거 예방을 위해 주거비 보조,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나. 캐나다

캐나다 정부는 1999년 ‘전국 흠티스 이니셔티브(Canadian National Homelessness Initiative)’를 시행하여 국가 차원의 연구조사와 함께 커뮤니티 기반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2006년에는 이를 ‘흡리스 파트너 전략(Homelessness Partnering Strategy, HPS)’으로 재명명하여 흠티스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주별 「아동 및 가족 서비스법」(Child and Family Services Act)에 따라 긴급 쉼터, 전환 주거와 함께 직업 훈련, 정신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흠티스 청소년이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많은 주에서는 「교육법」(Education Laws)에 의거하여 청소년들이 흠티스 상태에서도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2006년 인적 자원 및 사회 발전부(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단순히 거주지만이 아니라 생계와 사회보장, 소비와 정치적



선택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에 기반해 흄리스를 정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흄리스는 단일한 상태(a singular state)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흄리스는 물리적인 공간의 부재,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 및 접근성이 결여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Ruba, S., Kraus, D., Eberle, M., 2006). 따라서 흄리스 예방 및 지원 정책은 안정적인 거주지와 함께 심리·정서적 돌봄,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 교육과 직업 훈련의 기회 제공 등 전인적(holistic)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Watson, J., Crawley, J., Kane, D., 2016).

다. 영국

영국은 1977년 「주거법」[Housing (Homeless Persons) Act], 1996년 「주거법」(Housing Act)을 통해 흄리스 문제에 대한 예방과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고, 2002년 「ホーム리스법」(Homelessness Act)에서 16세 또는 17세, 그리고 이전에 보호를 받은 적이 있는 18세부터 20세의 흄리스 청소년까지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2017년 「홈리스 감소법」(Homeless Reduction Act, HRA)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거주지를 우선 배정하고 있다(김희진 외, 2018: 103).

- 가.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상 지방 정부의 보호를 받는 16세~17세의 무연고 청소년
- 나. 둘째, 16세~18세 사이에 시설 보호를 받았으나 지금은 보호가 종료된 21세 이하 청소년
- 다. 16세~18세 사이에 시설 보호를 받았으나 지금은 보호가 종료되어 취약한 상황에 놓인 21세 이상의 성인
- 라. 폭력 피해 또는 특별한 이유로 주거 취약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

ーム리스 대상 주거 지원을 위해 제정된 이 법은 그중에서도 16세~17세 청소년을 특히 취약한 대상으로 특정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주거 정책의 주요 대상을 법적 성년으로 상정하는 한국의 사례와 비교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 제정한 「가정학대법」(Domestic Abuse Act)에서는 가정폭력 피해로 흄리스 상황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임대주택의 공급, 집주인과 임차인과의 관계 중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거주지 또한 공공, 민간, 전통적인 의미의 시설, 독립된 공간 등 다양한 형태 중 유연한 선택이 가능하다(Uniting Care Children, Young People and Families, 2014).

영국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집을 떠날 수 없는데,³²⁾ 이는 한국 「민법」의 거소지정권과 유사하다. 부모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아동이 따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아동이 귀가하도록 명령을 받아낼 수 있지만, 16세가 넘으면 부모가 청소년의 귀가를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대체로 인용하지 않는다(Laura Abreu, 2015). 스코틀랜드에서는 16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집을 떠날 수 있다.³³⁾

영국의 일반적인 주거 복지는 대부분 주거급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예로 취약 계층 청년(35세 미만)을 대상으로 낮은 수준의 주거급여가 제공된다. 다만 보호종료 청소년(14세 이후 최소 13주 동안 보호를 받은 16세~17세의 청소년)의 자립지원 제도는 2017년 「아동·사회사업법」(Children and Social Work Act 2017)에 의거하여 주거급여 외에도 복합적인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이러한 지원의 운영 체계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시행은 지방 정부에서, 모니터링은 교육기준청(Ofsted, Office for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s and Skills)이 맡고 있다.

최소 13주 이상 보호를 받은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지방 정부로부터 개별 사례관리사를 배정받고, 18세 퇴소 이후에도 25세까지 연 1회 의무적 지원을 받고, 필요시 별도의 지원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다. 18세 이상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또한 ‘가깝게 있기(Staying Close)’라는 기조에 따라 위탁 가정 인근에서 기존의 관계망을 유지하면서 지낼 수 있게 한다. 이는 자립 준비 청(소)년에게 성인기로의 갑작스러운 이행을 재촉하여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더 큰 위기를 경험하게 하기보다는, 기존의 커뮤니티에서 지원 제공자 등 인적 지원을 잃지 않으며 점진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가 있다.

32) Children Act 1989, S1(3).

33) Children (Scotland) Act 1995, S57–62.



중요한 것은 잉글랜드에서는 「홈리스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홈리스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일차적인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점이다[The Homelessness (England) order 2002].³⁴⁾ 2000년 「시설 퇴소 아동법」[The Children (Leaving Care) Act]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국 국가는 홈리스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지방 정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는 청소년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를 인식하고 50개 이상의 기업, 정부의 모든 부처 및 부서, 그 외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지원 약정(Care Leaver Covenant)을 맺고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홈리스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사각지대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민간 단체인 ‘센터포인트(Centrepoint)’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가정 청소년 중에서는 거주지 우선 배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가정폭력 피해를 증명하거나 ‘가족 해체’의 시기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Centrepoint, 2018). 이러한 상황에 처한 홈리스 청소년의 적절한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는 장점을 영국의 사례가 보여준다.

라. 유럽 홈리스 단체 연합의 ‘홈리스 및 주거 배제 상태’ 유형화

홈리스 청소년의 개념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유럽의 다른 사례는 ‘유럽 홈리스 단체 연합(European Federation of organisations working with the people who are homeless, FEANTSA)’이 고안한 ‘홈리스 및 주거 배제 상태에 대한 유형화(European Typology of Homelessness and Housing Exclusion, THOS)’이다. 이를 번역한 <표 2-6>에서는 ‘집(home)’이 독점적 소유를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영역, 프라이버시와 관계가 만들어지는 사회적 영역, 법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영역으로 구성된다는 이해하에 지붕 없음(Rooflessness), 무주택(Houselessness), 불안정 주거(Insecure Housing), 그리고 비적정 주거(Inadequate Housing)로 홈리스 상태를 구분하고 있다. <표 2-6>에서도 볼 수 있

34) The Homelessness (Priority Need for Accommodation) (England) order 2002, SI 2002/2051 S3(2).

듯이 흠리스(Homeless)는 무주택(Houseless) 상태를 하나의 범주로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인 것이다. 시설 거주자 역시 흠리스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표 2-10〉 유럽 흠리스 단체 연합 – 흠리스 및 주거 배제 상태 유형화

개념적 범주		조작적 범주		주거 상황	일반적 개념
	지붕 없음	1	떠돌아다니며 사는 사람들	1.1 공공장소 또는 야외	주거 공간으로 규정되는 쉼터 없이,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잠을 자는 경우
		2	긴급 거주 시설 거주자	1.2 야간 쉼터	가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주거 공간이 없는 상황
	무주택 상태	3	홈리스 시설 거주자	3.1 흠리스 호스텔	거주 기간이 단기간인 시설
		3.2		임시보호시설	
		3.3		장기 지원 주택	
	5	4	여성보호시설 거주자	4.1 여성보호시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 여성으로서 단기 체류가 예정된 상황
		5.1		임시/리셉션 센터 거주	
		5.2		이주노동자 거주시설	
	6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	6.1	교도시설	석방 이전에 가능한 주거가 없는 상황
			6.2	의료시설 (예: 약물재활시설, 정신병원 등)	주거가 없어 필요 이상으로 더 머물러야 하는 상황
			6.3	아동복지시설/그룹 홈	확인된 주거가 없는 상황(예: 18세 생일까지)
	7	(홈리스를 이유로) 장기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	7.1	노령 흠리스를 위한 주거 시설	홈리스 경험자(1년 이상)를 위한 장기 주거 시설
			7.2	홈리스 경험자를 위한 지원 주택	
	불안정 주거	8	불안정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8.1 가족/친구와 일시적 동거	전통적 주거에 거주하고 있지만 형식적이지 않거나, 주거가 없는 경우
				8.2 불법임차(전차)	법적 임차권이 없는 불법 점유



			8.3	토지 불법 점유	토지 점유가 합법적이지 않은 상황
9	퇴거 위험에 놓인 사람들	9.1	Legal orders enforced (rented) (임차)	퇴거 명령이 유효한 상황	
		9.2	압류 명령이 내려진 주거(임차)	모기지가 재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	
	폭력 피해가 동반된 거주	10.1	경찰 관할 주거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조치가 취해진 경우	
비적정 주거	임시/비전통적 구조에 거주하는 사람들	11.1	이동형 주거	항시적 주거로 만들어지지 않은 공간	
		11.2	비전통적 건물	임시대피소, 판잣집 또는 오두막집	
		11.3	임시적 구조	반영구적 오두막 또는 캐abin	
	부적정 주거 거주자	12.1	주거에 적절하지 않은 점유지	국가 거주 기준 또는 건설 규제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인구 과밀 주거에 사는 사람들	13.1	인구 과밀에 대한 국가 밀도 표준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함	바닥 공간 또는 가용한 공간에 대한 국가 밀도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마. 일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전쟁고아, 부랑아, ‘가출소년’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이 부상했다(황성하, 2012: 11-12). 2003년부터는 통합적 청소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소년육성 추진본부(青少年育成推進本部)’를 설치하여 각 부처 및 행정 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도모하였다(황성하, 2012: 18). 2009년에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고, 정책의 대상을 출생부터 사회적 자립 시점(40세)에 이르기까지 확대하였다(이광호, 2012: 332).

또한 일본의 청소년 정책에서는 위 법에 근거를 두고 전국 아동·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및 ‘아동·청소년 지원 지역 협의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를 중

심으로 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강영배, 2020: 83). 동법 제15조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 및 청소년 지원의 하나로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필요한 상담, 조정 또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강영배, 2020: 83). 예컨대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종합 상담센터’를 거점 기관으로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원인 유스어드바이저(Youth Advisor)가 양성, 운영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종합 상담센터와 경찰의 ‘소년서포트센터’가 연계하여 개입이 이루어진다. 청소년이 부적절한 양육 환경에 놓여있거나, 보호자가 없는 요지원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에 따른 조치와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긴급성이거나 요보호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요보호아동은 아동상담소, 일시보호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김혁, 2019: 155-156).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며, 「소년경찰활동규칙」에 의거하여 가두보도, 소년상담 또는 보호처분과 같은 사법적 개입의 대상이 된다. 경찰의 기관 연계시 아동상담소 등은 가정 밖 청소년의 비행을 이유로 해당 청소년의 인수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실무상 즉각 인수가 어려운 경우 경찰이 요보호아동을 위탁하여 일시보호할 수 있다(김혁, 2019: 174). 이처럼 일본 경찰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견과 보호기관의 인계에 이르기까지 공적 개입 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 자립지원의 경우 프리타, 청소년 미취업자(무업자)에 대한 취업 지원책과 노동복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주택확보 요(要)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주거 정책에서도 청소년은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강영배, 2011: 68).

종합해볼 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2019)가 한국의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며 “현 실상에서는 구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요보호아동’과 ‘위기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부처(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다른 법(「아동복지법」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 내용을 일본의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시할 수 있다. 일본이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책에도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비행과 선도의 관점을 벗어난 개입과 지원, 그리고 홈리스/주거 불안 청소년에 대한 중·장기적인 주거 지원의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강영배, 2011).

2. 홈리스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민간 사례

가.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for Youth, HF4Y)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는 2010년대 초반부터 캐나다 등에서 홈리스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효과적인 프레임으로 제시되어 왔다(Gaetz, Stephen, 2013; 2014). 이는 만성 홈리스나 정신 건강, 중독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는 주거권을 가지며, 적절한 주거가 회복과 삶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가치 위에서 어떠한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독립적,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한 다음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이다(Gaetz, 2013: 12). 2019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결의문>은 시설 보호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잠재적인 해를 미칠 수 있으며, 시설을 대신할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도 부합하는 ‘하우징퍼스트’는 정부 또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권리 기반 개입을 말하기도 하지만, 홈리스 이슈에 대응하는 하나의 철학이기도 하다.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퍼스트의 핵심 원칙(Core Principles of Housing First for Youth)³⁵⁾

- 1) 전제 조건 없는 즉각적인 주거 지원
- 2) 청소년의 선택과 자기결정권
- 3) 긍정적인 청소년 발달 지향
- 4) 지원 대상자가 이끌어가는 개별화된 지원
- 5) 사회 포용 및 지역사회 통합

35) Gaetz, Stephen, 2014: 10-13.

하우징퍼스트 프로그램을 설계 및 평가하는 과정 안에서 13세부터 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for Youth, HF4Y)’ 또한 구체화되었다(Gaetz, Stephen, 2014). 이는 청소년이 흠티스 상황에 처하는 원인과 조건은 성인의 상황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동시에, 청소년 흠티스 문제의 예방과 해결은 안전하고 적절하며 저렴한 주거와 함께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관점을 말한다. 예컨대 청소년 흠티스에 대한 개입은 이들이 성인 기로 이행하는 과정 안에서 단지 물리적 독립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지지 기반과 자원의 마련을 포함한다. 또한 청소년을 중심에 둔다는 것의 의미는 독립적인 주거 안에서 청소년이 느낄 수 있는 고립감 등에 대한 고려, 개별 발달 주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동반한다는 것이다(Gaetz, Stephen, 2014).

이러한 관점에서는 ‘고정적, 정기적이며 적절한 야간 주거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주거 불안정(precariously housed) 또는 흠티스 상태에 놓일 가능성(at risk)이 있는 사람들까지 확장된 흠티스 개념을 채택한다. 이하 캐나다 흠티스 연구소(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에서 정의하고 있는 흠티스의 개념은 커뮤니티, 정부, 연구자들에게 광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캐나다 흠티스 연구소〉
(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 1) 있을 곳이 없어 분명한 흠티스 상태에 있고,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사람의 주거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장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
- 2) 흠티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야간 쉼터를 비롯하여 긴급 쉼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 3) 임시적 주거 또는 주거권(tenure) 보장이 부족한 주거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
- 4) 현재 흠티스는 아니지만 경제적 위기, 주거 불안정, 공중 보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흠티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

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2012. Canadian Definition of Homelessness. pp.1.

하우징퍼스트를 체계화한 게이츠와 스티븐은 해당 관점을 적용한 효과적인 흠티스 청소년 프로그램의 사례로 캐나다 캘거리의 ‘인피니티 프로젝트(Infinity



Project)‘를 소개한다(Gaetz, Stephen, 2014). 단체 ‘보이스 앤 걸스 클럽 오브 캘거리(Boys and Girls Club of Calgary)’가 운영하는 이 프로젝트의 경우 16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대료 보조를 비롯한 주거 지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5% 이상의 주거 유지율과 소득 안정성 등의 효과를 보여주었다(Scott & Harrison, 2013; Gaetz, Stephen, 2014: 8에서 재인용).³⁶⁾

하우징퍼스트는 이외에도 이미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행해가고 있는 청소년 주거권 보장 모델이다. 예컨대 핀란드는 하우징퍼스트 모델의 도입을 통해 전세계에서 홈리스의 숫자가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는 국가이다(권영실 외, 2020: 357). 비엔나는 <2015년 비엔나 연합 협정(2015 Viennese coalition agreement)>을 통해 탈시설화 전략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시한 도시로서, 2016년 기준 약 200명의 홈리스를 대상으로 하우징퍼스트를 도입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Harner, R., Janker, S., 2016: 20)

나. 비시설 형태 주거 지원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요한 흐름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즉 시설의 소규모화를 넘어서 시설 외의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가 안정적인 거주지를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직업, 건강·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청소년 탈시설을 위해 다양한 국가들 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주거 지원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1) 영국

영국의 민간 기관 ‘센터포인트(Centrepointr)³⁷⁾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6세~25세의 홈리스 또는 홈리스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을 연계 받는다. 이들은 매주 매우 낮은 가격의 숙박비를 지불하여 단기 호스텔 또는 장기 거주지에서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머물 수 있다(권영실 외, 2020: 356).

36) FEANTSA, “Preventing and Ending Youth Homelessness in Scotland”, Homeless in Europe, (2016 Spring) pp.11.

37) <https://www.centrepointrstores.com/ae/en/>

스코틀랜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락 트러스트(Rock Trust)’는 사회적 자립의 성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독립된 주거를 보상하는 ‘계단 모델’을 탈피하여, 홈리스 청소년에게 우선 주거를 제공하고 교육과 고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하우징퍼스트 모델’을 실천하고 있다.

2) 아일랜드

1985년 설립된 아일랜드의 ‘포커스 아일랜드(Focus Ireland)’³⁸⁾는 위탁 보호와 주 정부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홈리스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현재는 아일랜드 내 6개 지역에서 홈리스이거나 홈리스 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는 18세~2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택 및 임차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드롭인센터와 긴급 쉼터 지원, 사회복지·취업·교육·보건 서비스 연계를,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청소년에게는 정착을 위한 장기 주거와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지방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와, 홈리스 재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훈련 및 취업 준비(PETE), 여타 서비스(extension service)를 제공한다.

3) 프랑스

프랑스의 가족수당센터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단기 임대지원(Allocation au logement temporaire, ALT)’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주지에 약 3개월 동안 머물며 직업 교육을 포함한 지원을 받는 형태를 말한다. 안정적인 거주지로의 이행을 위한 또 다른 주거 정책으로는 18세~26세 청소년을 위한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보금자리(Residences Jeunes Travailleurs, RJT)’, 16세~30세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지원 주택 ‘청소년 포아예(Les Foyers de jeunes travailleurs, FJT)’ 등이 있다. 이중 프랑스 ‘국영신탁예금(Caisse de Dépôt)’의 청소년 보금자리 마련 기금으로 운영되는 RJT는 파리와 근교 일드프랑스(Ile-de-France)에 7,000여 개의 아파트가 있다. 청소년 포아예는 다양한 정부 부처 및 민간 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해 16세~30세 탈가정 청소년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다(청소년주거권 네트워크, 2019: 75-76).

38) <https://www.focusireland.ie/>



4) 캐나다

캐나다의 ‘휴식 센터(Rest Centres)³⁹⁾는 펠(Peel) 지역에서 쉼터(Shelter), 생활(Living), 회복(Healing), 성장(Growing)이라는 네 단계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다. 이곳은 “청소년이 안정된 주거지를 가질 때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는 전제 하에, 안전하고 저렴하며 지속 가능한 주거 확보를 위해 긴급 쉼터, 집주인 교육 및 지원, 임대료 보조, 생필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복’ 단계에서는 특히 유색인종과 성소수자(LGBTQ+) 청소년이 삶에서 경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집단치료와 전문상담을 제공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사회적 고립과 홈리스 위기에 놓인 청소년을 위해 비상 핫라인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립을 위한 ‘성장’ 단계에서는 임차인 교육 및 지원, 금융 교육, 생애 기술 프로그램(Learning Initiative Fostering Employment, LIFE), 취업 지원과 멘토십을 제공한다.

다. 청소년 성소수자(LGBTQ+ Youth) 주거 지원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볼 중요한 시사점은 홈리스 청소년 이슈가 인종·민족 등 청소년의 소수자성, 공중보건의 접근성 문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비영리단체 ‘내셔널 네트워크 포 유스(National Network for Youth, NN4Y)⁴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홈리스 청소년이 마주한 의료 접근성의 한계, 성소수자(LGBTQIA), 유색인종 및 소수민족(BIPOC) 등 취약한 집단이 겪는 위기의 특수성 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LGBTQ 청소년은 성 정체성에 대한 가족의 거부와 폭력을 주된 이유로 홈리스 상황에 놓이며, 그 결과 북미 홈리스 청소년의 20%에서 많게는 40%(30만~60만 명)가 LGBTQ인 것으로 나타난다 (Choi, Wilson, Shelton & Gates, 2015; Durso & Gates, 2012). 홈리스 청소년 성소수자 중 46%는 성 정체성에 대한 가족의 거부 때문에 집에서 도망쳤으며, 43%는 부모에게 강제로 내쫓겼다고 보고했다(Choi, Wilson, Shelton & Gates,

39) <https://www.restcentres.org/>

40) <https://nn4youth.org/>

2015; Durso & Gates, 2012;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땅동, 2021: 34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들을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복지 체계는 대개 성소수자에 대해 무지하고, 오히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안전하지 않거나 거부당하는 장소 중 하나이다(Aboulafia, 2019; Bardwell, 2019; Deborah C. & M. T. Brown, 2017;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땅동, 2021: 35에서 재인용).

국내 가정 밖 청소년 중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율과 그 원인, 이들이 가정 밖 생활에서 겪는 위기와 취약성에 대해 공공기관이 주체로 조사한 바는 없다. 민간 단체인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땅동(2023년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땅동’)⁴¹⁾이 이러한 내용을 다룬 연구조사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 고민과 경험 기초조사」에 따르면, 탈가정을 고민하거나 경험한 청소년 성소수자 중 19.6%가 성정체성과 관련된 폭력 피해를 그 이유로 꼽았다(청소년 성소수자 위기 지원센터 땅동, 2021: 20). 그러나 탈가정 이후에도 청소년쉼터가 아닌 지인, 친구 집에서 주거를 해결한 경우가 54.8%, 온라인으로 알게 된 친구 집에서 머문 비율이 33.9%로 나타났다(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땅동, 2021: 21). 간략하게 소개 한 조사 결과만으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가정 내 피해 경험과 탈가정, 가정 밖 생활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야 할 사회적 필요를 파악할 수 있다.

영미권 국가 등에서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및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이러한 취약성을 인식하면서 연구 조사와 실천에 임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HUD)는 다양한 부처와 협업, 비영리단체 ‘트루컬러스펀드(True Colors Fund)’와 파트너십을 맺어 2014년 「LGBTQ 청소년 홈리스 예방을 위한 이니셔티브」(LGBTQ Youth Homelessness Prevention Initiative)를 발표했다(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땅동, 2021: 36).

일부 국가와 지역에는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별도의 주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에는 ‘알리 포니 센터(The Ali Forney Center, AFC)’⁴²⁾를 비롯해 LGBTQ 청소년을 위한 82개의 전환 주거가 마련되어 있다. 홈리스 LGBTQ 청소년들은 집과 유사한 형태의 주택에서 약 18개월에서 2년까지 머

41) <https://ddingdong.kr/>

42) <https://www.aliforneycenter.org/>

무르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로 옮길 수 있도록 사례관리 매니저의 지원을 받는다. 알리 포니 센터가 2018년 설립한 ‘베아 아서 레지던스(Bea Arthur Residence)’는 이 단체가 제시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버려진 아파트 3개를 개조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최대 18명의 LGBTQ 흄리스 청소년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의료, 주거, 고용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킨 스트리트 유스 서비스(Larkin Street Youth Services)’⁴³⁾ 단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그 중 지원 주택(Supportive Housing)은 사례관리를 동반하는 2년 이상의 장기 거주지로서,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 24시간 현장 직원이 있는 기숙사 유형에서부터 지역사회 내 독립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거 선택지가 있다(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봉동, 2021: 209).

한편 아시아에서도 취약한 거리 청소년들을 위한 민간의 주거 지원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은 성별정체성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정성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주거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의 ‘T 프로젝트(The T Project)’⁴⁴⁾는 흄리스를 경험하는 LGBTQ+, 특히 트랜스젠더 청소년들에게 6개월 까지 임시 주거를 제공한다.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봉동’⁴⁵⁾은 2023년 4월부터 ‘야간센터 숨숨’을 별도로 개소하여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야간 주거와 상담,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여전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수 자원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및 지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차원에서 가정 밖 청소년과 성소수자 이슈를 중요한 교차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영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단체 AKT가 2021년 발행한 「LGBTQ+ 청소년 흄리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중 59%는 흄리스 청소년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때 차별과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2021)의 조사 결과를 통

43) <https://larkinstreetyouth.org/>

44) <https://www.thetprojectsg.org/>

45) <https://www.ddingdong.kr/xe/19310>

해 볼 때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에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체계가 장벽이 아닌 사회적 지지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제4절 | 소결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국제규범 등을 토대로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청소년 주거권 관련 제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1절에서는 주거권의 의의와 청소년 주거권 개념을 살펴보았다. 주거권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 권리”로서 의미를 가지며, 주거공간을 가질 권리, 적정 주거에 대한 권리, 구제받을 권리, 불안정 주거로부터의 자유, 주거에 대한 자기 결정권,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될 권리를 포함한다. 더불어 청소년 역시 주거권의 주체이며 그런 깊이에 모든 청소년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아동복지법」이 정의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은 매우 취약하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다른 인권, 예컨대 경제적 안정, 노동, 교육, 건강과 안전, 사회적 연결 등이 위협 받게 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거권 관련 인권 까지 확장하는 제도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주거권 관련 국내법과 제도를 2절에서 살펴보았다. 주거권 보장 관련 대표적인 법률인 「주거기본법」,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급여법」에서 30세 미만 19세 이상 미혼자녀는 보장가구와 거주지를 달리하고 원가정도 소득조건을 만족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주거급여법」 제7조의2 제1항), 이 외에는 보장가구의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 밖 청소년이 양육자와 세대분리를 해야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아동 · 청소년 관련 법은 가정 밖 청소년을 주로 청

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시설에서 일정 기간 이상 생활하는 요건을 갖추어 퇴소할 때 비로소 자립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자립준비청년의 지원과 차별적인 것이 현실이다.

3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원의 해외 사례들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 캐나다, 영국과 유럽, 일본의 가정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을 주거 지원을 검토하였다. 이중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홈리스 청소년 (Homeless youth)의 개념과 범위, 홈리스 청소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개괄하고, 미국의 사례에서는 긴급 주거, 전환 주거/전환 생활 프로그램, 영구 지원 주택으로 구분되는 주거 지원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민간 부분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퍼스트’ 개념과 함께 다양한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비시설 형태의 주거 지원 사례를 제시하였다.

먼저 일본의 경우 경찰을 중심으로 공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등 ‘요보호아동’에 해당할 경우 일시보호를 제공하는 형태로 아동·청소년 주거권 보장이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참고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홈리스 청소년 지원이 한국의 상황에 던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가정 밖 청소년보다 포괄적인 ‘홈리스(Homeless)’ 개념을 통해 청소년쉼터, 지인 집 등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불안정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또한 지원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유럽 홈리스 단체 연합의 ‘홈리스 및 주거 배제 상태’ 유형화를 참고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캐나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홈리스를 ‘사회적 배제의 가장 심각한 형태’로 보고, 청소년 홈리스 이슈에 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에게 전환 주거와 지원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이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정 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조력하는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거 지원의 과정이 직업 훈련 및 교육, 의료 지원,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지원서비스와 동반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체계화된 ‘하우징퍼스트’ 프레임은 안정적인 주거가 곧 자립의 필수적인 기반이며, 여기에 개별 청소년에게 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함께해야 한다고 본다. 즉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 단지 물리적, 경제적 독립만이 아니며, 앞으로의 삶에서도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터’라는 것이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락 트러스트(Rock Trust)’와 같은 민간단체들은 성과에 따라 독립된 주거지를 ‘보상’하는 모델을 벗어나 ‘우선 주거(housing first)’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우징퍼스트 관점을 실천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영국의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의는 첫째, 청소년의 자립지원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이행을 재촉하기보다는 청소년이 일궈온 기존의 관계망과 지역 사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시사점 역시 공공과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데 있다. 영국은 홈리스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과 공공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해외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시사점은 홈리스나 주거 불안 상황에 처할 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정책을 운영한다는 데 있다. 구금시설, 정신건강 보호시설, 위탁보호 종료아동 등 취약 계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홈리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홈리스 청소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지원 또는 맞춤형 지원이 그 예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청소년 성소수자(LGBTQ)들은 홈리스 정책과 현장에서 두드러지는 취약 집단이자 중요한 지원 대상이다. 마지막 절에서 미국 등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홈리스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통계와 연구조사, 민간 단체의 지원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았으나,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한국의 민간 단체 사례 일부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취약성을 통해 볼 때, 공공과 민간이 이들이 처할 수 있는 홈리스 등 다양한 위기를 이해하고 개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제3장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C / O / N / T / E / N / T / S



제1절 분석의 개요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

이 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김희진 외(2018)의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를 위기청소년 및 전체 청소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백혜정 외, 2017; 김기현 외, 2021; 황여정 외, 2022)과 비교·분석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제1절 |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대상

가. 분석자료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를 재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①2018년 실시된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김희진 외, 2018), ②2017 청소년종합 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③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외, 2021), ④ 2021년 실시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황여정 외, 2022)이다 46).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통계자료 재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의 추정을 위해 위기청소년 대상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까닭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46) 이하에서는 김희진 외(2018)를 “2018가정밖청소년”, 백혜정 외(2017)를 “2017청소년종합”, 김기현 외(2021)를 “2020청소년종합”, 황여정 외(2022)를 “2021위기청소년”으로 표기한다.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이라는 위기청소년의 범주에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가정 밖 청소년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표 3-1〉 분석자료 개관

구분	조사명	조사시기	조사대상	표본크기
김희진 외 (2018)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	2018년 6~9월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 ⁴⁷⁾ 하는 15~24세 청소년	730명
백혜정 외 (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년 6~9월	다단계총화집락추출에 의해 표본으로 선정된 9~24세 청소년 7,676명	7,676명
김기현 외 (2021)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0년 11월~2021년 2월	다단계총화집락추출에 의해 표본으로 선정된 9~24세 청소년 7,170명	7,170명
황여정 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2021년 8~11월	2021.1.~2021.1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⁴⁸⁾ 에 입소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9~18세 청소년	4,203명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각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연령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가정 밖청소년 응답자는 15~17세 58.9%, 18~24세 41.1%(김희진 외, 2018: 157), 2017청소년종합 응답자는 9~12세 36.6%, 13~18세 39.1%, 19~24세 24.3%(백혜정 외, 2017: 23), 2020청소년종합 응답자는 9~12세 21.5%, 13~18세 32.5%, 19~24세 46.0%(김기현 외, 2021: 31), 2021위기청소년 응답자는 9~11세 6.1%, 12~15세 40.0%, 16~18세 53.9%(황여정 외, 2022: 23)였다.

다음으로 〈표 3-2〉와 같이 4개의 조사에서 공통적인 응답자 배경 변인은 성별

47) 해당 조사는 종장기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나, 지역 여건상 종장기쉼터의 부재로 일시 및 단기쉼터에도 오랜 기간 가정 밖 청소년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이들 시설의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모두 조사에 포함시켰다(김희진 외, 2018: 148).

48) 해당 조사는 '위기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소년원 및 보호관찰소 등을 적시하고 있다(황여정 외, 2022: 6~8).

이 유일했다. 여성은 기준으로 순서대로 47.4%, 49.9%, 47.9%, 48.5%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 재학 여부나 지역 규모 변인의 경우 2021위기청소년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재학 여부에서 비재학(초·중·고 중퇴 또는 휴학)은 순서대로 29.7%, 0.2%, 0.1%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자는 순서대로 17.0%, 26.9%, 46.3%였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 중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⁴⁹⁾ 지역 규모에서 대도시는 순서대로 44.5%, 44.2%, 42.9%로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분포했다.

〈표 3-2〉 연계·비교 문항의 출처

(단위: 명, %)

구분		2018가정밖청소년 김희진 외(2018)	2017청소년종합 백혜정 외(2017)	2020청소년종합 김기현 외(2021)	2021위기청소년 황여정 외(2022)
전체		730 (100.0)	7,676 (100.0)	7,170 (100.0)	4,203 (100.0)
성별	여성	346 (47.4)	3,828 (49.9)	3,437 (47.9)	2,040 (48.5)
	남성	384 (52.6)	3,848 (50.1)	3,733 (52.1)	2,163 (51.5)
학교재학 여부	재학	381 (53.2)	5,595 (72.9)	3,840 (53.6)	-
	비재학	213 (29.7)	15 (0.2)	7 (0.1)	
	고교졸업	122 (17.0)	2,066 (26.9)	3,323 (46.3)	
지역규모	대도시	325 (44.5)	3,391 (44.2)	3,076 (42.9)	-
	기타지역	405 (55.5)	4,285 (55.8)	4,094 (56.1)	

2. 분석기준

가. 내용 영역 및 요소의 구성

3가지 유형의 조사⁵⁰⁾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이에 조사의 도구 역시 각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내용 영역과 세부 문항도 모두 차이가 있다. 다만 조사 도구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선행연구나 설문지를 참조했고, 그 출처를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어 공통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

49) 2017청소년종합과 2020청소년종합 응답자의 재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비율 차이는 연령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9~24세 응답자가 2017년 조사에서는 24.3%였으나 2020년 조사에서는 46.0%로 증가했다.

50)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와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외, 2021)는 같은 유형의 실태 조사로 본다.



서 2018가정밖청소년을 기준으로 나머지 조사 도구의 문항 중 하나라도 공통되거나 중복되어 연계·비교가 가능한 내용 요소를 추출하고,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요소를 구성하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분석기준을 마련한다.

먼저, 각 조사 도구 구성 시 밝히고 있는 출처를 참조하여 중복되는 문항을 확인한다. 시간의 순서대로 2017청소년종합 이후 개발 및 수행된 2018가정밖청소년(김희진 외, 153), 2020청소년종합(김기현 외, 2021: 12-20), 2021위기청소년(황여정 외, 2022: 29-34)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018가정밖청소년을 기준으로 나머지 조사 설문지를 확인하여 문항의 질문과 보기와 같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각 보고서에서 밝힌 사항 외에도 유사성이 있는 문항이 있는지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질문과 문항은 다르게 설계되어 있지만 보기와 재구성하여 연계·비교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과정을 거쳐 추출된 45개 내용 요소를 <표 3-3>과 같이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3-3> 비교·분석의 기준 영역 및 내용 요소

영역	2018가정밖청소년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
주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룻밤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 여부 및 횟수• 최초 가출 경험 연령•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된 주된 이유• 집을 나와 생활했던 곳• 가출팸 경험 여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룻밤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 여부 및 횟수• 최초 가출 경험 연령•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 집을 나와 생활했던 곳• 가출팸 경험 여부
보호자 (양육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 방임<ul style="list-style-type: none">-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양육자 폭력<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이 들거나 상처 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 관심도<ul style="list-style-type: none">-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다-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 관심도<ul style="list-style-type: none">-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육자 폭력<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이 들거나 상처 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

영역	2018가정밖청소년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
건강/심리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스트레스 여부 • 현재 고민이나 걱정 유형 • 주관적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사회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스트레스 여부 • 주관적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사회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스트레스 여부 • 주관적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사회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고민이나 걱정 유형 • 주관적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건강 - 정신적 건강 • 생활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사회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 자아존중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교육포부/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교육 수준 • 직업훈련 경험 •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교육 수준 • 직업훈련 경험 •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교육 수준 • 직업훈련 경험 •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
진로/직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 •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 •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겪는 어려움 • 불법이나 탈법적 일자리 경험 여부 • 3년 이내 진로 계획 •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 •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아르바이트) 해본 경험 •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형태 •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 •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겪는 어려움 • 불법이나 탈법적 일자리 경험 여부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청소년쉼터 - 생활형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 Wee클래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형 청소년쉼터 - 생활형 청소년쉼터 -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 · Wee클래스



영역	2018가정밖청소년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필요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심리·상담 지원 • 자립에 대한 응원이 나 도움 또는 멘토링 •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 직업훈련 지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고민에 대한 상담 제공 • 학습·진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 •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에 대한 정보 • 건강검진 제공 • 각종 질병 치료에 대한 치료 • 임대주택 제공과 같은 주거지원 • 직업교육훈련

나. 연계·비교 문항의 출처

비교·분석하기 위한 기준의 영역은 ①주거환경, ②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 ③건강/심리적 특성, ④교육포부/수준, ⑤진로/직업, ⑥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⑦지원 서비스 필요도의 7개이다. 각 영역에 포함된 45개 내용 요소로 활용된 문항의 출처는 각 조사 설문지의 번호로 제시하였다. 2021가정밖청소년은 ‘가정 밖 청소년 용 조사지’, 2017청소년종합은 ‘만 13~24세 설문지’, 2020청소년종합은 ‘만 13~18세 설문지’, 2021위기청소년은 ‘만 12세 이상 조사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표 3-4〉 주거환경 영역

기준 문항 ⁵¹⁾	2018 가정밖청소년	2017 청소년종합	2020 청소년종합	2021 위기청소년
주거환경				
1) 하룻밤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 여부 및 횟수	17	-	-	8의 2)
2) 최초 가출 경험 연령	18	-	-	8-1
3)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된 주된 이유	20	-	-	8-2
4) 집을 나와 생활했던 곳	21	-	-	8-3
5) 가출팸 경험 여부	23	-	-	8-4
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				
6) (방임)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다	26의 2)	15의 1)	14의 1)	-
7) (방임)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26의 3)	15의 2)	14의 2)	-

기준 문항 ⁵¹⁾	2018 가정밖청소년	2017 청소년종합	2020 청소년종합	2021 위기청소년
8) (폭력 · 학대)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	26의 4)	-	-	6의 1)
9) (폭력 · 학대)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	26의 5)	-	-	6의 2)
건강/심리적 특성				
10) 일상생활 스트레스 여부	28	5	7	-
11) 현재 고민이나 걱정 유형	30	-	-	36
12) (주관적 건강 상태)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31의 1)	6의 1)	9의 1)	1의 23)
13) (주관적 건강 상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31의 2)	6의 2)	9의 2)	1의 24)
14) 자신의 삶(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32	1~4	1~4	1의 22)
15) (사회적 역량)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33의 1)	7의 1)	11의 1)	-
16) (사회적 역량)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33의 2)	7의 2)	11의 2)	-
17) (사회적 역량) 다른 사람과 갈등을 잘 해결한다	33의 3)	7의 3)	11의 3)	-
18) (자아존중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3의 4)	7의 4)	11의 4)	1의 2)
19) (자아존중감)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3의 5)	7의 5)	11의 5)	1의 1)
20) (자아존중감)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33의 6)	7의 6)	11의 6)	1의 3)
교육포부/수준				
21) 희망 교육 수준	2	33	39	-
22) 직업훈련 경험	8	44	47	-
23)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8~1	44~1	47~1	-
2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8~2	44~2	47~2	-
진로/직업				
25) 일(아르바이트)을 해 본 경험	3	39	48	14
26)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 형태	3~2	43~1	52~1	-
27)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	3~3			14~1
28)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 문제로 겪는 어려움	3~5의 1)	-	-	12
29) 불법이나 탈법적 일자리 경험 여부	4	-	-	13
30) 3년 이내 진로 계획	10	36	41	-
31) 장래 희망 직업 정했는지 여부	11	37	42	-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32)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이동형 청소년쉼터	22의 2)	-	-	9의 1)



기준 문항 ⁵¹⁾	2018 가정밖청소년	2017 청소년종합	2020 청소년종합	2021 위기청소년
33)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생활형 청소년쉼터	22의 1)	-	-	9의 2)
34)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청소년자립지원관	22의 3)	-	-	9의 3)
35)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청소년전화 1388	22의 5)	-	-	35의 1)
36)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의 6)	-	-	35의 2)
37)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 학교 · Wee클래스	22의 7)	-	-	35의 3)
지원 서비스 필요도				
38) 일반 심리 · 상담 지원	16의 1)	-	-	37의 11)
39)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16의 2)	-	-	37의 1)
40)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16의 4)	-	-	37의 7)
41)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16의 6)	-	-	37의 15)
42)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16의 7)	-	-	37의 10),11)
43)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16의 8)	-	-	37의 9)
44) 자립정착금 지원	16의 9)	-	-	37의 8)
45) 직업훈련 지원	16의 13)	-	-	37의 4)

제2절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의 비교 분석

1. 주거환경

하룻밤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 여부 및 횟수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5>와 같다. 2021위기청소년 응답자의 32.6%는 가정 밖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횟수별 응답자 비율은 2018가정밖청소년과 상이했지만, 가정 밖에서 생활한 적이 있는 응답자만으로 한정하는 경우 횟수별 응답자 비율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2018가정밖청소년, 2021위기청소년 응답 순서대로 처음인 경우

51) 해당 열의 표현은 김희진 외(2018)의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 문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면의 제약으로 일부는 연구진이 축약하여 제시하였다.

는 26.8%, 29.4%, 2~9회 48.0%, 49.9%, 10회 이상 25.2%, 20.8%로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5〉 1) 하룻밤 이상 가정 밖에서 생활 여부 및 횟수

(단위: %)

구분	처음	2~3회	4~5회	6~9회	10회 이상	없음	계
2018가정밖청소년	26.8	27.7	13.7	6.6	25.2	0.0	100.0
2021위기청소년	9.6	9.1	4.5	2.7	6.8	67.4	100.0
	29.4	27.8	13.8	8.3	20.8		

최초 탈가정 경험 연령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6〉과 같다. 최초 탈가정 경험은 2018가정밖청소년 평균 15.2세, 2021위기청소년 14.7세였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최초 탈가정 연령 11세 이하는 다소 많았지만(+1.4%p), 12~14세가 상대적으로 적고(-8.7%p) 1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7.4%p) 평균연령이 0.5세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3-6〉 2) 최초 탈가정 경험 연령

구분	평균 나이	11세 이하	12~14세	15세 이상	계
2018가정밖청소년	15.2세	8.3%	27.2%	64.6%	100.0%
2021위기청소년	14.7세	6.9%	35.9%	57.2%	100.0%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 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7〉과 같다. 양 조사 응답자 모두 가정과 관련된 이유를 68.5%, 56.6% 꼽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 37.3%, 38.4%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님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는 각각 22.4%, 15.5%로 두 번째, 세 번째로 비율이 높았다. 다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를 꼽은 경우는 2018가정밖청소년이 8.8%로 2021위기청소년에 비해 6.1%p 높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는 각각 18.8%, 24.5%로 세 번째,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3)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	부모님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선생님과의 갈등, 학교 규칙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어서	왕따 등 학교폭력 때문에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친구나 선후배가 집을 나가자고 해서	자유롭게 살거나 놀고 싶어서	기타	계
2018 가정밖청소년	37.3	22.4	8.8	3.0	1.0	2.3	2.7	18.8	3.5	100.0
2021 위기청소년	38.4	15.5	2.7	4.9	2.6	4.6	5.1	24.5	1.7	100.0

집을 나와서 주로 생활했던 곳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시설’(31.6%), ‘친구·선후배 집’(25.4%), ‘24시간 상점’(11.9%), ‘고시원·모텔·원룸 등’(11.2%) 등 순으로 많았고,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친구·선후배 집’(36.2%), ‘노숙’(16.6%), ‘청소년복지시설’(15.3%), ‘고시원·모텔·원룸 등’(15.3%) 등 순으로 많았다. 전자의 경우 관련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를 고려하면 양 조사 결과 모두 친구·선후배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상대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거리, 남의 집 옥상, 건물 안 계단 등에서 노숙하고 있다는 응답이 16.6%로 많았다는 점도 특징이다.

〈표 3-8〉 4) 집을 나와서 주로 생활했던 곳

(단위: %)

구분	청소년 복지시설 ²⁾	친인척집	친구 · 선후배 집	고시원 · 모텔 · 원 룸 등	노숙 ³⁾	소년분류 심사원 · 소년원 학교	24시간 상점 ⁴⁾	기타	계
2018 가정밖청소년	31.6	5.1	25.4 ⁵⁾	11.2	10.5	3.6	11.9	0.8	100.0
2021 위기청소년 ¹⁾	15.3	4.8	36.2 ⁶⁾	15.3	16.6	0.0	9.8	1.9	100.0

주1: 원 조사에서는 복수 응답 결과 비율의 합계가 182.6%였으나, 합계 100.0%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제시

주2: 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 등

주3: 거리, 남의 집 옥상, 건물 안 계단 등

주4: pc방, 짐질방, 코인노래방 등

주5: 집을 나오기 전부터 일던 친구 · 선후배 집 16.4%, 집을 나와서 알게된 친구 · 선후배 집 9.0%의 합계

주6: 친구 · 선후배 집 34.5%와 가출팸 1.7%의 합계

가출팸⁵²⁾ 경험 여부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9〉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은 17.9%, 2021위기청소년은 3.1%가 가출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2018가정밖청소년의 가출팸 경험률이 약 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에서 2021위기청소년 중 집을 나와 주로 생활했던 곳으로 가출팸을 꼽은 응답자는 1.7%였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대입해보면 2018가정청소년 중 가출팸을 통해 주로 생활하는 응답자는 약 9.8%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8가정청소년 조사에서 가출팸 경험률은 일시쉼터를 이용하는 경우 높게 나타났는데, 김희진 외(2018: 163)는 “가출 패m 청소년들이 비교적 장기보호가 가능한 단기 · 중장기쉼터보다는 규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출입이 용이한 일시쉼터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3-9〉 5) 가출팸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17.9	82.1	100.0
2021위기청소년	3.1	96.9	100.0

52) ‘가출’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의 합성어로, 가출 청소년끼리 일종의 그룹을 이루어 생활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2. 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

보호자(양육자) 방임으로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다’에 대하여 2018가정 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0〉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33.3%는 보호자(양육자)는 자신이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 종합과 2020청소년종합은 각각 6.2%, 10.4%로 나타났다.⁵³⁾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역으로 청소년의 귀가에 대한 보호자(양육자)의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데, 2018가정밖청소년은 34.9%로 나타나 전체 청소년 보호자(양육자) 평균 관심도(2017청소년종합 63.3%, 2020청소년종합 74.1%)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0〉 6) 보호자(양육자) 방임 –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34.9	31.7	20.7	12.6	100.0
2017청소년종합	63.3	30.5	5.0	1.2	100.0
2020청소년종합	74.1	15.5	8.0	2.4	100.0

보호자(양육자) 방임으로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1〉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33.6%는 보호자(양육자)는 자신이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과 2020청소년 종합은 각각 3.3%, 10.0%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역으로 청소년의 질병 상태에 대한 보호자(양육자) 관심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2018가정 밖청소년은 31.9%로 나타나 전체 청소년 보호자(양육자) 평균 관심도(2017청소년 종합 74.7%, 2020청소년종합 80.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2017년에 비해 2020년에 그렇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한 까닭은 성인기에 진입한 19~24세 응답자 표집이 전체 21.7%p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하의 문항에서도 2017청소년종합과 2020청소년종합의 차이가 있는 경우, 성인기(19~24세) 응답자 연령 분포가 증가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1〉 7) 보호자(양육자) 방임 –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31.9	34.5	22.1	11.5	100.0
2017청소년종합	74.7	22.0	2.6	0.7	100.0
2020청소년종합	80.0	10.1	7.4	2.6	100.0

보호자(양육자) 폭력에 관한 문항으로 ‘내 몸에 명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2〉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43.8%는 보호자(양육자)가 내 몸에 명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16.1%로 나타나 3배 가량 차이가 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신체적 폭력 또는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각각 23.2%, 3.3%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에 대한 신체적 폭력 또는 학대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표 3-12〉 8) 보호자(양육자) 폭력 · 학대 – 내 몸에 명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때린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34.8	21.4	20.6	23.2	100.0
2021위기청소년 ¹⁾	55.6	28.3	12.8	3.3	100.0

주1: 황여정 외(2022)에서는 위 문항 보기를 ‘평생 경험한 적 없다,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 1년에 1~2번, 1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이상’으로 제시하였음. 두 실태조사를 연계·비교하기 위하여 ‘평생 경험한 적 없다’를 “전혀 그렇다 않다”로, ‘최근 1년간은 없었지만 그 이전에는 있었음’을 “그렇지 않은 편이다”로, ‘1년에 1~2번’과 ‘1달에 1~2번’을 “그런 편이다”로, ‘일주일에 1~2번 이상’을 “매우 그렇다”로 재코딩하였음.

보호자(양육자) 폭력 · 학대에 관한 문항으로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3〉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56.8%는 보호자(양육자)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26.0%로 나타나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정서적 폭력 또는 학대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는 각각 31.7%, 9.8%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에 대한 정서적 폭력 또는 학대가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표 3-13〉 9) 보호자(양육자) 폭력 · 학대 –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설을 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25.6	17.6	25.1	31.7	100.0
2021위기청소년 ¹⁾	54.0	19.9	16.2	9.8	100.0

주1: 〈표 3-18〉의 주1에 제시한 바와 같음

3. 건강/심리적 특성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여부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4〉와 같다.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결과는 순서대로 62.5%, 7.9%, 6.2%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스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4〉 10)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 여부

(단위: %)

구분	느낀 적이 없다	한두 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4.0	7.8	25.8	62.5	100.0
2017청소년종합	8.5	37.7	46.0	7.9	100.0
2020청소년종합	8.6	39.0	46.2	6.2	100.0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5〉와 같다. 5가지 항목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24.6%), ‘진로 · 진학 문제’(24.1%), ‘향후 거취(생활) 문제’(23.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21위기청소년은 ‘향후 거취(생활) 문제’(37.1%), ‘진로 · 진학 문제’(19.7%), ‘가족과의 불화’(17.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진로·진학 문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3-15〉 11)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

(단위: %)

구분	진로 · 진학 문제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어려움	향후 거취(생활) 문제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	계
2018가정밖청소년 ¹⁾	24.1	13.4	24.6	23.6	14.4	100.0
2021위기청소년 ²⁾	19.7	17.4	12.5	37.1	13.3	100.0

주1: 김희진 외(2018)에서는 5개의 개별 문항마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두 실태조사를 연계·비교하기 위하여 5개 문항마다 ‘다소 심각하게 걱정한다, 매우 심각하게 걱정한다’에 응답한 빈도의 합계를 다시 100%로 환산하고 하나의 문항으로 통합하여 비율을 제시한 것임

주2: 황여정 외(2022)에서는 하나의 문항에서 14개 보기 중 5개 보기인 5를 진로·진학 문제, 1(가족과의 갈등)을 ‘가족과의 불화’, 3(생활이 불안정하고 돈이 필요함)을 ‘경제적 어려움’, 7(지낼 곳을 찾기가 어려움)·8(일을 구하기 어려움)·10(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향후 거취(생활) 문제’, 4(나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음)·6(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음)을 ‘가정 밖 생활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매칭하고, 각 응답 빈도의 합계를 다시 100%로 환산하여 비율을 제시한 것임

주관적 건강 상태로서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6〉과 같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는 순서대로 80.0%, 97.4%, 97.4%, 74.3%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2017청소년종합이나 2020청소년종합에 비해 낮았다(각각 -17.4%p). 다만 2021위기청소년보다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7%p).



〈표 3-16〉 12) 주관적 건강 상태 –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4.2	15.8	43.7	36.3	100.0
2017청소년종합	0.2	2.4	49.0	48.4	100.0
2020청소년종합	0.1	2.5	48.6	48.8	100.0
2021위기청소년	5.2	20.6	49.3	25.0	100.0

주관적 건강 상태로서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7〉과 같다.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는 순서대로 65.7%, 96.6%, 88.5%, 68.4%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2017청소년종합이나 2020청소년종합에 비해 낮았다(각각 -30.9%p, -22.8%p). 2021위기청소년과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율이 비슷하지만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p).

〈표 3-17〉 13) 주관적 건강 상태 –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10.0	24.3	37.0	28.7	100.0
2017청소년종합	0.2	3.2	49.9	46.7	100.0
2020청소년종합	0.1	2.4	45.3	43.2	100.0
2021위기청소년	7.4	24.1	47.0	21.4	100.0

자신의 삶(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8〉과 같다. 순서대로 10점 만점 기준 5.2점, 6.8점, 6.6점, 5.8점으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7청소년종합이나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에 비해 모두 낮았다(각각 -1.6점, -1.4점, -0.6점).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삶(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인 값과 상대적인 값 모두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18〉 14) 자신의 삶(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점)

구분	평균 점수	비고
2018가정밖청소년	5.2	
2017청소년종합	6.8	11점 척도(0~10)
2020청소년종합	6.6	
2021위기청소년	5.8	4점 척도(1~4) 응답 결과를 재코딩 *1→0.0, 2→3.3, 3→6.6, 4→10.0

사회적 역량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19〉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81.1%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 및 2020청소년종합의 경우 각각 93.1% 및 93.5%로 나타나 모두 10%p 이상 높았다. 다만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순서대로 28.6%, 36.4%, 15.7%로 나타났고, 동일 연령대에게 설문을 실시한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해보면 오히려 전자가 12.9%p 높아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표 3-19〉 15) 사회적 역량 –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6.0	12.9	52.5	28.6	100.0
2017청소년종합	0.4	6.5	56.7	36.4	100.0
2020청소년종합	0.1	6.3	77.8	15.7	100.0

사회적 역량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0〉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77.4%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 및 2020청소년종합의 경우 각각 92.0% 및 89.0%로 나타나 10%p 이상 높았다. 다만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순서대로 24.9%, 31.5%, 26.6%로 나타났고, 동일 연령대에게 설문을 실시한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3-20〉 16) 사회적 역량 – 나는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4.7	17.9	52.5	24.9	100.0
2017청소년종합	0.3	7.7	60.5	31.5	100.0
2020청소년종합	0.2	10.8	62.4	26.6	100.0

사회적 역량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1〉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77.4%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 및 2020청소년종합의 경우 각각 92.0% 및 89.0%로 나타나 10%p 이상 높았다. 다만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순서대로 24.9%, 31.5%, 26.6%로 나타났고, 동일 연령대에게 설문을 실시한 2018 가정밖청소년과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3-21〉 17) 사회적 역량 –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6.2	22.2	50.1	21.5	100.0
2017청소년종합	0.5	14.0	62.5	23.1	100.0
2020청소년종합	0.3	18.3	61.3	20.1	100.0

자아존중감으로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2〉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71.8%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및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각각 92.7%, 89.1% 및 85.9%로 나타나 14.1~20.9%p가량 높았다. 다만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조사 결과 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2018가정밖청소년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표 3-22〉 18) 자아존중감 –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7.3	21.0	44.1	27.7	100.0
2017청소년종합	0.3	7.0	66.2	26.5	100.0
2020청소년종합	0.6	10.3	66.7	22.4	100.0
2021위기청소년	3.1	11.1	53.2	32.7	100.0

자아존중감으로서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3〉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62.2%는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및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각각 91.7%, 86.2% 및 77.5%로 나타나 12.3~26.5%p가량 높았다. 다만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보면 조사 결과 간에 큰 차이가 없거나 2018가정밖청소년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표 3-23〉 19) 자아존중감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8.1	26.7	42.2	23.0	100.0
2017청소년종합	0.3	8.1	70.5	21.2	100.0
2020청소년종합	0.8	13.0	67.8	18.4	100.0
2021위기청소년	3.7	18.8	55.9	21.6	100.0

자아존중감으로서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4〉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 응답자의 65.0%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의 경우 각각 89.32%, 89.3%로 나타나 각각 24.3%p, 23.0%p 높았다. 다만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65.1%로 2018가정밖청소년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표 3-24〉 20) 자아존중감 –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12.5	22.5	41.3	23.7	100.0
2017청소년종합	0.7	9.9	72.1	17.2	100.0
2020청소년종합	0.5	11.5	77.3	10.7	100.0
2021위기청소년	8.7	26.2	42.8	22.3	100.0

4. 교육포부/수준

희망하는 교육 수준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5〉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응답 결과 ‘고졸 이하’(39.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년대 대졸’(29.0%), ‘전문대졸’(23.6%), ‘대학원 이상’(8.4%) 순으로 나타났다. 2017청소년종합 및 2020청소년종합에서는 ‘4년대 대졸’을 희망하는 응답이 각각 74.6% 및 80.7%로 가장 많았으며, 2018가정밖청소년과 비교할 때 각각 45.6%p, 51.7%p 높았다.

〈표 3-25〉 21) 희망하는 교육 수준

(단위: %)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	계
2018가정밖청소년	39.0	23.6	29.0	8.4	100.0
2017청소년종합	3.1	10.7	74.6	11.5	100.0
2020청소년종합	3.6	8.1	80.7	7.6	100.0

직업훈련 경험 여부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6〉과 같다. 순서대로 36.5%, 8.0%, 4.3% 가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2018가정밖청소년의 직업훈련 경험 비율은 각각 28.5%p, 32.2%p 높았다.

〈표 3-26〉 22) 직업훈련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36.5	63.5	100.0
2017청소년종합	8.0	92.0	100.0
2020청소년종합	4.3	95.7	100.0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7〉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응답 결과 ‘취업/창업’(39.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격증 취득’(31.6%), ‘더 나은 직무수행’(15.0%), ‘기타’(9.8%), ‘경력개발’(6.0%) 순으로 나타났다. 2017청소년종합 및 2020청소년종합에서는 ‘자격증 취득’이라는 응답이 각각 52.6% 및 40.0%로 가장 많았으며, 2018가정밖청소년에 비해 각각 21.0%p, 11.6%p 높았다. 또한 나머지 두 조사에서는 ‘더 나은 직무수행’이 다음으로 많은 각각 28.4% 및 26.8%로 나타났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취업/창업’이라는 목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데, 이는 직업훈련을 〈표 3-15〉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3-27〉 23)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

(단위: %)

구분	취업/창업	더 나은 직무수행	경력개발	자격증 취득	기타	계
2018가정밖청소년	37.6	15.0	6.0	31.6	9.8	100.0
2017청소년종합	3.6	28.4	12.9	52.6	2.5	100.0
2020청소년종합	6.6	26.8	24.5	40.0	2.1	100.0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목적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8〉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응답 결과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43.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21.4%),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을 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해서’(19.0%),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어서'(8.2%), '기타'(7.7%) 순으로 나타났다. 2017청소년종합에서도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34.5%)가 가장 많았지만,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3.6%로 다음으로 많았고 이는 2020청소년종합에서 41.8%로 가장 많았다. 전체 청소년의 범주에서는 직업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반면, 2018가정밖청소년은 그보다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다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직업훈련을 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들이 필요해 보인다.

〈표 3-28〉 24)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

(단위: %)

구분	직업훈련에 대해 알지 못해서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어서	직업훈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을 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해서	기타	계
2018가정밖청소년	43.7	8.2	21.4	19.0	7.7	100.0
2017청소년종합	34.5	13.8	33.6	17.4	0.6	100.0
2020청소년종합	19.7	20.4	41.8	18.1	0.1	100.0

5. 진로/직업

일(아르바이트) 경험 여부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29〉와 같다. 순서대로 59.3%, 48.7%, 39.9%, 29.5%가 일(아르바이트)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가장 많았던 2018가정밖청소년의 일(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은 순서대로 10.6%p, 19.4%p, 29.8%p 높았다.

〈표 3-29〉 25) 일(아르바이트)을 해 본 경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59.3	40.7	100.0
2017청소년종합	48.7	51.3	100.0
2020청소년종합	39.9	60.1	100.0
2021위기청소년	29.5	70.5	100.0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 형태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0〉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정규직 8.8%, 비정규직 91.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7청소년종합 및 2020청소년종합의 정규직 비율은 각각 35.5%, 28.4%, 비정규직 비율은 64.5%, 71.6%로 나타났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비정규직 근로 비율이 각각 26.7%p, 19.6%p 높아 상대적으로 근로 형태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30〉 26) 그 일(아르바이트)의 근로 형태

(단위: %)

구분	정규직	비정규직	계
2018가정밖청소년	8.8	91.2	100.0
2017청소년종합	35.5	64.5	100.0
2020청소년종합	28.4	71.6	100.0

그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1〉과 같다.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고 응답자는 순서대로 84.0%, 24.2%, 47.3%로 나타났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생활비 또는 용돈과 관련된 이유를 꼽고 있는 응답자가 뚜렷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1〉 27) 그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생활비(용돈 포함)를 벌기 위해서 ¹⁾	기타 ²⁾	계
2018가정밖청소년	84.0	16.0	100.0
2020청소년종합	24.2	75.8	100.0
2021위기청소년	47.3	52.7	100.0

주1: 김희진 외(2018)의 보기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김기현 외(2021)에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에 응답한 결과와 황여정 외(2022)에서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형편이 어려워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에, 내가 가족의 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지는 않지만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을 형편은 아니어서,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의 4가지에 응답한 결과를 연계·비교한 것임

주2: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를 제외하고 보기의 내용이 상이하여 기타로 제시하였음. 김희진 외(2018)에서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유흥비가 부족해서, 호기심에, 주위의 권유로, 사회경험을 쌓기 위해서, 기타'의 6가지를, 김기현 외(2021)에서는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기타'의 11가지를, 황여정 외(2022)에서는 '부모님(또는 보호자)에게 용돈을 받지만 스스로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경제적 형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타'의 4가지를 "기타"로 제시함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2〉와 같다. '있다'는 응답은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 각각 30.1%과 14.9%로 나타났다. 2018가정밖청소년은 2021위기청소년에 비해서도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빈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표 3-32〉 28) 구직 시 보호자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¹⁾	30.1	69.9	100.0
2021위기청소년	14.9	85.1	100.0

주1: 김희진 외(2018)에서는 위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보고하였음. 두 실태조사를 연계·비교하기 위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있다"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는 "없다"로 재코딩하여 제시함

54) '2018가정밖청소년'은 15~24세, '2021위기청소년'은 12~18세로 응답자의 연령 범위에 차이가 있다.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여부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0청소년종합,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3>과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4%를 제외하고도 ‘있다’는 응답이 16.0%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1위기청소년에서 ‘있다’고 응답한 2.5%에 비해서도 13.5%p 높은 것이다.

<표 3-33> 29)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16.0	77.5	6.4	100.0
2021위기청소년	2.5	97.5	-	100.0

앞으로 3년 이내 진로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4>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취업’(50.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30.7%),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청소년종합 및 2020청소년종합은 ‘상급학교 진학’이 각각 44.3%, 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이 각각 34.9%, 35.3%로 나타났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 등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표 3-25>의 희망하는 교육 수준(고졸 이하)이나 <표 3-15>의 현재 고민이나 걱정거리(경제적 어려움), <표 3-31>의 그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된 주된 이유(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와도 관계가 있다.⁵⁵⁾

<표 3-34> 30) 앞으로 3년 이내 진로에 관한 계획

(단위: %)

구분	상급학교 진학	취업	창업	가업	이직	현 직장 유지	기타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계
2018 가정밖청소년	30.7	50.1	2.2	0.3	1.4	2.1	2.4	10.8	100.0
2017 청소년종합	42.3	34.9	0.7	0.0	3.1	6.7	0.8	11.6	100.0
2020 청소년종합	44.2	35.3	0.9	0.0	0.3	5.1	0.6	13.6	100.0

55) 괄호 안은 각 표의 보기 중 2018가정밖청소년이 가장 많이 응답한 내용을 의미한다.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17청소년종합, 2020청소년종합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5>와 같다. ‘정하였다’는 응답은 순서대로 58.4%, 39.6%, 35.2%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장래 희망 직업을 이른 시기에 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위와 마찬가지로 <표 3-15>, <표 3-25>, <표 3-31> 등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상대적으로 취업 요구 또는 압력이 작용하면서, 진학 등 다른 진로에 비해 조기에 직업을 선택하는 경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35> 31)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는지 여부

(단위: %)

구분	정하였다	정하지 않았다	계
2018가정밖청소년	58.4	41.6	100.0
2017청소년종합	39.6	60.4	100.0
2020청소년종합	35.2	64.8	100.0

6.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의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6>과 같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19.8%, 6.4%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의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되었다+매우 도움되었다)은 각각 72.9%, 87.8%로 2018가정밖청소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36> 32)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

(단위: %)

구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				계
	있다	없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2018가정밖청소년	19.8	80.2	6.9	20.1	36.8	36.1	100.0
2021위기청소년	6.4	93.6	1.5	10.7	44.1	43.7	100.0

생활형 청소년쉼터의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7>과 같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85.5%, 39.3%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 중 생활형 청소년쉼터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매우 많았다.⁵⁶⁾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되었다+매우 도움되었다)은 각각 94.6%, 93.8%로 양 집단 모두 매우 높았다. 다만 2018가정밖청소년 중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이 27%에 이른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⁵⁷⁾

<표 3-37> 33) 생활형 청소년쉼터

(단위: %)

구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				계
	있다	없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2018가정밖청소년	85.5	14.5	1.3	4.2	29.2	65.4	100.0
2021위기청소년	39.3	60.7	1.7	4.4	33.8	60.0	100.0

청소년자립지원관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 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8>과 같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18.0%, 6.5%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의 청소년자립지원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되었다+매우 도움되었다)은 각각 80.2%, 93.5%로 2018가정밖청소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38> 34) 청소년자립지원관

(단위: %)

구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				계
	있다	없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2018가정밖청소년	18.0	82.0	3.1	16.8	39.7	40.5	100.0
2021위기청소년	6.5	93.5	2.9	3.6	33.2	60.3	100.0

56) 해당 조사가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57) 면담의 연구 참여자 고유는 만족도 조사를 할 때 “매우 만족으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울 수 없다”, “매우 만족으로 체크하라”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솔직한 응답이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청소년쉼터에서의 경험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청소년전화 1388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 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39>와 같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36.6%, 22.0%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의 청소년전화 1388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되었다+매우 도움되었다)은 각각 78.7%, 74.7%로 양 집단이 유사한 가운데 2018가정밖청소년에서 소폭 높았다.

<표 3-39> 35) 청소년전화 1388

(단위: %)

구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				계
	있다	없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2018가정밖청소년	36.6	63.4	7.9	13.5	37.1	41.6	100.0
2021위기청소년	22.0	78.0	11.5	13.8	36.1	38.6	10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40>과 같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35.3%, 46.3%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의 청소년자립지원관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되었다+매우 도움되었다)은 각각 78.7%, 91.6%로 2018가정밖청소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40> 3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 %)

구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				계
	있다	없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2018가정밖청소년	35.3	64.7	7.4	14.0	41.9	36.8	100.0
2021위기청소년	46.3	53.7	2.7	5.7	38.5	53.1	100.0

학교 Wee클래스 경험 여부 및 도움 정도에 대하여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41>과 같다.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41.2%, 50.2%로 나타나, 2018가정밖청소년의 학교 Wee클래스 경험이 상대적으

로 더 적었다.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약간 도움되었다+매우 도움되었다)은 각각 68.1%, 93.5%로 2018가정밖청소년에서 더 낮게 나타났다.

〈표 3-41〉 37) 학교 Wee클래스

(단위: %)

구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는 경우 도움 정도				계
	있다	없다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약간 도움 되었다	매우 도움 되었다	
2018가정밖청소년	41.2	58.8	14.3	17.6	33.9	34.2	100.0
2021위기청소년	50.2	49.8	2.9	3.6	33.2	60.3	100.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2018가정밖청소년이 경험한 기관/서비스는 생활형 청소년쉼터가 가장 많고, 학교 Wee클래스,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생활형 청소년쉼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 학교 Wee클래스 순이다.

7. 지원 서비스 필요도

각종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인식 조사 문항 중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 위기청소년에서 공통된 항목을 추출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3-42〉와 같다.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로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83.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지원’(80.7%), ‘건강지원(건강경진, 질병 치료 등)’(76.4%), ‘직업훈련 지원’(76.2%),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7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필요하다(약간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서비스로 ‘직업훈련 지원’(76.5%)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지원(건강경진, 질병 치료 등)’(75.9%), ‘자립정착금 지원’(75.4%), ‘일반 심리 상담 지원’(73.2%)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필요도 순위에 차이가 있었다.



〈표 3-42〉 38)~45)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인식(빈도)

(단위: %)

구분	2018가정밖청소년				2021위기청소년				계
	전혀 필요 하지 않다	별로 필요 하지 않다	약간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일반 심리 상담 지원	14.1	18.6	39.5	27.8	9.7	17.1	43.7	29.5	100.0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14.8	18.8	35.9	30.5	11.2	20.4	46.2	22.2	100.0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12.5	13.6	37.7	36.3	10.7	18.7	40.7	29.9	100.0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20.4	25.8	34.0	19.9	11.7	20.4	41.4	26.5	100.0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11.0	12.6	32.7	43.7	8.8	15.5	44.1	31.8	100.0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9.2	7.8	32.9	50.1	12.6	20.4	34.6	32.4	100.0
자립정착금 지원	9.9	9.5	32.8	47.9	9.1	15.4	38.7	36.7	100.0
직업훈련 지원	10.7	13.2	35.2	41.0	8.7	14.7	43.8	32.7	100.0

다음으로 2018가정밖청소년과 2021위기청소년 응답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하여 각 응답 평균을 도출하고,⁵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3-43〉과 같다. 두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 중 2018가정밖청소년이 더 높은 경우는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1.07), ‘자립정착금 지원’(+0.95),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0.95),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0.91)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의 필요도 평균은 3.24로 가장 높았으며, ‘자립정착금 지원’이 3.19로 다음으로 높았다.

58)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 ‘별로 필요하지 않다’를 2점, ‘약간 필요하다’를 3점, ‘매우 필요하다’를 4점으로, 2021위기청소년의 경우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1점, ‘필요하지 않다’를 2점, ‘필요하다’를 3점, ‘매우 필요하다’를 4점으로 코딩하였다.

〈표 3-43〉 38)~45) 자립지원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인식 비교(t-test)

구분	2018가정밖청소년 (n=730)		2021위기청소년 (n=4,203)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반 심리 상담 지원	2.81	1.00	2.93	0.93	-3.03***
자립에 대한 응원이나 도움 또는 멘토링	2.82	1.03	2.79	0.91	.67***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2.98	1.00	2.90	0.95	2.05***
지역사회 자원 이용 교육	2.54	1.03	2.83	1.00	-7.10***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3.09	1.00	2.99	0.91	2.54***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	3.24	0.94	2.87	1.07	9.60***
자립정착금 지원	3.19	0.97	3.03	0.95	4.16***
직업훈련 지원	3.07	0.98	3.00	0.91	1.64***

*p<0.05, **p<0.01, ***p<0.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2018가정밖청소년의 경우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고, 그 필요도는 2021위기청소년 집단에 비해서도 뚜렷하게 높았다. 두 집단 공통적으로 필요도가 높다고 인식한 서비스는 ‘직업훈련 지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통계자료에서 2018가정밖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생계 및 주거 등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여건에 관한 요구가 전반적으로 높았던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방임이나 폭력·학대를 경험하는 등 가정 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거환경·경제생활·보건 등 자립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원하는 방안이 우선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 소결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를 점검할 목적으로 관련 통계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①2018년 실시된 가정 밖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요구 조사(김희진 외, 2018)를 기준으로, 비교를 위하여 ②2017 청소년종합 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③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현 외, 2021), ④ 2021년 실시된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황여정 외, 2022)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비교 분석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 실태를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②, ③의 조사 결과는 2017년과 2020년 전체 청소년의 실태를, ④의 조사 결과는 대상 청소년의 범위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2018년 실시된 김희진 외(2018)의 조사 문항을 기준으로 비교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②, ③, ④ 중 일부의 조사 결과만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각 조사의 목적과 설계에 따라 응답자 분포의 차이, 조사 시점의 차이, 문항의 질문과 보기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한계 등이 존재한다.

7개 영역별로 비교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환경’ 영역에서는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있는 2021년 위기청소년 생활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32.6%가 가정 밖 생활(탈가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있는 경우 가정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생활 횟수는 비슷했다. 최초 탈가정을 경험한 나이의 평균은 가정 밖 청소년 15.2세, 위기청소년 14.7세였으며, 1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각각 64.6%, 57.2%로 가장 많았다. 집을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된 주된 이유로는 양 조사 응답자 모두 가정과 관련된 점을 68.5%, 56.6% 꼽고 있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 등 가족과의 갈등이나 가정 폭력을 피하기 위한 이유 외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8.8% 응답하고 있어 기존 가정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보인다. 또한 가정 밖 생활을 주로 하는 장소로 양 조사 응답자 모두 청소년 복지시설과 친구·선후배 집 등이 가장 많았으나,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31.6%로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가출팸을 경험 비율은 17.9%와 3.1%로

약 5.8배 차이가 났다. 즉 같은 위기청소년 범주에서도 가정 밖 생활을 하는 경우 가출팸에 의존할 확률이 5배 이상 높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호자(양육자)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보호자(양육자)의 폭력·학대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양육자)가 늦게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다거나 아파도 내버려 두는 방임을 경험한 비율이 약 33% 내외로 전체의 3분의 1가량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와 비교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이 방임을 경험한 빈도가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 가량 높은 것이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양육자)가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 등 정서적 학대를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8%와 56.8%로 전체의 절반 내외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2~3배가량 높은 결과이다.

셋째, ‘건강/심리적 특성’ 영역에서는 스트레스 정도, 고민이나 걱정 유형, 주관적 건강 상태, 삶의 만족도, 사회적 역량, 자아존중감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5%로 전체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비해 8~10배가량 높고, 이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응답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위기청소년 결과를 함께 참조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전체 청소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더 가까우면서도 소폭 양호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가정 밖 청소년이 10점 만점에 5.2점으로 가장 낮고, 위기청소년 5.8점, 청소년종합실태조사가 2017년 6.8점, 2020년 6.6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회적 역량이나 자아존중감에 관한 응답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응답 결과에 비해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고, 위기청소년에 비해서도 긍정 응답이 일관되게 소폭 낮게 나타났다. 다만 가정 밖 청소년의 주된 고민이나 걱정 유형은 경제적 어려움이 24.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는 위기청소년의 응답(12.5%)과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넷째, ‘교육포부/수준’ 영역에서는 희망하는 교육 수준과 직업훈련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2017년 및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정 밖 청소년은 39.0%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

장 많이 희망하고 있었으며,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2017년과 2020년 모두 ‘4년제 대졸’이 74.6%와 80.7%로 가장 많았다. 특히 다른 조사 결과 등을 참조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은 학교를 통한 교육을 희망하기보다는 당장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요구 또는 압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 밖 청소년 중 직업훈련 경험에 있다는 응답은 36.5%로 전체 청소년의 4~9배가량 더 많았다.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 중 ‘취업/창업’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응답보다 6~10배가량 많았는데, 앞서 주된 고민이나 걱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요구와 압력이 높고 이를 위해 학업을 위한 진학보다는 직업훈련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직업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7%로 매우 높아, 직업훈련을 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충분히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진로/직업’ 영역에서는 취업 경험 여부와 근로 형태, 근로의 주된 이유, 보호자 동의서로 인한 어려움, 불법 또는 탈법적인 일자리 경험, 향후 진로/직업 계획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정 밖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일(아르바이트)을 해 본 경험은 많지만, 전체 청소년 집단보다 비정규직 근로 형태의 비율이 1.5배가량 더 많았다. 또한 용돈을 포함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아르바이트)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가정 밖 청소년의 84.0%로, 전체 청소년의 24.2%나 위기청소년의 47.3%인 결과와 비교할 때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취업 형태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 과정에서 보호자 동의서를 낼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30.1%로 위기청소년 응답의 두 배로 나타났으며, 불법이나 탈법적인 일자리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6.0%로 위기청소년 응답의 6배 이상이었다. 향후 3년 이내 진로에 관한 계획으로는 50.1%가 ‘취업’을 꼽고 있어 전체 청소년 실태조사에서 40~45%가량의 청소년이 ‘상급학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장래 희망 직업을 정했다는 응답도 가정 밖 청소년의 58.4%로 전체 청소년 응답의 39.6%나 35.2%보다 약 20%p 높아,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다른 진로보다 조기에 직업을 선택하는 경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기관/서비스 이용 경험’ 영역에서는 청소년쉼터, 자립지원관, 상담 등 청

소년을 지원하는 6개 기관이나 서비스의 경험 여부와 도움받은 정도를 중심으로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2021년 위기청소년 생활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정 밖 청소년은 생활형 청소년쉼터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85.5%), 학교 Wee클래스(41.2%), 청소년전화 1388(36.6%), 청소년상담복지센터(35.3%),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19.8%), 청소년자립지원관(18.0%) 순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생활형 청소년쉼터가 6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전화 1388 41.6%, 청소년자립지원관 40.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8%, 이동형(버스형) 청소년쉼터 36.1%, 학교 Wee클래스 34.2% 순이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은 생활형 청소년쉼터를 경험했고 동시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시설 거주에 만족한 다기보다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바로 주거 제공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 Wee클래스의 경우 위기청소년 중 가장 많은 50.2%가 경험했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60.3%로 가장 높았다. 가정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41.2%),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34.2%).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현재 학교의 상담 체계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보하는 측면이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고 보인다.

끝으로, ‘지원 서비스 필요도’ 영역에서는 2018년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와 공통 문항을 가지고 있는 2021년 위기청소년 생활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8가지 자립지원 서비스 항목 중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립정착금 지원’,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 ‘직업훈련 지원’, ‘경제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숙식장소) 및 주거비(전월세) 지원’과 ‘자립정착금 지원’, ‘건강지원(건강검진, 질병 치료 등)’은 위기청소년과 비교하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요구가 더 높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형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각종 기관이나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의 85.5%가 생

활형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것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대안의 선택지가 청소년쉼터 이외에 없음을 방증한다. 시설 격리 이외의 대안적 주거에 대한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둘째, 자립정착금 및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 집단에 비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주된 고민이나 걱정으로 꼽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같은 맥락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생활비를 베는 등 생계를 목적으로 취업을 선택했거나,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경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처럼 경제적 문제로 인한 취업 압력은 향후 진로로서 학업을 위한 상급학교 진학 등 다른 경로를 포기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은 비정규직 형태로 근로하는 형태가 90% 이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정작 직업훈련을 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충분히 정보와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는 등 현재로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취업을 위한 여건이 불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일자리 기회를 차단하고 최소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를 통해 얻는 수익과 독립적으로 자립을 위한 정착금 등 금전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검진이나 질병 치료 등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는 국가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원 서비스 요구도에서도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로 나타났고, 위기청소년 집단에 비해서도 높은 요구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기존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는 보통의 청소년에 비해 매우 높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강 상태에 놓여있거나 건강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건강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는 단지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와 기회가 적극적으로 제공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희망하는 학력 수준은 고졸 이하가 다수로 상대적으로 교

육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까닭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취업 압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또한 학교의 Wee클래스 등 상담 체계가 이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 학업을 유지해 나가는 데에도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장 가정 밖 청소년이 제도로서의 학교를 통해 교육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지만, 향후 이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제도적인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는 좁은 의미에서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자립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교육, 직장·사회적 관계 내에서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 사회적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 등을 비롯해 각종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제반 교육의 기회를 말한다.

제4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제1절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



제2절 ‘그 가정’ 바깥의 주거상황

제3절 ‘그 가정’ 바깥의 삶

제4절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 체계

제5절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제6절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이 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왜 가정 밖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주거 상황에서 생활하는지, 그들의 가정 밖 주거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공적 지원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거나 되지 않는지, 그러한 가정 밖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1절 |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정59)’

1. ‘그 가정’의 주거 위기

가. 학대와 폭력 : “때리기도 했고 욕도 진짜 많이 들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탈가정하게 되는 원인은 주로 부모와의 갈등 또는 폭력으로 보고된다(김희진 외, 2018; 허민숙, 2021).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정 밖 청소년들이 ‘부모님 등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집을 나오는 경우는 22.4%에 이른다.

실제로 이번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도 가정에서 경험한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지성은 아버지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자주 경험했으며, 술을 마시면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다. 마찬가

59) 원가정이라는 용어는 가정 복귀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복귀 프레임을 강화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성애중심적이고 혈연중심 가족의 개념을 해체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를 저항의 언어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그런 까닭에 원래 가정을 의미하는 원가정이라는 표현 대신 ‘그 가정’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 가정’이라는 용어는 김순남(2022)에서 차용하였다.



지로 채운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신 날이나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 때 폭력을 경험했다.

연구자: 욕설이나 폭언도 같이 많이 하셨어요?

지성: 네. 꽤 많이 한 편이었고 특히 좀 술 마시면 그랬는데. 자제가 좀 안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술버릇이 문고리 같은 거에 매달려가지고 문고리를 부수는 게, 술버릇 중에 하나였는데 그레가지고 집 안에 문고리가 색이 다 달랐어요. 한 번씩 다 박살 나 가지고 새로 갈아서.

(2023. 8. 31. 지성 1차 면담 4-5쪽)

저 어릴 때는 이제 술을 좀 많이 드시면 조금 손찌검을 하시거나 집안 집기를 좀 부수시거나 하는 그런 게 있으셨어 가지고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댄스 학원을 좀 다니게 해달라고 오디션 같은 것도 봐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언짢아하셔서 이제 술 드시고 조금 화를 내시거나 때리시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2023. 8. 18. 채운 1차 면담, 1쪽)

폭력의 주체는 주로 부모들이었지만,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외삼촌 등이 행위자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가정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면서 형제들끼리의 폭력이 일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보호하지 않아서/못해서 형제나 이모, 고모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공부를 하다가 책상을 어질렸으면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바닥에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철사 옷걸이 있잖아요. 그걸 길게 펴 가지고 채찍처럼 이렇게 때리기도 했고 욕도 진짜 많이 들었고 초등학생인데 창녀 같다 이런 말도 들었고.(2023. 8. 9. 은수 1차 면담, 5-6쪽)

채선은 부모, 언니, 오빠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을 경험해왔다. 초등 저학년 시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성추행 경험이 있지만, 부모와 지역아동센터가 덮어버렸다. 그러나 채선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이야기했다. 오빠로부터의 성추행 경험을 “성적인 호기심이 좀 많이 발달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던 공익요원 분이 저를 성폭행하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 친오빠도 연년생이기도 하고 성적인 호기심이 좀 많이 발달할 때니까 초등학교 3, 4학년쯤에도 오빠한테 성추행 당한 적도 있었고 (2023. 9. 26. 채선 1차 면담, 2쪽)

그 밖에 가족으로부터의 성폭력으로 분리조치가 취해지면서 탈가정하게 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주거를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고 잦은 주거 이동으로 연결되는 등 주거불안을 가속화하게 된다. 혜미는 부모의 이혼 후 조부모와 함께 사는 과정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함께 살고 있는 사촌 언니로부터 일상적 학대와 폭력을 경험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성폭력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신고를 했다. 이후 할머니와 함께 사는 일이 어려워져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 가해자 아버지와 분리 조치가 취해지면서 탈가정하게 되었다. 해서 역시 아버지로부터의 지속적인 성추행을 신고하면서 분리조치가 취해져 “어쩔 수 없이” 탈가정한 경우다.

그때는 (가정 폭력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 할아버지가 성폭행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제가 고소를 하기 전까지 같은 일이 반복이 됐었는데 (...) 아빠 자취방으로 저 혼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게 14살. 한 3월 정도 돼요. 그래서 그 3월에 이제 좀 편하게 지내나 싶었는데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냥 수긍하고 학교를 다니려고 했으나 이제 아빠가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성추행을 한두 번 정도를 더 해가지고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2쪽)

마음을 먹은 거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 건데 그래서 작년 3월 3일에 쉼터에 입소해서 여태 아직까지 지내는 중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나오시게 됐을까요?) 이제 가정폭력(성폭력)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교도소에 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다시 서울로 가셨어요. 원래 본가로. 그래서 저는 이제 경찰 인계를 통해서 쉼터라는 곳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생활하고 있는 거죠.(2023. 8. 15. 해서 1차 면담, 1쪽)

물리적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이외에도 청소년 교육권이나 노동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가사 노동 부담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에게 집은 강제와 순응의 공간, 나다운, 나를 위한 일을 할 여유 없는 공간일 수밖에 없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대개 물리적, 심리·정서적으로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원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보고된다(김희진 외, 2018:34).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가사 및 육아 노동을 청소년에게 전담하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기도 했다.

첫째 언니랑 같이 살 때 아기랑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학교 끝나면 조카가 이제 학교 끝나고서 집 도착하면 5분 뒤에 조카 태권도 마중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중 나가서 개 데리고 온 다음에 그리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렇게 하고. (...) 첫째 언니네 집은 조카 돌봐야 되니까 그리고 언니가 한 번씩 막 솔 마시고 싶을 때 있거든요. 좀 나이가 어려서. 그래 가지고 그리고 싶으면 그때 새벽 엄청 늦게 오거나 자고 있을 때 오거나 그때 한 번 엄청 늦게 와서 저도 학교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온 거예요. (...) '나는 가야 된다' 해 가지고 나는 갔거든요. 조카 놔두고. 근데 진짜 그때 한 번 조카가 밖에 나가 가지고.(2023. 8. 30. 재선 1차 면담, 3쪽)

(집안일을) 안 해요. 빨래할 거리가 있으면 빨래 좀 해! 하면서 저 시키고 설거지해야 된다 그러면 설거지 좀 해! 해 가지고 시키고, 방 좀 치워, 하면 방 치워줘야 되고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자기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돈을 버는데. 그냥 집 나가서 나 혼자 사는 게 좀 더 집을 좀 더 깔끔하고 안정적이게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났네요, 죄송합니다.(2023. 9. 7. 현빈 2차 면담, 20쪽)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학대와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가능한 견디고자 했다. 채선은 “엄마가 없어지면 못 살 것 같아서(2023. 9. 26. 채선 1차 면담, 1쪽)” 담임 교사가 가정 폭력 신고를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절대적으로 만류했다. 그것은 청소년 시기 절대적으로 보호자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까닭이다. 실제로 혜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심하게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는 경제적, 물리적 지원이 컸기 때문에 당장에는 집을 나가는 것이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

우선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좀 심하게 맞았는데 그때마다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집에서 성인이 되면 꼭 나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사건이 하필 이제 그날 터지게 됐고, 그래서 집을 나오게 됐죠.(연구자: 그전에는 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부모님 엄마한테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커서 그리고 사실 나가봤자 저한테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2023. 8. 18. 혜진, 1차 면담, 1쪽)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즉 탈선과 비행에 의한 탈가정일 것이라는 편견⁶⁰⁾과 달리 청소년의 탈가정은 가정에서 폭력과 학대의 경험이 반복되고 더 이상 그 가정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하게 되는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방임 : “저런 집구석에 처넣냐고 사람을”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다양한 방임을 경험하기도 했다. 강선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집의 상태를 “쓰레기 산”이라고 표현할 만큼 집 안에 쓰레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병원 진료로 인한 치료비 부담으로 폭언을 듣기도 했다. 이런 가정은 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주거일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공간이다.

이제 저희 집이 청소를, 애가, 초등학생 애가 이제 쓰레기 주워서 버릴 줄은 아는데 쓰레기 봉투 사와서 묶고 담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그냥 쓰레기 산이었거든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도 될 정도로.
(2023. 8. 30. 현빈 1차 면담, 8쪽)

채선의 경우, 초등학교 2학년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채선에게는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일이지만 채선의 보호자는 해당 지역센터가 아니면 방과후에 어린 채선을 맡길 곳이 없었던 까닭에, 문제를 조용히 덮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에 응했다. 심지어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다녔다. 채선은 가정 안에서 가족으로부터의 폭력은 물론 가정 밖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방임, 물리적 폭력 등의 가정 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불안, 공포, 억압 등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장덕희, 2004). 가정 안팎에서 적절한

60) 가출이 범죄로..집 나왔다 ‘피의자’되는 청소년들(동아일보, 2023.6.14.)



보호를 경험하지 못했던 채선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귀던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경험하기도 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던 공익요원 분이 저를 성폭행하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 근데 이제 거기 센터에서는 아직 어린애니까 잘 모를 거다,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겠다 이번만 주의를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를 밖에서 몰래 들었거든요. 너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 계속 다녔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2023. 9. 26. 채선 1차 면담, 2쪽)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은 방임은 비단 가정 내 보호자로부터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앞서 채선의 경우 보호자와 지역아동센터의 담당자가 모두 채선이 겪는 성폭력 피해를 방임한 것처럼, 방임은 가정 밖의 보호체계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예컨대 지성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냥 가정 내 사안이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그냥 가버렸다.

심지어 다른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하는 아버지를 검거하지 않고 신고자를 다시 집으로 보내려고 했었다. 이에 분개한 다른이 문제제기를 하고 서야 여성센터로 인계해주었다.

집에 있을 때. (친부가)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개지랄하길래.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 집 안에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여동생이.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또 문고리 박살내면서, 개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개가 앞다리가 두 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개 막 울고 있고, 여동생은 막 진짜, 여동생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개도 울고 있고. 그래서 야이, 씨발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신고를 한 번 했거든요?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와 가지고 저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가정 내에서 사안이니까 해 줄 수 있는 거 없다고 그냥 갔어요.(2023. 8. 31. 지성 1차 면담, 21쪽)

연구자 : 근데 그 도망가는 아빠를 경찰이 잡지는 않았어요?

다운 : 네. 안 잡고 그냥 ‘가시는데요’ 이러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시라고 그냥.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열이, 열이 받았어 가지고. 그때 아니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는데 왜 다시 저런 집구석에 처넣냐고 사람을. 이게 만약에 더 심해지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거기 여성센터가 거기 가서 하룻밤 자고 이제 거기서 연결해주는 미혼모 센터 들어와서 대략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23. 8. 21. 다운 1차 면담, 6-7쪽)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었고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렇다 보니 경찰 신고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일들도 발생한다(김잔디, 2022:520). 결과적으로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에게 경찰의 방임은 심각한 위협으로 작동하게 된다.

다. 자기결정권의 침해 : “(문을) 닫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가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경우도 허다했다. 특히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보호자에게 밝혔을 때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선기가 보호자에게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야기했을 때 보호자들은 “너는 내 아들 아니”라거나 “여자를 좋아해야지 뭐 남자를 좋아”하느냐고 반응을 보였고, 이후 성적지향에 대한 강요가 지속되었다. 혜진의 경우에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어머니에게 맞았고 그 일을 계기로 탈가정하게 되었다.

제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제가 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나 게이고 남자 좋아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너 내 아들 아니라고, 너 내 아들은 여자를 좋아해야지 뭐 남자를 좋아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배신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래서 제가, 그 기점을 당시로 좀 잘 너무 같등이 많다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탈가정을 그때 시작한 거죠.(2023. 9. 2. 선기 1차 면담, 3쪽)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던 와중에 이제 그거를 엄마한테 들켜서 집을 나오게 됐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건데. 어찌 됐든 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맞아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성 정체성이 그래서 때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또 그 분 입장에서 맞을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2023. 8. 18. 혜진, 1차 면담, 2쪽)

가정 밖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감시를 당하거나 일상에 대한 통제를 경험한 경우도 많았다. 강민은 집에 있는 동안 어머니로부터 감시를 받았고 강민의 어머니는 수시로 방에 들어와서 언어폭력을 행했다. 혜진의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무엇이든 잘하기를 요구받았는데, 자신의 학창시절을 “학원 인생”이라고 표현하기



도 했다. 일례로 혜진이 그림을 그리면 “너는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면서 그림을 다 지워버렸는데, 그 경험으로 인해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었고 어머니 앞에서 주눅 들고 긴장하도록 만들었다.

엄마가 항상 집에 있었거든요. 밖을 잘 안 나가셔 가지고 하루 종일 저를 감시를 하시는 거예요. 방에 혼자 있고 문을 닫고 있어도 언제 엄마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 막 자기 기분 나쁜 거를 저한테 막 뭐라고 할지 모르고 (...) 그냥 닫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뭐 해 이러면서 벌컥 열고 들어와 가지고 그냥 문 열어놓고 나가고(2023. 8. 23. 강민 1차 면담, 4쪽)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걸 하면 옆에서 자꾸 감시하면서 너는 왜 그림을 이렇게 그리냐고 다 지워버려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물론 잘 그릴 수도 있겠지만 잘 그려봤자 얼마나 잘 그리겠어요 사실. 근데 자꾸 그런 식으로 간섭하고 하나하나 다 통제하려고 하고. 원가 미술에 대한 흥미가 그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하면 그래도 칭찬받고 재밌고 하는데, 이걸 하면 엄마한테 약간 긴장만 되고,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고.(2023. 8. 18. 혜진 1차 면담 2쪽)

진로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었다. 희강은 중학교 시절 음악 관련 진로를 고민하고 이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폭력으로 돌아왔다. 이후 학업 성적이 우수해 지역 자사고로 진학했지만 학교에서 성적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해를 하기도 했었다. 당시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희강의 부모는 자퇴를 하고 싶다는 희강의 의견을 무시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댄스 학원을 좀 다니게 해달라고 오디션 같은 것도 봐보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다녔는데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셔서 이제 술 드시고 조금 화를 내시거나 때리시거나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2023. 8. 18. 희강 1차 면담, 1쪽)

사실 자퇴도 부모님이 허락 안 해 주셨었고, 서울 가는 것도 허락 안 해주셨었어요. 너가 고등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1년 끓어서 2학년 다시 해라, 이거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2023. 8. 18. 희강 1차 면담, 3쪽)

이수는 비건을 지향하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와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어머니는 비건 실천이나 대학입시 거부 의사를 밝힌 이수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이수는 어머니의 폭언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다가, 청소년 인권 활동을 하면서 관련 책들을 읽게 되면서 인권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수는 인권 감수성이 생긴 이후로 집에서 지내기가 힘들었고, 집안의 모든 것들을 ‘혁명의 대상’처럼 느끼게 되었다.

중1 후반 때 집에서 있다가 제가 한 중3쯤부터 비건을 지향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말하자면 엄격한 비건 지향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고 근데 엄마랑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부딪히니까 그것도 있었고 여러 입시 관련해서 대학 안 가는 것도 그렇고 갈등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한 폭언이 굉장히 심했었어요.(2023. 8. 20. 이수 1차 면담, 3쪽)

책 읽고 하면서 되게 훨씬 더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 같아요. 집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인권 감수성 같은 것이 훨씬 전보다 살아나다 보니까 이게 집에서 지내기가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다 혁명하고 싶은 그런 들끓는 마음이 된 거죠.(2023. 8. 20. 이수 1차 면담, 8쪽)

연구 참여자들은 보호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가 필요했지만 그들의 보호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 참여자의 성적지향, 진로, 가치관에 의한 실천 등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려고 했다. 이와 같은 보호자의 통제와 억압 속에서 청소년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안전하게 느끼기 어렵다.

2. 탈출하거나 쫓겨나거나

가. 탈출 :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가정 밖 청소년들은 ‘그 가정’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싫어서”(2023. 8. 29. 우중 1차 면담, 9쪽) 최대한 집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어리다 보니까”(2023. 8. 29. 우중 1차 면담, 7쪽) 10대로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은 “성인이 될 날만 기다리”게 되었



다고 이야기한다(2023. 8. 12. 미나 1차 면담, 3쪽).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대로 살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되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집을 나오게 된다.

해은은 ‘그 가정’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긴장과 공포의 공간으로 기억한다. 몸에 새겨진 경험들에 의해 어머니의 발소리만 들려도 극도의 긴장을 느꼈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계속 여기 못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다.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당연히 뭐 기분 좋고 이런 날도 있겠지만 피곤하기도 하잖아요. 아무리 어리고 해도 가끔은 피곤한 날도 있고 쉬고 싶은 날도 있는데 그럴 때 그게 안 되니까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왜 이렇게 불편할까? 뭐가 이렇게 불편하지?’ 하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몸에 밴 그 습관이나 각인된 그런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한 공포 (...) 걸어오는 발소리나 그런 거 하나하나에 엄청 긴장되고 심장 뛰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계속 여기 못 있겠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2023. 9. 8. 해은 1차 면담, 3쪽)

‘그 가정’에서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안전하다고 느끼기 어려웠기에 혹시라도 집을 나가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이들이 있었다. 채운은 집을 어떻게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정보를 모았으며, 미나는 자신을 내버려 두면 “자살할 것 같아서” “스스로 격리”하기 위해 기관을 찾아가기도 했다.

제가 자살할 것 같아서 이제 저를, 저를 이제 지켜보고 그렇게 저 스스로 격리하러 간 느낌이었어요. 그냥 살려고 도망쳤는데 그냥 뭐 그냥 막 찜질방 가거나 막 이렇게 약간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 가서 좀 그래도 좀 나아지고 싶어서 나름 희망적인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2023. 8. 12. 미나 1차 면담, 7쪽)

네 많이 찾아보고 다녔으니까요. 그냥 아마 그만큼 집이 그냥 정말 집에 있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매일 검색해서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 집을.(2023. 8. 18. 채운 1차 면담 9쪽)

해린은 부모의 이혼 이후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가 “진절머리”가 나서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수의 경우에도 폭언과 때때로 폭력을 행사하는 어머니로부터

터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집을 나갈 수 있도록 “간단한 짐들을 싸” 놓기도 했다.

아빠랑 저랑 이제 둘이서 살았는데 이제 아빠가 예전부터 엄마랑 이제 이혼을 하시고 좀 술에 많이 의존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갖고 이제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점점 커가면서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딱 저 시점에서 아빠가 좀 폭행을 하시고 약간 ‘그냥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돈 모아둔 거 조금 있어서 그러고 이제 바로 나온 거죠. 물리적인 폭력이 자주 있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계속 술을 마시면 계속 폭언하시고 이제 ‘너가 엄마 닮아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시고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가 있었는데 ‘너가 개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 많이 하셔서 또한 좀 좀 지친 것도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예 그렇게 폭력까지 해버리시니까 그냥 완전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2023. 8. 25. 해린 1차 면담, 1쪽)

폭언을 하거나 하는 인물이 엄마밖에 없긴 했는데 이제 엄마가 폭언을 하다가 물리적인 폭력을 했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마지막이었었는데 근데 그러고 안 하다가 잠깐 쉬고 있다가 갑자기 고1 후반쯤에 뺨을 이렇게 때려서 또 시작되는 건가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나를 지켜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쉼터를 가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뺨 맞기 전날에 한 일주일 정도에도 그게 상황이 점점 고조되니까 계속해서 고조되니까 뭔가 언젠가 돌발적으로 떠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단한 짐들을 싸놨는데 (...) 어쨌든 다행히 짐을 수월히 미리 싸 놔가지고 뺨 맞은 길로 바로 바로 현관문을 열고(...)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3쪽)

미나, 채운 등과 같이 미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온 경우도 있었지만 긴박한 위험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나온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주혁과 가족들은 아버지로부터 일상적인 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정말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외숙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집을 나왔다. 혜진의 경우에도 성적지향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의 폭력이 있었고,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맨발로” 뛰쳐나왔다.

주혁 : 그래서 이제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뭐 장문으로 뭘 보낸 거예요.

연구자 : 뭐라고 보내셨어요?



주혁 : 뭐 왜 말 안 듣냐. 내가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안 받고 남들은 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왜 넌 책이라도 안 읽느냐. 다쳤는데 어떻게 책을 읽어. 제가 그냥 이래서 그냥 한마디로 그냥 그냥 '어이가 없네'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냥 그냥 메시지로 그냥 '어이가 없네'. 그냥 그런 소리만 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죽여버리겠다고 그때 녹음했었거든요. 아직도 녹음이 있긴 한데 들어, 다시 옛날에 다시 들어보니까 완전 그냥 저 죽이겠다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더라고 차 시동 거는 소리까지 들린거예요. 근데 이때 진짜 죽겠구나. 그래서 그때 또 외숙모한테 도와달라고 해 가지고 외숙모 집으로 갔어요.

(2023. 9. 19. 주혁 1차 면담, 9쪽)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대화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셔서 나는 대화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어어 여기 손목을 결박하더니 그 밧줄로 묶은 건 아니지만 엄마가 힘이 워낙 세셔가지고, 그래서 목 조르고 눕혀서 때리고 그렇게 하셨죠. (...) 그때 딱 신고를 했는데 이제 여자친구는 이 상황을 다 모르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전화를 하려다가 핸드폰을 제가 도망가는 상황에서 핸드폰도 이렇게 버려지고 맨발로 막 뛰었거든요. 그 자리를. 맞고 나서(2023. 8. 18. 혜진 1차 면담 2쪽)

연구 참여자 가운데 성소수자 청소년의 많은 경우가 보호자로부터 연구 참여자의 성적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수용 받지 못하고,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억압을 경험했으며 그러한 일들이 가정 밖으로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선기 역시 어머니가 자신의 성적지향을 부정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으며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다.

근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연구자: 똑같았어.) 미안하다. 그러니까 누나한테 연락이 오고 누나가 전화하는데 엄마가 바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돌아와라, 안 그럴게, 상관 안 할게, 너 인생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연구자: 어떻게?) 왜 너 게이냐고. 왜 또 남자 좋아하냐고, 그렇게 부담감 느껴지는 말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갔죠.(2023. 9. 2. 선기 1차 면담, 17쪽)

이처럼 탈가정의 과정은 집보다 더 나은 곳을 적극적으로 찾는 독립의 과정이라 기보다는 준비된 대안이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 탈출의 과정인 경우가

많다. 그런 까닭에 가정 밖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피해 생존자’이며, 그들에게 부당하게 덫씌워진 이미지를 거둬 낼 필요가 있다(한낱, 2020).

나. 쫓겨남 : “못 살겠으니까 그냥 자기 신고해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정 밖 청소년 연구 참여자들은 대개 보호자들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등 주거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자녀를 직접 시설에 맡기거나 심지어는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당해서 자녀를 시설로 보내기도 했다.

혼자서 자녀 셋을 키우던 우중의 아버지는 가정폭력으로 스스로 신고하고 우중과 형제를 보육원에 보냈다. 우중은 보육원에서 1년 정도 지내다가 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아버지의 폭력과 방임은 달라지지 않았다. 희강의 경우에도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어머니가 시설로 보냈다고 이야기했다 (2023. 9. 27. 희강 1차 면담 2쪽).

우중: 음… 그쵸, 아무래도 그때 보육시설에 들어갔던 것도 폭력 때문이긴 했었거든요.

(연구자: 아버지의.) 네. 그때 아빠가 너네랑 못 살겠으니까 그냥 자기 신고해라
그리고 그냥 경찰 불렀었고.

연구자: (아버지) 본인이 직접?

우중: 네. 그러다가 그것도, 그때 약간 빌라 이런 데 살았는데 이웃 쪽에서도 너무 시끄럽다.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하니깐 그때 동사무소 약간 이런 쪽에서 그럼 그냥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냐 해 가지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시설을) 나왔을 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8쪽)

미나는 어머니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서 지내다가 그곳에서 가정복귀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면서 다시 집에서 지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어머니가 미나에게 화풀이를 하는 일들이 잦았다. 그러다 어머니가 이사한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미나를 집에서 내쫓았다.

부모님하고 크게 한 번 싸웠는데 부모님이 그때 이사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다른 지역으로
너 집 나가라. 그리고 그 이사 가는 주소도 안 가르쳐주겠다. 그리고 너 그냥 6월 달까지



그냥 짐 다 빼라 여기 새로운 사람 온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2023.

8. 12. 미나 1차 면담, 3쪽)

효선의 경우에도 쉼터와 그룹홈을 거쳐 주거독립을 했었는데 아버지로부터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았고, 가족이 그립다는 생각에 집에 들어갔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문전박대를 당했다.

저희 부모님은 거짓말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아지 보러 한번 갈게. 이러고 나서 학교 끝나고 강아지를 보러 진짜 갔었어요. 겸사겸사 옷도 챙길 겸. 근데 문 비밀번호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쳤는데 안 되길래 문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새엄마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아빠는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니가 뭔데 여기서 왜 왔냐고 니가 여기가 니네 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새엄마는 지켜주겠다고 그랬으면서 그냥 바깥이 훤히 보이는 방문을 열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나갔죠. 그때 이후로 전화 안 했던 것 같아요.(2023. 8.

14. 효선 1차 면담, 5쪽)

반면 어머니와 함께 사이비 종교 시설에서 지내다가 담임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강제로 분리 조치된 경우도 있다. 은수는 종교시설에서의 폭력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경찰 신고를 꺼렸던 것은 “잘못돼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무서웠다고 했다.

은수 : 전혀 없었어요. 애초에 저는 나올지도 몰랐고 나가더라도 한 성인이 되고 나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신고를 해서 다음 날 학교를 갔더니 바로 경찰로 넘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된..

연구자 : 그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그냥 바로 그곳을 신고하셨어요?

은수 :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폭행 이런 것만 얘기를 했을 때에는 성인 되고 네가 힘이 생겼을 때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연구자 : 선생님이랑은

은수 : 근데 나가기 전날에 이제 제가 성 관련한 것도 말씀드리니까 다음 날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나오게 된 거예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6-7쪽)

대개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자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했고 그런 까닭에 자녀를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 보내거나 강제로 독립을 시키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그 가정’으로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은 어쩌면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일일지도 모른다.

제2절 | ‘그 가정’ 바깥의 주거 상황

1. 불안정한 주거

가. 떠도는 삶 : “부산, 서울, 대전을 하루 만에 왔다갔다”

‘그 가정’을 탈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는 “일단 지낼 곳을”(2023. 8. 29. 우중 1차 면담, 16쪽) 구하는 것이다.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사이버청소년상담센터 1388을(2023. 8. 31. 효주 1차 면담, 17쪽) 통해 쉼터 정보를 알아보거나 SNS(2023. 8. 20. 이수 1차 면담, 4쪽) 성소수자 온라인 커뮤니티(2023. 9. 7. 현빈 2차 면담, 44쪽) 등을 통해 잘 곳을 찾는다.

연구자 : 가출 팸은 어떻게 알고 가시게 되셨어요?

효림 : 검색 페이지 검색.

연구자 : 페이지 검색?

효림 : 폐북에

연구자 : 아 폐북에 그런 페이지도 있어요?

효림 : 지금도 있어요.

(2023. 8. 20. 효림 1차 면담, 9쪽)

저마다의 사정으로 거리로 밀려난 청소년들은 이들에게 잘 곳을 제공해주는 ‘친구 또는 선·후배 집’과 ‘여관/모텔/달방/월세방’, ‘청소년쉼터’, ‘찜질방/고시원/PC방’에서 지내거나 ‘건물이나 길거리 노숙’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황여정 외, 2020).



실제 면담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기는 ‘그 가정’을 나온 이후 20여명의 친구 집을 오가며 숙식을 해결하거나 원룸텔, 쉼터 등을 이용했다. 그조차 어려울 때는 컴퓨터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선기: 원룸텔은 그냥 아무도 저를 못 받아줄 때 짐질방이나 뭐 원룸텔이나 쉼터나 그런 대를 갖는데, 다 저한테는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짐질방은 미성년자니까 안 돼. (연구자: 그쵸, 그쵸.) 그리고 쉼터는 막 규칙 너무 엄격해, 규칙 너무 많아, 원장 너무 좀 엄격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진 그냥, 무인텔 같은 경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연구자: 그쵸. 얼마였어요?

선기: 한 박에 5만 원.

연구자: 그쵸. 평일이어도. (선기: 네. 주말은 더 받고.) 맞아. …그게 원룸텔에, 그럼 짐질방, 쉼터, 원룸텔도 한 번씩 다 가보긴 했던 거예요?

선기: 짐질방은 아예 안 받아줬어요.

(2023. 9. 2. 선기 1차 면담, 18-19쪽)

가정 밖 청소년은 잘 곳을 찾아 짧은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동하며 낯선 사람, 낯선 환경에 노출되고 적응하는 일을 반복해서 경험한다. 석달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다는 우중은 이동하는 삶에 대한 피로감을 이야기한다.

우중: 네. 잠깐이라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부산에 있다가 서울 갔다가. 부산, 서울, 대전을 하루 만에 왔다갔다 한 적도 있거든요.

연구자: 진짜? 그건 왜?

우중: (웃음) 이게 하루…가. 아침에 부산에 있다가… 그러니까 이 낮에 지낼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산 지인이 낮에 일이 있어서. 그래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서는 낮이 되지 만 밤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전은 밤은 되는데 낮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뻥 돌아서 대전까지 가고.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49~50쪽)

지성은 이렇게 떠도는 삶을 “진짜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는 “야생”(2023. 8. 31. 지성 1차 면담, 15-16쪽)이라고 표현한다. 김현경(2015:286-287)은 장소를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이야기한다. 인간관계와 그 안에서 일어나

는 역동, 기억이 우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볼 때 장소의 이동을 통해 겪는 의도적인 망각과 인간관계의 급격한 재편성은 자아가 불연속적이라는 느낌을 불러 일으킨다.

나. 관계 의존적 주거 : “밖에서 지낼 수는 없으니까”⁶¹⁾

현빈은 ‘그 가정’을 나올 때 “뭘 준비해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2023. 8. 30. 현빈 1차 면담, 16쪽). 탈출하듯 나온 ‘그 가정’에서는 “많은 걸 가져갈 수 없었”고(2023. 8. 30. 송선 1차 면담, 7쪽) “해봐야 핸드폰 충전기, 옷 정도”(2023. 8. 29. 우중 1차 면담, 50쪽)를 가지고 나와야 했다. 이렇게 밀려나듯 거리로 나온 청소년은 각자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살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존재는 ‘친구’이다. 이수는 “제 상황을 보고 발견하고서는 와라라고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해서”(2023. 8. 20. 이수 1차 면담, 3쪽) 지낼 곳을 마련했다.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청소년이 ‘그 가정’을 나온 이후 친구, 선배,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지인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그때 친구 집을 그냥 무작정 갔어요. (...) 그 친구 집에 되게 막 개방적이라서 또 친구 부모님도 좋으시고 그러다가 이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집 나왔다. 그리고 이제 나 여기 있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 달 동안 친구 집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2023.9.19. 주혁 1차 면담, 9쪽)

타인의 호의에 기댄 주거지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호의는 늘 변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 호의가 늘 ‘선의’에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현빈은 집에서 함께 지내게 해준다면 “불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연락”했다고(2023. 8. 30. 현빈 1차 면담, 18쪽)한다. 그런 까닭에 타인의 호의에 의존하는 주거는 불안정하고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연구자 : 왜 친구 집에서 살다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지?

희준 : 여자친구를 제 친구 이제 처음에 말 걸었던 애가 여자였는데 개랑 이제 사귀게 돼가지고 개가 계속 애 집에 같이 있으니까 세 명이서 맨날 같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그때 불편해서 이제 그 여자애랑 싸우고 이제 나온 거죠.
(2023.9.2. 희준 1차 면담, 8쪽)

61) 2023. 9. 2 시영 1차 면담, 7쪽



살 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가출팸⁶²⁾’이라고 말하는 주거·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가출팸은 가정 밖 청소년은 외로움, 경제적 궁핍함, 주거계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함께 돈을 모아 보증금, 월세를 해결하고 ‘가족’ 하면 떠오르는 총합적인 기능들, 즉 친밀적 유대, 상호의존, 돌봄, 경제적인 협조 등을(김순남, 2022:174) 가출팸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해결하는 것이다.

연구자 : 네. 그 고시텔을 이제 17세 이전에 좀 지내고 이려셨을 때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은 남자친구분이랑 같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혼자도 있으셨던 시간들이 있으신 거예요?

시영 : 남자친구랑 좀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그랬을 때 비용은 거의 다 시영님이 부담하신 거예요? 아니면?

시영 : 거의 둘이서 부담을 하다가 이제 룸메이트가 한 명 더 있어 가지고 그 한 명이 이제 조금 일을 하면서 더 돈을 보태주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럼 그 고시텔에 3명이서 지내셨던 거예요?

시영 : 그렇죠. (...)

연구자 : 그분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시영 : 제가 17살이었으니까 18살이에요.

연구자 : 근데 그러면은 혹시 남자친구분은 또 10대셨어요?

시영 : 네. 다 친구분도 그때.

(2023. 9. 2. 시영 1차 면담, 7쪽)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팸 안에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피해에 노출된다. 효림이 지냈던 가출팸에서도 ‘돈’이 문제였다. 가출팸에서 효림은 성매매 “어플”을 통해 돈을 벌 것을 권유받았다(2023. 8. 20. 효림 1차 면담, 11쪽). 주거와 생계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선호하는 청소년도 만날 수 있었다. 쉼터를 나온 호수는 “일단 최우선으로 숙식이 제공”되는(2023. 9. 26. 호수 2차 면담, 2쪽) 일자리를 찾았다.

62) 일차적 보호 체계인 가족에게서 벗어난 청소년들이 모텔, 고시원, 원룸 등에서 무리를 지어 가족과 같이 유기적으로 생활하는 형태 (유서구. 2017. 가출팸 경험과 비행행동의 차이 . 『비판사회정책』, 54쪽.)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청소년의 주거 불안은 지속적으로 포착된다. 유성은 “학교 안 다니면 있을 수가 없다”는(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3쪽) 시설의 이야기를 듣고 중도퇴소하게 되었다. 효주는 “시설 입소자들끼리 연애해가지고”(2023. 8. 31. 효주 1차 면담, 11~12쪽) 퇴소당했다. 시설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지키지 못하면 퇴소나 전원이란 방식으로 청소년들은 주거지를 잃는다. 또한, 대다수 시설이 거주기간의 제한이 있고 청소년이 원하는 기간만큼 살 수 없어 청소년의 주거 불안을 야기하곤 한다.

연구자: 그때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어떻게 지낼까? 이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현빈: 이제… 그때 당시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이제 쉼터가 쭉 있을 수 있게 바뀐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OO 쉼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했거든요, 9개월밖에 못 있으니까.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 그럼 그냥 마음 편히 있어도 되겠다 그랬죠. 거기 쉼터에 있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이 9개월이었으니까. 근데 9개월 가까워질수록 이제 그게 바뀌지 않고 그 현재 체제를 그대로 가니까 저는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었죠.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는 OOO(쉼터)로 갔는데 OOO는 저랑 너무 안 맞았어요.

(2023. 9. 7. 현빈 2차 면담, 23쪽)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이 제한적인 지원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주거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이고 불안정함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선택과 이동을 단순히 자발/비자발로 이분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의 주거 선택과 이동이 청소년이 놓인 사회적 취약성과 연관되어 있음은 분명하다(추주희, 2016:47).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4호에는 불리한 여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에게 우선권을 제공함은 마땅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불안은 단순히 청소년의 일탈, 비행으로 간주되며 정책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 ‘그 가정’과 ‘시설’ 사이

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 시설: “시설 말고는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의 다수가 청소년쉼터로 대표되는 시설 거주 경험 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쉼터는 “따뜻한 집에 따뜻한 잠자리, 따뜻한 옷에 밥 잘 나오 는”(2023. 8. 16. 호수 1차 면담, 12쪽), 기본적인 보호가 제공되는 공간으로서 힘 들면 도망칠 수 있는 “도피처”(2023. 9. 7. 현빈 2차 면담, 22-23쪽)가 되어줄 수 있다. 김은정 외(2019)의 연구 또한 거리 생활에 지친 가정 밖 청소년이 휴식을 취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쉼터 종사자와의 관계 안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끔 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가 자발적으로 전화했을 때 19살 한 3월... 밖에서 거의 한 일주일 생활을 했어서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3월달이면 아주 출기도 하니까 저도 못 견디겠다 해서 오늘 그 상태로 바로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2023. 8. 8. 강선 1차 면담, 3쪽)

연구 참여자들은 쉼터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입소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지적한다. 고유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설 말고는 선택권이 없는 것 같아요. 달리 생각나는 게 없어요.”(2023. 9. 11. 고유 1차 면담, 11쪽)라고 말했다. 다미 또한 시설의 입소과정에 대해 선택이 아닌 생존,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2023. 8. 21. 다미 1차 면담, 24쪽) 쉼터에 갔다고 이야기한다.

당시 친구 집에서 지냈는데 아무래도 그것도 사실 좀 눈치가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계속 이제 친구 집 말고는 진짜 갈 데가 너무 없으니까는 게다가 그때 당시에 제 모아둔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뭔가 집을 계약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을 바에는 차라리 그냥 쉼터를 가서 지내는 게 친구한테도 너무 민폐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2023. 8. 25. 해린 1차 면담, 5쪽)

가정 밖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곳이 시설밖에 없지만 입소 가능한 시설을 찾기도 어렵다. 서울 17개, 경기 31개, 지역의 쉼터 수는 평균 5~7개로 전국 138개소가 있다.⁶³⁾ 청소년이 곧바로 입소하기 어려운 중장기 쉼터와 이동형 쉼터를 포함한 수

치료 실질적으로 ‘그 가정’을 나온 청소년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체감상 더 적을 수 밖에 없다. 이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커 현재 거주중인 지역에 입소 가능한 쉼터가 없어 입소 가능한 쉼터를 찾아 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청소년은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거나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아 입소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효주 : (1388예) 시설 한 번 알아봐달라고.

연구자 : 시설 한번 알아봐 달라고 여기 OO 나올 때 연락하신 거예요?

효주 : 네.

연구자 :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어요?

효주 : 아니요. 그냥 너가 먼저 다른 시설에 가기엔 너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입원 치료를 받고 와라 하는 곳들이 많아 가지고 입원 치료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연구자 : 다른 데 연락을 했을 때도? 이제 1388이 알려주신 곳에 연락을 하신 거예요?

효주 : 그건 아닌데 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라고만 얘기해 가지고.

연구자 : 다른 기관에서?

효주 : 네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388이 대신 전해주더라고요.

(2023. 8. 31. 효주 1차 면담, 17쪽)

더이상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는 데는 없다고 했었거든. (연구자: 누가?) 쉼터에서. 왜냐하면 내가 이미 소문이 많이 안 좋게 나 있다고 이미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쉼터에서. 이제 어디 가려고 쉼터에 전화하면 ‘저희 두 명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이름이’ ‘찬선하고 이제 땅땡땡이요’ 이러면 ‘이 사람은 되는데 찬선이는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좀 약간 좀 문제가 좀 많으네요’ 막 이러면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3. 9. 11. 찬선 1차 면담, 13쪽)

한편, 연구 참여자들은 쉼터 입소를 꺼리게 되는 이유로 ‘부모 동의’ 문제를 지적했다. 우중은 주변인들로부터 “쉼터 이런 데는 바로 (부모에게) 잡혀간다”(2023. 8. 29. 우중 1차 면담, 19쪽)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정폭력 피해로 쉼터를 찾은 찬선은

63) 2023. 11. 20일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청소년쉼터 현황

부모에게 입소 동의를 받을 때 가해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될까 “무서웠”다 (2023. 8. 31. 창선 1차 면담, 5쪽). 쉼터 입소 시 발생하는 ‘부모 동의’ 문제는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거소(居所)지정권이 친권자에게 있어 발생한다(「민법」914조). 또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만 18세 미만의 실종아동 등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처벌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19:59). 때문에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청소년은 72시간 내에 쉼터에서 퇴소해야 한다(여성가족부, 2023).

수명 : 그리고 저는 중장기쉼터에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좀 웃겨요. (연구자 : 그러게) 부모가 싫어서 못 미더워서 무서워서 가는 건데 가려면 부모님 동의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 그렇죠. 맞아요. 그게 그게 큰 문제예요.

수명 : 일단 거기서 저는 생각해 봤는데 할 거면 상황을 들어보고 자기 재량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연구자 : 그러게.) 동의서를 받더라고요. 진짜 진짜 싫었어요.

(2023. 8. 31. 수명 1차 면담, 13쪽)

가정 밖 청소년의 유일한 선택지인 시설이 청소년들에게 ‘선택지’조차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진 외(2018)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를 초중고 학생을 중심으로 5만6천여 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탈학교 청소년과 19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가 훨씬 클 것이며, 실제로 탈가정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규모는 12만 명에 이른다(허민숙, 2021). 하지만 이들 중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3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는 탈가정 청소년의 상당수가 갈 곳이 없음을 의미한다. 시설 수의 부족, 부모 동의,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은 입소거부를 경험한다. 입소의 선택권조차 청소년에게 있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시설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거부한 가정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했듯 이 제65회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대안 양육 지침」을 통해 아동의 시설보호를 최

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시설은 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적정한 주거지를 찾는 동안 머물 수 있는 ‘정류장’이지 주거 공간이 될 수는 없다. 연구 참여자의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쉼터 입·퇴소를 반복 경험하거나 시설에서 시설로 이동하는 거주패턴을 보여준다. 이는 시설을 퇴소한 이후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의 부재/빈약함 때문이다.

나. 원가정 복귀라는 미션 : “그냥 무조건 가정 복귀시키는 게 실적이니까”⁶⁴⁾

청소년 정책에서 원가정 복귀라는 단편적인 접근으로 청소년의 탈가정 상황만을 소거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청소년은 계도의 대상이며 청소년의 탈가정을 청소년 개인의 일탈, 비행으로만 바라보는 인식,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그 정책의 저변에 깔려있다. 청소년쉼터의 목표와 성과 또한 청소년의 ‘안전하고’, ‘신속한’ 원가정 복귀에 맞춰져 있다. 청소년쉼터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개별의 상황과 의사에 상관없이 원가정 복귀를 강요받는다. 이수는 쉼터에서 가정복귀를 이야 기할 때마다 가정 복귀는 안 된다고 “계속 필사적으로 어필”(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2쪽)해야 했다. 일시쉼터에 거주하던 다미는 가정 복귀를 강요하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 주변인들의 압박 속에서 “가정 복귀는 내가 진짜 죽어도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단기(쉼터)가 낫겠다 싶어서 차라리 단기(쉼터)를 선택했다.”(2023. 9. 4. 다미 1차 면담, 9-10쪽).

쉼터 측에서 계속 가정복귀를 푸시를 했었어요. 저를 왜냐면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버리고 애를 버리고 애를 때리고 좀 심각하고 심지어 애를 칼로 찔러서. 경찰에 그러니까 감옥에 간 그런 애들도 있으니까 너 정도면 양호하다 가정 복귀해라.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푸시를 하고 살짝 괴롭히셨어요. (쉼터 선생님 중에) 저를 가정 복귀하라고 일부러 괴롭히신 분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뭔 말을 하면은 무시한다던가 일부러 자기 입으로 말하더라고요. 내가 너 이제 제가 가정 복귀 한다고 하니까. 어 이제 그만 괴롭혀도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2023. 8. 12. 미나 1차 면담, 3-9쪽)

일부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복귀를 당하지 않고 쉼터에 있기 위해 자신의 피해자성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도 하는데, 이는 청소년 당사자의 판단

64) 2023.8.20. 이수 1차 면담, 15쪽



과 의사가 아닌 타인에 의해 쉼터 거주 가능 여부가 판단되고 결정되는 까닭이다. 이수는 쉼터에서 머물기 위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자극적이게 편집하고 가족을 ‘학대자’로, 자신을 ‘피해자’로 정체화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청소년과 ‘그 가정’의 관계는 가해자-피해자로 단순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관계성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수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이 이후 가족과의 관계 회복 과정을 더 힘들게 했다고 기억한다.

‘저는 이렇게나 급박한 상황이니까요’를 설명하지 못하면 쫓겨나니까 폭력이 얼마나 잔인했고 막 얼마나 최근이었고 얼마나 반복되고 이런 걸 되게 자극적으로 재구성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도 막 초등학교까지의 물리적인 폭력 경험은 너무 또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또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애는 누구나 다 그냥 맞고 자라는 거를 지나오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겠거니 라고 그쪽에서 생각할 것 같아서 그 얘기는 차마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뭔가 최대한 뭔가 그들의 입장에서 폭력이 될 만한 걸 고르고 고르다 보니까 그냥 좀 폭언하고 뺨 한대 맞고 그것에 핫김에 나와 버린 청소년 1이 되어버린 거예요. (...) 내 학대 경험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지길 하겠지 나는 좀 더 자극적으로 msg를 칠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왜냐면 집에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약간 말하자면 부정수급자가 되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됐고 근데 단계에서는 이제 그거를 훨씬 더 이제 무슨 역할 하듯이 이제 좀 더 해야 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6쪽)

사회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끊임없이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피해는 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어울리는 행동과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은 순진무구하면서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인지, ‘제 뜻’을 하는 사회구성원으로 편입 가능성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은 “부정수급자”(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6쪽)로 간주되어 생존 그 자체를 위협받게 된다.

3. 주거 선택의 권리 없음

가. 강제 입소/퇴소/전원 : “나가라는 데 나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이수는 ‘그 가정’을 나온 뒤 친구집에 머물렀다. 아르바이트를 해 살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원가정복귀와 시설 외에 다른 선택지를 ‘허용’받지 못한 이수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시설입소를 강제당했다.

담임이 너 청소년쉼터로 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게 내 의무다.
 (...) 집으로 돌아가거나 청소년쉼터로 가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다시 정 싫으면 학생부장이랑 교장이랑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찾아가게 위치를 보내라 안 그러면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그냥 그때는 되게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좀 패닉 상태였던 것 같고 어떡하지 이거 청소년쉼터 분위기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통제가 엄청 심하고 그런 거 싫어하는 걸 미리 다 사전 조사를 했었으니까. (...) 그래서 청소년쉼터에 정말 정말 안 가고 싶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쉼터에 가게 되었고 일시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여단기, 여자단기쉼터에 반년 정도 반년 정도 있었고.(2023. 8. 20. 이수 1차 면담, 4~5쪽)

가족폭력 신고 후 갑작스러운 분리와 시설 입소는 청소년들에게 당황스러움과 ‘후회’을 느끼게 한다. 해서는 가정폭력 신고가 가족해체로 이어지며 쉼터에서 생활 했다. 해서는 “괜히 살짝 신고한 것 같아서 좀 후회”(2023. 8. 14. 해서 1차 면담, 3쪽)했다. 해서는 자신을 지지해주던 관계망에서 떨어져 나와 쉼터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다.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주거지를 잊고, 시설로 가야 하는 이는 늘 청소년이다. 주거지를 잊은 청소년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설로 입소당하고 자유 대신 통제당하는 삶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미영은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솔직히 주거가 바뀌는 것보다 그냥 사회가 바뀌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솔직히 왜 피해자가 쉼터에 살아서 숨어 살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잖아요? 왜 욕먹는 건 피해자 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 솔직히 가해자들이 욕 먹고 사람들한테 피해 다니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자: 그렇죠) (...) 어쨌든 비공개쉼터에서 살면서 다 제약을 받았고 어쨌든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던 데도 비공개쉼터여서 거기서도 제약을 받고 이러니까 왜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느낌이 컷죠. (2023. 8. 11. 미영 1차 면담, 14~15쪽)



연구 참여자들은 강제 퇴소/전원에 대해 “통보”(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3-19쪽), “쫓겨남”(2023. 9. 11. 고유 1차 면담, 8쪽)이라고 표현했다. 시설은 기본적으로 ‘규칙’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벌점을 준다. 일정 정도 벌점이 쌓이면 퇴소해야 한다. 시설이 적절한 주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쳐두고서라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주거 공간에 조건을 다는 것 자체도 반인권적이다. 규칙을 잘 지켜야, 학교를 다녀야, 자립 의지가 있어야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다. 때로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강제 퇴소 방법으로 다른 시설로 전원시킨다. 찬선은 어느 날 다른 지역 시설로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일에 옮겨졌다. 찬선은 울며 가기 싫다 말했지만 선택권은 없었다.

갑자기 방송으로 나보고 내려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려갔지. ‘응? 뭐지?’ 하고 내려갔는데 내 짐이 다 싸져 있는 거야. 언니들이랑 같이 있던 곳에 내 짐이 다 싸져 있는 거야. 내 옷이랑 내 앨범이랑 이런 게 다 싸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해서 내가 이제 딱 수녀님이 그러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가 살아’ 그러면서... (2023. 9. 11. 찬선 1차 면담, 6-8쪽)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주거지를 정하는 데 있어 의사를 밝힐 수 없다. 오히려 자신의 주거지를 찾기 위한 시도는 ‘관리의 대상’인 청소년의 돌발행동으로 여겨진다.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의 주거지에 결정을 제한하는 시설에서 “가출”(2023. 9. 11. 고유 1차 면담, 5쪽)을 감행하거나 입소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수는 쉼터에서 자신의 주거 이동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곤욕스러웠던 경험을 나눠주었다.

이수 : 가정복귀 계속 다 그런 얘기들을 하긴 했는데 저는. 저는 여단기(여자단기쉼터)로 갈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고 제가 전화도 다 해봤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할 거지 너가 막 나서고 이럴 게 아니다. (...) 제가 갈 집에 전화를 하는 것이 그렇게 화가 날 일일 수도 있구나.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 약간 제 멋대로 전화를 했다는 거에서부터 저를 되게 저에 대한 회를 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대하기 시작하셨고 직원분이.

연구자 : 그 직원뿐만 아니면 전반적인?

이수 : 전반적으로 저를 좀 더 이상한 애로 보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분이 유독 좀 저한테

퉁명스럽게 더 굴게 됐기도 했고 그러다가 일단 여기는 일주일까지만 받아주는 곳이니까.

(2023. 8. 20. 은수 1차 면담, 12-13쪽)

이러한 쉼터에 눈치에 이수는 “안 나대고 조용히 방에” 있기로(2023. 8. 20. 은수 1차 면담, 12-13쪽) 했다. 쉼터에서 강제 퇴소를 경험한 효주는 “나가라는 데 나가야지 뭐 어찌겠어요.”(2023. 8. 31. 효주 1차 면담, 12쪽)라고 말한다. 이는 시설에서 청소년이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보여준다. 청소년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획득하지 못한 채 수동적인 존재로 있기를 강요 받는다.

나. 원치 않는 이동 : “내 집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치 않는 입소/퇴소/전원을 경험 속에서 청소년들은 한순간에 자신 살아온 터전을 잊게 된다. 은수는 안정적으로 지내던 시설에서 강제 전원을 통보받아 “한 3일 이내에 짐을 싸서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2023. 8. 9. 은수 1차 면담, 21쪽). 예측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주거지 변동으로 가정 밖 청소년은 기존에 맺었던 관계들을 정리하거나 설명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다.

사실 쉼터를 옮길 때 뭔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며칠 사이에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전화해서 나 다음 주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되게 놀라면 서 갑자기 무슨 일 있나 그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지역이 멀어져서 관계가 멀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멀어질 관계였다. 몇 년 동안 만약에 못 만났어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애도 있어서요. (...) 그냥 할머니가 아프셔서 급하게 내려가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2023. 8. 9. 은수 1차 면담, 37-38쪽)

동의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퇴소/전원은 청소년에게 “상실감”을 느끼게하며 “사기”가(2023. 9. 6. 지성 2차 면담, 7-8쪽) 떨어지는 일이다. 현빈은 이전에 거주하던 쉼터에서 거주기간이 끝나 다른 쉼터로 옮겨가야 했다. 현빈은 새로운 규칙,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하는 게 좀 힘들었”고(2023. 9. 7. 현빈 2차 면담, 24-25쪽) 일주일 만에 새로 간 쉼터에서 나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봇은 온전히 청소년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냥 또 이제 내가 낮을 가리는데 어떻게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OO쉼터 왔을 때도 진짜 거의 죽을 죽기 전에 마지막 선택으로 온 거였거든요. (...) 5개월 정도 살아가지고 많이 체력도 많이 쓸여지고 좀 더 밝은 성격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두려운 거죠.(2023. 8. 14. 효선 1차 면담, 8쪽)

효주는 공동생활가정에 들어와 “오래 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이제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2023. 8. 31. 효주 1차 면담, 5-6쪽) 안정감을 느꼈다. 그러나 찬선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공간에서 더 이상 짐을 풀지 않고 싶어했다. 점유의 불안정성은 이곳이 ‘내 집’이 아니라는 감각을 상기시킨다.

근데 나도 난 어딜 가나 짐을 일단 안 풀어요. 내가 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3개월을 짐을 안 풀었어. (...) 당연히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내가 당연히 안 풀었죠. (2023. 9. 26. 찬선 2차 면담, 12-13쪽)

그냥 익숙해지면 여기가 내 집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퇴소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내 집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나의 거주지가 될 곳이지만 하지만 기간이 되면 떠나는 거 딱 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2023. 8. 14. 효선 1차 면담, 14쪽)

시설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청소년의 의사보다는 시설의 상황, 편의가 우선되어진다. 김지혜는 “자신의 몸과 삶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이 온전한 ‘집’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장애여성공감, 2021). ‘그 가정’도 ‘시설’도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집’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다. 나를 배제하는 공간 : “쉼터들은 대부분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은’ 이러한 마음은 거주하고 있지만 결코 ‘집’이 될 수 없는 시설의 특징을 보여준다. 성소수자 청소년은 주거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들의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커밍아웃 후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온 선기는 친구에게 잘 곳을 부탁할 때에도 “그냥 돌려서 말”해야(2023. 9. 2. 선기 1차 면담, 16쪽) 했다. 쉼터에서도 이들은 이곳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

는지, 성소수자에 대한 종사자의 민감성과 쉼터 환경을 일상적으로 가늠해야 하며,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경험하면서도 이 문화에 ‘적응’해야만 한다(정용림, 2021). 트랜스젠더 여성인 지성에게 남성, 여성으로 나뉜 청소년쉼터는 지원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장벽이었다.

그래서 (쉼터가) 남자 여자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 같은 생활 공간을 공유한다는 게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 반대로 여쉼(여자청소년쉼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법적 성별이 남성이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들어가진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 저랑 같이 생활하게 될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민폐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데 입소하는 게 꺼려진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교 시설이, 종교 재단에서 이거를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단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거(성소수자)에 좀 많이 보수적이죠. (2023.

8. 31. 지성 1차 면담, 35~36쪽)

2021년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현재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이 권인숙 의원실과 함께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소년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등의 청소년 기관에서 실시한 종사자 직무 교육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은 0건이었다.⁶⁵⁾ 실제 현장에서 많은 실무자들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 인권 교육이나 상담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실태 파악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지성: (...) 개인적인 좀, 면담이나 그런 시간이 있을 때,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떠보다가, 괜찮겠다 싶을 때쯤 이제 (커밍아웃을) 했는데 다행히 뭐 큰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 수 있지 뭐, 그 정도?

연구자: 걱정되진 않았어요?

지성: 걱정은 됐는데… 그래도 뭐, (성별정체성을) 완전 숨기고 그러는 것보다는, 속 편하게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연구자: 그게 (종사자들에게) 커밍아웃했던 제일 큰 이유예요?

65)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2021.10.22. “‘종체적 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 실태 – 2021년 10월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 대응하며”. (<https://www.ddingdong.kr/xe/17277>)



지성: 그죠?

연구자: 실제로 얘기하고 좀 더 편해졌던 부분이 있어요?

지성: 어… 약간은 있죠. 그 예를 들어, 외부 활동 같은 것도 다 기록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 나갔다, 누구를 만났다, 왜 만났다, 이런 거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상담하러 자주 왔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료적인 그런 상담이잖아요. 그게 좀 인정이 되니까 좀 자유롭게 상담하러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있었죠.

(2023. 8. 31. 지성 1차 면담, 35–36쪽)

지성: (...) 대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의 편견? 어떤.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크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쉼터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쪽 일하는 분들이니까 관심 당연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회… 그, 종교 집단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아무튼 이런 쪽에 크게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막 그거(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아 그렇구나, 하시는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냥 일반적인 편견들을 갖고는 있는.

지성: 그죠. 그냥 딱 일반인 수준의 인식.

연구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꼭 그 구체적인 그때의 말이 아니더라도 들었던 질문 같은 거.

지성: 일단은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죠. 명확한 구분을 할 수가 없, 하지 못하죠. (...) 자극적인 그런 매체를 위주로? 접하게 되면서 좀 더 편견이 형성되고, 그 특정 인물의 어떤 성향 같은 거를 일반화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2023. 9. 6. 지성 2차 면담, 12쪽)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곧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건 비단 청소년 성소수자만의 일은 아니다. ‘그 가정’을 나와 쉼터로 간 이수는 채식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정해진 식단이 있고 청소년 스스로 취식을 할 수 없는 쉼터에서 이수는 ‘당황’스런 존재였다. 이수는 ‘그 가정’에서도 채식을 한다는 이유로 엄마와 갈등을 겪었다. ‘그 가정’에서도 ‘시설’에서도 이수는 본인의 정체성, 지향점을 표현할 때 존중보다는 갈등 상황에 놓였다.

이수 : 일단은 저는 처음에 일시라는 데를 거쳐야 되는지 모르고 바로 여자 단기 쉼터에 전화를 해서 제일 처음에 물었던 게 거기 혹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나요?

연구자 : 그게 제일 중요했나 보다.

이수 : 진짜 그때 당시에는 중요했어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당황해 하시면서. 야간 당직분이셨는데 대충 쉼터에는 근데 대부분 다 고기 들어간 요리하긴 하는데 뭐 장아찌나 이런 거는 항상 있긴 하다. 김치나 이런 것들은. 그 정도 얘기해 줬고...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1쪽)

가정 밖 청소년은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공간에서조차 일상적인 혐오와 차별을 경험한다. ‘나’로서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을 우리는 ‘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나의 정체성, 선호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환대받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라. 청소년의 주거 계약 불가능성 : “미성년자가 계약이 불가능하잖아요”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때 주거지 계약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민법」 제5조). 이에 따라 미성년인 청소년이 학대 등을 피해 집을 나와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법정대리인(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나타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 청소년이 아무런 대응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19:57).

일단 저는 법적으로 지원금을 혼자서 받을 수가 없어요. 만으로 18세라 어찌 됐든 부모님 동의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저는 전화번호도 혼자 못 만들고요. 그리고 적금도 해지를 못하고 그다음에 보험도 못 들고 집 계약도 혼자선 못하긴 해요.(2023. 8. 31. 수명 1차 면담, 21쪽)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계약에 있어 부모의 협조를 얻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다. 그나마 연락이 가능한 관계일 경우 부모를 설득해보는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다시 불편한 관계를 마주하게 하며 부모의 협조를 얻기까지 청소년은 주거 불안을 겪어야 한다. 주거 계약을 한 이후에도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주거 계약이 파기되어 다시 주거 불안으로 내몰릴 수 있다.

준호 : 뭐지. 미성년자가 계약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부모님이랑 계속 연락을 했어요. 좀 대신 좀 해달라고. (...) 좀 많이 걸렸어요. 설득하는데.

연구자 : 왜 안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준호 :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그러시길래. (...) 그럼 제가 월세를 제때 제때 안 내면 뭐 자기한테 연락해서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럴 일 전혀 없다고 하니까 못 믿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계속 설득을 했어요. 월세 제대로 내고 일도 여러 개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한 설득하는 데 4일 정도 걸렸나 그 정도 걸렸어요.

(2023. 9. 2. 준호 1차 면담, 15-16쪽)

취업 지원금 관련해서 받았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한 250만 원 정도였나. 그거 받았던 돈으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었죠. 원룸 하나만 구해달라. 그러니까 알겠다. 아빠가 구해서 해주겠다라고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중개사 분이 오셨어요. 며칠 안 지나서. 와서 이제 그 집을 봐서 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일 날에 아버지께서 맘이 또 바뀌신 거예요. 안 하겠다. 동의 못한다.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어떻게든. 나는 모른다. 그렇게 하다가 중개사분께서 아 지금 그 통화 내용 들으셨는지, 아 그러면 제가 대신 보증을 서 드리겠다. 대신 보호자 사인 써드리겠다. 원래 그렇게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드려서 일단 좀 안전하게 좀 있게 해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다. 해가지고 계약을 했죠. (2023. 8. 14. 희봄 1차 면담, 4쪽)

또는 성년인 지인의 명의를 빌려 집을 계약하거나, 계약 시 나이를 보지 않는 고시원 또는 부동산을 알음알음 알아내어 계약에 성공하기도 한다. 연구에서 만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임대차계약, 근로계약 등 친권자 동의가 필요한 많은 상황들에서 "아는 형들이 대신 해주고 전화도 대신 받아주"는 등 비청소년 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하는 전략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2023. 9. 2. 준호 1차 면담, 13쪽). 이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는 방법 중 하나지만, 불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위험과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정남·박미랑(2021)의 연구 결과 가정 밖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며, 특히 주거 취약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이러한 두려움을 높게 갖는다고 한다. 이들은 법적·사회적으로 보호자가 없이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구조 내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생계 전략을 택하게 된다.

재선 : 싸 가지고 그쪽 임대 보려 갔거든요. 근데 바로 할 수 있대요. 바로 들어갈 수 있대요. 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때 그 전에 미성년자 안 된다고 하는 집은 아는 언니가 계약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는 거는 미성년자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연구자 : 아 계약은 했는데... 그럼 이 집은?

재선 : 이 집도 이제 아는 오빠가 있거든요.

연구자 : 그럼 아는 오빠 이름이네요. 이 집은?

재선 : 네.

(2023. 8. 30. 재선 1차 면담, 27쪽)

청소년의 주거결정권은 ‘그 가정’, ‘시설’,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도 실현되지 못 한다. 청소년은 성인 양육자의 종속된 된 존재로서 이 사회에 있기를 요구받으며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지’⁶⁶⁾ 결정할 수 없다. 류은숙은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한다고 간주하는 자유를 특정 대상에게만 보호를 명분으로 제약”하는 ‘보호주의’의 함정을 짚는다(류은숙, 2019:220).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오히려 청소년의 인권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이에 대해 류은숙은 약자로서 피보호자의 위치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류은숙 2019:219-220). 청소년의 주거 계약이 안전할 수 있는 방법, 독립해서 살아가는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4.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가. 공동생활과 ‘눈치’ : “진짜 얌전히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공동 주거 경험이 있었다. 원룸에서 2명 -6명이 함께 살거나.⁶⁷⁾ 방이 두 개 이상인 집을 얻어 5-7명이 함께 살기도 했다.⁶⁸⁾

66)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청소년 주거권 보장 원칙〉

67) 2023. 8. 25. 혜진 2차 면담, 15쪽, 2023. 9. 6. 지성 2차 면담, 15쪽, 2023. 8. 31. 수명 1차 면담, 4쪽, 2023. 9. 2. 시영 1차 면담, 7-8쪽



시설의 경우 2명이 방을 같이 쓰는 시설부터 8-12명이 함께 방을 쓰는 시설까지⁶⁸⁾ 그 규모와 형태가 다양했다. 공동생활에 대한 평가는 청소년 개인의 성향과 동거인, 거주 형태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었다. 지성은 쉼터에 있을 때 잠을 더 잘 잤던 경험을 떠올리며 “혼자 고립돼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2023. 9. 6. 지성 2차 면담, 6쪽)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쉼터를 피해 흔히 택할 수 있는 것은 지인의 호의다. 그러나 타인의 호의에 기대 주거를 해결하게 되었을 때 “눈칫밥”(2023. 9. 2. 선기 1차 면담, 16쪽)을 피하기는 어렵다. 동거인이 눈치를 주지 않았더라도 팬스레 자거나, 먹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 그러다 보니 당장 갈 곳은 없더라도 “너무 민폐 것 같아서”(2023. 8. 16. 호수 1차 면담, 11쪽) 다시 거리로 나온다.

연구자: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친구들인데 친구들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되게 더 힘들었을 것 같단 생각해요. 다 자취하는 것도 아니고.

선기: 그쵸. 맞아요. (...) 그래서 일부러 밥도 안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 아무래도 진짜 부모님, 걔네 부모님 눈치가 제일 보이는 것 같아요. (연구자: 그쵸.) 밥 먹을 때도 쌀이라는 게 있고, 그런 재료와 자연이 있어야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괜히 나 때문에 더 많이 사라지는 게 아닌지. 그래서 더욱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2023. 9. 2. 선기 1차 면담, 21-32쪽)

다은 : 진짜 엄청 눈치 보였어요. 그냥 뛰쳐나갈 거라는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연구자 : 난 그럴 때 애써 뭘 더 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쨌든 친구 초대권으로 와 있는데 나는 그 집에서.

다은 : 얌전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해 가지고 진짜 얌전히 있었어요.

연구자 : 아니 웬지 뭐라도 닦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다은 : 살짝 설거지는 내가 했어요. 설거지 같은 거 살짝 뭐 치우는 거 뭐지? 대청소 같은 날에 나도 같이 하고 막 그랬거든요.

(2023. 8. 21. 다은 1차 면담, 18쪽)

한편 해서는 쉼터에서 구성원에 따라 분위기가 좌우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이

68) 2023. 8. 20. 효림 1차 면담, 10쪽, 2023. 9. 2. 희준 1차 면담, 8쪽

69)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7쪽,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3-4쪽, 2023. 8. 30. 송선 1차 면담, 6쪽, 2023. 8. 31. 장선 1차 면담, 13~14쪽, 2023. 8. 31. 효주 1차 면담, 4쪽, 2023. 8. 14. 효선 1차 면담, 5쪽

야기해주었다. ‘눈치’의 대상은 또래 청소년들만이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종사자들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부당한 것을 당연한 것, 내가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쉼터라는 곳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많은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의 분위기가 좋으면 거의 전체적으로 다 좋은 분위기고, 한 명이 이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가면 거의 다 같이 안 좋은 쪽으로 따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정말 많이 타요.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2쪽)

야간 선생님도 선생님들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분 안 좋으실 때면 티가 나잖아요. 그래서 쉼터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아요. 그때 다 선생님 눈치 보기 마련이고, 선생님도 화가 더 잘 나니까 애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저는 눈치 보는 것도 좀 내가 왜 눈치를 봐야 되지, 라는 그런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그 정도는 베틸 만합니다.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10쪽)

은수 : (부당한 것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구자 : 왜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은수 : 뭔가 계속 쉼터에 살다 보니까 뭔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당연한 거고 나 지금 보호받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말이 옳겠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15쪽, 강조는 연구자)

이러한 장면은 청소년쉼터 자체나 일부 종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쉼터가 가진 구조적 문제, 곧 ‘시설성’에서 기인한다. 가정 밖 청소년의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서는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청소년쉼터에서는 업무의 과중화와 종사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한 서비스 단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자립지원관에서는 “종사자 한 명이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희진 외, 2018: 463).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자는 생활에서 돌발상황을 통제하고,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종사자를 중심으로 엄격한 규칙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규칙과 집단생활의 불편함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탈가정 후 쉼터 입소를 꺼리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김지연·정소연, 2014: 189-192; 백혜정 외, 2015: 80-98; 김희진 외, 2018: 40에서 재인용). 가정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쉼터 외의 다양한 주거 대안과 함께 기존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원 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나. 감내하고 버티기 :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은 곳

어떤 연구 참여자들에게 청소년쉼터는 기간을 채우면서 “하루하루 견디”(2023. 9. 15. 효선 2차 면담, 9쪽)는 곳이기도 했다. ‘자립준비청년’이라는 제도적 테두리에 들어가기 위해 감내하는 것들이 있고, 그건 또한 “그냥 묵묵히 사는”, “빨리 성인되면 일단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성인까지만 참자” 하는 마음들이었다(2023. 9. 27. 희강 1차 면담, 2쪽).

입소 초반에는 오래 지내고 싶고 되게 좋은 쉼터인 것 같다 느꼈고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 혼자인 것 같다고 많이 느꼈고 얼른 기간 채워서 퇴소하고 싶다 자립하고 싶다고 느꼈어요. (...) 폐쇄적인 장소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느껴서 구성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더 인간관계에서 노력하거나 진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하게 예의를 지키고 거리를 두고 지냈던 것 같은데. (2023. 9. 11. 고유 1차 면담, 15쪽)

공감받고 위로받고 이리지 못했고 그냥 각자 최대한 조심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말 잘 듣고 살면서 인센(티브)이나 많이 받자. 용돈 주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라도 많이 받자. 그냥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묵묵히 사는 그런 분위기.(2023. 10. 3. 이수 2차 면담, 8쪽)

그냥 규칙을 일단 잘 지켜서 계속 쉼터에 일단 유지를 해야 되니까 2년 동안 있어야 하니까. 규칙을 잘 지켜야 되고, 돈도 이제 조금 조금씩이라도 모아 가지고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는 중이에요.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2쪽)

혜진은 한정된 주거 공간으로 늘 동거인과 붙어있어야 하는 삶의 피로감을 이야기 한다. 늘 동거인과 붙어있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된다. 혜진은 기상 시

간과 같은 생활 패턴을 동거인에게 맞추기 위해 많이 참고 있다고 말한다. 아예 나만의 공간에 대한 욕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효주는 오랜 시간 시설에서 생활하며 타인의 삶에 늘 맞춰 살아야 한다는 게 이제는 스트레스라고 말했다. 효주는 18세가 되면 빨리 시설을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한다.

연구자 : 혼자 있고 싶을 땐 그럼 어떻게 해요?

혜진 : 근데 거의 그럴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일을 하거나 뭔가를 항상 하고 있는 상황일 때도 있었고, 혼자 있고 싶은 때도 당연히 있었는데 잘 혼자 못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나도 좀 안정적이게 혼자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욕구를 계속 그냥 배제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자친구도 그렇고.

(2023. 8. 25. 혜진 2차 면담, 15쪽)

연구자 : 주거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나오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어떤 이유에서 혼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시는 걸까요?

효주 : 그냥 좀 시설 생활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단체생활이 좀 지겨워. 그래서 단체생활을 언제까지 남한테 맞춰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

연구자 : 혼자 살 때 좀 외로움이나 이런 게 찾아오게 걱정되진 않으세요?

효주 : 그래도 같이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날 맞춘다는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2023. 8. 31. 효주 1차 면담, 15-16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의 주거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고려했을 때 공동생활은 청소년에게 불가피한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공간에서 의존된 존재로 살아갈 때 청소년들은 더욱 취약해진다.

다. 비적정 주거 공간 : “그래서 이 집은 버리기로 했어요”⁷⁰⁾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고시원의 협소함과 열악한 환경을 지적했다. 이들은 소음이나 악취로 인해 잠을 못 자거나 옆집에서 넘어오는 담배 냄새, 건물의 노후화나 결함으로 인해 냉난방 결함, 누수 등을 경험했다. 일부 고시원은 냉난방이 가능한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다. 좁은 방안에 화장실/샤워실이 있거나 주방/샤워시설/화장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 또한 어려움으로 지적된다.⁷¹⁾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고시원 외에도 청소년이 계약 가능한,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LH 집들은) 허름하고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은. 어떤 집은 뭐 3평도 안 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4평 남짓한 집도 있고 막 최대 5평. (2023. 9. 19. 주혁 1차 면담, 23쪽)

처음에 갔던 고시원에서 좀 난방도 안 되고 겨울이었는데 난방도 안 되고 그리고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못 들어가고 막 날을 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다른 데를 빠르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옮겼었는데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좀 낡은 건물이었어서 담배 냄새도 많이 났었고 그리고 화장실에 좀 곰팡이, 벌레 같은 게 올라올 때도 있고.(2023. 8. 25. 해린 1차 면담, 3쪽)

첫 번째로 들어갔던 고시원이 너무 정말 사진으로 봤을 때랑은 너무 다른 거예요. 진짜 너무 다른 거예요. 방이 좁은 건 알고 있었는데 침대 상태도 너무 불결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는데 그냥 참자 어차피 내 방에서만 안 나오면 되지 이랬는데 제 방이 40만 원짜리 방이었는데 화장실이 딸려 있었는데 나온 거예요. 바퀴벌레가. 그날 주방에서 본 날 바퀴벌레가 제 방 화장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던 짐 다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캐리어 끌고 나와서 당장 나왔어요.(2023. 9. 4. 연선 1차 면담, 4쪽)

일하는 식당이나 작업실 등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있었는데, 주거시설이 아니기에 다른 공간들에 비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70)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40쪽

71) 2023. 9. 26. 호수 2차 면담, 5쪽,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4-15쪽, 24쪽, 2023. 9. 4. 채선 1차 면담, 5쪽,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27쪽, 2023. 8. 14. 희봄 1차 면담, 14쪽,

유성 : 제가 가게 사장님한테 부탁했어요. 나 그냥 여기서 자면서 일을 할 테니까 받아 줄 수 있느냐 (...) 그냥 거기들이 화구가 있고 포장대 있고 이런 재료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비좁은 사이에 박스 깔고 자고 그랬죠.

연구자 : 박스요? 약간 여름이었어요? 아니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유성 : 여름이었죠. 엄청 덥고 바퀴벌레도 엄청 나오고. (연구자 : 그랬겠네) 그러다 용기 발주 아저씨 오셔서 오면 갑자기 놀라요. ‘어우 여기 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21쪽)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화장실은 일단 건물 공용 화장실을 써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하고, 주방도 따로 없고 샤워실은 안에 있긴 한데 공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맨날 배달음식만 먹게 되고. (2023. 8. 9. 해수 1차 면담, 2쪽)

열악한 주거환경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건강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유성은 반지하에 “살면서 많이 아팠”다(2023. 9. 26. 유성 1차 면담, 29쪽). 반지하의 나쁜 공기로 인해 호흡기 질환을 앓았다. 준호는 고시원에 소음으로 매일 밤을 설쳤고 일을 가면 늘 예민해져 “일할 때마다 계속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을 (2023. 9. 2. 준호 1차 면담, 31쪽) 냈다. 준호는 소음을 피해 늘 고시원 옥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결국 3-4달 만에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

제가 간 데가 6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밑에 전부 다 술집이었거든요. 헌팅포차 같은 데들 그래서 너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끄러워갖고. (...) 바닥에서 계속 울리고 침대가 다음 날 보면 옮겨져 있고 진동 때문에. 너무 심했어요. 한 층에 술집이 3개씩 따라락 붙어있으니까. (...) 12월까지만 살다 나왔어요. (2023. 9. 2. 준호 1차 면담, 20쪽)

비적정 주거환경은 청소년이 집에 들어가지 않거나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동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된다. 비적정 주거환경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조차도 만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 활용하기 어렵다.



5. 위협받는 안전

가. 폭력에 노출 : “하루종일 긴장한 상태라서”

또래집단이 밀집해서 살아가는 청소년쉼터에는 군기 문화와 텃세가 있다. 선기가 간 일시쉼터에도 “서열”(2023. 9. 2. 선기 1차 면담, 19-20쪽)이 있었다. 결국 선기는 하루만 자고 쉼터를 나왔다. 나이가 어리거나 늦게 들어온 이들은 이곳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성을 가지며 심부름이나 폭력에 노출된다. 이와 같은 위계적 문화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 때리고 또 맞은 사람은 또 더 나이 적은 사람 때리”는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4-5쪽) 폭력의 악순환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연구자 : 어땠어요? 거기서 1년 동안 처음에 지낼 때. 중학교 2학년?

효선 : 네 거기서 거의 9개월 지났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랑 잘 지낼 수 있었던 게 좋았고. 그리고 언니들이 생각보다 되게 폭력적이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왕따를 당한다거나 하지 않으려고 그냥 조용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최대한 비위도 맞추고.

연구자 : 으음 언니들이 말하자면 이제 군기 잡는.

효선 : 그런 거.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차라리 집에 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3. 8. 14. 효선 1차 면담, 4쪽)

연구 참여자들은 이런 분위기가 시설 내 종사자들의 무관심이나 “방관”(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2쪽) 탓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인식한다. 실제로 2020년 ‘아동 복지시설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시설 중 한 곳에서 먼저 입소한 아이들에 ‘지위’를 부여해 특별혜택을 주고 뒤에 들어오는 아이들을 통제⁷²⁾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연구자 : 부당한 거? 부당한 거는 그러니까 뭐 괴롭힘 또?

효선 : 언니 대우해 주는 거?

연구자 : 언니 대우해 주는 거요?

72) 2020. 2. 3.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효선 : 나이 한 두 살 많다 해가지고 자꾸 막 청소도 저한테 미루고 그러거든요.

연구자 : 선생님들이 다 알지 않아요. 그런 거?

효선 : 아닐 때도 있어요.

(2023. 8. 14. 효선 1차 면담, 20쪽)

시설 내에서 집단 괴롭힘, 언어폭력, 금전갈취 등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폭력은 시설종사자, 함께 생활하는 이용인 등 다양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고유는 쉼터에서 함께 사는 이들의 괴롭힘과 선생님들의 외면으로 “하루 종일 긴장한 상태라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2023. 9. 11. 고유 1차 면담, 13쪽).

(그룹홈 센터장이) 좀 뭔가 살짝 그런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보는 앞에서 이제 막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욕하고 그러면서 그라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설에서 좀 애들이랑도 좀 안 좋게 사이가 됐어요. (...) 그 얘기를 막 앞에서도 하지만 뒤에서도 이제 막 재는 모자란 애다. 그러니까 니들이 잘 챙겨줘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이 좀 저를 이상하게 보고 그랬었어요. (...)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좀 반항을 해가지고 핸드폰도 안 내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자주 저희 제가 있는 방에 다른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욕을 하는데 그거를 녹음을 했어요.

(2023. 8. 30. 송선 1차 면담, 3쪽)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출도 시작한 것도 거기 안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쫓겨나고 잠 안 재우고 초등학교 학교 가야 되는데 밤새우면서 무슨 국어사전 한글을 더 쓰게 만들고 그랬어요. (연구자 : 누가요?) 거기 이제 생활지도 담당.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5쪽)

응. 그래서 내가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얘네들도 포기를 했는지 근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 언니들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두들겨 맞았거든. 엄청 언니들 방에 올라가서 생활을 해야 했었는데 엄청 두들겨 맞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옥상에 올라갔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내 가방을 던지고 나서 여기서 ‘나 안 내보내 주면 뛰어내릴 거다’ 이래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들이랑도 내가 이제 말을 아예 안 했어. 나한테 말 걸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나는 설거지만 시키는 거야 나를. (2023. 9. 11. 찬선 1차 면담, 6-7쪽)



시설 내에서 학대나 폭력 상황이 발견될 경우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 청소년이 시설을 나오는 방식으로 끝나게 된다.

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문제 또한 포착된다. 창선은 “일시(쉼터)에 있던 언니”(2023. 8. 31. 창선 1차 면담, 11,14쪽)를 통해 성매매 피해를 경험했다. 우중은 숙식을 제공해주던 이에게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우중: 관계에서 어려운 건 없었는데 한 번 있었어요. 약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연구자: 다~.) 네. 약간 자기… 성인인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저의 또래였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또래였던 애들은 그냥 집(그 이들의 원가정)에서 혼자 살게 해준 거였고, 성인인 사람 집에 갔는데 그쪽에도 한 몇 달 있었거든요. 두 달, 세 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약간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데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연구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중: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말로 하진 않았는데. 그랬었어요.

연구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중: 바로 나왔어요.

연구자: 그냥 짐, 챙겨서?

우중: 네. 그 사람도 차단하고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20쪽)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제공한 시설도, 사적 관계망으로 얻게 된 주거지도 안전하지 않았다. 권리의 박탈과 편향된 권력관계, 자원의 빈약함이 청소년을 계속 약자의 자리에 위치시키며 무력화시킨다. 가정 밖 청소년의 ‘갈 곳 없음’이 이들이 겪는 폭력과 맞닿아 있으며 폭력의 상황을 참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나. 언제 당할지 모르는 범죄 :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미나는 고시원에 살던 당시 한밤중에 자신의 방 “문을 열려고”하는(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4-15쪽) 사람 때문에 무서움에 떨었다. 수명 집 문 중 일부는 잠기지 않아 외부에서 “주방은 들어올 수 있”다(2023. 8. 31. 수명 1차 면담, 24쪽). 이로 인해 수명은 늘 불안하다. 해온은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는 집주인으로 인해 불안을 경험했다.

아무래도 원룸 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니까 안 좋은 집주인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문 따고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원룸 사니까 이렇게 마스터 키가 있고 이러니까 그냥 편하게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밤에 일하고 완전히 바뀐 그런 사람이었는데 낮에 연락을 하니까 낮에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문을 딱 들어오더라고요. 자고 있다가 진짜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 좋은 그것도 아니었고 제가 20살 때 이제 우울증 이런 것도 있었지만 웬지 모르게 또 피해망상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2023. 9. 8. 해은 1차 면담, 16쪽)

특히 여성 청소년의 경우 불안도가 더 높았다. 강지현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성이 1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⁷³⁾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 남녀 공용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미나는 속옷만 입고 말을 거는 아저씨에 대한 불편감과 불안함을 느낀다. 미나는 어느 순간부터 고시원을 입출입할 땐 “인기척이 있나 없나”(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5쪽) 확인하고 다녔다.

초소형 카메라나 몰래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고시원에 내 고시원 방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지?' 식물이나 그러니까 인조 식물 기본적인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뭔가 있으면 내 사생활 저쪽 다 들통이 나는 건데(2023. 9. 4. 채선 1차 면담, 19쪽)

다은 : 그 주위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연구자 : 지금은 좀 환경적으로

다은 : 안전하지 못해요. 어떤 곳 산 바로 아래거든요.

연구자 : 어떤 걸로부터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은 :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이 너무 너무 약간 으슥한 골목 같은 골목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잘 안 다니고 진짜 거기서 사람 죽어도 몰라요.

(2023. 8. 21. 다은 1차 면담, 32~33쪽)

73) 2019. 12. 30. 연합뉴스 "불안해서 내돈 들여 방범" 여성 1인가구 안전비용은 '핑크택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9036000004>)



가정 밖 청소년은 불안을 떨치기 위해 항상 방에 불을 켜놓거나, 호신용 물품을 집에 구비해 놓는다. 여성 청소년의 경우 안전을 위해 여성 전용 고시원을 찾거나 안전한 집을 찾아 높은 월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제 (베개 밑에)식칼을 넣어둔다든가 불을 켜고 잔다던가. 불 키면 있는 줄 알고 안 들어와요. 집주인도 그렇고 그런 게 있어요. 자유롭다고 느끼는데 솔직히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2023. 8. 31. 수명 1차 면담, 24쪽)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에서 청소년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청소년이 독립 주거를 할 때 홀로 살며, 경제적 요인으로 낙후된 주거지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자원의 빈약함으로 고립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를 위한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청소년의 독립 주거는 ‘보호주의’ 아래 비가시화 되며 제도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소년에게 안전한 주거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청소년을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 시민으로 호명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6. 관리와 통제의 시공간, 시설

가. 사생활 침해 : “감시받는 느낌”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거주하는 시설에는 CCTV를 설치한다. 도난,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지만 은수는 “감시받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CCTV 있어야만 하는 공간이 진짜 ‘집’이 될 수 있을까?

연구자 : 쉼터의 cctv는 주로 어디 어디 있어요?

은수 : 방만 빼고 복도랑 뭐 그냥 프로그램실이라고 해서 애들 tv 보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랑 마당 이런 식이었었어요.

연구자 : cctv가 있어서 이렇게 더 불편하다고 느낀 지점들도 있어요?

은수 : 네. 뭔가 편하게 있을 수 없어요. 뭔가 감시받는 느낌. 복도에 나와도 항상 옷을 다 챙겨 입고 나가야 돼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24-25쪽)

혼자 지낼 수 있는 공간이요? 쉼터 자체가 다 cctv로 해가지고 화장실이나 생활실 그런데 아니면 cctv가 있어서 다 혼자 있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근데 생활실은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 쓰니까 (2023. 8. 23. 수현 1차 면담, 5쪽)

여러 명이 함께 사는 공간에서 개인 공간을 보장 받기는 어렵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시설에서 “사적인 공간”(2023. 8. 9. 해수 1차 면담, 18쪽)이 없이 지내야만 하며, 이런 환경에서는 혼자만의 시간 갖거나 친구를 불러서 놀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저희는 이제 2층이랑 1층 나누어져 있어서 1층에는 이제 주간 선생님들 사무실이랑 식당 프로그램실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저희들 방이랑 이제 야간 선생님 사무실 이렇게 있는 편이어서. 2층에는 음식을 아예 못 가지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방문 못 닫는 거. 그리고 옷 갈아입을 때도 같은 룸메가 있으니까 그런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씻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불편하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것도 솔직히 좀 많이 불편해요.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9쪽)

왜 그러는지 모르, 어차피 (쉼터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나가도 됐는데 왜 굳이 먼저 나가는지 제가 생각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방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2023. 9. 7. 현빈 2차 면담, 26쪽)

쉼터 입소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기도 한다. 은수는 시설에서 소지품 검사를 당했던 일을 생각하며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은 적이 없었다.”고(2023. 8. 9. 은수 1차 면담, 13쪽) 이야기한다.

예를 들면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처음에 입소했을 때 그 체크리스트? 조사지 개인정보 조사지처럼 뭔가를 글에 쓰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 경험 여부 동성 간의 성 접촉 여부. (...)그래서 당연히 안 했는데. 아무튼 그럼 되게 무례하고 반인권적인 그리고 제가 동의하지 않고 안 원하는데 억지로 강행되는 것들이 처음에 너무 많았고.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4~15쪽)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요가를 했는데 심지어 요가를 해서 막 자세가 살짝 막 찢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막 사진을 찍어요. 근데 그게 애들 모자이크 얼굴은 모자이크 해준다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거예요.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1쪽)

가정 밖 청소년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는 일상적이다. 공간도 물건도, 이들의 개인 정보조차 온전히 청소년 자신의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늘 ‘선’을 넘어오는 외부의 침입은 청소년들은 더욱 움츠러들게 하고 방어적인 자세를 갖게 만든다.

나. 자유의 제한 : “내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원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냥 밥만 주고 재워만 주고 무슨 돼지마냥 그렇게 애들을 방치해 놓으면서 딱 시간대 되면 애들 컨디션 다 상관없이 나와 가지고 (프로그램) 하라 그러고 무슨 수용소에 있는 약간 죄수마냥 참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밖에서 잘 허락 없이 나가지도 못하니까 밥도 원하는 딱 그 시간에만 먹어야 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제가 제 돈 주고 사 온 간식도 먹지 말래요.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1쪽)

해서 : 지금 방학에는 방학하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하루에 2개씩 그러니까 아침 10시부터 12시 1시 반부터 3시. 뭐 밤에도 하고요. 아침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또 오후로 넘어가서 오후에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연구자 : 프로그램은 주로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해서 : 인성교육, 인권, 사이버 언어폭력, 저희가 음식 만드는 거, 그리고 뭐 단소 불기, 탈춤 뭐 이런 거 있어요.

연구자 : 해서님은 그 시간에 그냥 수능 준비하고 공부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해요.

해서 : 네 근데 못하죠.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10쪽)

대체로 일방적이고 엄격한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쉼터의 자의적 규칙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일상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으로 보인다. 찬선은 쉼터에서 “내 자유를 빼앗기는 느낌이랄까? 이게 너무 싫었어 가지고 난 그냥 빨리 나오고 싶었”라고(2023. 9. 11. 찬선 1차 면담, 5쪽) 했다. 쉼터의 일방적이고 엄격한 규칙은

청소년을 거리로 내몬다.

제가 갔던 곳은 좀 핸드폰 이용 시간도 10시 이후로는 아예 안 되고. 밥 먹는 거 외에 다른 시간 동안에 내가 군것질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코로나 하필 그때 코로나 시기여자이고. 2주가 넘게 그냥 현관 밖에서도 못 나가게 했었기도 했어서 굉장히 제가 18살이고 이제 곧 성인인데 심지어 뭐 약간 옷을 갈아입을 때도 문을 아예 다 닫으면 안 되고 이런 좀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몸도 컸는데 그런 제재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2쪽)

연구자 : 근데 그런 거(아르바이트) 해도 무조건 9시까지 들어와야 되는 거?

해서 : 네 근데 진짜 물류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12시에 끝나 가지고 그거는 한번 딱 봐주셨어요.

연구자 : 그러면 뭐 알바를 하기도 쉽지 않겠네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방과 후에 어디서 알바했는데 9시 전에 끝내고 들어오는 게 쉽진 않을 것 같아. 별도의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쉼터에서 생활하는 게 이렇게 좋은 조건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해서 : 네.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1쪽)

시설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한다. 룸메이트. 용돈, 병원 진료 등 청소년의 의사보다는 시설 실무자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해서 : 저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계속 위에서 말을 건다거나. 저는 장난치는 걸 싫어하는데 계속 옆에 와서 장난을 친다거나. 저는 불을 켜고 싶은데 계속 끄고 지내고. 그리고 저는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데 계속 소리를 켜고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쓰레기는 계속 어디다 던지고 그러는 게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럴 때 (룸메이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해서 : 못 바꿔요.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7쪽)



근데 아는 동생 중에는 이제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신 그거 의학과 가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근데 선생님이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데요. 근데 그게 왜 안 됐는지 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듣기로는 이제 너 정도의 우울은 있어도 된다. (2023. 9. 15. 효선 2차 면담, 7쪽)

많은 시설에서 청소년 참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수는 쉼터 내 핸드폰 사용시간에 대한 청소년의 규칙 완화해 보고자 시도했지만 회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창선은 회의를 통해 실제 시설의 규칙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창선은 다른 시설에 비해 좋은 점으로 “목소리를 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회의의 존재를 꼽았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사는 공간에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번은 그래서 다 같이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그거를 9시 걷어가는 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늘려보자. 라고 하는 쉼터 안에서의 약간 작은 혁명처럼 그 의견을 제가 막 어필을 다들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 주간 회의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충 싹 살피고 쌤들이 안 끼는 날이 있는데 그날에 딱 그 얘기를 꺼내서 이제 막 작당 모의를 해서 막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도전적인 회의장을 써서 이제 뚜벅뚜벅 사무실로 걸어갔는데 그날이 약간 회의 끝나고 나서 같이 좀 약간 파티 비슷하게 뭔가 맛있는 거 시켜서 먹고 하는 날이었고 마침 근데 그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무실이 발칵 뒤집히고 밥도 그래서 맛있는 것도 못 먹고 막 다 취소했다고 앞으로 회의하지마 이러면서 회의를 못하게 하고.(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9쪽)

다른 성착취 피해 기관보다 규칙이나 그런 게 좀 더 널널하고 이제 통금도 원래 9시였는데 청소년들이랑 같이 하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받아서 쌤들이 또 회의를 해서 10시로 늘리고 그리고 다른 기관이나 쉼터 같은 것보다 청소년이 목소리를 내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있어서 좀 괜찮더라고요. (2023. 8. 31. 창선 1차 면담, 13쪽)

피해자지원시설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밀보장을 포함한 엄격한 규칙이 있다. 민경은 피해자지원시설에서 엄격한 규칙을 못 견뎌 시설을 나오게 되었다. 당사자와 다른 입소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보호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다.

민경: 이게 혹시 비공개쉼터 규칙을... 모르죠?

연구자: 비공개쉼터는 뭐예요?

민경: 외부에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위치를 알려줄 수 없고 거기에 누가 사는지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비공개쉼터고 그럼 거기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핸드폰을 못 해요. 아예 핸드폰을 아예 못하고 컴퓨터도 하는 시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컴퓨터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어요. (...) 그러니까 어쨌든 비공개쉼터라는 거는

연구자: 더 룰이 강한 거예요?

민경: 그렇죠. 왜냐면 비공개쉼터는 거의 다 피해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

연구자: 노출될까 봐?

민경: 네. 그게 제일 크고 또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이 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여서 근데 또 이제 tv도 주말에 한 사람당 한 시간밖에 못 보고 (...)

민경: 그래서 너어무 싫어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었는데, 또 재판 중이라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나가려면 외출 동의서 쓰고 나가야 돼.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왜 뭐 하면서 용돈을 얼마나 가져가고 언제 들어가서 언제 나올 건지 언제 나와서 언제 들어올 건지 다 적어야 되고 외박도 가족 아니면 절대 못 하게 (...)

(2023. 8. 11. 미영 1차 면담, 3~4쪽)

자유를 담보 잡아 안전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안전하기는 하지만 억압적인 ‘집’은 모순이다. 안전과 자유를 둘 다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방식,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진짜 ‘집’을 찾아 거리로 나온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빈곤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청소년의 삶의 결정권과 양육 책임을 ‘부모’에게 일임한다. ‘부모’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에 수용함으로써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반인권적이며, 단편적인 국가정책은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최소한의 권리와 자원조차 빼앗는 효과를 낳았다. 청소년의 주거 빈곤은 국가폭력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주거권은 생존권과 떨어질 수 없는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제3절 | ‘그 가정’ 바깥의 삶

1. 경제적 취약성

가. 생계의 위협 : “200원을 아끼자”⁷⁴⁾

탈가정 후 걱정의 시작은 ‘배고픔’이다. 먹을 것이 없었던 한 가정 밖 청소년은 두 달을 굶다가 결국 “영양실조와 급성 빈혈로 응급실(2023. 8. 31. 지성 1차 면담, 22~23쪽)”에 갔다. 돈을 아끼려 설탕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하였다. 그나마 라면과 밥이 제공되는 고시원에서는 끼니를 때울 수 있었다. 그들은 밥다운 밥을 먹지 못하고 무엇이 먹고 싶은지보다 현재 상황에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선택하였다.

(노숙할 때) 컵라면이나 삼각김밥 같은 거 사 먹었어요.(...) (집에서 살 때) 돈 벌면서 모아놨던 돈들로 조금씩 샀어요. (2023. 9. 2. 준호 1차 면담, 8쪽)

설탕이요. 먹는. (...) 그게 300칼로리 짜리에 보존 기간도 짧고 포만감이 크지도 않고 보관하기도 힘든 게 천 원? 그 천 원 두 장 가지고 조금 걸어가지고 그냥 대용량으로 파는 매장 같은 데 가죠. 설탕 1kg를 살 수 있어요. 삼각김밥 두 개 살 돈으로. 설탕 1kg 사죠, 설탕 1kg 사면 그게 대략적으로 3천 칼로리까지 나와요, 거의. 2천인가, 3천 칼로리가 나와요. 비교가 되냐는 거죠. (2023. 8. 31. 지성 1차 면담, 28쪽 강조는 연구자)

돈 빌려서 고시원에 들어갔고 아는 누나 통해서 1월 2일에 대판 싸우고 나서 고시원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구해준 방)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고시원) 공기밥 라면이 제공이 되는 거였어요. 라면, 공깃밥을 3개월 동안 먹었어요. 그것만.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23쪽)

해수: 제가 나왔을 때가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였어요.

연구자: 아 어...

74) 2023. 9. 4. 연선 1차 면담, 6쪽

해수: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밥 같은 것도 못 먹을 때가 많았고.

연구자: 정말...

해수: 라면만 먹거나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게 제일 불안했었던 거 같아요.

(2023. 8. 9. 해수 1차 면담, 5쪽)

가정 밖 청소년이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있어야 집을 사고,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생필품도 사고” (2023. 8. 16. 호수 1차 면담, 36쪽) 할 수 있다 보니 절도를 하거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기도 했다.

17살 때부터 가출 시작했고 항상 가출할 때마다 그냥 밖에서 그냥 노숙 생활만 노숙 생활만 계속하고 돈도 필요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또 비행을 또 그때도 계속 비행을 하고 새벽에 아파트 지하주차장 들어가서 차를 털거나 처음에는 그랬던 거 같아요. (2023. 8. 8. 강선 1차 면담, 3쪽)

수명: (노숙할 때) 탐탐 24시간 같은 데 가서 이제 몰래몰래 자면서 그때 제가 진짜 지금은 안 하는데 차til이 같은 거 엄청했어요.

연구자: 네.

수명: 하루에 6시간씩 새벽에 걸으면서.

연구자: 네.

수명: 걷는 거 잘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루하루 살다가(…)

연구자: 몇 달 동안이나?

수명: 한 달?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 근데 이제 걸려서 이제 이렇게 되고. (...) 보상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 것도 있고 재판에 걸린 것도 있고 그냥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고요.

(2023. 8. 31. 수명 1차 면담, 4-5쪽)

가면 갈수록 돈을 벌고 싶으니까 저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때려서 빙 뜯는 거 말고 저는 가게를 털고 편의점을 털거나 뽑기방을 털거나 주점 금고를 털거나 그런 걸로 돈을 좀 많이 번다 보니까 몇천만 원 이렇게 만지고 그러더라고요. (...)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나잖아요. 내가 전에는 3~4천 원 겨우겨우 아등바등 맞으면서까지 쓰다가 그럼 내가 오히려 때리면서도 돈을 벌면서 내가 마음대로 다 쓰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걸로 오토바이는 렌트 사기쳐서



그냥 되게 오토바이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잖아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상상력이 더 올라가는 거죠. 더 큰 건이 많았어요. 진짜 마트에서 은행까지 털고 싶었어요. 그때는 당시 그때 깡따구라면 거기까지 갔는데 그 전에 들어갔죠.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6쪽)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 밖 생활 중 어렵고 힘들었던 점은 ‘생활비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된다(황여정 외, 2022). 가정 밖 청소년들은 집을 나오는 순간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한 돈이 필요하며, 생활비 부족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마저 어렵게 만든다.

나. 벅찬 월세 : “저희 버는 거 다 월세로 다 나가고”⁷⁵⁾

가정 밖 청소년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대부분 월세 형태의 고시원 또는 원룸에서 생활한다. 그러나 일급이나 주급을 받아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월세는 부담이었다. 꾸준히 일을 했지만, ‘월세는 너무 벅차고(2023. 8. 23. 강민 1차 면담, 13쪽)’, 버는 돈은 대부분 월세로 지출되었다.

연구자: 그 집에서는 한 3개월 정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7명 같이 지내셨던 거고 그러면 그때 뭔가 주거 유지하는 돈 말고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 이런 거는 좀 어떤 식으로 혹시 가능 어떻게 하셨어요?

희준: 제가 일을 해가지고

(2023. 9. 2. 희준 1차 면담, 9~10쪽)

연구자: 고시텔은 어쨌든 거기를 잡으려면 돈이 있기는 해야 되잖아요.

시영: 네 맞아요.

연구자: 그거는 혹시 어떻게...

시영: 이것도 제가 그냥 벌어가지고 제가 들어갔었어요.

연구자: 그러면 계속 17세 이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오셨던 거예요?

시영: 네 그렇죠. 중간중간 계속 짬짬이 하면서 돈을 좀 벌어서 조금 고시텔 좀 지내고 자취 계획도 세우고 그랬었어요.

(2023. 9. 2. 시영 1차 면담, 6쪽)

75) 2023. 8. 23. 강민 1차 면담, 13쪽.

월세가 오르거나, 일자리를 잃어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자의적/타의적 퇴거를 경험한다. 삶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비빌 언덕’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 주거지마저 잃게 되기도 했다.

수명: (치킨집 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콩.

연구자: 아까 그거.

수명: 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물어야 했어요. 좀 다쳐 가지고 일도 못해요. 근데 이제 집세를 안 내니까 나는 여기가 고모네 집이니까 집세를 안 내니까. 이게 일을 못 하지만 좀 낫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너무 미안해 가지고.

(2023. 8. 31. 수명 1차 면담, 4쪽)

주거비 부담을 덜고자 동거인을 구하기도 하였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가정 밖 청소년은 ‘그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카페나 거리 등을 전전하게 된다(2023. 9. 2. 시영 1차 면담, 12쪽).

혜진: 여자친구랑 같이 집을 나와서 보증금 500에 월세 한 50, 60이었나 그 월세방을 잡아서 지내다가 이사하고, 그렇게 계속 지냈던 것 같아요.

연구자: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혜진: 보증금은 여자친구 돈으로 받았고 월세는 반반 해서 했어요.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2쪽)

뭐냐면 1년 계약이 끝났는데 월세를 올려버리더라고요. 다시 계약하고 나니까 한 7만 원 정도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54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냥 나가자 해 가지고 지금 임시로 잠시 어머니 집에서 좀 지내고 있긴 해요.(2023. 9. 19. 주혁 1차 면담, 21쪽)

한편, 주거비 지원을 받는 이들은 주거비 지원이 주거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고 하였다. 주거비를 지원받으면 “그래도 살만한”(2023. 8. 23. 강민 1차 면담, 13쪽) 상황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었다(2023. 8. 29. 우중 1차 면담, 28~29쪽).



그런 부분은 이제 자립지원관에서 월세 지원을 해주셨어갖고 이제 거기서 지원해 주시는 거랑 이제 제가 달달이 돈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했어요. 수월에서 지냈던 곳은 한 45만 원 정도 했었고 저는 이제 안산에서 담배 냄새나던 데는 한 35만 원? 그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그거 이젠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는 월세는 부담 없이 그냥 지내고 있어요. (2023. 8. 25. 해린 1차 면담, 11쪽)

연구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간 지금 월세 지원이랑 반찬 지원받고 있고 oo에서 선생님들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인턴십 지원받고 있다고 했죠. 이런 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건 있어서 정말 좋다.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미혜: 월세 지원이요. 월세 지원. 처음에는 저 혼자 다 냈었으니까. 그때는 45만 원씩 너무 빡셌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2023. 8. 11. 미혜 1차 면담, 17쪽)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다. 가정 밖 청소년 중에서도 시설 거주 경험이 연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거주한 경우에만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시설 밖에서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월세와 같은 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 일하기 어려운 시설 : “학교는 되지만 알바는 안 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수많은 일을 경험한다. 그중에는 단기 알바처럼 취약한 고용 형태도 있고, 불법적인 일도 있으며, 10대 청소년으로서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한다. 시설에서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고 용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시설에서 주는 용돈은 시설마다 편차가 컸다. 일부 시설은 용돈이 많았지만, 일부 시설은 용돈이 없거나 적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일을 해야 했다.

연구자: 음 쉼터에 있거나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 적 있어요?

효선: 있어요. 카페 알바를 1년 동안 했어요

연구자: 언제? 언제쯤요?

효선: 17살 때 하고, 18살 때.

연구자: 하게 된 배경은?

효선: 돈이 필요해서.

연구자: 생활비는 쉼터에 있거나 그룹홈에 있으면 생활비는 주로 어떻게?

효선: 쉼터에 있을 때는 용돈이 없었고요. 그룹홈은 용돈이 있었어 가지고 그걸로 했었어요.

(2023. 8. 14. 효선 1차 면담, 15쪽)

일단 쉼터에서 용돈이라는 걸 주긴 줘요. 근데 한 달에 2만 원을 준단 말예요. 그게 일단은 청소년들에겐 너무 적은 돈이고, 알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16쪽)

은수: 일주일에 천원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자: 일주일에 천원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은수: 그래서 저는 학교 걸어다니면서 버스비를 모아서 그걸로 담배 사고 라면 사먹고

(2023. 8. 9. 은수 1차 면담, 29쪽)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은 탈시설 이후의 삶을 위해 돈을 모으고 싶었고 일을 하고 싶었다. 시설에 머물면서 일은 할 수 있지만, 시설의 통금 규칙을 준수해야만 하기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야간이나 주말 근무는 하기 어려웠다. 한편, 일부 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을 이유로 시설 거주 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은수: 알바를 하러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도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알바를 하고 싶기는 한데 **학교는 되지만 알바는 안 되는**

연구자: 위험해 가지고. 그렇게 너무 하고 싶으셨겠다.

은수: 돈을 좀 많이 모아놓고 싶었는데

(2023. 8. 9. 은수 1차 면담, 41쪽 강조는 연구자)

결과적으로 시설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밖에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설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마저 쉽지 않다.



2. 위태로운 청소년 노동

가. 청소년에게는 유명무실한 법 : “그냥 안 주고 그거 달라고 하면 잘려요”⁷⁶⁾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떤 형태의 근로이든 모든 근로자는 근로에 따른 계약을 고용주들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근로계약서에 사인만을 강요하며, 제대로 읽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계약서를) 못 읽게 했어요. 그 계약서가 한 6, 7장 됐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사인하는 데만 이렇게 가려 놓고 ‘빨리 사인해’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보통 사본을 한 장 받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안 주더라고요. 이제 말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도 다 말 안해줘 가지고 일하는 것도 일단 제가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절대로 안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도 못 꺼내요. (2023. 9. 26. 채선 1차 면담, 5쪽)

가정 밖 청소년은 근로계약서의 부당함을 잘 알지 못했고, 부당함을 알게 된 이후에도 얘기할 수 없었다. 청소년이라는 위치와 일자리의 절박성은 비청소년에게 쉽게 문제제기를 하기도 어렵게 만든다.

00는 휴게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근로계약서에 나는 ‘내가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거에 동의한다’라는 문구 이제 그냥 근로계약서 쓸 때부터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 지금 일하는 고깃집도 휴게시간 없이 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계약서에 나는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써져 있는 곳이 있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것도 괜찮은 건가? 어쨌든 알고 있는 거는 뭐 4시간 이상 일하면 또 얼마씩 쉬어야 되고 8시간 이상 일하면 또 얼마씩 쉬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이제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프린팅돼서 써서 나오면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또 저는 이거 싫다. 그러면 일하는데 좀 어려워질까 봐 계약하는데 좀 어려울까봐 그냥 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3. 8. 18. 강솔 1차 면담, 23쪽)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함에도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예외적인 일이었다.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은 받은 적이 없었고 시간을 쪼개거나 편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질리게 하여 포기하게 만들었다.

76) 2023. 8. 14. 효선 1차 면담, 17쪽

희강: 알바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거 같아요.

연구자: 그거 할 때 뭔가 청소년이라서 좀 내가 지금 청소년이라서 지금 이런 대우를 받나?
라고 생각했던 적 혹시 있을까요?

희강: 어 야간 수당이나 주간 수당 그런 거 없이 시간만 일하는 시급만 받는 그런 건 있었어요. (2023. 9. 27. 희강 1차 면담, 5쪽)

채운: 그다음에 이제 OO반점 했었는데 거기 한 4개월인가 3개월인가 했거든요. 거긴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3개월간 했지만. 일단 사람이 한 달에 한 번씩 짹 바꾸어요.

연구자: 일이 너무 힘들어서?

채운: 힘들기도 하고 그냥 점장 성깔이 너무 드럽고, 일도 빡세고, 월급도 적고, 시간 쪼개기 선수여가지고 사장님니.

연구자: 시간 쪼개기가 어떤 거예요?

채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원래 일주일에 주 5일 뭐 예를 들어서 6시간씩 하기로 되어있었으면 그 말을 안 지키고 막 주 6일에 3시간씩으로 이렇게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쪼개 해가지고 저를 더 귀찮게 만든다거나.

(2023. 8. 18. 채운 1차 면담, 10쪽)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가정 밖 청소년도 주휴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은 수당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연구자: 일하면서 아까 이제 뭐 최저시급 못 받는 얘기 주휴수당 안 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땠어요?

효선: 다 줬어요. 최저시급 다 줬는데 이제 주휴수당을 안 주거나 아니면은 야간근무할 때 이제 야근수당 그거

연구자: 1.5배로 안 주거나 그거. 요구한 적 있어요 혹시?

효선: 있는데 그냥 안 주고 그거 달라고 하면 잘려요.

(2023. 8. 14. 효선 1차 면담, 17쪽)



채선: 근데 주휴수당 안 줘요.

연구자: 그거 안 주려고 일부러 시간을 짧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채선: 생긴다고 해도 안 주고요. 그리고 빨간 날에 일하면 1.4, 1.5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안 줘요.

연구자: 그거 다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채선: 주말에 나가는 것도 돈 더 안 주고. 그리고 청소년을 10시 넘어서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법으로는 10시까지 귀가를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자: 아 그러면 9시.

채선: 한 40분 30분에는 집에 보내야 되는데 저희 사장님은 11시까지도 막 쓰고 하던데요.

연구자: 다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채선: 근데 이렇게 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2023. 9. 26. 채선 1차 면담. 6쪽)

가정 밖 청소년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고용주들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를 예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약서의 부당함을 몰랐던 가정 밖 청소년은 갑작스러운 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장님이 한 달 수습 기간 동안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해고 통지를 보내겠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써놓으셨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사장님이 그만둘 때도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써놨던 말 기억하냐고 그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딱 하셔 가지고 (2023. 8. 18. 강솔 1차 면담, 22쪽)

사실 21살이면은 뭣도 모르는 애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강도라든지 그거는 그건 괜찮고. 그건 일단 넘기고.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분이 자기 마음대로 알바생을 자르고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되게 악덕 사장님이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업무를 제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 했고 지금 할 수 있는 업무는 일단 없었는데 그날 차를 다 해서. 근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왜 넌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부당한 이유로 저를 ‘그냥 나오지 마라’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어서 아무래도 그랬었던 것 같긴 한데.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11쪽)

가정 밖 청소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다들 10대라고 안 쓰려고 하는 것도 있고(2023. 8. 29. 우증 1차 면담, 36쪽)” 해서 미성년 청소년은 일을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정 밖 청소년은 나이를 속여 일을 구하거나 “(친권자 근로 동의서) 서명은 아는 형들이 대신 해주고 전화도 대신 받아주고(2023. 9. 2. 준호 1차 면담, 13쪽)”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

나. 참고 버티는 일터 : “부당한 일이 있어도 보통 참게 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일이 부당하고 힘들어도 일자리를 잃을까 싶어 그냥 버텨냈다. 채운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고 준호는 어딜 가도 청소년 노동은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을 고용하게 되면 주당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어려움이 많기에⁷⁷⁾ 사실상 청소년을 고용하는 일터가 많지 않다.

알바 특성상 그렇게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눈치를 결국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또 사실 처벌 수위가 그냥 정말 심해봤자 그냥 매장 내의 적절한 징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당한 일이 있어도 보통 참게 되는 것 같아서. (2023. 8. 18. 채운 1차 면담, 4쪽)

연구자: 그래서 약간 그런 일들도 좀 힘들고 그냥 일을 그만두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준호: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냥 버텼어요. 계속. (...) 이것도 인생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버텼어요. (...) 나중에 다른 데 취직해도 이런 일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버텼어요. (2023. 9. 2. 준호 1차 면담, 40~41쪽 강조는 연구자)

자신의 처우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할 수 없기도 했지만, 막상 부당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빵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케이크 같은 거 되게 손상되기 쉽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는 다 내 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거 (...) 휴식 시간 그전에 내가 맡았던 그런 업무들을 다 못 끝내면은 ‘휴식 시간까지 다 빼서 그 업무를 다 해놓고 가라’ 이러고 원래는 그때 8시간을 얘기했으니까 1시간을 쉬어야 되는데, 5분 쉬고 다시 올라가서 일을 하고 근데 그건 이제

77)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제65조(사용 금지), 제66조(연소자증명서), 제69조(근로시간),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및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제6조(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범위)



수당으로 안 들어가고 (...) 한 번은 이제 제가 빵을 자르다가 손을 엄청 살점이 베어서 피가 계속 나는 상황이었는데 약국 갔다 오라 해서 약국을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병원을 가라'고 하신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제가 손에 계속 피가 나고 이러니까 핸드폰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못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왜 병원을 갔다 오냐, 난 너한테 병원 갔다 오라 한 적 없다' 그리고 이거를 병원 갔다 온 시간을 빼서 다른 데 이제 추가로 (2023. 8. 25. 해린 1차 면담, 17쪽)

제가 미성년자로서 일을 해보고서 느낀 거는, 원래 고용 관계에 있어서 이제 고용주가 같이고, 저희가 을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이제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그 간격이 조금 더 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뭔가 부당하게 떼인 돈이라든가, 뭔가를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 준다거나, 3.3을 뺏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던가, 그런 상황이 종종 있었는데 저희가 그걸 말해 봤자 이제 '너희가 뭘 아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다른 알바 분한테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한테는 존댓말을 써주시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반말로 기본으로 깔고 가신다든가. 좀 심하게 가면 욕을 하신다든가 밀치신다든가 그런 분도 좀 계셨고 (2023. 8. 18. 채운 1차 면담, 4쪽)

한편, 경제적 자립에 대한 압박감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가정 밖 여성청소년은 성노동을 하기도 하였다. 생존이 절박할 때 주변인을 통해 소개받은 일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아 시작하게 되었다(육혜련, 2017).

창선: 지금 (저축액이) 100만원?

연구자: (...)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이제 (성매매) 일을 하시게 되는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아닐까요?

창선: 맞아요.

연구자: 그래도 여전히 돈이 중요할까요?

창선: 어쨌든 자취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2023. 8. 31. 창선 1차 면담, 15쪽)

알바 면접을 보러 가면 다 청소년이라고 안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보는데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돈을 고수익으로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선택했던 게 성노동이었는데 제가 20살이 안 되니까 일반

적인 룸이나 노래방이나 마사지업소나 이런 데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성노동에서 열악하다고 불리는 게 조건만남인데 조건만남은 그게 몇 번 이었지 한 번인가, 한번하고 무서워서 안 했던 것 같아요.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7쪽)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비 등 생계유지를 위해서 경제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상당수가 임금체불, 해고, 4대 보험 등 관련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폭언과 폭행, 성희롱을 겪는 경우가 다수다(엽합뉴스, 2023. 10.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기에 참고 견딜 수밖에 없다.

3. 교육의 기회 제한

가. 탈학교 : "학교를 못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중과 같이 탈가정을 계획하면서 탈학교를 하는, '그 가정'에서 이탈되기 전에 학교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지만(남미애 외, 2012), 일반적으로 탈가정 이후에 학업중단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백혜정 외, 2015). 탈가정 후 쉼터에 거주하면서 학교와 통학 거리가 멀어지자 학교에 가는 건 점점 어려워졌다.

우중: 음, 네. 왜냐면 탈가정을 먼저 하면 뭔가 탈학교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있었어기지고
왜냐하면 그것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일단 없애자.

연구자: 응. 그 과정은 좀 순조로웠어요?

우중: 음, 네. 그때는?

연구자: 그래도 하고 싶다하니까. (우중: 네!) 그냥 그렇게 됐어요.

우중: 네. 너 인생 너 마음대로 해라.

연구자: 그냥 동의 이렇게. (우중: 네.) 교사도 딱히 별말 없었고?

우중: 네! 딱히 그냥, 굳이 왜 하냐 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것도 특성화 계열 학교를 다녔었
다보니까 뭐 인문계였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퇴 사유는 그냥 적성 문제라고 적었어요.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2쪽)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탈가정 후 쉼터 등의 청소년 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대개 “통보” 받고 있었으며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까닭이다. 현민의 경우에도 쉼터와 학교의 거리가 멀었다. 성정체성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빈은 먼 통학 거리를 견디기 어려웠다.

연구자: 그러면 자퇴를 한 게 언제예요?

현빈: 그것도 아마 16살… 6월인가, 5월인가. (연구자: 탈가정하기 전이네요?) 아니요, 아니요. 탈가정… 제가 어? 나 겨울에 했었나? 아닌데 여름인데. 올 초 그 해 16살 때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해 초였을 거예요. 한 3월? 아, 아닌데. 약간 시간이 애매한데. 한 4월 5월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쉼터를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전에… 내가 뭐 말하려 했지? (연구자: 자퇴.) 그때 쉼터, 그러니까 쉼터에 가게 되면서 자퇴를 했죠. 집이랑 주소지도 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그것도 힘들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정신, 정신이 좀 아파서 (웃음) 그만둔 게 좀 더 큰 편인 것 같아요.

(2023. 8. 30. 현빈 1차 면담, 14~15쪽)

희봄의 경우에는 탈가정 이후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을 구해야 했고, 일을 하느라 학교에 가는 건 점점 어려운 일이 되었다.

집에서 나오고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일에 이제 같이 들어가서. 마트 보안쪽이었는데 거기에 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저절로 학교를 못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2023. 8. 14. 희봄 1차 면담, 4쪽)

일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 생활에서 벗어날 수’(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9쪽) 있었다. 열심히 일했고 일에서는 인정받았지만, 학교를 가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퇴학당했고, 시설에서는 자퇴를 이유로 쫓겨나게 되었다.

4개월 만에 주방장 달았어요.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한 17시간 하루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저한테 ‘퇴학이다’ 해서 자퇴를 때리게 된 거고 이 집에서도 ‘자퇴하려면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쉼터로 가게 됐어요.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9쪽)

‘그 가정’의 돌봄 체계 바깥으로 밀려난 가정 밖 청소년은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학교에 다니는 일이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일이 된다.

나. 포기하게 되는 교육：“우리 이 정도 내줄 학비 없다”

가정 밖 청소년은 본인이 원하는 진로를 위해 교육을 받고 싶으나, 주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교육은 늘 뒷전이었다. 미나는 탈가정 이후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유사한 상황에서 혜진은 반복적으로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제 고시원 생각을 했으니까 적어도 다섯 달은 가능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때 2월이면 이제 한 달 곧 있으면 등록금 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등록금이 문제였죠. 내가 내 주거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대학을 못 다니게 생겼네. 내가 입시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입학이 취소되게 생겼네. 그게 좀 문제였는데 그것도 어찌저찌 일을 해가지고 냈어요.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3쪽)

21년에는 1학년을 그때 다녔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쭉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때는 그 이유로 휴학을 처음에 1학기 했다가 이제 상황이 여건이 좋지 않아서 또 휴학을 계속 그 1년을 하게 됐죠.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8쪽)

시설에 거주하면서 배우는 것을 지원받기도 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지만, 사실상 결정권이 없었다. 쉼터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자격증 학원은 되고 입시학원은 지원이 안 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3쪽)” 원하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가수는 불안정해서(2023. 8. 23. 수현 1차 면담, 23쪽)” 지원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고 많이 조건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격증 같은 거는 지원이 되지만 입시학원은 전혀 지원이 되는 폭이 없어서 지금 입시학원 아직 못 다니고 있고, 또 가출 때문에 있지만 인원 수가 너무 많은 쉼터이면 더 힘든 것 같아요. (2023. 9. 11. 고유 1차 면담, 17쪽)



댄스여서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이제 쉼터 측에도 계속해서 어필을 했어요. 학원을 다니고 싶다. 조금만이라도 지원을 해달라. 근데 안 되더라고요. 쉼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를 좀 나름 잘한 편이었기 때문에 쉼터 측에서는 공부해라 이런...그쪽으로 가는 게 더 편한데 왜 그러냐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2쪽)

(6호 시설에)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 철로를 했어요. 철로는 무대를 1년 동안 200개 썼나? 근데 거기서 제 재능을 인정해 주고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협찬이 들어왔어요. 이제 제의 들어왔었어요. 넌 여기서 한번 연습해봐. 해외로 진출할 생각 없냐? 거기 있는 애들은 청소년이다 보니까 진짜 뛰어난 수준이 아니어도 웬만한 청소년들보다 잘 치긴 해요. 저도 연습하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학교를 자퇴하고 일을 시작하려 했던 거예요.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8쪽)

원래 대안학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국공립이고 그리고 학비가 저렴하고 기숙사 형 대안학교가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가 따로 있었거든요. 거기는 전교생이 45명밖에 안 되는데 작은 학교인데 근데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선생 거기 선생님 아동 양육시설에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 된다. 우리 이 정도 **내줄 학비 없다**.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5쪽 강조는 연구자)

한편 일부 쉼터에서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교육을 지원했고 청소년은 원하는 진로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외부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의 진로 찾기가 거의 불가능함을 말한다.

강선: 거기서 대학 컨설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컨설팅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만나서, 이제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갈 수 있는 학교를 확인하고 그다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좀으로 이제 뭐 알아오라는 거 있으면 다 적어가서 알아오고 그렇게 어느 학교를 넣을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수시 원서를 넣고, 면접 같은 거는 이제 그분이 같이 면접해줬어요. 면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려주고.

연구자: 모의 면접.

강선: 네. 모의 면접, 모의 면접도 해주시고. 그리고 쉼터에 있었으니까 쉼터 샘들도 도와줬어요. 모의 면접. 검정고시도 도와주고. 그 과목별로 샘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웃음) 검정고시 본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중략) 생각보다 도움이 꽤 되더라고요.

(2023. 9. 7. 강선 2차 면담, 29쪽)

앞서 언급했듯이 상당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생존의 문제 앞에서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한 고민은 사치일 수밖에 없다.

4. 아플 수 없는 몸

가. 일상적 참기 : “좀 서러운데 뭐 어쩌겠어요”

아프더라도 “약값이 아까워서 약을 안 먹었던 적(2023. 9. 1. 동우 1차 면담, 13쪽)”이 있고 ‘하루 이틀이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병원비에 돈을 쓰는 것이 너무 아까웠다. 그러니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으니 참아야 했다.

연구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에 집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긴 했지만, 학교랑 병원은 어떻게 했어요?

지성: 병원 못 갔죠.

연구자: 아파도?

지성: 아파도 못 갔죠, 그냥 참았죠.

(2023. 8. 31. 지성 1차 면담, 18쪽)

(아파도 다른 사람에게) 연락 안 하죠. 저 아파요. 실제로 어제도 아팠고 지금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는데 허리가 허리를 좀 못 피는 상황 좀 시간이 많아서 허리가 어제는 좀 아팠고 지금은 살짝 목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플 때 집에 혼자 있는데 그럴 때 좀 서럽죠.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약도 집에 없거든요. 약 먹으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어서 그럴 때 좀 서러운데 뭐 어쩌겠어요.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20쪽 강조는 연구자)

가정 밖 청소년은 몸이 아파 치료받기 위해 쉼터에 입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쉼터마다 의료비 지원은 차이가 있었고, 충분한 의료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연구자: (일시쉼터가) 의료 지원이 많이 안 된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창선: 이제 일시쉼터를 지내다 보니까 아파도 그냥 거기는 상비약이 끝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연구자: 선생님한테 ‘저 병원 가야겠어요’라는 말도 해보셨어요?



창선: 뭔가 이제 쌤들도 바쁘고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일시는 ‘그냥 일주일만 있다가 가는 거야 다른 데로 옮기는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말도 못하고.

(2023. 8. 31. 창선 1차 면담, 9쪽)

연구자: 근데 쉼터에 있을 때 아프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쉼터에서 약간.

효선: 병원에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직접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자: 음 아프면 안 되겠네요.

효선: 네 아프면 안 돼요. 손목 이런 거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거는 이제 보내주는 것 같은데 손목은 근데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쯤에 제가 퇴소를 당한 그런 거고, 이제 우울증 관련해서는 계속 지원받았어요.

(2023. 9. 15. 효선 2차 면담, 6쪽)

쉼터에 입소했을 때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지원 카드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기간이 다 돼서 정지를 당했대요. 기간이 다 돼서 못 쓰게 됐대요. 카드를. 그래서 재발급할 때까지 병원을 못 가고 재발급하고 나서도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 못 간 것도 있어요. (2023. 9. 11. 고유 1차 면담, 16쪽)

몸이 여기저기 아픈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나 연결된 시설들을 퇴소하게 되면 긴급한 치료임에도 지원받을 수 없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치료는 받기 어렵다.

저기 원래 살던 시설에도 얘기를 해봤더니 난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해줄 수 없다. 이제 아파 죽어가든 뭐든 ‘너의 보호자로 서 줄 수가 절대 없다.’ 이런 식 얘기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2023. 9. 26. 유성 1차 면담, 36쪽)

효선: 지금도 치과 치료가 필요해요. 근데 비싸서 도움을 못 받고 있어요.

연구자: 그러게. 맞아요. 치과가 비싸. 음 그 밖에 혹시.

효선: 그 밖에 우울증 관련돼서 지속적인 치료를 좀 받고 싶어요.

연구자: 지금 뭐 어 아까 OO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도 받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효선: 이제 저도 하고 있었는데 이젠 퇴소해가지고 그것도 못 받아요.

(2023. 8. 14. 효선 1차 면담, 16쪽)

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법적 보호자 : “너무 서럽게 울었던 기억”⁷⁸⁾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치료받고 싶어도 미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은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였다. ‘그 가정’으로부터 탈출한 청소년이 치료를 위해 법적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에, 쉼터에 입소해 치료를 지원받기도 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정신과를 예약하고 갔었는데 제가 본가까지 정신과를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옮겨야 되는데 제가 그 확인서 대학병원에서 온 그 진료 의뢰서까지 들고, 부모님이랑 통화도 가능하다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막상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희 병원 방침 상 정말 죄송하지만,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때 너무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요. ‘난 당장 내일 약이 없으면 너무 힘들 건데 나는 진짜 이제 어떡하지’ 해서 진짜 너무 그 병원 밖에 복도에서 너무 서럽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2023. 8. 18. 채운 1차 면담, 9쪽)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많이 오래되긴 했는데 병원 진료는 2020년에 처방받았고요. 성인 되고 나서 그러니까 미성년자 때는 미성년자라서 안 해준다고 하는 병원이 많다 그래서 못 갔고 성인이 되고 나서 갔었고 나와서도 심하긴 심했는데 (2023. 8. 23. 강민 1차 면담, 3쪽)

미성년인 가정 밖 청소년은 응급 상황에도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응급 상황이지만, 법적 보호자가 없기에 병원 가는 것을 포기하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혼내기도 했다.

한강에 뛰어들었을 때 제가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치료를 못 한다고 계속 하셔갖고. (2023. 9. 2. 준호 1차 면담, 26쪽)

14살 이후는 사실상 ‘위험하다’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17살 이후에는 응급실에 가면 좀 문제가 그런 게 있어요. ‘무조건 부모가 와야 된다’고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거 때문에 몇 번 병원에 바로바로 갔었던 경험이 있어서.(2023. 8. 9. 해수 1차 면담, 18~19쪽)

78) 2023. 8. 31. 수영 1차 면담, 12쪽



연구자: 아팠을 때 주로 어떻게 해요? 응급실도 보니까 좀 간 것 같고.

해수: 그러면 뭐 그때는 이제 OO센터 쌤한테 연락한다거나 OO 연락한다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는데 어떤 병원에서 이제 보호자가 직접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연구자: 그럼 어머니가 오시기도 하셨어요?

해수: 아니요. 어머니가 오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연구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해수: 되는 병원으로 갔어요. 전화로만 되는 병원으로 가서

연구자: 아 진짜. 그렇구나. 코로나 때는?

해수: 응급실 못 갔죠. 보통. 이제 자해를 하거나 약간 열이 올라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대기하고 했던 경험은 있어요. 저는 그때 거의 기절하다시피 했었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주변 사람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2023. 8. 9. 해수 1차 면담, 23~24쪽)

병원에서는 ‘보호자 없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료받기도 했고, 병원 관계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치료받기도 하였다.

연구자: 그때도 이제 응급실을 가셨던 상황들 일을 하시다가 쓰러지셔서 그랬던 몸에 열이 40도까지 오르셨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알기로 보호자 동의가 없이는 치료가 어렵기도 하는데 어떻게 좀 해결하셨어요?

유성: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애가 죽어가는데 그게 중요하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것 같아요.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35쪽)

제가 굉장히 응급실을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이제 공황 발작이 좀 심하게 일어나면은 바로 이제 119를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19를 타고 응급실을 갈 때도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난처했었거든요.

그때 머리가 정말 아파가지고 119를 불러서 갔었는데 그때 ‘보호자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거의 한 30분 가까이 듣고 치료실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밖에서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월하고 있고 월하고 있는데 제가 보호자를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기관들도 보통 오후 6시면 퇴근을

하시는 상황이라서 저녁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 연락을 하더라도 나 나를 데리려 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만약에 아침이 됐을 때 응급실에서 이제 지내고 아침이 됐을 때 그때는 기관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 기관에 전화번호를 넘겨드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처음에 뚫었어요(2023. 8. 15. 혜미 1차 면담, 18쪽)

다. 계속되는 심리정서적 위기 : “그냥 이제 반응이 없어요”⁷⁹⁾

‘그 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 주변인들의 폭력, 쉼터에서의 부당한 경험은 가정 밖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생활이 열악한 만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희진 외, 2018). ‘그 가정’에서 경험한 가정폭력으로 한 청소년에게는 극단의 분노와 즐거움만이 감정으로 남았다.

(오랜 가정폭력 경험 이후) 그런 게 있긴 한데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제는 뭐 슬프고 화나고 그런 거는 화나는 건 있어요. 근데 즐거움이랑 분노 빼면 다른 감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거 내가 화나는 거 그것만 쫓고요. 다른 거는 그냥 다 그냥 요즘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3. 8. 31. 수영, 1차 면담, 13~14쪽)

가정 밖 청소년은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삼혀야 했고 그 방법으로 자해를 선택하기도 했다. ‘그 가정’에서의 학대와 폭력, 주변인들의 폭력, 쉼터에서의 부당한 경험은 고스란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으로 드러나거나 자해나 자살시도로 이어졌다.

효주: 제가 화를 낸다거나 그런 적은 조금 아직은 드러내 본 적이 없어요. (중략) 늘 평생 옆에 있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있는 사람까지 떠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마인드여서.

연구자: 그러면 이제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효주: 혼자 울고 자해로 풀어요.

(2023. 8. 31. 효주 1차 면담, 18쪽)

79) 2023. 8. 31. 수영 1차 면담, 12쪽



제가 뭐냐. 혼자 살하는 법이 많았어요. 혼자 뭐 애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굵고 치고 많이 남긴 했는데 여기도. 여기는 전 여자친구가 자살했을 때 그렇고 그렇고 이거 여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다 부질없다. 그냥 이제 반응이 없어요. 즐거운 거 빼면 그냥 다 넘겨요. 쫓질 않아요. 재밌는 거 없으면.(2023. 8. 31. 수명, 1차 면담, 12쪽 강조는 연구자)

제가 그 시설에서 좀 힘들어지고 그런 좀 안 좋은 선택을 좀 하기도 하고 그랬어서 그런 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그걸 신고했어요. (2023. 8. 30. 송선 1차 면담. 5쪽)

한 8개월 가량이었는데 이때 가출한 이유가 제가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괴롭힘 때문에 정신과 약에 불면증 약이 있었는데 수면 유도제 한달치를 더 먹었었어요. 그러고서 쓰러져서 119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한 한두 달 입원을 하고 A쉼터로 돌아갔었는데 이때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쫓겨났었어요. 다른 쉼터로(2023. 9. 11. 고유 1차 면담. 5쪽)

그러나 시설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안, 부당한 규칙에 대한 강요로 인한 답답함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해, 자살 시도가 있었지만, 실무자들로부터 어려움을 이해받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이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괴롭힘을 당하고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불안해졌었고 그래서 상담도 받고 막 환청 들리고 환각이 보이고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있었는데 그때 상담이 갑자기 끊겨서 인원수가 많아서 상담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담이 갑자기 끊겼거든요. 그래서 혼자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딱히 스트레스 풀 만한 것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외출도 자유롭지 못했고 되게 모든 게 통제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자해를 하고 그랬었는데 피가 막 주룩주룩 날 때 선생님께서 보시고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셨었어요. 자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자해하냐고 한 번만 더 자해하면 정신병원에 가둘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더 자해를 하게 됐었고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어요.**(2023. 9. 11. 고유 1차 면담. 5쪽 강조는 연구자)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는 조금 제한이 있었지만, 그전에 집에서 살 때는 제가 몇 시에 들어오던 룰하든 제한이 아예 없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약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지냈는

데 이제 아동시설에 가가지고 규칙이라는 거에 마주하게 되고 그게 부당하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계속 강요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자해를 해가지고 정신과에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저는 OO대병원 약간 대학병원에 입원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그 대학병원에 있으면은 그런 좀 제한적인 공간에서 그리고 24시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주치의분들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자해를 좀 멈출 수 있었는데 이제 퇴원을 하고 이제 다시 정신 다시 양육시설로 들어가면은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그거를 거의 중2 때는 정신과 병동에 세 달도 있고 두 달도 있고 중2는 정말 그렇게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4쪽)

5. 사라지는 관계들

가. 사라진 소속감 : “너무 외로워요”⁸⁰⁾

탈가정 후 자유로움과 함께 외로움도 찾아왔다. 특히 몸이 아플 때 더 그랬다. 한편, 삶의 대부분을 시설에서 살아낸 청소년이 시설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시설이 유일한 집이었던 이들은 탈시설 후 ‘외톨이’가 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때 힘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것보단 심리적으로 힘든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그쵸.)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쓸쓸하게 걸어가면서 내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편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2023. 9. 2. 선기 1차 면담, 17~18쪽)

채선: 조금 쓸쓸해요. 아플 때나 밥 먹을 때나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는 혼자 있으니까 혼잣말이 늘기도 하고. 아플 때가 제일 좀 쓸쓸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집 나오고 나서 아팠었어요?

채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제가 생긴 건 이렇게 건장한데 몸이 약해가지고 자주 아파요.

연구자: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플 때.

채선: 그냥 자요. 약을 사 먹을 돈도 없기도 하고, 항상 아프면 밤이어가지고. 그냥 며칠 동안 그냥 계속 누워만 청소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2023. 9. 26. 채선 1차 면담, 4쪽)

80) 2023. 8. 25. 혜진 2차 면담, 14쪽



시설에서 나가는 순간 나는 외톨이잖아요.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외톨이 생활 시작.
‘이제 이 외톨이다. 내 친구를 내가 만든다’ 그런 느낌.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14쪽)

가정 밖 청소년의 거주지(시설) 이동은 전학으로 이어졌고, 전학이 잣아지니 친구들과 연락도 소원해졌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니 친밀한 또래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졌다.

연구자: 학교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양평에서 김포로 옮기고 김포에서
이제 서울로 옮기면서 학교도 계속 전학을 다니셨어요? 그러면 몇 번 정도 전학을
다니셨어요?

효주: 두 세 번 초등학교 한 번. 세 번 정도.

연구자: 시설 옮길 때마다 하신 거예요?

효주: 네.

연구자: 그러면 그때마다 좀 관계들이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니면 지금도
연락을 잘 하고 계신지 어떠신 것 같아요?

효주: 연락을 잘 안해요.

연구자: 잘 안 해요? 좀 그래서 좀 더 이제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실까요? 옮기면은
떠나갈 사람들이니까?

효주: 네(...)

연구자: (지금 다니는 학교에) 친구분들은 좀 있으세요?

효주: 아니요. 없어요.

(2023. 8. 31. 효주 1차 면담, 19~20쪽)

‘그 가정’에서 탈출하면, 일단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야 어느 정도 안심이 된다.
그러나 새로운 터전에 마음을 붙이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터전이 온전히 나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데,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
서 새로운 터전에서 소속감을 느끼기란 쉽지 않았다.

(원래 내 동네가 아니라고 생각한) 집은 내 집이긴 했지만, 동네는 내 동네는
아니었다.

(2023. 9. 19. 주혁 1차 면담, 23쪽)

뭔가 소속감은 사실 잘 안 느껴져요. 뭔가 확실히 좀 옛날에 비해서 좀 뭔가 봉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 OO에서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항상 노는 것도 OO에서 놀고 만나는 친구들도 OO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친구들이고 저는 이제 진짜 이곳에서 그냥 알바 가고 집에 오고 알바 가고 집에 오고 이런 것밖에 안 해 가지고 뭔가 OO 시민이라고 딱히 생각이 안 드는 거 같아요. 그렇게 소속감을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 뭔가 이 방만 이 방하고 이 집만 뭔가 내 공간인 것 같고 뭔가 항상 뭔가 밖으로 내려가면 되게 좀 낯선 그런 것 같아요.

(2023. 8. 18. 강솔 1차 면담, 15쪽)

한편, 가정 밖 청소년과 실무자와의 친밀함은 청소년들에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었다. 모든 관계가 그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지만, 실무자와의 관계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도 하였다.

연구자: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좀 떠오르는 곳이 있으실까요?

창선: 아니요. (...)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구자: 약간 기관인 사람들 말고?

창선: 네. (...)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밖에서 그냥 이렇게.

연구자: 여기서 만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은 아니예요?

창선: 네.

연구자: 어떤 좀 느낌으로 느껴져요?

창선: 그냥 일하는 사이고 그냥 선생과 학생 그 정도...

(2023. 8. 31. 창선 1차 면담, 17쪽)

가정 밖 청소년은 “누군가 나를 신경 써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2023. 8. 25. 혜진 2차 면담, 12쪽)” 사람이 그립고, “사람 대 사람의 관계” (2023. 8. 31. 창선 1차 면담, 17쪽)를 기대하였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좀 관심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그 누군가에게 그냥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누군가 자립했을 때 그냥 나를 그래도 좀,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 그냥 나



약간 외롭다. 이런 거 되게 외롭다. 물론 돈 관련 문제 돈에 관련된 건 난 절대 아니고 그냥 사람이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라포들이 그 사람과 잘 형성되면 좋겠다.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다.

(2023. 9. 19. 주혁 1차 면담, 32쪽)

나. 스스로 단절하는 관계 : “결국 다 들었어요”

가정 밖 청소년은 다양한 이유로 관계를 차단당하기도 하고 스스로 관계를 차단하기도 한다. 시설에서 머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과 실무자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어떤 입소생이냐에 따라서 또 그 입소생이 있을 때는 ‘질했어’ 이렇게 하다가도 없으면 ‘아까 하는 거 봤어요? 재 싸가지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종종 들었고 그러면 제가 없을 때도 그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 사람들도 충분히 저희 저의 귀에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안 생겨가지고(2023. 8. 23. 수현 1차 면담, 12쪽)

쉼터에 지내면서 좀 뭔가 되게 좋은 친구들도 많았지만 되게 좀 갈등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사람에 대한 뭔가 애정이라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식고 그냥 좀 일단 나를 최우선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랑 좀 교류하는 데 좀 재미도 있었고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 뭔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하고 이런 게 좀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 같으면 알바하는 데서도 사람들이랑 이제 얘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거나 뭔가 이런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는 일하는 데서 사람을 굳이 이렇게 막 깊게 사귀지 않고 그냥 내 일하는 거에 충실하고 뭔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인연들을 그냥 소중히 하자 더 뭔가 추가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2023. 8. 25. 해린 1차 면담, 12쪽)

가정 밖 청소년은 일을 구하느라 친구들과 연락할 시간이 없어 갈등이 생기고, 일을 하다 보니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쉼터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타인들과의 관계를 차단하기도 했다.

계속 제가 일을 찾다 보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애들이 연락을 안 해준다고 계속 뭐라 하길래 제가 엄청 심하게 승질내고 욕하고 그랬었어요. (...) 계속 면접 보려 다니니까 중간 중간 연락할 시간이 없어요. 뭐라 해야 되지 연락을 하더라도 제가 답장을 못 해주니까 그냥 아예 연락을 안했어요.(2023. 9. 2. 준호 1차 면담, 24~25쪽)

유성: 막 전화 와요. 그래서 ‘너 어디야’ 이러면 ‘나 집’ 이러면 ‘나 GS25데 나올래?’ ‘아니 나 뭐야 집 거기 다 오긴 했는데 또 나 다시 바로 나가야 돼.’ 이러면서 거짓말 치면서 안 만나고. 일부러 피하고.

연구자: 피하시는 이유는 좀?

유성: 사실 제가 친구들을 1년 동안 거의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고 싶어서 아직 놀았던 감정이 기본 남아 있잖아요. 사실 제가 어떻게 한 순간만을 일만 할 수 있었겠어요. 놀고 싶었던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랬어요. 지금도 솔직히 놀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잠깐 노래방 가든, 볼링을 치든, 당구를 치면 칠수록 더 게을러지고 더 놀고 싶어지고 내 본업이 갑자기 사라지게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멀어질 것 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른들만 만나고....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38쪽)

탈가정 청소년이 살아내기 위해 소속감을 잃기도 하고,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단절해야만 하는 관계도 있다. sns 상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더 빠르고 더 쉽게 청소년에게 잠자리와 먹을거리를 제공하며 돋겠다고 접근하여 그들을 착취하는 ‘헬퍼’, 이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관계다.

그 집에서 조금 성매매도 강요받고 강제로 성매매 성착취도 8개월 동안 당하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지고 좀 소변을 못 가릴 정도로 찢어지고 피가 나오고 씻지 못할 정도로 몸이 망가졌었어요. 열이 나오고 그래서 누워 있을 때도 누워서 울고만 있을 때도 당했었고 그냥 뭐 그렇게 성매매를 당하고 모텔에서 성매매를 당했을 때도 있고 차 안에서 당했을 때도 있었어요. 저를 감금했던 남성분께서 데려가고 데리려 오고 좀 그런 식으로 뭐 어디 가는지 위치 추적 앱을 깔아서 통제하고 나간 지 10분 안에 집에 안 돌아오면 전화하고 위치 추적해보고 막 따라와서 데려가고 그랬거든요. (2023. 9. 11. 고우 1차 면담, 8쪽)



6. 차별과 위험의 교차성

가. 차별적인 시선 : “거의 다 저를 그런 식으로 봐요”⁸¹⁾

사회가 정한 경계를 벗어나면, 혐오와 차별이 난무한다. 나의 선택이 아니었음에도 태어남과 동시에 ‘시설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그들의 삶의 이력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시설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인들의 시선이나 태도가 달라짐을 느끼기도 했다.

내가 폭력이라고 느낀 거는 ○○서 내가 뭐 집을 늦게 들어왔다거나 말을 안 들었다거나 뭐 친구랑 싸웠거나 이런 것들을 다 나는 이제 맞았기 때문에. 맞고 항상 깨지 같은 걸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나는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을 만하지’라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폭력이지. 그리고 차별이라고 느낀 거는 이제 ○○의 집에서 뭐라 해야 될까. 부모님 있는 애들한테는 좀 더 잘해주고 우리한테는 나랑 이제 언니한테는 저는 뭐 이를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얘기할 때도 없으니까. 약간 좀 우리가 나갈 때 했던 소리가 있어. ‘너네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못 배운 먹은 티라고 듣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네가 계속 버림받지’ 약간 이런 소리를 마지막에 들었었거든. 그래서 내가 언니가 이제 다시 우리 한번 무릎 꿇고 들어가 보자 했을 때 나 다시는 내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런 소리 듣고 살 바에 차라리 밖에서 지내자. 그게 나는 이제 나한테 차별이었지.(2023. 9. 11. 찬선 1차 면담, 22쪽)

연구자: 그런 일(쉼터 생활이 알려지는 일)이 있으면 막 친구들이랑 관계가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요?

효선: 네 좀 많이 불편해졌었죠.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그 무리에 있었던 애들이랑은 더 이상 친하게 지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도 있긴 했는데 그냥 좀 깔끄러워진 것도 있고.

연구자: 어떤 점이? 효선님이? 그 친구들이?

효선: 그냥 그 친구들이 좀 깔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애들의 시선이 약간 좀 달라진 것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연구자: 그런 게 느껴지면 좀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선: 난 괜찮은데 이제 걔네들이 시선이 달라진 거니까 그냥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고.

81) 2023. 9. 2. 선기 1차 면담, 28쪽.

그 애들은 원래 약간 좀 뒷담 같은 걸 즐겨하던 애들이었으니까 그냥 느낌이 확 들었어요.

(2023. 9. 15. 효선 2차 면담, 18쪽)

청소년은 가정에서 보호받으며 학교에서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기에 ‘그 가정’이나 학교를 탈출한 가정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으로 낙인되었다. 이러한 낙인은 차별적인 상황으로 이어졌다.

거의 다 저를 그런 식으로 봐요. 자퇴까지 했다고 하니까 근처에 있던 애들이 ‘쟤 저럴 줄 알았다’ 이 정도. 처음에는 소문 듣고 많이 충격받기도 했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소문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교를 이제 공황장애가 생겨서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으로 계속 쉬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학교 나가고 하면 ‘야 쟤 학교 안 나오는 날에 그런데 출근해서 돈 버는 거래’ 이런 소리 소문 다 들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라지 뭐’ 하고 있었어요. (2023. 9. 26. 채선 1차 면담, 13쪽)

다은: 이때 사는데 이 언니가 갑자기 어딜 간다고 그래서 따라갔죠. 집주인이 없는데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고를 치는데 제가 거기에 방관자로 잡혀 가지고

연구자: 이 언니가 뭔가 가해한 뭔가 범죄

다은: 네. 범죄의 한 장면을 그냥 만들어내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언니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아니다. 빠자. 근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가출 신고가 들어가 있어서 (엄마가 가출) 신고를 한 것 때문에 제가 여기(6호처분 시설 ○○○○)를 들어갔어요. 잘하면 빠질 수 있었는데 (...) 주거지가 불안정해서 난 여기 가서 여기 들어가라 그래서 ‘네’ 이러고 들어갔죠.

(2023. 8. 21. 다은 1차 면담, 15~16쪽)

나. 나이주의 : “어리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⁸²⁾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자격을 요구받고 의무를 강요받았다. 다양한 정체성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요구하면서 해야 하는 것들을 강요하였다.

82) 2023. 9. 2. 준호 1차 면담, 18쪽.



선기: 그래서 그냥… 그리고 또 부당하다고 느껴진 거는 음… …쉼터도 다 너가 10대니까 그냥 무슨 무슨 ‘니까’, 그런 게 뭔지 아시죠? 그런 게 자꾸 붙여요.

연구자: 어 너가 아래서 이런 거잖아, 라고.

선기: 너가 남자니까, 뭐 10대니까, 미성년자니까, 청소년이니까, 그런 ‘니까’가 무조건 붙는 거예요. 앞에, 주어 앞에.

연구자: 그리고 그 어미는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로 끝나는 거잖아요.

선기: 네.

연구자: 그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느끼고.

선기: 네.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자: 예를 들면 뭐가 있었어요?

선기: 너는 10대니까 알바, 알바하면 안 돼.

(2023. 9. 2. 선기 1차 면담, 21쪽 강조는 연구자)

가정 밖 청소년은 나이가 어려서 필요한 지원을 받기 어렵기도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거주지가 불명확한 노숙 청소년 또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17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다은: 제대로 지원받는 거는 이때부터예요. 이번에. 이번에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원래 받을 수 있어’라는 건 되게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제 제대로 받는 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지금이.

연구자: 이 기간이. 근데 다 다은님은 어쨌든 10대였을 텐데 왜 왜 한 번도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으셨을까요?

다은: 10대라고 해서 다 주지 않더라고요.

연구자: 뭔가 시도해 본 적도 있으세요?

다은: 아니요. 안 된대요. 그냥 다. 나이가 어려서. 지금도 나이가 어려서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연구자: 뭘 해보려고 했을 때 ‘나이가 어려서 안돼’라고 했어요?

다은: 그리고 안 알려주기도 했었고 그냥 얘기로만 ‘이런 거 있대’, ‘아 그러냐’, ‘그럼 나도 할 수 있느냐?’, ‘넌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연구자: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다은: 쉼터 샘들이라든지 살짝 OOO에 있어서 선생님이나, 거의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 했어요. ‘근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이 더 먹고 올게요.’

(2023. 8. 21. 다은 1차 면담, 18~19쪽, 강조는 연구자)

가정 밖 청소년은 일터에서도 혐오표현을 견뎌야 했다. 우중은 구직의 과정에서 “어려서 못 믿겠다, 그렇게 어려서 일을 잘 하겠냐(2023. 8. 28. 우중 1차 면담, 36쪽)”는 표현을 듣기도 했다.

저는 차별인가 싶긴 했는데 확실히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하고 그랬어 가지고 좀 다른 삼촌이나 이모들이 이렇게 그 테이블에 갔을 때 그냥 어떤 아저씨, 할아버지는 물냉면 하나 주세요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나 이제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데, 이제 제가 가면은 이제 ‘야’로 부르는 걸로 시작해 가지고 ‘야 여기 여기 뭐 하나 가져와 봐’ 아니면은 ‘야 뭐 된장찌개 고추 많이 넣으라고 말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말투부터 바뀌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걸로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표시할 길이나 속상하다고 털어놓을 만한 곳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너무 어이없는 채로 그냥 이렇게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뭐 저런 아저씨가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2023. 8. 18. 강솔 1차 면담, 20쪽, 강조는 연구자)

찬선: 처음 20살 때 배달 전문점에서 OOO 나오고 일을 했었을 때 그때는 지각 이런 거 했었는데 ‘너는 배운 게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그려느냐’ 라면서 그랬지.

연구자: 그런 얘기를 그냥 막 대놓고 했구나.

찬선: 응. 집 구할 때는 없었어.

연구자: 그래. 예전에 누가 그러는데 막 청소년이거나 나이가 어리면 아예 계약 안 한다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

찬선: 나 고3 때 OO랑 집 구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계약 안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라서 그래서 하나의 이름으로 했어. (...) 응. 그리고 걔네가 중개비를 줄라 많이 쳐먹었어. 40만 원인가 고시원을 구했는데 그 중개 사람이 40만 원 나한테 40만 원 달라고 했어. 나는 진짜 40만 원인 줄 알고 줬지. 근데 아니었어.

(2023. 9. 26. 찬선 2차 면담, 21~22쪽 강조는 연구자)



다.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 : “성매매도 강요받고”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은 sns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헬퍼는 잠자리와 먹을 것 등을 제공한다며 접근했다. 당장 잠자리와 먹을거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은 달리 대안이 없었고 그들의 도움을 믿고 싶었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환청이 보이고 환각이 보이고 그랬었어서 폐북에 가출이라고 검색을 해봤었는데 무슨 가출 그룹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 들어갔는데 무슨 헬퍼 헬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설명문이 있었는데 헬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헬퍼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요. 그래서 글을 게시 글을 보니까 가출한 애들한테 밥 사주고 뭐 지낼 곳 얻어주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렸어요. (...) 그때 저의 의견이나 저 자체가 존중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환각도 보이고 너무 답답하고 조금 미칠 것 같고 그래서 가출을 선택했고 가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냥 뭐 재울 곳 재워주겠다 이러면서 다 남자여서 연락을 그냥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안 받았는데 어떤 여성분 프사로 되어 있는 여성분 같아 보이는 사람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2023. 9. 11. 고유 1차 면담, 8쪽)

내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갈 데가 없다. 그랬더니 이제 답변으로 그러면 내가 지금 고시원을 하는 총무 약간 사장 이런 느낌이니까 우리 쪽으로 와라 내가 지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픈 채팅으로 땅땅역 주변에 사는 여자분 혹시 하루만 지워줄 수 있느냐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 거기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이제 그냥 내가 pc방 찜질방이라도 가서 잘 돈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차라리 거기 가서 자라 지금 여기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 많으니까 내가 돈 2만 원을 붙여줄 테니까 거기서 pc방에서 있어라 그런 거예요.

(2023. 9. 4. 연선 1차 면담, 3~4쪽)

여성청소년은 임대인으로부터, 일터에서, 일상생활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성폭력에 노출되었다.

은수: 그러기도 했고 지금 그 편의점 알바도 하고 있는데 좀 만만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섹스 언제 처음 해봤어? 처음 할 때 어땠어?

연구자: 누가?

은수: 어떤 할아버지 손님이에요. 저한테 언제 처음 해봤어? 처음 할 때 너무 아파서 울었지? 처음 할 때 나이 많은 남자랑 했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38쪽)

효선: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집주인이 밤에 전화해서 술 마셔서 저한테 오빠라고 불러라
막 술 마시러 와라 이런 얘기를 한 두 번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
던 것 같아요.

연구자: 무서웠겠다.

효선: 음 솔직히 약간 좀 20대 여성한테 약간 들이대는 아저씨들이 되게 많긴 했는데
솔직히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연구자: 회사에서도 있었군요.

효선: 회사에서도 있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의점 아저씨나 아니면 교회 선생님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교회 예전에 다녔었어요. 그 예전에 다녔던 교회 선생님한테
연락이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연구자: 교회 선생님이 연락이 됐다는 게.

효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잘 따랐던
선생님이었는데 그냥 그분이 연락이 달은 거예요. 제가 그때 아마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연락이 달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가끔씩 연락을 하게
된 거였는데. 음 나중에 문자로 약간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좀 바빴는데 연락도 일부러 안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 가지고 내가 여지를 준
게 없는데 왜 왜 이렇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2023. 9. 15. 효선 2차 면담, 16쪽)

라. 복합적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청소년 성소수자 : “못 믿겠다”

청소년 성소수자의 탈가정은 한층 복합적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주변인들에게 탈
가정의 계기를 말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성정체성이 드러나거나 아웃팅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자신을 숨기게 되었다.



연구자: (...) 그럼 진짜 그냥 집에서 잠깐 나왔어,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네요, 그 집은?

(선기: 네.) 그게 좀 시기도 오래되고 또 친구들이 서로 아는 친구들일 거잖아요. (선기:

네.) 그럼 사람들이 상황을 좀 더 알고 있거나 좀 더 뭔가 그런 게 달라요? 이 처음에
한두 명에서 지금 그래도 많은 친구들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의 반응이나 주변
사람들, 뭐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게?

선기: 하~. (한숨)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달라졌어요. (연구자: 달라졌어요?) 해요.

연구자: 그러니까 뭐 더 물어보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

선기: ‘왜 가출을 했냐?’ 그래서 ‘가출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싸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들기고 싶지 않으니까. 친구들한테 말하면 괜히 아우팅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3. 9. 2. 선기 1차 면담, 33쪽)

청소년 성소수자는 성정체성을 밝히고 쉼터에 입소했으나, 명확한 이유를 듣지
못한 채 퇴소당했다. 지성은 쉼터에서 퇴소당하며 ‘상실감을 크게 느꼈고 사기가 떨
어짐’을 느꼈다(2023. 9. 6. 지성 2차 면담, 7~8쪽).

지성: 처음에 들어갈 때 그냥 애초에 얘기를 했어요. (연구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라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걸로 문제 생기는 것보다는 안 된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깔끔하
게 포기하고 나가자. 어차피 여기 아니면 살 데 없는 것도 아니다. 다시 산에 들어가면
된다. 이러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냥 뭐 그래, 뭐 문제만 안 일으키면. 하고 넘어가서.

연구자: 근데 남자친구를 안도 아니고 밖에서 만들었는데 만나러 간다,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성: 그쵸. 나가라.

연구자: 나가라? 그 이유가 뭐예요?

지성: …잘 모르겠어요

(2023. 8. 31. 지성 1차 면담, 36~38쪽)

청소년 성소수자는 성정체성을 이유로 쉼터에서 쫓겨나기도 했고, 커밍아웃을
했음에도 실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다(2023. 8.
30. 현빈 1차 면담, 5쪽). 한편,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쉼

터의 실무자를 만나면서 편견이 없는 쉼터를 경험하기도 했다.

연구자: 그러면 여기가 진짜 편견이 없네, 싶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느낀 이유가 있어요?

현빈: 오히려 이제 편견이라기보다는, 저랑, 저를 담당했던 선생님부터가 저한테 혹시나 내가 너한테 실례가 되는 말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하게 되면 알려줘라, 나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연구자: 성소수자에 대해서.) 네. 너무 상처받지 말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도 하셨고. 이제 센터장님 (웃음) 굉장히 좋은 분이시거든요? 편하시고 착하시고 근데 이제 그…분이 어 그래? 그러면 현빈이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겠네, 같은 말도 하고. 그래서 그냥,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연구자: 한 번도 정체성 때문에 불편했던 거나 부당했거나 이런 적 없었어요? 선생님.

현빈: 그런 거 없었어요.

(2023. 8. 30. 현빈 1차 면담, 25쪽)

한편, 청소년 성소수자는 쿼어커뮤니티를 통해 잘 곳을 제공받기도 하고 후원금을 제공받기도 하고 베틀 힘을 얻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기억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었다.

연구자: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었어요? 대충 기억하기에.

우중: … 처음에 올렸을 때, 그냥 다들 친해지고 나서? 집 나갈 것 같은데 재워줄 사람이 있는지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구해져서 나오고, 또 지내다가 또 여기저기 다니고.

연구자: 거의 다 트위터 쿼어 계정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어요?

우중: 네. 전부.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16~17쪽)

연구자: 그 커뮤니티?의 의미가 좀 커요? 우중님한테? 그때나 지금이나.

우중: 그땐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트위터로 알게 된 사람들이었고 트위터를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은 것도 있었고. 나오고 직후에 약간 후원 글? 이런 걸 썼는데 그때 또 되게, 그때 생각하면 되게 큰 돈을 받았었고.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50쪽)



현빈: 솔직히 계속 그 친구한테 불어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트위터에 이제 지금은 거의 못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와주세요’ 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한 물 탔죠.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여러 가지 쭉 짹~ 타래로 이어놓고.

연구자: 응. 그분하고는 며칠 지낸 건데요?

현빈: 그렇게 친구하고는 이틀? 지냈다가 이틀은 찜질방에서 보냈어요. 서울로 와서.

연구자: 그리고 그 시기에 쉼터를 안 갔던 건 아까 얘기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고.

현빈: 그쵸. 못 믿겠다.

연구자: 그래서 그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현빈: 그래서 제가 찜질방을 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 아 거기 사람들이 돈을 입금해줘서.

현빈: 네. 아직도 누군지 찾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2023. 8. 30. 현빈 1차 면담, 17~18쪽)

연구자: 우중님이 (다른 탈가정 청소년 성소수자를) 도와준 적도 있어요?

우중: 도와준 적…… 네. 그런 도와줌은 없는데 그냥 재워주라고 하면 재워주는 정도.

연구자: 아 그래요. 집 나온 청성들(청소년 성소수자)?

우중: 청소년? …약간 그냥 지낼 곳 없다는 사람들 재워준 정도.

연구자: 아 그래요. 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우중: 네. 왜냐면 저도 받았던 도움이나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돈은 못 주더라도.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51쪽)

제4절 | ‘그 가정’ 바깥과 연결되지 않는 지원체계

1. 신뢰할 수 없는 제도

가. 도움이 되지 않는 학교: “학교가 물어버렸어요”

‘그 가정’으로부터 물리·심리·정서적 측면 모두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에게 가족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어주지 못한다(김희진 외, 2018:34). 상당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남과 같은 가족에게 의지하기보다 차라리 외롭고 힘든게 낫다(2023.9.26 채선 1차 면담, 12쪽)”며 탈가정 이후의 삶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오고 있다.

‘그 가정’으로부터 폭력과 차별을 견디고 겪으며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학교는 안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되어주지 못했다. 현빈은 그 가정과의 어려움을 겪으며 학교에서 자해를 하였다. 적극적인 치료와 개입이 필요했던 위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현빈을 “한심하게” 보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학교마저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그들은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헤미의 경우에는 중학생 당시 사귀던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지만, 담임교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교내 징계 수준으로 사건을 덮었다.

17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가족이랑 좀 더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딱 그었다가. 어, 큰일 났네? 그때 일단은 보건실에 찾아가 봤는데 보건 선생님이 안 계셨고, 그래서 그때 담임 선생님을 찾으러 갔는데 담임 선생님도 안 계셨고. 전 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갔는데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이제 도덕쌤이 있길래… 도와주세요, 했다가 이제 욕을 한 바가지 먹었죠. 되게 한심하게 보시면서 그러는 거 아, 그러는 게 맞냐. 보고 일단, 일단 저한테 뭐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연고 바르고? 아니 솔직히 꼬맹 정도였는데 연고를 바르는 것도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고 이제 올라가! 하길래 올라가는데 그때 계단에서 많이 울었죠. 너무 속상해서. (2023. 9. 7. 현빈 2차 면담, 5쪽)



학교에서는 제가 이거를 고소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고소해봤자 이거 별로 처벌도 안 된다. 학폭위를 열어 가지고 그냥 알아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해서 **학교가 물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해자가 받은 처벌은 교내 봉사 11일이었어요. 그게 좀 힘들었죠 어떻게 보면.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4쪽 강조는 연구자)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의 보호에서 이탈되어 시설에서 지내는 것은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상 담당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히스토리가 드러나게 된다. 은수는 좋아하고 따랐던 교사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담임 교사로 부임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 효선 역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교사에 의해 동료 학생과 교사에게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은수 : 다른 선생님들일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대전에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좀 좋아하고 따랐던 선생님이 담임이 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한테는 말을 안 하고 싶었는데 말할 때 조금 그랬죠.

연구자 : 그러면 그렇게 고등학교 계속 있으실 때 이야기하게 되는 거는 학년이 바뀌면 그 바뀐 담임선생님한테 쉼터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은수 :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전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넘겨주시거나 그러신 것 같아요.

연구자 : 진짜 그렇게 막고 싶었겠다.

은수 : 얘기를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2023. 8. 9. 은수 1차 면담, 15쪽)

선생님들이 저를 어 좋게 봐주는 것도 알고, 약간 좀 불쌍한 아이처럼 여겨주시는 것도 감사하긴 한데. 근데 이게 저는 한 분한테만 얘기했는데 그 한 분이 다 널리 퍼뜨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널리 퍼뜨려서 저희가 수학여행을 갈 때였는데 제가 약간 좀 가난한 아이처럼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얘들이 너 못가? 여행 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저는 그냥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2023. 9. 15. 효선 2차 면담, 18쪽 강조는 연구자)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 정보가 공유되는 학교를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까? 교사와 학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학교는 신뢰할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 안전한 사회적 관계망이 부재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학교와 같은 사회적 공간에서의 신뢰와 안전감은 중요하다. 학교에서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주는 곳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해주는 느낌을 받게 했던(2023. 8. 29 우중 1차 면담 12쪽)” 교사가 중요한 이유다.

나. 기댈 수 없는 지원기관 : “선생님들이 했던 말은 계속 남아요.”

전국에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들⁸³⁾이 있으나 연구 참여자들은 안전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효림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인 1388에 ‘죽겠다’며 힘들다고 전화해도 ‘장난 전화 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은 적이 있다. 해수의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6개월 후에 연락을 받았다. 청소년 지원기관은 개별 기관의 편차가 크지만 다수의 기관에서 인력 부족, 업무 과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종사자들이 많다(백혜정 · 송미경, 2015). 결과적으로 전국의 수백 개의 청소년 지원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들이 가정 밖 청소년을 비롯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효림 : (1388에) 그냥 가서 징징거렸어. 전화해 가지고. 힘들다. 그냥 인생 다 놓고 한강에 뛰어 들고 싶다. 아니면 나를 그냥 압록강 던져달라고 달라고.

연구자 : 상담 쌤이 놀라셨겠다.

효림 : 장난전화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아오 진짜 내가 그래서 막 이제 그때.

연구자 : 아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효림 : 처음에 처음에는 압록강 막 던지라고 막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강 이름 다 말했거든 한강 압록강.

연구자 : 그때 마음은 진짜 힘드셔서 전화하신 거기는 하셨겠다.

83)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22개소), 청소년쉼터(138개소), 청소년자립지원관(13개소), 청소년근로보호센터(17개소), 청소년회복지원시설(17개소) (2023년 기준. 출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효림 : 거기가 약간 케바케에요. 약간 받는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나 죽겠다 하니까 장난전화 하지 말라, 여긴 급한 사람들만 전화하는 데다.

(2023. 8. 20. 효림 1차 면담 12쪽)

연구자: 근데 그러면은 이럴 때 좀 뭔가 아까도 이제 상담복지센터 통해서 여기 연결되셨다고 했는데 그런 데 도움이 된 적은 없었어요?

해수: 그때는, 그때도 또 신기했던 게 원래 이제 제가 좀 어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원래 청상(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 뒤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람이 밀려서 그래서 나중에 잊고 있을 때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2023. 8. 9. 해수 1차 면담, 5쪽)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 업무과다, 낮은 임금 등의 구조적 문제는 높은 이직률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저하, 청소년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로 이어진다(백혜정 · 송미경, 2015). 청소년 지원기관은 가정 밖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자원 안에서 종사자들은 청소년 개별 상황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우며 시설 운영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원만한 시설 운영을 위해 통제와 관리는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심지어 자해, 자살, 정신질환 등 더 세심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 폭언을 일삼는 지원기관 종사자도 있었다.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면 시설에서는 “엄청 많이 쫓아냄(2023. 9. 26. 유성 1차 면담, 6쪽)”으로써 문제를 덮는다. 자원이 부족한 구조의 한계를 이야기하기보다 현실을 이유로 관리와 통제가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을 시설 밖으로 혹은 다른 시설로 이관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관 종사자들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우리를 귀찮게 해 가지고 힘들게 (...) 그러니까 (...) 오로지 내 잘못(2023. 8. 20. 효림 1차 면담, 7쪽)”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 땜은 약간 들어오는 가출 여성 청소년들의 기에 지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시는 게 보였어요. 되게 자해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너 더 깊게 굿지도 못할 거면서 뭐 하려 굿냐. 이런 얘기하고 막 죽고 싶다고 하면 쉼터 이미지 나빠지니까 나가서 죽으라고 하고. 그런 폭언들이 그냥 냅다 해버리고 저한테도 비슷했고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7쪽)

공황장애가 많이 심해가지고 그때 제가 공황 발작이 엄청 심하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생활지도원 그러니까 저희 숙소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애들 다 자는데 그럼 큰소리 내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엄청 다그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게 아니고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게 아닌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있을 것 같다 하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7쪽)

이미 ‘그 가정’으로부터 피해를 겪은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도움을 주겠다는 지원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폭언이나 차별과 같은 일을 경험한 이들이 많다. 고유에게 쉼터는 “괴롭힘과 폭력이 되게 많”고 “선생님들의 대처도 참 암담”한 곳이다. 가정 밖 상황에 놓인 청소년에게 쉼터 이외의 선택지는 거의 없다. 거의 유일한 지원기관인 쉼터 종사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원가정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을 가한다. 물론 모든 쉼터 종사자들이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연구자들은 꽤 많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은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로부터 “네가 예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그 이야기는 오래도록 상처로 남았다.

연구자 : 쉼터에 가신 이후에 사실 되게 낯선 환경이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고 해서 지내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혹시 그 쉼터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던 걸로 기억하세요?

고유 : 괴롭힘과 폭력이 되게 많았고 선생님들께서 외면하는 것도 일상이었고 괴롭힘 속에서도 너가 잘못한 건 없어 너가 어떻게 했으면 걔가 그래라는 식으로 입장을 표하셔서 지금 쉼터에서도 괴롭힘을 당했었고 선생님들의 대처도 참 암담했습니다.

(2023. 9. 11. 고유 1차 면담, 3쪽)

은수 : 근데 뭔가 살다 보니까 애초에 나한테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별로 아프지가 않거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상처는 별로 그렇게 와 달지는 않았는데 나를 도와준다고 했던 경찰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선생님들이 한 말은 계속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연구자 : 좀 남아 있는 것 중에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은수 : 아보전 선생님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막 선생님이 저한테 왜 그 집에서 나오게 됐는지 이런 걸 물어보셔서 얘기를 했더니 네가 예뻐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성폭행 당한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보전 선생님이 저한테 네가 예뻐서 그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보전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나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상처였던 것 같아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36쪽 강조는 연구자)

고소를 진행을 했는데 법적 대리인 동의 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제 국선 변호사라든지 그런 소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소통 같은 거를 아동양 육시설에서 해줘야 된대요. 해바라기 센터 말고는 근데 그때 이제 생활복지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사무실에 그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너가 합의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가 애초에 좋아서 만났던 거 아니냐 이거를 굳이 고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미 할아버 지랑 아빠 거 우리가 해결해 줬지 않냐 정신과 우리가 해결해주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이런 지원 안 해줄 거다 라고 딱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시는 거예요.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7쪽)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불안정한 삶에 “같이 동행(2023. 8. 30. 현빈 1차 면담 15쪽)” 할 수 있는 청소년 지원기관은 청소년에게 거의 유일한 비ael 언덕이다. 그런 까닭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둘러싸인 일상을 살아가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늘 곁에 있다’는 안정감과 ‘여긴 좀 믿을 만하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청소년 지원기관은 너무 중요하다(나영정 외, 2020:47).

다. 보호하지 않았던 경찰 : “해줄 수 있는 거 없다고”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 내 폭력과 같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그들에게 사회적 보호망이 되어주지 못했다. 지성은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정 내 사안이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성의 경우 이외에도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경찰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경찰이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감각하게 된다.

집에 있을 때. (친부가)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개지랄하길래. (...) 집 안에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여동생이. 술 처먹고 들어와 가지고 또 문고리 박살 내면서, 개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개가 앞다리가 두 개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개 막 울고 있고, 여동생은 막 진짜, 여동생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 개도 울고 있고. 그래서 야이, 씨발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신고를 한 번 했거든요? 경찰이 왔어요. 왔는데 와 가지고 저랑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가정 내에서 사안이니까 뭐 해 줄 수 있는 거 없다고 그냥 갔어요. (2023. 8. 31. 지성 1차 면담 21쪽 강조는 연구자)

한편, 경찰로부터 연령에 의한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다. 예컨대 준호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른들 있으면 말해줄 겠다”며 경찰조사 과정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고유 또한 나이가 어려서 사건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은 채 서명하도록 강요를 받았고 지원기관으로부터도 관계자 동석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연구자 : 그럼 그분 어쨌든 시비 거신 분들은 경찰 처리가 좀 잘 되셨었어요? (...)

준호 : 모르겠어요. 저도 처벌을 받는다고 그랬고 지금. (...) 정확하게 말은 안 해줬어요.
(...) 전 그냥 미성년자라서 보호자가 옆에 없으니까 제대로 말 안 해준다는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연구자 : 물어봐도 좀 답변을 받기 어려웠어요? (준호 : 네) 보통 뭐라고 하시면서 답변 안 해주세요?

준호 : 그때 그냥 어른들 있으면 말해주겠다 그 소리 했었어요.

(2023. 9. 2. 준호 1차 면담, 33-34쪽)

지금은 알지만 서류 같은 거에 '동석하시겠습니까?'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무도 안 알려줬었고 경찰이 그냥 '이거에 체크해라. 이거에 체크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나이가 15살이었었고 그냥 되게 조금 성격도 순진하고 그랬었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참고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아요. 쉼터에서도 동석을 해준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안 알려줬었고 (2023. 9. 11. 고유 1차 면담 3쪽)

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경찰 등을 가정 밖 청소년에게 마땅히 연결되어야 하는 공적 지원기관이다.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은 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별로 의존할 곳(2023.



8. 23. 강민 1차 면담, 12쪽)" 이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가족 돌봄의 공백은 그들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지할 만한 어른은 부재했다.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가족이 아니더라도 많이 연결되는 환경이 더 만들어져야(2023. 8. 1 8. 혜진 1차 면담, 12-13쪽)" 할 필요가 있다.

2. 누구에게는 넘치지만, 누구에게는 없는 정보

가. 연결되지 않는 정보 : "신청하는 거 몰라요."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은 정보접근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도와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은 필요한 자원과 연결될 수 없다. 찬선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해 무사히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 지원 기관이 세심하게 그 과정을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 제도들에 대해 정보를 구할 수 없었거나, 알더라도 신청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미영은 청소년 주거 시설에서 퇴소한 뒤 주거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한 번도 신청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 희봄도 주거 지원 제도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재선은 면담 과정에서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처음 알게 되었고, 다른 가정 밖 청소년들도 잘 모를 거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연구에서 만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지원이 있다는 것이 보다 많이 알려지기를 바랐다(2023. 9. 1. 동우 1차 면담, 14쪽).

연구자: 음. 그러면 월세는 그래도 자립지원금으로 조금 보전이 되네요. 혹시 수급? (미영: 네.) 그러면 수급비에서 주거 수당이 따로 나오지 않아요?

미영: 몰라요. 아직 신청 안 해봐가지고.

연구자: 신청 안 했어요? 뭐를 신청 안 했어요?

미영: 뭔가 아직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저 신청하는 법을 몰라서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진짜.

연구자: 아. 쉼터 나오고 나서 그걸 신청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한 상태인 거구나.

미영: 네. 하는 법도 몰라. (...) 신청하는 거 몰라요.

(2023. 8. 11. 미영 1차 면담 7-8쪽)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정보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 집안이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받으면서 알았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어떤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 지원 외에는 다른 건 몰랐었어요. (2023. 8. 14. 희봄 1차 면담, 10쪽)

연구자 : 그랬나 보다. 자립지원관 같은 거 있는 거 들었어요? 자립지원관 들었어요?

재선: 그게 뭐예요?

연구자 : 그렇게 혼자 사는 청소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몰랐나 보다.

재선: 네 몰랐어요.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2023. 8. 30. 재선 1차 면담 29쪽, 강조는 연구자)

가까스로 청소년 지원기관과 연결되더라도 “거기서는 또 안 된다(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7쪽)”라는 답변을 받게 되기도 한다.

연구자 : (...) 지금 주변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미 :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시청? 그래도 생활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분들이 나름 도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연구자 : 그 외에 그 사람들이랑은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미: 네.) 그 이유는 좀 뭐인 것 같아요?

다미: 솔직히 시청 분들을 제외한 다른 (종사자) 분들은 좀 주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편이에요.

연구자 : 그래요? 왜요? 다미님의 주거에 있어서?

다미: 네. 시청은 중장기든 단기든 알아볼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짜 유용하게 쓸 정보는 잘 제공이 되지 않는 편이라서.

(2023. 9. 4 다미 1차 면담 12-13쪽)

지원과 관련한 부정적 경험은 지원에 기대 없음으로 이어져 가정 밖 청소년을 점점 지원체계와 멀어지게 만든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황진구·김지연 (2020: 69)의 연구는 애초에 “쉼터에 입소하지 않으면 주거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타의 자립지원을 받기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한 주거 지원이 서비스의 격차



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짚는다.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시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입·퇴소를 반복하거나 지원 체계에서 이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우징페스트에 기반하여 시설 외의 다양한 주거 대안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황진구·김지연, 2020).

나. 우연과 운에 기대야 했던 지원 :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찮았었던 거 같아요”

한편 거리 아웃리치 등을 통해 청소년 지원 기관을 만난 청소년들은 정보 전달, 생필품 또는 식품 지원이 “확실히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했다(2023. 9. 6 지성 2 차 면담 18쪽). 미혜는 청소년 지원기관을 통해 부담하기 버거웠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뻤다고 이야기했다. 해수는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병원비, 이불, 옷 등의 생활용품, 식사 등의 지원을 받았으며,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지를 하기도 했다.

연구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만나서 뭘 하기는 하셨나 보다.

해수: 그렇죠 예. 그때 당시에 병원비 이런 거 지원해 주고 아니면 무슨 겨울이니까 이불이 나 아니면 패딩, 밥 같은 걸 보내주신다거나. 어떤 카드로 이렇게 주변 음식점 결제를 해 놔 가지고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 같습니다.

연구자: 이게 도움이 되긴 했어요?

해수: 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면은 큰 건 아니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괜찮았었던 거 같아요.

(2023. 8. 9 해수 1차 면담 8-9쪽)

연구자: 월세는 어떻게 내고 있어요?

미혜: (...) ○○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청소년 뭐시기로 해서 지원받고 45만 원 중에 40만 원을 지원받고 5만원은 제가 내고 있어요. (...)

연구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약간 지금 월세 지원이랑 반찬 지원 받고 있고 ○○에서 선생님들 만나고 있다고 했는데 인턴십 지원받고 있다고 했죠. 이런 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건 있어서 정말 좋다.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미혜: 월세지원이요. 월세지원. 처음에는 저 혼자 다 냈었으니까. 그때는 45만 원씩 너무 빡쳤는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2023. 8. 11. 미혜 1차 면담, 4,17쪽)

그 외에도 청소년 지원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거나 음식과 같은 생필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상황에 맞는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약 값이 너무 아까워서 아파도 참고 약을 안 먹기(2023. 9. 1. 동우 1차 면담 13쪽)” 도 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때로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아플 때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는 비용인데, 희준은 의료비를 지원받아서 병원에 다닐 수 있었다고 했다. 기관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자원과 연결되기도 하는데, 준호는 자살시도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정신과 진료 지원을 연계해주었던 사례다.

따로 그냥 병원 가야 할 때 많이 아플 때 그냥 감기 걸려도 집이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아파지니까. 그리고 다음에 올 때도 병원에서 언제 와라 하면 쌤도 알겠다 하고 그때 같이 병원에서 만나서 (연구자 : 그런 병원은 가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에 100만 원씩인 걸로 알고 있어요. (2023. 9. 2. 희준 1차 면담 21쪽)

아니. 신림 구할 때에는 ○○랑 같이 하긴 했는데. (연구자: 아 다시 ○○랑 같이 했구나.) 그때는 내가 자살 충동, 자살 시도가 너무 심해서 이사는 내가 안 했고 나는 병원에 정신병원에 있었고. ○○랑 이제 ○○이 도와줬지. 이사는 도와주고. 이제 거기서 2년 다시 살다가 올해 초에 다시 인천을 왔을 때 그때는 나 혼자서 LH를 신청을 했지. (2023. 8. 18. 찬선 2차 면담, 7-8쪽)

연구자 : (자살시도 이후) 정신과적인 진료 치료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신 걸 텐데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준호 : (...) 보호관찰소에서 연계해 준 병원 있는데 거기 다니고 있어요.

연구자 : 좀 거기는 의료비가 좀 괜찮아요?

준호 : 무료, 무료예요. (...)

연구자 : 정신과 진료는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으세요?

준호 : 네 엄청 돼요. 약이 너무 잘 들어갖고 지금.

(2023. 9. 2. 준호 1차 면담 42-48쪽)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어떤 지원기관이냐에 따라 혹은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연결되는 지원이 다르다는 문제를 공통으로 지적했다. 적극적인 실무자를



만나면 필요한 자원에 연계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우연과 운에 기대야 했다. 예컨대 찬선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었던 까닭은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그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고, 다미의 경우에는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와 달리 시청 공무원이 주거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다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아니. 신림 구할 때에는 ○○랑 같이 하긴 했는데. (연구자: 아 다시 ○○랑 같이 했구나.) 그때는 내가 자살 충동, 자살 시도가 너무 심해서 이사는 내가 안 했고 나는 병원에 정신병원에 있었고. ○○랑 이제 ○○이 도와줬지. 이사는 도와주고. 이제 거기서 2년 다시 살다가 올해 초에 다시 인천을 왔을 때 그때는 나 혼자서 LH를 신청을 했지. (2023. 8. 18. 찬선 2차 면담, 7-8쪽)

연구자 : (...) 지금 주변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다미 : 한다 그러면 이제 시청? 그래도 생활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분들이 나름 도움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연구자 : 그 외에 그 사람들이랑은 좀 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미: 네.) 그 이유는 좀 뭐인 것 같아요?

다미: 솔직히 시청분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좀 주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편이에요.

연구자 : 그래요? 왜요? 다미님의 주거에 있어서?

다미: 네. 시청은 중장기든 단기든 알아볼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 다른 분들은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진짜 유용하게 쓸 정보는 잘 제공이 되지 않는 편이라서.

(2023. 9. 4. 다미 1차 면담 12-13쪽)

김희진 외(2018: 460) 또한 현재 청소년복지시설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에 대한 표준화된 서비스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종사자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지역이나 시설별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소년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는 실무자를 만나면 필요한 지원과 연결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원체계에서 계속 미끄러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누군가는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정책 지원이 우연에 기대고 있다는 것은 정책과 제도가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지원

가. 가구 단위 사회보장체계의 한계 : “이제 와서 엄마 아빠를 신고할 수는 없잖아요.”

상당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그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했더라도 가해자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와 관계유지나 동거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소득의 총합을 기준으로 하는 가구 단위 사회보장체계에서는 법적 보호자의 소득을 일차적으로 확인한다. 또 보호자가 아닌 개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 분리 증명을 요청한다. “세대 분리를 하려면 뭐가 더 필요 한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금 나온 지 좀 됐는데 엄마 아빠를 신고할 수 없(2023. 8. 23. 강민 1차 면담, 9쪽)”는 가정 밖 청소년은 지원체계에서 계속 미끄러지게 되고 결국 지원을 포기하고 체념하게 된다.

중장기쉼터에서 몇 년을 살고 나오기만 하면 지원금을 받는. 이제 하는데 저는 한 달 만에 나왔으니까 안 되고요. 찾아봤어요. 청소년의 집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엄마 아빠가 죽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등본상에 있으면 의료 지원금도 못 받아지고요. 일단은 부모님 등본상에 소득이 올라오면 안 돼요. (연구자 : 그래 맞아. 재산이 있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그냥. 그냥 하고 그냥 혼자 알바하고 돈 내고 (2023. 8. 31 수명 1차 면담 22쪽)

아주 오랜 기간 고시원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던 이유가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제 주민등록등본에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족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의 집에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 리스크(risk)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하고 버팅기다가 전입신고를 안 하면 코로나 지원금이라든지 그게 가족이랑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볼 때도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격리 다 끝나고서야 알게 된 거예요. (2023. 9. 4. 연선 1차 면담, 7쪽)

주거 독립을 위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았던 혜진은 “부모님을 신고했기 때문에”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혜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신고하고 관련 상담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취합해서 가정폭력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연구자 : 진짜 정보를. (혜진 : 긁어모았죠.)

(...)

연구자 : 그럼 독립세대 어쨌든 세대주를 부모님으로부터 분리했던 게 되게 중요한

혜진 : 그게 신의 한 수였죠. 그게 또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제가 부모님을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으면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집으로부터 나왔고, 그런 게 어떻게 입증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그게 이제 검찰 송치까지 넘어가려다가 유예가 된 사건을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하고, 또 따로 그때 상담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가정폭력의 예외 건으로 인정이 돼서 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됐죠.

(2023. 8. 25. 혜진 2차 면담 9쪽 강조는 연구자)

해수는 “아버지랑 연락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할(2023. 8. 9. 해수 1차 면담, 15쪽)” 것이고 이미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관계 단절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보호자(아버지)의 소득을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불안정한 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부모가 공적 체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준호의 경우도 중복 지원으로 처리되어 자녀인 준호는 받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 : 주민센터에 이번 년도에 요청 한 번 했었어요. 그 청소년 특별지원금인가 그거 했었는데 저는 못한다고 연락 왔고. (...) 엄마가 한부모 가정인가 그걸로 지원금 받고 있다고 불가능하다 하더라고요. (...) 그거 딱 그 뭐지 후원금 20만 원인가 그거밖에 못 받고 끝났어요.

연구자 :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혼자 사시고 처음에 직업학교도 다니셨잖아요. 그러면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거를 신청해 봐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해주셨어요?

준호 : 네. 저희 엄마가 받고 있는 게 있으니까 아예 불가능하다고 저는 말씀해 주셨어요.

(2023. 9. 2. 준호 1차 면담 36쪽)

나.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과 요구들 : “그걸 위해 조건을 맞춘 것도 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그 밖에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요구받았다. 예컨대 미 나는 지원을 받기 위해 이미 거주지를 가지고 있어야 했고,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

해야 했다. 다른 또한 특정 지역에 살아야만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조건에 맞추기 위해 주거지를 이동하기도 했다.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자립지원관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지원 대상이나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취약한 청소년 주거가 쉼터 퇴소 청소년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거주지가 취약한 청소년을 지원해 준다고 거기에 홈페이지에 떡 하니 있는데 우리는 자립한 애들만 지원한다. (...) 내가 일도 하고 있어야 돼요. 자립지원관 심사 대상에 **내가 일도 하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17-18쪽 강조는 연구자)

다은 : 네 그래요. 그 조건이 왜 불냐고? 청소년한테.

연구자 : 맞아. 약간 빅쳤던 조건 중에 하나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다은 : 다 빅쳐요. 솔직히 아니 솔직히 그거를 위해서 내가 그거를 조건을 맞춘 것도 있어요. 맞추는데 그걸 내가 왜 내가 지원이 필요해서 달라고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조건이 안 된대. 아니 조건을 맞출 거면 왜 지원을 해 준다는 왜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연구자 : 맞아. 그래서 내가 어쨌든 지원받기 위해서 조건을 맞추게 된 적도 있었나 보다.

다은 : 네. 지금 지금 받고 있는 것들도 다 그래요.

연구자 : 예를 들면 어떤 거요?

다은 : 월세 지원 받겠다고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2023. 8. 21. 다은 1차 면담, 20쪽)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주거지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해수는 상담복지센터로부터 주거 외에 다른 지원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주거지에서 사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아까 이런저런 지원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뭔가 다른 지원을 연결해 준 적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완전 다른 데에다 연결한 거잖아요.

해수: 뭐를 이때 당시에 되게 정보는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거의 안 하겠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연구자: 그거 궁금해요. 그거는 어떤 이유로 안 하겠다고



해수: 뭔가 그냥 뭐 약간 예를 들면 랩 레슨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피스텔을 구해주는데 단체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고 했었어요.

(2023. 8. 9 해수 1차 면담 17-18쪽)

한편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에 주거 지원 신청 당사자인 청소년만 갔을 때는 지원 신청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미나의 사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센터 직원이 미나의 설명을 듣지 않는 바람에, 주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립지원관 종사자와 동행하고 나서야 주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자립지원관 선생님이 같이 LH 신청해 주시고 그 선생님 아니면 저 혼자 가서 LH 못하죠. 왜냐면 가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자립지원관에서 설명을 해주면 이제 그쪽에서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하고 어쨌든 받아주긴 받아주죠. (...) 내 말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냥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자립지원관에 소속돼 있어서 얘가 지금 취약한 청소년이에요가 있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 왜 부모님이 연락 안 하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마 혼자 갔으면 되게 민감한 질문을 혼자서 어버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랬겠죠. 근데 이제 옆에서 선생님이 계시니까 선생님이 그걸 문서화해서 다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제 거 주민등록본이랑 그다음에 신청서랑 이 정도 작성해서 냈죠. (2023. 8. 12. 미나 1차 면담, 6쪽)

2021년부터 여성가족부는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도입했으나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극히 드물다.⁸⁴⁾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하고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쉼터의 입소 및 퇴소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고 일시쉼터, 단기쉼터에서 이동이 잦은 편인데 1달을 만으로 채워야 1달이 인정되는 체계 안에서 사실상 2년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마한얼, 2023). 지원 정책의 조건이 까다로운 까닭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당 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원 체계에서 탈락하고 있다.

84) 2021년 5월 ~ 2022년 3월 기준. 대상자 2,418명 중 40명(1.6%)만 지원 받음. (2022년 강선우 의원실)

4. 사회적 관계망과 단절된 지원

가. 지속적이지 않은 지원 : “그건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청소년 지원기관과 연결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어느 시점에서 지원 종료를 선고 받게 된다. 지원이 끝나고 난 이후 “6개월을 정해놓고 사후관리하고” “시간 지났다고 딱 끊어” 버린다. 이는 가정으로부터의 돌봄이 부재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거의 유일한 사회적 연결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며, 결국 사고가 생겨도 연락할 사람이 없’는 불안함을 초래한다.

이거는 솔직히 지원이 다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기간을 6개월을 정해놓고 사후관리하고 6개월이 지나면 끝.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뭐 솔직히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서 삶의 질이 높아진 것도 맞지만 근데 이제 시간 지났다고 딱 끊어버리면 당장 만약에 6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막 사고가 터진다거나 뭐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냐 (2023. 9. 26. 호수 2차 면담, 11쪽)

저기 원래 살던 시설에도 얘기를 해봤더니 난 더 이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 해줄 수 없다. 이제 아파 죽어가든 뭐든 ‘너의 보호자로 서 줄 수가 절대 없다.’ 이런 식 얘기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네가 이제 알아서 해야지.’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36쪽)

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원기관이 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자연스럽게 종결된다. 이러한 경험을 했던 찬선은 “선생님과 정도 들었는데 도움을 구할 곳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하다는 마음 (2023. 9. 26. 찬선 2차 면담, 24쪽)”이 들었다고 한다.

시설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있는 ‘그 가정’과 단절된 청소년은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혼자 선에서 해결하거나 어쩔 수 없다(2023. 9. 8. 해운 1차 면담 21쪽)”고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아파도 연락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서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 너무 너무 외로운(2023. 8. 18. 혜진 1차 면담 7쪽)” 마음이 들게 한다. 미나는 아플 때 서럽지만 그냥 집에 있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파도 다른 사람에게) 연락 안 하죠. 저 아파요. 실제로 어제도 아팠고 지금 월화수목금 알바를 하는데 허리가 허리를 좀 못 피는 상황. 좀 시간이 많아서 허리가 어제는 좀 아팠고 지금은 살짝 목 감기 기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플 때 집에 혼자 있는데 그럴 때 좀 서럽죠. 아프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서 약도 집에 없거든요. 약 먹으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어서 그럴 때 좀 서러운데 뭐 어쩌겠어요(2023. 8. 12. 미나 1차 면담, 20쪽).

연구자 : 그러면 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채운 : 맞아요. 사실 여기 올라와서 처음에는 정말 외롭고 그랬거든요. 네 진짜 외로웠어요. 정말. 그때도 이제 조금 새벽에 약효가 떨어져서 너무 힘들 때는 옆에 아무도 없고, 엄마 아빠는 지금 전화해봤자 반겨주지도 않을 거고, 친구한테 전화해봤자 지금 자고 있을 거고, 나 혼자 오롯이 이 새벽을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정말 일하면서 쓰레기통에 처박혀서 이러고 30분 있다가 그러기도 했고. 강남역에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그대로 119 타고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2023. 8. 18. 채운 1차 면담 7쪽)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함께 식사하기, 활동을 공유하기와 같은 일상의 예측 가능성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안전함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신뢰하는 관계 맺기가 가능한 까닭이다(정선옥, 2022).

나. 관계적 지원의 필요성 : “지지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가정 밖 상황에서 사실상 안전한 관계가 없었던 효림은 청소년 지원기관(쉼터) 실무자와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겪었고, 그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면서도 자신을 지지해주었던 사람을 포기하지 못했는데, 삶에서 누군가로부터 지지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그 사람을 “잡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연구자 : (쉼터 실무자에게) 맞았던 것도 있고 폭언을 듣기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무고로 나를 고소하기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무리 예전 관계가 좋아도 꼭 그 관계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싶다. 이렇게 마음 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효림 :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족한테 지지는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하고 친했을 때는 해줄 것처럼 말해줬어요. 그런 지지를. 저도 물론 예쁜 말을 많이 하긴 했지만 남달랐죠. 왜냐하면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연락처까지는 알 정도로 개인 정보까지 알 정도로 친하지는 않거든요. 웬만해서는. 그거를 알려주는 사람도 솔직히 좀 드물고 거의 없다고 보고 근데 그런 걸 오픈하면서까지 솔직히 자꾸 가까워지고 막 그러니까 솔직히 가족보다 지지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 그러니까 잡고 싶었어요. 지지라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게다가 어릴 때 지지가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커서 그냥 지지받은 기억으로 살거든요. 근데 난 없으니까 그게.

(2023. 8. 20. 효림 1차 면담, 16-17쪽 강조는 연구자)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관계에 주로 노출되었던 찬선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어른을 만나고 난 후 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묻고 따지지 않고 대화할 사람(2023. 9. 11. 찬선 1차 면담 24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자신들은 단지 시설 이용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마음, 즉 돌봄의 관계이다. 예컨대 은수가 청소년 지원기관(쉼터)에서 안정감을 느꼈던 이유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진심으로 대하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가정의 돌봄 관계를 상실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관계적 안정감은 그 어떤 물적 지원보다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연구자: 아 그래요. 그럼 그때에 제일 필요한 게 있었다면 뭘까요?

선기: 저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 응원해 주는 사람들. 뭐 밥이나 돈 같은 건 그런 건 비록 필요했지만, 그나마 심리적으로나 그렇게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2023. 9. 2. 선기 1차 면담 22쪽 강조는 연구자)

은수: (...) 날 옆에서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근데 ○○보다 어쨌든 ○○에 갔을 때 좀 더 나의 삶을 좀 더 잡아주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요소였어요?

은수: ○○에서는 사실 거기 같이 있는 언니들한테 술을 사달라고 해서 그냥 ○○ 1층에서 대놓고 먹고 그거 걸려서 좀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엄청 크게 혼나진 않고 그냥



별점 먹고 끝나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 가서도 또 몰래 술을 먹었더니 크게 혼나고 반성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 그 생활인 그냥 우리 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 중 한 명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딸같이 생각해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 안정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학교 갔다 와서 좀 조잘조잘 계속 선생님 자꾸 얘기할 수 있고 ... 그리고 너무 좀 그냥 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대하는 게 보여서 좋았어요.

연구자 : 그런 거는 선생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기관마다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은수: 기관마다

(2023. 8. 9. 은수 1차 면담, 25-27쪽 강조는 연구자)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다미는 시청을 통해서는 행정적 지원과 관련한 공적 관계를 맺고 있다면 청소년 지원기관 ○○에서는 “사적인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안정감을 토대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지성도 일반적인 청소년 지원기관과 달리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했다.

솔직히 시청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만남이 많으니까. (연구자 : 공적?) 네. 사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같은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공적인 만남까지는 아니고 인간관계다 해 가지고 그냥 사적인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느껴서 가끔씩 고민 상담하고 그런 편이라서. (2023. 9. 4. 다미 1차 면담, 29쪽)

지성: ○○한테 도움 너무 많이 받았고 너무 감사하죠.

연구자: ○○의 무엇이 청소년 기관… 다른 청소년 기관? 대비해서. (...) 뭔가 달랐던 게 있나요?

(...)

지성: 그죠.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성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구에게가 됐든. 그런 부분에서 뭔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쉼터에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죠.

(2023. 9. 6. 지성 2차 면담 23-24쪽)

가정 밖 상황으로 인하여 일상에서의 불안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무척 중요하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이 관계가 안전하다는 감각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인 까닭이다.

제5절 | ‘그 가정’ 바깥 삶의 전략

1. 생존의 방식들 1: 숨기기

가. ‘남과 다른 일상’을 숨기기 : 내 삶의 “가짜 이력서”⁸⁵⁾

원가정을 벗어난다는 것은 곧 ‘정상 가족’의 형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학교 교사에게도(2023. 8. 18. 강선 1차 면담, 6쪽), 친구들에게도 감추고 싶은 나의 약점이자 “창피한” 비밀이다.

연구자 : (친구들에게) 얘기 안 한 거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희강 : 얘기 안 한 거요? 창피해서?

연구자 : 거짓말을 해야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 (...)

희강 : 그냥 집 어디냐 그러면 저기라 그러고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

연구자 : 친한 친구한테는 얘기할 수도 있고.

희강 : 그래도 얘기 안 했어요. 오래 본 친구도 얘기 잘 안 하고.

(2023. 9. 27. 희강 1차 면담, 4쪽)

솔직히 인천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친구를 만날까 봐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가정처럼 보이지 않고 누가 봐도 여자 어른 두 명에 애들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좀 누가 볼까 봐 좀 창피했던 것 같아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14쪽)

85) 2023. 9. 19. 주혁 1차 면담, 29쪽



연구에서 만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남들과 다른 게 싫어가지고”(2023. 9. 27. 희강 1차 면담, 8쪽) “쌤”의 전화번호를 “엄마”로 저장하고(2023. 8. 14. 해서 1차 면담, 13쪽),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방법들을 그때그때 택했다고 말한다 (2023. 8. 9. 은수 1차 면담, 14쪽) “계속 꾸며서”(2023. 8. 9. 은수 1차 면담, 25쪽) 말해야 하는 일상은 “늘 편하지 않고 긴장된”(2023. 8. 9. 은수 1차 면담, 39쪽) 삶을 만들었다.

그냥 제가 항상 규칙도 있고, 맨날 뭐 프로그램하려 맨날 가야 되고, (...) 제가 엄마보다는 이제 쌤이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왜 엄마라고 저장해 두고 왜 쌤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서 잠시 쉼터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죠.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13쪽)

그냥 부모님이 있는 척을 했던 거 같아요. (...)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은 아래서 짜증나, 이런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솔직히 그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어내서 말했던 것 같아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14쪽)

사실 쉼터를 옮길 때 뭔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게 며칠 사이에 내려가게 되면 갑자기 전화해서 나 다음 주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 되게 놀라면서 갑자기 무슨 일 있냐 그러기도 하고. (...) 그냥 할머니가 아프셔서 급하게 내려가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37-38쪽)

다은 : 네. (친구가) 엄청 물어봤어요.

연구자 : 그러니까 2주 동안 (미혼모 사설에 들어가서 학교에서는) 그냥 말도 없이 사라졌다가.

다은 : 여행 갔다 왔다 했죠. 현장체험학습 갔다 왔다고 했죠.

연구자 : 그 말을 할 때 다솔님 마음은.

다은 : 그때 어차피 거짓말 잘 쳐서 괜찮았어요. 아마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 일부러 쌤이 그 말을 했던 건 기억나요. 현장체험 갔다 왔다고 해라. 그래서 ‘네 알겠어요’ 이러고 있다가 ‘현장체험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느냐’, 이제 ‘어딘가 갔다 왔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2023. 8. 21. 다은 1차 면담, 9쪽, 강조는 연구자)

이러한 이유로 은수는 머물 곳을 선택할 수 있다면 비교적 내 자신이 “평범할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OOO를 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규칙과 프로그램이 없고,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외출이 가능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시설 거주를 굳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시설 거주자에 대한 편견으로 자신이 인식되고 싶지 않은 까닭이다. 그런 까닭에 시설 거주를 숨기고 싶지만 규칙과 통제가 심한 곳에서는 그들의 숨기기 전략은 쉽게 실천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삶의 일면을 강제하는 시설성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구자 :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어디(쉼터)를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은수 : 그래도 OOO.

연구자 : 그래도 OOO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은수 : 평범할 수 있다. (...) 남들에게 보기에 좀 더 나는 평범하게 외출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밥을 사 먹을 수 있고 연락을 계속할 수 있는 핸드폰이 있고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에 좀 남들이 보기에 평범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 8. 9. 은수 1차 면담, 27쪽, 강조는 연구자)

또 우리는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다. 나영정 · 김소형 · 김순남 · 김원정 · 김현경 · 이유나(2021: 8)의 지적처럼 현재의 가족 정책, ‘위기청소년’ 정책 등은 가족을 ‘일반가족’과 ‘다양한 가족(한부모, 다문화, 조손 등)’으로 구분한 뒤 “후자를 특별한 지원과 존중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김소임(2007; 나영정 외, 2021: 8에서 재인용)은 ‘가족상황차별(family status discrimination)’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가족의 형태나 가족의 구성 과정, 가족의 구성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해서는 자신이 쉼터에서 산다는 것이 학교에 알려지면 내가 하는 잘못이나 실수들이 “쉼터 살아서 저런 거”라고 여겨질까 봐 두려운 감정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찬선은 “보육원 애들”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실제로 괴롭힘과 갈등을 겪은 사례다.



연구자 : 어떤 게 불편해질까요? (쉼터에서 지낸다는 것이) 학교에서 알려지면?

해서 : 일단 동정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가 쉼터 살아서 저런 성격이었구나,
제 성격을 이제 다 쉼터 탓을 할 것 같아서. 쉼터 살아서 저런 거니까 우리가 이해하
자, 살짝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그게 좀. (2023. 8. 14. 해서 1차 면담, 13쪽)

(상략) 이제 등교할 때, 이제 다른 애들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쟤네 뭐 보육원 애들이야
쟤네 뭐 고아래’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그랬어’ 이런 걸로 이제 우리는 먼저 이제 눈치를
챈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빠. 난 처음에 그런 말 들었을 때 ‘진짜
저 새끼가 뭔데 저렇게 말을 지껄이지’ 하면서 나는 내 기억상 나는 시비를 걸었어. 나는
골목에서 시비를 걸어서 내가 그래서 내가 첫 등교날에 나는 등교를 안 했을 거야. 싸우고
싸워 가지고 경찰서 갔거든. 그래서 난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나빠 가지고
‘네가 뭔데 그렇게 말을 지껄이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더니 개가 하는 말이 딱딱 ‘정문으로
다 우르르 애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러면
서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한 대 쳤지. 나는 근데 딱 내가 먼저
느끼기보다 그 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고 그게 ‘아 이게 우리가
좀 다르구나’ 좀 느꼈지. (2023. 9. 11. 찬선 1차 면담, 5쪽)

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중심주의를 이들은 삶의 매 순간 맞닥뜨
리고 있다. 또 다른 내 자신을 꾸며내도 되지 않아도 되는 환경, 다양한 가족
구성과 삶의 경로를 가질 수 있다는 이해가 필요하다. ‘정상가족’ 단위를 벗어
나 실제 삶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실천의 형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평
등한 시민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나영정 외, 2021: 8).

2. 생존의 방식들 2: 자신을 갈아 넣기

가. 혼자 해내야 한다는 마음 : 정보를 “긁어 모았다”⁸⁶⁾

가정 밖 청소년들이 생존을 위해 택하는 방법은 이들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인 자신을 ‘갈아 넣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자립하는 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정보력과 자원과의 연결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86) 2023. 8. 25. 혜진 2차 면담, 9페이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란 정보는 다 찾아”보고 ‘긁어 모았다’고 이야기한다(2023. 8. 18. 혜진 1차 면담, 5쪽).

저는 OOO 입소할 때부터 자립이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OOO 퇴소를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정책을 받으면서 자취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찾고 그런 절차들을 전부 검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어떤 어떻게 집 계약을 해야 될까 어디서 이제 나만의 공간을 이제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찾고 지원 기관들을 이제 싹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OOO 퇴소를 한 거였거든요.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12쪽)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정보들은 청소년 기관을 통해 소개받기도 하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인터넷 찾아보다가”, “그 언니를 통해서” 등 개인적 노력과 주변 관계들을 통해 알음알음 접하기도 한다(2023. 9. 26. 채선 1차 면담 8쪽). 가정 밖 청소년들은 먼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바라기보다는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2023. 8. 25. 해린 1차 면담, 15쪽). 이때 연구 참여자들이 느낀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의지, 혹은 그 이면의 불안이었을 테다. ‘타인에게 의지를 하면 끝도 없이 의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가 무너진다’는 유성의 말에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제가 누군가한테 의지하면 제 스스로의 의지가 낮아져요. 지금까지 누구를 잘못 믿었다가 많이 뒤통수도 맞았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엔 제 스스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지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면 끝도 없이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신이 무너져요.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35쪽, 강조는 연구자)

아무래도 좀 뭔가 남의 도움을 못 받았을 때 그런 거를 내가 혼자서 못 해내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는 수준까지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웬만해서 다 저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23. 8. 25. 해린 1차 면담, 15쪽)

저는 OOO 입소할 때부터 자립이라는 그런 게 너무 강하게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OOO 퇴소를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떤 정책을 받으면서 자취를 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찾고 그런 절차들을 전부 검색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어떤 어떻게 집 계약을 해야 될까 어디서 이제 나만의 공간을 이제 찾을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찾고 지원 기관들을 이제 싹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리고 나서 OOO 퇴소를 한 거였거든요. (2023. 8. 15. 혜미 1차 면담, 12쪽)



이러한 마음은 자립의 중요한 자원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 역시 ‘벅차고 지치고 질리는’ 일이 된다(2023. 8. 18. 혜진 1차 면담, 5쪽). 채운은 생존하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 속에서 제 성격이 “사나워지고” “악바리”가 되었다고 표현했다(2023. 8. 18. 채운 1차 면담, 7쪽). 이러한 사례들은 쉼터 청소년 경험의 본질이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절박하게 혼자 버텨나감”이라는 정문진·김수정(2016: 202; 김희진 외, 2018: 49에서 재인용)의 질적 연구의 결과와도 맞닿는 것이다.

뭔가 알아보는 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같은 것도 기초수급자가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생활비성 등록금 그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카페에 가입하면 이제 청년 아니면 다른 등록금 다른 거 막 이렇게 되게 카테고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많은데 너무 질리더라고요. 이 정보를 내가 다 받아들이고 뭘 신청하고, 그런 것들을 불과 2년 안에 상황이 계속 바뀌고. 내가 뭘 내고, 이런 공부도 같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벅차기는 하더라고요.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5쪽)

혜진 : 그게(어머니의 통제) 없으니까 자유로워서 좋은 점이 지금은 있고, 근데 그게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 자유로워서.

연구자 : 무서운 건 어떤 거.

혜진 : 너무 자유로우니까 내가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거. 아무도 나를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6쪽, 강조는 연구자)

찬선 : (...) 이 공허함은 아무도 채워줄 수 없는 거잖아.

연구자 : 그럼 네가 채울 수 있어?

찬선 : 부모가 있는 애들은 집 걱정이나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잖아. 뭐 물론 걱정을 할 수 있겠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내가 그냥 온전한 거. 그냥 그냥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난 항상 걱정 진짜 항상 걱정해. ‘아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 집을 나가게 되면 또 어디를 가야 되지?’ 이거는 평생 내가 약간 좀 맨날 가져가야 될 그런 거 같아. 약간 그런 그래서 항상 두려운 거지. 내가 언제 또 언제 또 방황을 할지. 아니면 또 언제 또 내가 뭐 나쁜 생각을 먹거나 또 그럴지 모르지.

(2023. 9. 11. 찬선 1차 면담, 18-19쪽, 강조는 인용자)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이들이 원가정과의 단절, 가족 자원(family resources)의 부재로 인해 자립에 대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다고 이야기한다(장주현 · 김정애, 2015; 정문진 · 김수정, 2016; 김희진 외, 2018: 4에서 재인용). ‘자유가 무서움과 같이 온다’는 혜진의 언급과, ‘공허함’과 ‘두려움’에 대한 찬선의 언급은 자립 과정에서 오는 이러한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나. 생계 유지 : “알바는 디폴트”

가정 밖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그중에는 단기 알바처럼 취약한 고용 형태도 있고, 불법적인 일도 있으며, 10대 청소년으로서 부당한 일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근로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고등학교 청소년(18.1%)의 경험률에 비해 매우 높았다(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2016; 김은정 외, 2019: 119에서 재인용). 이들에게 노동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디폴트(default)” 활동이며, “남는 시간”은 여가와 휴식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해서 내 자신을 더 먹여 살려야 하는 시간이다.

일을 만약에 절반으로 줄어들어버리면 근데 시간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많은 거예요. 하루에 6시간을 저한테 빙 시간이 있다는 게 진짜 많은 거거든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 겨우 2, 3시간 잠자고 1시간이고 그때 운동하고 공부로 채우고 나가고 그랬는데. 솔직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자신도 없고. 일을 줄여버리면 만약에 내가 자리도 제대로 못 잡겠는데. 돈도 없으면 놀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생활비로 다 빠져나가면 끝이니까. 보험비 4만 원 얼마 나오지, 전기세 4만 얼마 나오지, 겨울 되면 이제 7~8만 원 날라가고 월세는 지금 30만원 지원받고 있다해도 19만 원 내야 되지, 핸드폰 값 내야 되지. 앞으로 돈을 계속 모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일하는 의미가 없어요. (...) 그렇기 때문에 학업을 하고 싶어도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학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37쪽)

알바는 디폴트로 하는 거고 단기 알바를 하면 추가적인 수입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일을 전부 다 채울 수는 없으니까 항상 그래서 남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일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벌려고 하고 있어요. (2023. 8. 23. 강민 1차 면담, 11쪽)



여기에서 엄청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4개월 만에 주방장 달고 그 사람의 친구들이 저를 인정해 준 거죠. 재 도라이(또라이)다 이러면서. 별명이 미친개였어요. 미치도록 개처럼 일하고. 그냥 땀 날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헥헥거리면서 그냥 일을 하니까 미친개였어요. 버티고 술 먹다 쓰러지고 응급실 끌려가고 그래도 버티고. (2023.9.26. 유성 1차 면담, 22쪽)

연구자: (일을) 제일 많이 했을 땐 뭐 몇 개 정도 했었어요?

선기: 다섯 개.

연구자: 다섯 개. 한 번에. 하루에? (선기: 네. 하루에.) 그날은 하루가 어떻게 굴러가요?

선기: 그러니까 새벽에 상하차를 움직이고 오전에 카페 알바하고, 오후에 그 ○○(분식집) 알바하고 또 끝나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알바하고, 그 다음에 또 새벽 때 상하차 알바를 했어요. (...) 이번 여름도, 여름 방학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2023. 9. 2. 선기 1차 면담, 25-26쪽)

가정 밖 청소년들은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냥 버티”는 와중에도 이러한 시간을 각자의 방식대로 의미화하기도 했다. 준호는 일을 열심히 하며 베텔던 시기를 “인생 경험”이라고 평가한다. 우중은 요식업계 매장의 최연소 직원으로 취직해 최연소 매니저까지 진급했던 사례로, 물론 힘들었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꼈다고 했다.

연구자 : 그래서 약간 그런 일들도 좀 힘들고 그냥 일을 그만두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준호 : 돈은 벌어야 하니까 그냥 베텔어요. 계속. (...) 이것도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베텔어요. (...) 나중에 다른 데 취직해도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베텔어요.

(2023. 9. 2. 준호 1차 면담, 40-41쪽, 강조는 연구자)

우중: 일단 입사하자마자 최연소 직원이었고. 진급을 하고도 최연소 매니저였고. … 그랬어요. 어딜 가나 최연소였고. 맞아. 지금도 최연소인데. (연구자: 지금?) 퇴사했을 직전에도 최연소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걸 달성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

연구자: 성취감이 좀 컸어요? (우중: 그쵸.) 힘들기도 했지만. (우중: 네.)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34쪽)

우중: 사실 바쁜 것도 약간, (웃음) 먹고 살기 바빴던 것 같은데 항상 생활비 벌어서 월급 타면 그대로 생활비로 또 나가고. 뭔가 여가를 즐길 시간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퇴근하고 오면 또 밤이고. 밤에는 새벽에 PC방 가는 정도? 그러다 보니깐 술 이런 것도 안 먹고. 약간 그런 것도 안 놀게 되고. 그래서 되게 OOO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연차가 있으니까. 연차 쓰고 놀러도 다니고. (...)

연구자: (...) 지금 일해온 시간, 지금 잠깐 쉬고 있는 타임인데, 어떻게 평가해요?

우중: 저는 정말 값지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면 일단 일의 만족도도 있었고 사람들도 괜찮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거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해서 오래 했던 것 같고. ...약간 OOO에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월 하든 제가 최연소였어요. OOO 내부 기록에서는. 그런 걸 약간 달성하는? 그런 만족도도 있었고.

(2023. 8. 29. 우중 1차 면담, 34쪽)

그러나 노동 경험이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비숙련 저숙련 노동에 임하고 있고, 일부는 불법이나 탈법 일자리, 대출과 신용불량을 경험한다(김희진 · 백혜정 · 김은정, 2018). 일반적으로 ‘십대의 노동’은 공식경제를 뒷받침하지만 “매우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인식”된다(추주희, 2016: 94). 강지나 (2015; 추주희, 2016: 94에서 재인용)와 같은 연구는 많은 빈곤청소년들이 학력과 사회적 자본이 없으면 차별받을 수밖에 없다는, 노동시장에서 본인이 처한 위치를 인식하고 현실에 체념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용한 사례를 통해 미성년의 나이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한 경우 단순히 생존과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빈곤청소년, 10대 청소년, 탈가정 청소년을 막론하고 자아실현의 가치를 실현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라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3. 생존의 방식들 3: 타협하기

이런 ‘눈치 보는’ 일상은 원가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아동, 청소년들이 보호자의 방임,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는 늘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다. 학대 피해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반항하기보다는 최대한 덜 맞으며 폭력 상황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학대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을 터



득한다(주소영, 2010). 트라우마 피해 중 하나의 반응으로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의 감정과 반응에 초점을 맞춰 생각하는 의사소통 패턴이 누적될 수 있다. 혜진은 집을 나와 비로소 “제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엄마 밑에 있을 때는 그 성격도 제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아무래도 맞았던 세월이 길다 보니까 상대방의 반응이나 기분을 살펴서 오늘은 괜찮은가, 뭔가 그런 느낌을 많이 살폈던 게 좀 누적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좀 성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면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남 기분 안 맞추고, 제 기분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6쪽)

시설 또는 타인의 호의에 기댄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이 이 ‘눈치’였다. 선기는 자신을 보살펴주고 늘 친했던 부모가 자신이 게이란 것을 알게 되자마자 싸늘하게 돌변해 집을 나와야 했던 사례다. 탈가정의 이유를 말하지 못하고 여러 친구의 집을 전전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견디는 선기만의 전략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더 잘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선기는 머물렀던 집의 가족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정의 사례금”을 드리기도 했다.

선기: 거기(친구 집)에서 한 5일 정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어머니가 그냥 (집에) 들어가라 하셔 가지고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게 느껴져서 그냥 나갔던 게 기억나요.

연구자: 그 5일 동안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네요. 진짜로.

선기: 네. 눈칫밥도 먹고. (연구자: 그쵸.) 자는 것도 마음대로 잘 못 자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2023. 9. 2. 선기 1차 면담, 16쪽)

(사람들이) 왜 가출을 했냐. 그래서 가출을 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가족과) 싸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친구들한테 말하면 괜히 아우팅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23.9.2. 선기 1차 면담, 33쪽)

연구자: 응… 근데 그렇게 많은 부모들?의 집… 에서 잘 수 있었던 게 약간 전략?이나 방법이 있었어요, 이 사람, 잘 곳을 구하는?

선기: 그래서 친구랑 더 많이, 제가 친구들한테 더 잘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한테 잘해주면은 부모한테 ‘나랑 엄청 친한 친구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받아주는 것 같아요.

(2023. 9. 2. 선기 1차 면담, 21-22쪽)

한편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눈치’를 가정 밖의 삶에서 자신이 터득한 것, ‘배운 것’이라고 의미화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들은 매너와 배려라고 평가하지만, 자신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했던,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었던 ‘웃픈(웃기고 슬픈)’ 현실이라고 효선과 찬선은 평가한다.

효선 : 맞아요. 웃프긴(웃기고 슬프긴) 한데 차라리 배워갈 게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 너무 일찍부터 사회생활을 한 거죠. 15세부터 사회생활을 해가지고.

효선 : 그래도 눈치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 좋았어요.

(2023. 9. 15. 효선 1차 면담, 11쪽)

찬선 : 단체 생활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눈치를 본다니까. ‘이 사람이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필요한가?’ 나는 이거를 항상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지. 뭐 다른 사람들은 매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게 이제는 익숙해진 거지.

연구자 : 근데 또 그거를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하기도 하는구나. 사람들이.

찬선 : 응.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제 많은 애들이랑 지내다 보고 뭐 이마다 보니까 눈칫밥도 많이 보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지.

(2023. 9. 11. 찬선 1차 면담, 23쪽)

찬선 : (...) 그냥 이리저리 이리저리 그냥 데이다 보니까 괜찮은 곳을 만나게 되더라고. 괜찮은 사람들이랑...

연구자 : 그걸 볼 줄 아는 게 또 생겼구나.

찬선 : 그치.

연구자 : 괜찮은 일이나 괜찮은 사람들이나. 그래도 이게 또 다 겪었다. 그치?

찬선 : 이제 눈에 다 보이지. 저 사람이...

(2023. 9. 26. 찬선 2차 면담, 17-18쪽)



그래서 채선은 자신처럼 가정 밖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탓이 아니라”는 말을 가장 해주고 싶다고 한다. 자책과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이 흔히 갖는 마음이기도 하다(이보람, 2020). 채선의 말은 “뭐든지 다 제 탓”인 줄 알았던 시기에 대한 공감어린 표현이다.

채선 : 저처럼 이렇게 똑같은 이유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이유로 집을 나와서 혼자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 탓이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다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힘들 때는 좀 다 남 탓으로 돌려도 되는데 자책을 다들 하잖아요. 밥을 못 먹어도 내가 집에서 조금만 버텼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냥 몇 대 더 맞고 그냥 집에 있을걸. 나온다고 고생한다는 건 맞기는 한데 그게 오히려 나을 때도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연구자 : 채선님도 이렇게 자책했던 시기가 있었나 봐요.

채선 : 네. 그냥 뭐든지 다 제 탓인 줄 알았어요. 뭐만 하면 다 제 탓 같고 그냥 약간 사소한 거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이 숟가락을 떨어뜨렸는데 약간 내 탓인 것 같고.

(2023. 9. 26. 채선 1차 면담, 15쪽, 강조는 인용자)

탈가정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resilience)을 살핀 한 연구는 이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습득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능력”을 언급한다(이상준, 2011: 286). 연구 참여자들이 “자책했던 시기”에 터득했던 ‘눈치’와 ‘사람 보는 눈’은 이들이 가정 밖 생활에서 얻게 된 삶의 전략이자 기술이기도 하다.

4. 생존의 방식들 4: 저항하기

한편 연구 참여자 중에는 청소년쉼터나 불안정한 주거 속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저항했던 사례도 있었다. 유성과 현빈은 청소년쉼터 내에서 이용 청소년들 간의 문화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행동을 취했던 이들이다. 유성은 집단 안에서 위계를 새로 세우는 방식으로, 현빈은 이용 청소년의 괴롭힘과 규칙 위반을 종사자에게 익명으로 고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저는 알다시피 독한 느낌을 많이 키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애가 더 어린애를 괴롭히거나 어린애들이 이제 위 애한테 이제 까불잖아요. 그거를 통제시켰어요. (2023.

9. 26. 유성 1차 면담, 6쪽)

연구자 : 좀 불편한 사람이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도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또 그런 서열상 문화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그걸 좀 해결하거나 대처했어요?

현빈 : 아 샘한테 꼬질렸어요. (웃음)

연구자 : 아 이 사람 이렇다?

현빈 : 네. 근데 저를 드러내진 않았죠.

연구자 : 아. 익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현빈 : 샘이랑 거래를 좀 해요. (연구자: 거래?) 네 그냥, 맨 처음에는 이제 술 먹고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는 형이 있길래 짜증 나가지고 쑥 가지고 선생님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비밀 지켜주실 건가요? 저인 거 안 밝혀주실 건가요? 해 가지고 약간의 딜을 통해서 그렇게 좀 샘들한테 뿌리고 다녔거든요?

연구자 :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 해달라고.

(2023. 8. 30. 현빈 1차 면담, 28-29쪽)

다온은 후대폰 사용, 나이 기준에 대해 “될 때까지 얘기”하여 쉼터 내 구조와 지원 방식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수는 쉼터 안에서 상호 존댓말을 쓰는 문화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지만, 종사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연구자 : 그럼 다은님은 약간 요구를 해서 사회를 바꾼 경험이 벌써 2개나 있으시네요.

다은 : 지금도 계속 많아요. 많은데...

연구자 : OOO(쉼터)에서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는 걸 바꿨고 여기서도 나이를 낮췄고.

다은 : 그래서 제가 하고 싶다는 걸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 때문에 바뀐 거예요. (...) 그냥 나는 내 입장을 밀했을 뿐인데 안 들어준다. 일단 될 때까지 얘기한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하고 이제 뭐 될 때까지 해보고 끝까지 해본 다음에 어차피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사실 그런 생각.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마인드가 강해요.

(2023. 8. 21. 다은 1차 면담, 28쪽)

한 번 제가 그 회의 때 근데 저를 귀여워하는 언니가 저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는데 그게 약간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서로 반말을 쓸 거면 서로 반말을 쓰고 서로 존댓말을 쓸 거면 서로 존댓말을 쓰는 규칙을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가 말했다가 오만 쌤들이 막 줄줄이 코웃음을 치면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너네들이 무슨 성인도 아니고 여기가 뭐 그래서 제가 막 아니 그냥 셔어하우스 같은 데에서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여기가 뭐 같냐. (...)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개념이 아무한테도 제대로 없었던 것 같아요. (...) 직원들이 입소자들 사이에서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도 그들이 같이 고민을 할 존재들이 못 돼주고. (2023. 8. 20. 이수 1차 면담, 18쪽)

여기서 더 나아가 이수는 쉼터에서 겪은 인권 침해 이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퇴소한 경우였다. 기자회견, 인터뷰도 하고 방송 매체에서 발언도 했지만, 원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지역 사회 안에서 쉼터 종사자들을 마주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어쨌든 저는 정리해 간 자료도 있고 했으니까 막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예를 들면 휴대폰 압수당한 언니가 그냥 쉼터를 뛰쳐나가버릴 때 그 생생한 현장을 적어놓은 노트를 꺼내서 그걸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증언도 하고 싶었는데 (...) 방송도 한 번 타고 이슈가 됐었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좀 어떤 걸 중점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 쉼터에서 좀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쉽게 잣대를 자기들끼리 내리려고 하고 좀 가정폭력에 대한 인지도 감수성도 많이 떨어지고 2차 피해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던 점을 좀 고려해서 보도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니까 뭔가 광 터지진 않아서. (2023. 10. 3. 이수 2차 면담, 4쪽)

(쉼터에 문제 제기를 하고 퇴소한 이후) 센터가 시내에 있어 가지고 시내 갈 때나 영화관 특히 갈 때 너무너무 무서웠고 쉼터 근처에 언제 가 있다가 버스 정류장에 가려고 했는데 쉼터 소장님을 만나 가지고 제가 부리나케 도망갔던 사건도 있었고. (...) 그쪽도 절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부리나케 도망갔고. 아무튼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에서 보고 한번 제 담당 선생을 마주친 적이 있었어 가지고 약간 공황 비슷하게 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급하게 막 내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2023. 10. 3. 이수 2차 면담, 1쪽)

한편 현빈은 자신과 같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이 청소년쉼터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종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추천해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때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고 배우겠다’라는 태도여서 좋았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청하는 종사자들의 태도는 현빈이 다시 집을 나왔을 때 이 쉼터를 자신이 ‘돌아갈 곳’이라고 여긴 하나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연구자 : <무지개 길 찾기>⁸⁷⁾?

현빈 : 네. 그거를 제가 받아갔잖아요.

연구자 : 아. 그 OO 쉼터 쌤들한테 주려고.

현빈 : 네. 그래서 드렸는데 센터장님이, 와! 우리 이거 보고 공부하면 되겠다! 하셨던 게 기억이 나오. (...) 모르겠어요. (쉼터를) 나가기 조금 전에 갖다드린 거여서 진짜로 (성소수자에 대해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웃음) 그래도 그렇게, 이걸로 공부하면 되겠다! 같은 걸 해주시니까. (...) 좋았어요.

(2023. 9. 7. 현빈 2차 면담, 27-28쪽)

이러한 사례들은 시설 안에서 청소년들이 단순히 이용자 혹은 서비스 지원 대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할 수 있는 안전한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성소수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 낸 '무지개집'의 이야기를 다룬 가족구성원연구소(2022: 169)는 공간이 안전하다는 감각의 핵심은 "퀴어라는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숨기거나 떠나는 방식이 아니라 갈등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내

87)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샘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2018). <학교에서 무지개길 찾기> 가이드북. (<https://www.ddingdong.kr/xe/11602>)



가 이 공간에 느끼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온전한 존중의 감각"(170)은 단지 규칙과 제재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누군가에게 보호와 감시를 위탁"(167)하는 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5. 새로운 길 찾기

가. 미래 그리기 : “내가 원하는 게 뭘까”⁸⁸⁾

'탈가정'이라는 이 모든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경험 안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무엇을 느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장에서는 이들이 '가정 밖 삶'을 넘어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모습을 그린다.

가정 밖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탈가정 이전에 이미 탈학교를 경험했거나(남미애 · 흥봉선 · 육혜련, 2012; 김은정 · 백혜정 · 김희진, 2019: 118에서 재인용) 탈학교 이후에도 불안정한 생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은정 · 백혜정 · 김희진, 2019). 원하든 원치 않았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이후 스스로 원하는 진로와 경험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었다. 혜진과 채운은 오히려 원가정을 벗어나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찾게 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환경에 비해서 학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사실 저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다니고 또 주말에도 학원 가고. 정말 학원 가느라 바쁜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그런 나에 대한 이해가 되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생기고, 엄마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라고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돼서. 그런 그 꿈을 위해서 지금은 좀 학원도 다녀보고, 그쪽으로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제가 원하는 꿈을 찾을 수 찾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6쪽)

채운 : 집을 나와서는 조금 더 저는 제 꿈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데 있어서.

88) 2023. 8. 18. 혜진 1차 면담, 6쪽

연구자 : 뭔가 동력이 되기도 한 것 같아요.

채운 : 교육 퀄리티에 있어서도 나왔을 때가 훨씬 더 나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2023. 8. 18. 채운 1차 면담, 12쪽)

혜진과 주혁은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여러 경험이 쌓이며 “나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한 마음들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희진 외(2018: 301)의 연구는 10대는 대개 ‘대학 준비기’로만 인식되지만,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폭넓은 사회화 과정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살펴본 사례들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구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이들이 생존과 생계를 넘어 자립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증명한다.

(...) 교육 같은 거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그러면 OOOO라는 패션 학원이 있거든요. (...) 좀 할 만한 거예요. 약간 나 할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러면 일러스트도 한번 배워 봐야겠다, (...) 일단 지금 경험 삼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점점 더 구체화가 되어 가는 것 같아. 그냥 하나씩 너무 멀게 가지 말고 하나씩 해보자. 아 이것도 해보자, 약간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럼 나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경험을 하나씩 할 때마다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

(2023. 8. 25. 혜진 2차 면담, 3쪽, 강조는 연구자)

그때 꿈이라는 게 다시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한 여기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만족감이. 근데 이제 꿈이 생기니까 그냥 뭐든지 다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라든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해도. (2023. 9. 19. 주혁 1차 면담, 6쪽)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재도전이라는 기회와 격려다.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가정폭력 피해 트라우마 등으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자립 과정에서의 실패가 성인기 이행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김희진 외, 2018: 444). 가정 밖 청소년들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실패해도 괜찮고, 그 ‘실패’를 다시 재의미화하면서 다시 시도해볼 수 있게 하는 이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 ‘곁’의 가능성은 청소년기관 실무자에게도, 지역 커뮤니티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도 존재한다.

나. 나 같은 사람 돋기 : “받은 게 많으니까”⁸⁹⁾

또한 여러 인터뷰 참여자가 언급한 것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혹은 같은 처지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돋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 도와주거나, “가출한 애들 데리고 와서 재워준” 이들도 있었다.

연구자 : 어떨 때 누군가를 쟁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 OO는 내가 쟁겨야지 이런 얘기 했었잖아. (...)

찬선 : 그냥 갈 곳이 없을 때나 그리고 나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는 애들 있으면 이제 도와주고 싶지. (...) 진짜 가지고 있는 돈 다 다 털어가지고 OO한테까지 빌려 가면서 데리고 살았지.

(2023. 9. 26. 찬선 2차 면담, 29쪽)

그 애가 약간 사정이 딱한 것도 있고. 그 애 처지랑 저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애한테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언니랑 같이 살 수 있으면 같이 살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3. 9. 15. 효선 2차 면담, 17쪽)

이제 가끔씩 가출한 애들 데리고 와서 재워준 적 있어요. (...) 저는 어릴 때부터 오지랖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도 모르게 쉼터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 있잖아요. 쉼터에 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 무조건 쉼터 가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2023. 8. 20. 효림 1차 면담, 22-23쪽)

더 나아가 주혁과 현빈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의 역할을 하고 싶은 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가고 있었다. 주혁은 자립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청소년 성소수자인 현빈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해주었던 청소년쉼터를 경험하면서, 현장에서 ‘퀴어를 지원할 수 있는 퀴어’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현재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다.

89) 2023. 9. 7. 현빈 2차 면담, 30쪽

보육원의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자립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OOO 형처럼 좀 나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OOO 형이랑 같이 영상 유튜브 영상 찍기도 하고 정보에 관련된 찍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기 OO에 있는 그룹홈에 가서 교육도 하기도 하고 이런 자립 정보에 대한 그런 것도 하고 아니면 친한 보육원에 사는 후배들이라든지 친구들 한테 이런 것도 알려주고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2023. 9. 19. 주혁 1차 면담, 32쪽)

현빈 : (...) 내가 어떤 진로를 잡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쉼터에 있었으니까, 사회복지사 쌤들이니까 받은 게 많으니까 (...)

연구자: 사회복지라는 건 같고 그게 제일 영향을 미쳤던 건 이렇게 (현빈이) 이용했던 청소년 기관 사람들.

현빈: 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퀴어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연구자: 퀴어에게, 퀴어를 지원할 수 있는.

(2023. 9. 7. 현빈 2차 면담, 30쪽)

이는 자신들이 집을 나왔을 때 절실히 필요로 했던 사적 자원을 다시 돌려주는 연대의 마음이기도 하며, 동시에 제도 틈바구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제6절 | 소결

이 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들이 왜 가정 밖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들이 어떤 주거 상황에서 생활하는지, 그들의 가정 밖 주거 상황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공적 지원체계와 어떻게 연결되거나 되지 않는지, 그러한 가정 밖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그 가정’으로 돌아갈 수도, 돌아가서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대개 탈가정 이전부터 주거 위기를 비롯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예컨대 학대, 폭력 및 방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탈가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끼거나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이루어졌다. 탈가정 과정은 학대, 폭력, 방임 등 ‘그 가정’의 위기 상황으로부터 탈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보호자로부터 강제 분리 혹은 보호자로부터 내쫓기는 경우도 많았다. 따라서 ‘그 가정’으로의 복귀에 초점을 맞춘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지원은 그들을 계속되는 위기 상황에 속하도록 만든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매우 취약한 주거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컨대 계속해서 주거지를 옮겨 다니거나 지인이나 친척 등의 호의에 의존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출팸을 형성하면서 외로움, 경제적 궁핍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생계형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쉼터와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역시 불안정한데, 쉼터 내 규칙을 미준수하는 경우 강제 전원이나 퇴소를 당하기도 한다.

연구에서 만난 가정 밖 청소년 상당수는 청소년복지시설인 쉼터에서의 거주 경험에 있었다. 이는 ‘그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다양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이라는 지위는 주거 선택에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특히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경우 원하지 않더라도 쉼터 입소를 하게 되며, 쉼터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성별 이분법적으로 운영되는 쉼터라는 공간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어렵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성소수자 인권 감수성이 없는 실무자로부터 차별과 혐오를 경험하기도 했다. 쉼터 이외의 곳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임대차계약 자체가 불가능한 까닭이다. 결과적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쉼터든 다른 주거지든 열악하고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경우 쉼터와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이 관리와 통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설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유의 제한은 물론이고 사생활을 침해받는 일도 겪게 된다.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삶은 다른 인권의 침해로 이어진다. 특히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목돈이 드는 보증금 마련이 어렵다 보니 대개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월세를 내면서 생활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경제적 어려

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시설에서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지만 그밖의 친구와의 관계,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부족한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필연적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자체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겪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터로 내몰리며 자연스럽게 교육의 기회와 멀어지게 된다. 탈가정이 탈학교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태에 놓인 가정 밖 청소년들의 '그 가정'에서의 힘듦과 탈가정 이후의 힘듦은 그들의 몸과 마음에 상흔을 남겼지만 아파도 병원비 부담으로 일상적으로 참게 된다. 특히 치료를 위해서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미성년자의 경우 건강권의 침해가 심각하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다른 인권의 침해를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을 오롯이 혼자서 견뎌내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존재론적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연령, 성별, 탈가정 상태,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이 교차하면서 삶 전반에서 중층적이고 다층적인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과 관련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위한 지원체계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예컨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그 가정'의 위기 상황을 학교와 교사 혹은 경찰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며, 쉼터에서도 만난 실무자의 무책임한 대처 등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공적 지원체계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의 편차가 커졌다.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무지하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실무자를 만나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가구 단위 사회보장체계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끊임없이 '그 가정'으로부터의 보호받지 못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같은 증명 이외에도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을 받기 위해서 2년 이상의 쉼터 거주 기간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상당수의 가정 밖 청소년은 적절한 주거 지원으로부터 빗겨나 있다. 가정으로부터의 돌봄과 보호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정서적이고 관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의 지원체계는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을 단지 정책과 제도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자기 삶을 구성해가는 주체임을 드러내고자 함이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숨기기와 거리 두기’, ‘갈아넣기’, ‘타협하기’, ‘저항하기’, 그리고 “새로운 길 찾기‘로 드러났다. 숨기기와 거리 두기는 다른 이들과 다른 일상에 대해 거짓말 등으로 숨겼는데, 이는 평범하지 않은 자신의 삶이 사회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까닭이다. 갈아넣기는 어떻게든 가능한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혹은 생계유지를 위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자기 자신임을 드러낸다. 타협하기는 생존을 위해서 눈치를 보거나 상대가 원하는 태도와 방식을 몸으로 익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습득하는 일종의 사회적 관계 능력이다.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저항의 방식으로 삶을 구성하기도 했는데, 인권침해적인 쉼터 규칙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고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로운 길 찾기는 탈가정을 자기 삶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고 미래를 구성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탈가정을 계기로 보호자로부터의 존재론적 독립을 꿈꾸기도 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가정 밖 청소년을 돋고 싶다는 마음을 실천하기도 했다.

제5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C / O / N / T / E / N / T / S

제1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제2절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 · 정책 개선안

제3절 소결

제5장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보장 방안

앞서 국내외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관련 법제도, 가정 밖 청소년 관련 통계자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상황 및 주거권 관련 인권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거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존엄과 정체성을 유지·발전시키며 시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다. 그러나 조사 결과 가정 밖 청소년은 적절한 주거 공간의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주거권 관련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러한 원칙을 토대로 물리적 주거 공간 지원과 더불어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정책 등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

1.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아동·청소년을 가구원이나 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을 점유하는 주체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연령을 기준으로 권리를 차등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런 법체계 내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주거는 지역사회와의 시민으로 연결되기 출발점이자 안정적인 정주 공간으로 공간을 점유할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지속하는 바탕이다. 즉 주거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원을 공유할 수 있다. 주거를 통해 시민으로서 온전히 권리를 보장받으며 시민사회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깊이 주거는 개인의 실존으로 이어지는, 정체성과 연결된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



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는 청소년들을 시민으로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는 조건 없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Housing First). 가정 밖 청소년에게 조건이나 기한을 정하여 제공하는 주거는 주거 위기를 해소할 수 없으며,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일시적인 거주 공간이나 시설에 머무는 경우일지라도 가정 밖 청소년의 자기결정과 선택을 제약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쉼터와 자립지원관은 이러한 주거 대안을 찾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를 기반으로 청소년이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원이나 서비스 이행, 프로그램 수행의 완수를 전제로 제공하는 주거가 권리로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원은 주거를 기반으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거 위기는 경제적 안정, 노동, 교육, 건강과 안전, 사회적 연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원이 없으면 주거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주거(공간)가 삶의 전부는 아니므로 주거와 주거 기반 서비스가 연결되어 함께 제공되어야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도 권리로서 보장될 수 있다.

2.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

가정 밖 청소년은 연령으로 인하여 비청소년이 향유하는 권리로서 주거권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개별 청소년의 성별,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경제적 상황, 가족 형태, 장애, 나이, 학력, 취업유무, 중도퇴소 등에 따른 차별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되는 경로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 관할 부처가 갈라지며 주거 및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달라지고 있다. 이처럼 가정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다층적이고 스펙트럼이 넓다.

특히 어느 부처의 관할에 속하느냐에 따른 지원의 차별은 심각하다. 아동학대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와 청소년이 아동학대 신고

전이나 후에 스스로 안전을 위해 탈가정을 하여 쉼터나 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두고 서로 원인이 다르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편입한 체계에 따라 자립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면 국가가 시민들에게 운에 따라 공적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가정 밖 청소년의 생명, 안전, 존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각자의 노력으로 살아남도록 만들며, 설령 그들이 운좋게 살아남더라도 큰 상흔이 남을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든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이 침해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권은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연령과 그 외의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주거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위의 사유들로 주거 제공을 차등한다면 조건에 따라 주거를 제공하게 되므로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와도 상충한다.

3.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

‘누구와 함께, 어디서, 어떻게 살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선택권은 아동·청소년에게 있어야 한다. 유엔은 2009년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맞이하여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며, 아동의 시설보호를 최후에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권고하였다. 201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에서도 아동의 시설보호보다 가정과 지역사회 배치를 우선하도록 결의하였고, 아동 권리위원회는 2019년 대한민국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며 단계적으로 시설보호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거주시설 외에 다양한 주거 대안이 있어야 하며, 각 대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설명이 제공되어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설계하고, 주택을 보급하는 과정에서부터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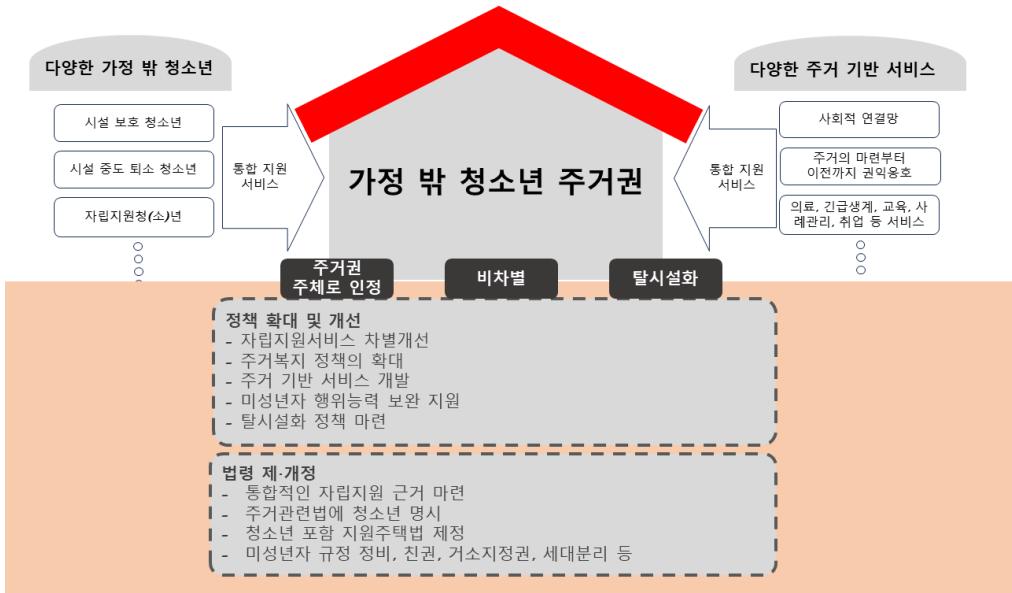


가정 밖으로 나온 직후 긴급하게 머물 수 있는 일시적인 보호와 거주 공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은 일시적이므로 정규 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 정책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쉼터 등의 시설에서 장기 거주를 조건으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어 문제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은 지역사회 등과 연결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회구성원이자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은 시설보호로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가정 밖 청소년의 궁극적인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서는 탈시설화를 지향해야 한다.

제2절 |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법·정책 개선안

이 연구에서는 주거권을 공간에 대한 점유권에 한정하지 않고, 그 장소를 유지하면서 정체성, 생명 등 삶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권리로 정의하였으며, 양적 및 질적 자료 분석을 토대로 주거 위기가 가정 밖 청소년의 삶 전반을 위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위기는 단지 집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 안전의 즉각적이고도 심각한 위협, 자유의 침해, 차별 대우, 시민적 연대와 사회적 관계의 와해와 같은 모습으로 청소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주거 공간과 결합하여 통합적인 주거 기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존엄한 삶을 복원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세 원칙,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 주체로 인정,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없는 보장,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를 바탕으로 법·정책을 제안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현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5-1]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실현 방안

1.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의 확대

자립지원정책은 주거권의 실현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다. 자립과 주거는 삶을 재건하고 지킴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와 연결되고 시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앞서 가정 밖 청소년들의 주거 상황에 관한 이야기에서 자립은 중요하게 반복되는 내용이었으며, 자립에 있어서 주거 보장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시 말해서 자립은 주거에서 삶을 지속한다는 주거권의 또 다른 표현이나 마찬가지다.

자립을 공적인 책임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이해가 확산하고 있으며, 다행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책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과 체계를 갖추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 역시 자립준비청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차별 없이 주거 지원을 비롯한 자립지원정책이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이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18세 이상인 청소년을 정책적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첫 단계로서 의미를 가진다.

가. 자립준비청년 정의 확대를 위한 정책 및 법 개선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모든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립준비청년 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거나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사람으로 만18세 이후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만 포함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⁹⁰⁾에 정해져 있다. 다만 2024. 2. 9. 시행될 새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은 자립지원대상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므로 이후에는 근거가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⁹¹⁾이 될 예정이다. 이들의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표 5-1>과 같다.

<표 5-1>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영역과 내용

영역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내용
소득안정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수당 매월 40만원씩 최대 5년 이내• 아동자산형성사업(디딤씨앗통장)• 자립정착금 확대(최대 1500만원)• 생계급여
주거안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 주거지원(LH건설임대주택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희망디딤돌센터,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주거비 등 사례관리

90)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②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1)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영역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내용
진로탐색 및 진학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사회적 배려자 전형에 포함하여 고등교육 기회보장 국가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 대학생 기숙사 지원 기초학습 지원
직업경험 및 고용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도전지원사업 공통대상에 포함 マイ스터고 특별전형 지원대상에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우대 대상에 포함
신체 및 정신 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립준비청년 대상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 바람개비서포터즈 의료비 지원(보호종료 후 5년간 의료급여 2종 수준)

출처: 허민숙(2023)에서 재구성

사실 현재의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2022년 두 명의 자립지원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최근에도 자립지원청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SBS 뉴스토리, 2023. 8. 12. ; 경향신문, 2022. 8. 24.). 그러나 아동양육시설 이외의 시설 또는 기타 공간에서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이마저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사망한 자립준비청년 중 1명도 시설에서 통고로 6호시설에서 머물다가 원가정에 복귀한 청년으로 필요한 자립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시사인, 2022. 9. 29.).

기존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가정 밖 청소년이 원가정에서 방임을 경험하는 비율이 약 33%, 신체적 폭력을 자주 경험했다는 답변이 43.8%, 정서적 학대를 자주 경험했다는 답변이 56.8%에 달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들은 원가정 내의 폭력은 더욱 심각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 내 폭력 경험을 증언했고, 몇몇 가정 밖 청소년이 경험한 폭력의 정도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남길 정도로 치명적이었다. 이들 중에는 학교 등 외부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하고도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 없이 원가정에 남겨진 경우도 있었다. 피상적으로 ‘가출’을 비행으로 보고, 「소년법」상 우범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다른 현실이 드러난다. 여러 번 외부에 알렸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학대를 피해 여러 차례 짧은 가출을 반복하는 등의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

지 않았으며, 긴 고민과 단념을 반복한 끝에 결국 장기적인 탈가정 상태에 이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아동학대가 드러나지 않거나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않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폭력에서 벗어난 이들이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통계에서 절반 정도가 아동학대로 인해 원가정에서 이탈한다(이상정, 2020a). 즉 자립지원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은 서로 다른 보호와 지원 체계에 속해 있으나,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 이유나 자립 과정의 경험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 발견된 탈가정 경험 중에 집에서 내쫓김이 적지 않았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보호자가 문을 걸어 잠그고 너의 집이 아니라고 하거나, 몰래 이사를 가 버리는 경우, 보호자가 오히려 스스로를 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 고시원을 잡아주며 따로 살라고 하는 경우 등이었다. 보호대상아동의 1/3이 보호자의 경제사정, 가족관계, 질병 등처럼 보호자가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보호를 위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보호대상아동의 상황과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 외에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한부모가족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법무부의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소년원 등에서 보호를 받은 청소년들은 관할부처와 근거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수준의 자립지원을 받을 수 없다. 아동양육시설 배치 및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및 쉼터퇴소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며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현재의 법체계는 아동·청소년이 가정 밖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다른 유형으로 분류되고 지원 부처 역시 상이하다. 이는 앞서 제안한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두 번째 원칙, 비차별의 원칙에 위배된다. 어느 시설이나 보호체계를 거쳤든 전환기에 주거를 포함한 기본적 자립지원이 필요한 상황은 동일하다.

김지연·백혜정·김미향(2022)의 “시설퇴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 퇴소자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 사이 자립지원 금액의 격차가 크다. 특히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그 어떤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원가정이 수급 가정이 아닌 경우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며, 자립지원수당과 관련해서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는 2년 이상 시설 거주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며 그마저도 세부

기준 자격이 까다로워 실제 지급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양육시설 이외 시설 또는 기타 공간에서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자립준비 청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장의 시급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는 자체적인 자립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자립지원을 연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부터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간 거주 후 퇴소한 경우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며 올해는 월 4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한다.⁹²⁾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연구(거주시설퇴소 장애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2021). 청소년복지나 장애인복지에서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 인력 등을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각각의 근거 법률에 자립과 주거를 권리로 새기는 방안이 언급되어 왔다.

청소년복지나 장애인복지에서 자립지원에 대한 체계가 갖추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법무부, 교육부, 통일부 등 타 부처의 보호체계나 성폭력·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타 법률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여전히 누락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모든 부처에서 각각의 자립지원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는 다양한 개별법을 다 찾아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이상정, 2020a),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갖추게 되거나(이상정, 2020a), 부족한 예산이나 자원을 나누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입장이나 상황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임에도 서비스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틀에 맞춘 후 지원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지원이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도 제한적이다. 결국 각각의 상이한 전달체계 속에서 전달체계를 거부하거나 소속되지 않는 당사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지원체계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원하는 지원과 연계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지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분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기본적인 지원 수준을 보장하고 개별화된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92) 복지로,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ld=WLF00001146>



이러한 욕구와 필요성은 현장에서부터 확인되고 있다. 민간 기업의 지원으로 추진한 희망디딤돌 사업의 경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경우 외에 청소년지원시설이나 기타 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다.⁹³⁾ 희망디딤돌처럼 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국 시·도 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 운영하도록 정책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을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 보호시설 정의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출산지원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성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및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의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및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공적으로 후견 직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적어도 이 법에 명시한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 역시 공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원가정의 지원이 없이 자립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아 1:71에 가까운 비율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고,⁹⁴⁾ 그마저도 전체 자립지원청년의 일부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효적인 정책이 되려면 예산과 인력의 확보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간 협력이 필요하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반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담인력 충원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93) 희망디딤돌 홈페이지 (<http://www.jarip-hope.or.kr/about/01.php>)

94) 경향신문, 2023. 9. 10.자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한 사람이 71명 담당…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 끊겨”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10141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2023. 12. 28. 인출)

〈표 5-2〉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등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8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 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p>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 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 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보호시설 등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 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자립지원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보호시설 등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보호시설 등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시설 등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나. 자립준비청년 기준 조정을 위한 지침 및 정책 개선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준비청년에 포함되기 위해 우선 연령에 대한 기준이 조정되어야 하고 더불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 대상임을 인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심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자립지원은 소위 ‘만기’ 퇴소라고 불리는 18세 퇴소 이후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는 자립지원대상을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 등) 및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중 어느 하나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6조 제1항은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시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립지원대상을 굳이 연령을 기준으로 18세 이후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자립지원은 법령 개정이 없더라도 담당 부처의 정책적 결단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뿐만 아니라 2023. 8. 8.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 제4호가 신설되어 18세 미만에 보호가 종료된 경우에도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축조되어 내용상 18세 미만에 퇴소한 경우를 지시할 뿐, 역시 18세 미만인 청소년을 자립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세 미만 퇴소 청소년이 자립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 개정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할 지침에 반영할 수 있으며, 현재 준비 중인 지침에 현재 가정이나 시설 밖에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아동복지법」의 ‘아동’)⁹⁵⁾을 지원하는 대상으로 포괄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도 자립지원금과 수당을 포함한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주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95)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에 따르면 15세부터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종사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 또한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23)는 성년기 직전에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시설 보호기간이 짧았던 경우나, 대학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 18세 이전에도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이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15세 이후 자립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어떤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래 [그림 5-2]의 절차를 준용하거나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아래의 절차는 추후 주거기반 서비스에서 다룰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절차이다.

단계별		서비스 내용
1단계	입소(위탁)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정이 있는 경우,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2단계	입소(위탁) 결정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지능, 사회성, 심리, 학습 관련 통합사정 실시 • 통합사정결과를 토대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배치
3단계	시설(위탁가정)적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장은 경계선 지능 의심 아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계선 자립지원사업에 참여지도
4단계	적응기간 경과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센터)내 사례관리회의 - 자립·건강·심리·학습 등 관계자 참석
5단계	사례관리 회의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별 자립지원서비스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단계의 내용을 반영 - 원가정 유대강화 서비스 포함 -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개입 계획 수립 • 5단계의 아동별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수립에 기반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6단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자립기술평가 실시 및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 포함 -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계획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입력
7단계	자립체험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아동에 별도(1인실) 공간 제공을 통해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8단계	보호종료 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종료가 예정된 아동에 대한 자립준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진학, 취업(예정)유무, 등록금조달, 주거 마련, 원가정 관계, 자립정착금 사용계획, 자립수당 신청 여부 등 - 경계선지능 등 자립취약아동의 자립준비기간이 필요할 시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연장 보호 검토
9단계	보호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10단계	사후관리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 5년까지 안정적 자립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및 자립수준평가 실시 <서식 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그림 5-2] 보호아동 자립지원 단계

출처: 아동분야 사업안내(2023) 7쪽.



15세는 의무교육인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진로가 구분되는 연령이기도 하다. 자립은 입소부터 역량을 축적해 가는 과정이지만, 본격적인 계획의 시작을 15세로 삼고 있다. 실제로 기존 국내 연구에서 조사된 청소년의 첫 탈가정 경험은 14.7세에서 15.2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의 탈가정 경험 역시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하거나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 중인 자립지원 대상 관련 지침에서 15세를 연령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에도 미국의 전환주거나 전환 생활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영국의 「홈리스감소법」은 지원 대상으로 16세~17세의 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16세부터 부모의 거소지정권으로부터 해방된다.

미국의 관리수반아파트먼트(SAL)를 활용한 전환 생활 프로그램과도 유사한 희망디딤돌은 한국형 FOYER 사업으로 1인 원룸의 주거 공간과 1:1 통합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15세부터 자립체험실이나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⁹⁶⁾ 이 제도를 보완하여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을 연장하고 15세 이후부터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고안해 볼 수 있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하면 조기퇴소 이후 자립지원에서 이탈하고 위기사항을 겪을 우려가 증가하므로 주거를 기반으로 집중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다. 시민단체와 지역기관들 중 임신과 출산, 영유아 양육 중인 청소년 모를 특별 지원하면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들⁹⁷⁾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자립지원 사업 조건으로서 주거 관련 시설 거주기간 요건 개선

자립준비청년 및 쉼터 퇴소 청소년 임대주택 공급 시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하거나 하향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 거주 가정 밖 청소년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기 거주하는 편이지만, 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 거주 가정 밖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입·퇴소가 잦으며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드물다(김지연 외, 2022:418). 이는 연구 참여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면담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다. 청소년들은 규칙이 엄격한 단기쉼터나 중장기쉼터보다 일시쉼터를 선호하고, 이들에게서 원가

96) 희망디딤돌 홈페이지 (<http://www.jarip-hope.or.kr/about/01.php>)

97)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https://change.beautifulfund.org/8645/>)

정 복귀와 쉼터 이용이 반복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다. 한 번의 충동으로 탈가정하는 청소년보다 탈가정과 원가정 복귀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원가정에서 차츰 멀어져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경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어느 정도 원가정의 보호와 돌봄으로부터 이탈한 상황에서 탈가정을 하는 까닭에, 추가로 쉼터 이용 기간을 2년 이상 요구하는 것은 앞서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원칙과 탈시설화 원칙에 반한다.

단기적으로는 3~9개월까지 시설 거주기간 요건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최초 3개월, 연장 1회시 최대 6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 2회 연장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낼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일시적 거주기간이 최대기간을 채운다는 전제로 3~9개월 이상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 및 자립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14세 이후 13주 이상의 보호를 받은 경험을 요건으로 자립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시설 이용 기간을 통합 산정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 중에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복지법」상 공동생활가정, 청소년 쉼터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나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거주한 경험을 복합적으로 가진 경우도 있었다.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시설 외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의 시설에서 보호받는 경우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이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이상정, 2020a).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의 통합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구 단위에서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인지하고 차별없이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게이트웨이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이용 경험을 자료로 축적할 수 있으며,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이용 기간을 차별없이 통합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준비지원이 시설 거주 기간을 전제하지 않아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이 처한 각 위기 상황을 개별적으로 사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복지시설 외의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와 시설을 거치지 않았지만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포괄·확장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사정 절차를 통해 원가정 복귀, 시설 거주 및 자립 주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개별 계획을 수립하여 가정 밖 청소년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장기적으로는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과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서 「아동복지법」의 자립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보호시설 이용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전달체계 사이의 차별을 많이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각 부처와 전달체계에서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적인 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호시설 외에도 자립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자립지원 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이미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 윤후덕 의원이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⁹⁸⁾ 이 법안은 관할 부처로 인한 차별 없이 통합적·포괄적인 자립지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개인 지원자를 두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위 법안은 두 번이나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현재 제21대 국회의 임기를 고려하면 제대로 논의되기 전에 폐기될 우려가 크다.

2. 통합적인 주거 기반 서비스

거듭 강조하지만 주거권은 공간의 점유뿐 아니라 장소로서 주거에서 정체성, 생명 등 삶을 유지하기 위해 정주할 권리이다. 실제로 국제적인 인권규범에서는 주거권을 사회와 연결되는 지역사회,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도시환경에 대한

98) 제20대 국회(윤후덕의원 등 30인, 2019. 7. 25. 발의, 임기만료 폐기), 제21대 국회(윤후덕의원 등 34인, 2021. 2. 18. 발의)

권리로 확장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처럼 주거권은 주거 공간 마련과 같이 특정 시점에 완성되는 권리가 아니라 계속적인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아동학대가 있던 폭력적인 원가정이나 자유의 제한 및 거주기간의 불안정성이 있는 시설이나 타인에게 의지한 공간에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주하기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 연결이 실질적인 주거복지 내지는 주거권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가.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 정책 마련

주거를 기반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이를 공적인 책임으로 인식할 때, 가정 밖 청소년을 공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거취약계층으로 3개월을 고시원 등 비주택에서 거주한 후 받는 주거 지원은 공간의 점유 그 이상으로 확장되기 어렵다. 물론 현재의 지원 체계 내에서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부를 묻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기는 하다는 점에서, 이를 잘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 정주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채로 탈가정을 해야 했던 가정 밖 청소년이나 현재의 제도상 18세 미만인 가정 밖 청소년들은 주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앞서 면담을 통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상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나름의 전략으로 가정 밖 주거지를 찾고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주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 열악한 주거를 유지하는 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다른 인권의 침해로까지 이어졌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1차, 제5-6차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전해의 소년소녀가정(과거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적절한 지원 요구와 아동·청소년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라는 권고를 어떻게 정책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주거 기반 서비스를 망설이거나 그들의 존재를 못 본 척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제1차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27. 위원회는 특히 조약 제18조, 제27조에 비추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대한 가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좀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소년소녀가장이 이끄는 가정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제5~6차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32. 당사국이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유엔총회 결의안 64/142, 부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b)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아동이 가출하는 사유를 찾고 이러한 현상을 예방 및 극복하기 위한 선별적이고 비징벌적인 조치를 취하며, 가출 아동의 보호를 강화할 것;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여기에 직업 훈련 및 교육, 의료 지원,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사례관리를 동반한다는 점이다. 캐나다 등 국가에서 체계화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하우징퍼스트 관점은 안정적인 주거가 곧 자립의 필수적인 기반이며, 여기에 개별 청소년에게 맞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지원이 함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단체들도 계단형 모델, 보상형 모델에서 벗어나 하우징퍼스트로 전략을 선회하고 있었는데, 국내의 희망디딤돌 사업이 소개한 청소년 포이어(전환주택)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거와 사례관리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환주거나 전환 생활 프로그램은 16세 이후의 청소년들에게 관리수반아파트를 제공하여 사례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시범 사업으로 실시한 적이 있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지원 기간 동안 LH 등 매입 임대나 전세임대 또는 일반 주택의 월세로 거주 중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비(임대료)를 제공하면서, 사례관리서비스(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 지원)를 통합하여 제공하였던 사업이다. 당시 사례관리자와 이용자의 비율을 1:30 정도였다. 이 사업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 중 다수는 안정적인 집이 생겼다는 생각(87.2%)이 들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는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응답(84.2%)이 높게 나타나 서비스 수급을 통하여 주거의 안정감을 느끼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관련해서도 77.6%의 이용자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어서 좋다는 인식을 가졌으며, 97.0%는 실제로 통합사례관리사가 도움이 되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이상정 2019). 이 사업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현재 자립지원통합서비스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립지원통합서비스는 이미 형태가 어느정도 갖추어져 있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와 주거 관련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자립지원통합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앞서 본 것처럼 사례 관리자와 이용자의 비율이 1:71이 되었고,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곳뿐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담당하게 되어 시범사업과 달리 내실 있는 관계 기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충원, 주택 확보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다양한 부처와 기관 사이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근거하여 2016년부터 지원주택을 운영 중이며, 2020. 4. 기준 노인 91호, 장애인 142호, 노숙인 180호, 정신장애인 33호 등 총 446호를 운영하고 있다(송인주 외, 2020). 지원주택은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선 주택을 제공한 후,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하우징퍼스트(housing first)’ 정책 모델이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 가장 큰 변화는 독립주거가 생겼다는 점, 주거환경이 개선된 점, 일상과 개인적 삶에서의 자유로움이 확대된 점, 공적 서비스와 대중교통 이용이 많아진 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된 점,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자신감이 생긴 점을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송인주 외, 2020).

이처럼 주거 기반 서비스는 이미 국내외에서 다방면으로 검증되어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도화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는 청소년 자립지원관을 통한 지원이 거의 유일하며, 이마저도 전국에 13개소 밖에 없고 지원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자립지원관의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당장 자립지원관 확대가 어렵다면 청소년쉼터의 기능



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로 우선 필요한 것은 주거지 탐색과 방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이사·전입신고 등 입주까지의 지원과 입주 후 주거 정착, 가구 구입, 주택시설관리,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 유지를 위한 지원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제일 필요한 지원으로 주거를 일순위로 꼽았으나 모든 과정에서 정보를 스스로 수집해야 하는데 어떤 지원자나 기관을 만나는가에 따라 정보량과 정보 분석에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이 적절하고 안전한 주거를 마련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유지 전반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전세임대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적정한 주거를 탐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집을 알아보고 입주하기까지 절차에서 동행자가 필요하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저축상담 및 금융관리, 취업상담 등의 자립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국내 가정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의 비교 분석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주된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으며, 이는 교육과 일자리 경험의 차이로 이어졌다. 전체 청소년의 경우, 대다수가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과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의 노동 조건과 위험한 환경으로 이어졌다. 가정 밖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에 비해 비정규직에서 근로하는 비율이 높고 불법·탈법적인 일자리 경험이 6배나 높았다. 마찬가지로 면담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위기는 경제적 취약으로 연결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근로기준법」이 유명무실한 일자리에서의 산재 등 신체적 위협으로 이어졌다. 일자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탈학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기존 조사나 이번 연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은 공히 경제적 취약성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그로부터 파생된 문제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과 위치에 따라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드러났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처한 삶의 맥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정서 지원 등이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대개 원가정에서 나올 때 이미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거가 안정되더라도 경제적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과 비교하여 스트레스 경험이 전체 청소년의 8~10배 높았고, 주관적 건강 인식도 전체 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면담에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을 지기 어려워 건강상태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들은 원가정에 대하여 복잡하고 다층적인 미묘한 감정을 드러내었는데, 원가정과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가정 밖 청소년이 그동안 일궈온 기준의 관계망과 지역사회 지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자립지원정책 중에는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 다양한 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와 공공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은 탈가정 이후,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청소년복지시설로 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과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경험이 건강한 시민으로 지역사회, 학교나 직장의 인간관계 등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 기반 서비스에는 청소년이 일궈온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연결망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다원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서비스 제공자 등과의 상호적 관계에 기반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개인화된 서비스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정절차 마련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 중에는 사회 서비스 정보를 익숙하게 검색하여 건강, 노동, 기초생활보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필요한 것이 있어도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모르는 연구 참여자도 적지 않았다.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자립 지원이 필요하지만, 모든 이에게 동일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가정 밖 청소년은 취업을 원하고 다른 가정 밖 청소년은 학업을 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집이 필요한 청소년도 있지만, 이미 확보한 주거 공간의 유지를 위해 수급을 원하는 청소년도 있다. 또

한 어떤 가정 밖 청소년은 원가정과 관계 회복을 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완전히 분리되기를 원하기도 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욕구와 필요 면에서뿐만 아니라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 장애 여부, 가족 구성 등에서 다양한 삶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오롯한 경험을 갖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체다. 즉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의 삶을 전형화·타자화하지 않는 지원이 필요하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편견과 차별 없는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들을 개별적, 독립적인 존재로서 바라보고 당사자의 이야기를 청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논의하는 심의기구와, 청소년과 함께 고민하여 정보를 찾고 동행하는 지원자가 있어야 한다.

현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 자립지원관과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개별화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두 절차는 각각의 전달체계에 이미 포섭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전달체계 밖에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은 배제되고 있다. 반면 지원체계에 포섭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지원의 내용과 정도가 각기 다른 가정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청소년들의 경험과 욕구가 적절하게 존중받지 못할 수 있고, 종사자의 인권 민감성, 소수자 감수성에 따른 지원의 차이 또는 배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체계가 청소년들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구조적인 변화가 절실하며, 이 과정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만나는 종사자와 기관의 역할이 연결고리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나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각각의 독자적인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전달체계 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교차시키며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미 세종시,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등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과 청소년 부서를 통합하거나 연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이 같은 사례는 각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정책적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규정을 각각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5-3〉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p> <p>1.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①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p> <p>1.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제38조 제2항의 자립지원대상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i>〈신 설〉</i> 9.「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 <i>〈신 설〉</i> 10.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표 5-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p>	<p>제5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 · 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이라 한다)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p> <p>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p> <p>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4.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의 자립지원대상 선정과 지원에 관한 연계에 관한 사항 〈신 설〉</p> <p>5.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p> <p>6.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p> <p>7.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p> <p>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 추측 가능해야 예산 수립이나 인력배치가 가능하므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의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현재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나 욕구, 특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제3장에서 기존 조사결과를 검토하면서 경찰,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조사주체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2018년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기 쉽지 않았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실태조사 규정이나 「주거기본법」상의 주거실태조사 규정을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의 표와 같이 제안한다.

〈표 5-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의 위기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및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표 5-6〉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 아동 <u>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신설〉</u>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주거 복지 대상 확대를 위한 법·정책 개선안

청소년이 연령에 따른 차별 없이 보편적인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거복지정책에서 연령으로 인한 기준이 있거나 청소년을 고려하지 않는 법·정책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주거기본법」상 주거지원 필요계층 확대

「주거기본법」에는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비 우선지원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청년과 지원대상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이나 위기청소년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주거기본법」은 주거권을 구체적 권리로 규정한 법



이자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법들의 기본법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일지라도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 또는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가 있다.

〈표 5-7〉 「주거기본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p>	<p>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가정 밖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개정〉</p>

나. 지원주택 지원의 확대 및 관련 법 제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원주택은 주거 기반 서비스와 안정적인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거약자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삶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했으며 2019년 「서울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경기도가 뒤이어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조례로는 전국적으로 지원주택을 확산하고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비차별 원칙에 따라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을 위한 법률도 필요하다. 현재 아래의 지원주택법안이 의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표 5-8〉 지원주택 관련 입법안

의안번호	의안명	소관부처	제안일자	비고
2109605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1인)	보건복지부	2021-04-2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9608호)과 함께 제출
210960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국토교통부	2021-04-20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의안 번호 제9605호)과 함께 제출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국토교통부	2021-08-10	
212471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국토교통부	2023-09-26	

각 법안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거약자의 범위를 확장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에 지원주택을 추가하려는 것이다. 강선우 의원안과 최기상 의원안은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조항을 이 법률에 직접 삽입하는 안이고, 심상정 의원안은 아래 장혜영 의원의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규정하고 이 제정법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계하려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주거약자용 주택공급에만 한정되어 실질적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주거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확대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으로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 예산, 업무연계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주거지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시설 중심의 복지전달체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 기대된다.



다만 현재 위 네 법안 모두 가정 밖 청소년을 입주대상자 정의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아직 법률안 상태이지만 아래와 같은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청소년도 주거 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표 5-9〉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강선우 발의)

현행안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u>가정 밖 청소년</u>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 5-10〉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심상정 발의)

현행안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u>가정 밖 청소년</u>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 5-11〉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 제정안(장혜영 발의)

현행안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표 5-12〉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기상 발의)

현행안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2. (현행과 같음)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거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

한편 위에서 언급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각 조례는 지원주택 공급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이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해석으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여지가 있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결단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나 선거결과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위의 지원주택법안처럼 조례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입주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지원주택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방임·학대 등으로 분리조치가 필요한 사람인 경우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1.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노숙인 정의에서 연령규정 삭제

앞서 제2장에서 검토한 것처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행규칙에서 노숙인을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주거가 없고 주거가 필요한 현재 상황만 집중하여 본다면 청소년도 흠티스로 보아야 하지만, 미성년자에게 세대주로서 실체적 주거 공간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 교육부의 「맥키니-벤토 흠티스 지원법」은 청소년 흠티스를 정의하여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도덕적 또는 비행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가출’ 대신 누구나 보장받아야 마땅한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또한 시설이나 전환주거에서 거주 중인 상황을 흠티스 상태로 보기 때문에 쉼터나 전환주거에 머무르는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지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영국의 「흡리스 감소법」이 자립준비청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 지원 우선순위에 위치시킨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가정 밖 청소년을 비행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보는 인식을 주거 지원이 필요 한 사람으로 바꾸고, 청소년이 주거권의 주체임을 설명하기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령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이 규정은 상당한 기간 시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노숙인 정의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시설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동시에 실제로 노숙하는 청소년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고,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연령 제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제21 대 국회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정의의 일부를 위임한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다.

〈표 5-1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안(최혜영 의원)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 다. (생 락)</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p> <p>가. ~ 다. (생 락)</p>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 대상이 된다면, 가출이 아니라 청소년에게 집이 없는 현재 상황에 주목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는 기대된다. 그러나 노숙인 복지 정책이 중심이 시설에서 이용자로 이동하고, 하우징퍼스트가 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는 시설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국내의 노숙인 인식이 차별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있었다.

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

1)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주거급여법」 제1조). 「주거급여법」은 부양의무자 요건이 폐지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원가정의 부양의무 이행 의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30세 미만인 미혼자녀를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보지 않고 원가정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문제가 있다. 「주거급여법」이 2023. 4. 18. 개정되어 30세 미만 19세 이상 미혼자녀 가구도 원가정과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원

가정이 수급자인 경우에 한해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청소년 단독세대가 보장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해야 한다.

기존 실태조사에서 가정 밖 청소년이 제일 필요로 하는 지원은 ‘주거지 및 주거비 지원’이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중 주거비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거권과 관련된 다른 인권의 침해, 특히 건강권의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 중 식비나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균형 있는 식사를 포기하거나, 대중교통 대신 걸어다니고, 냉난방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지출을 아끼는 경우가 많았으며, 보증금과 같은 목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 보증금 지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급여가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임을 시사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단독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개별가구 규정이나 「주거급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표 5-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개별가구)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조(개별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p>제2조(개별가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별가구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 (법 제21조에 따른 급여 신청을 최초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법 제23조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급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현행	개정안
<p>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p> <p>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p>	<p>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p> <p>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임을 확인한 사람 <신설></p> <p>8.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p>

〈표 5-15〉 「주거급여법」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p>	<p>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5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소년 ·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p> <p>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 · 청년가구원의 범위 및 임차료의 분리 지급 기준 ·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p>

한편, 주거급여는 당장의 주거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거의 질에 비해 임대료를 상승시킬 우려가 있어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거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2) 전세주택 지원사업 및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확대

나아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경우 청소년의 소득 수준에 적합한 주거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하거나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일 필요도 있다. 이 경우 20세가 될 때까지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소년소녀가정 등’을 위한 전세주택 지원대상자에 ‘가정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지원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지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가구인 소년소녀가정 · 대리양육가정 · 친인척위탁가정 ·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아동복지시설퇴소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만 해당된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7조(지원조건)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만 20세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자가 만 20세가 지난 경우에는 만 20세 이후 도래하는 12월 21일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납부토록 한다.

그밖에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비 지원 사업 지원 대상에 19세 미만 단독가구가 포함되도록 수급대상 가구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대상을 확장해가는 전략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마.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 포함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대상자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 주거 공간은 주거권 보장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대한 출발점이므로, 공공임대 등을 공급하여 주거 공간의 확보 및 점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 이외의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탈가정 시기와 상황 별로 다양한 주거 공간(매입임대, 전세임대, 지원주택, 전환주택, 사회주택, 민간주택, 긴급 주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등의 비적정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나 시설 등은 기간이 한정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안정한 주거나 비적정 주거지로 보지 않아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 퇴소 이후 고시원 등의 비적정 주거에서 거주를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중 일부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취약계층으로 주거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고시원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소음이나 화장실 사용 등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좁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는 경우 냄새와 습기로 고생하고 있었다. 고시원에서는 낯선 비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방 별로 온도 조절을 하지 못해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등 안정과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청소년들도 물론이거니와 청소년들에게 주거 제공

을 위한 조건으로 고시원 등의 비적정 주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하는 것은 주거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제1항 제5호에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쉼터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비적정 주거를 거치지 않고 집다운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5-16〉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읍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 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흉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p>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p> <p>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p> <p>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p>	<p>제3조(입주대상자) ① 이 지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가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주거사다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한 범죄피해자에 한한다.(이하 "입주대상자"라 한다)</p> <p>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근 1년간 각 호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쪽방 나. 고시원, 여인숙 다. 비닐하우스 라. 노숙인시설(「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마. 컨테이너, 읍막 등 바. PC방, 만화방 사. 최저주거기준(「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별 표 6] 제5호 또는 「최저주거기준」공고 제2조 '용도별 방의 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흉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p>2.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운영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p> <p>3.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p> <p>4.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p>



현행	개정안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하는 사람 <u>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 서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동법 제2조 제5호의 가정 밖 청소년 <신 설></u>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 중 일부를 가정 밖 청소년 주거에 특화한 주거복지센터로 지정하고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시작할 수 있다. 주거 기반 서비스 전달체계와 별도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주거 공간을 처음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지방자치단체나 주거복지센터에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4.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법 · 정책 개선안

「민법」에 따르면 19세가 되면 성년이 되므로 그전까지를 미성년자라고 부른다(제4조). 미성년자는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가 없는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성년자를 법률행위의 착오나 실수로부터 보호하려 하고 있다(제5조).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 등 법으로 정한 대리인을 말한다. 한편 친권자는 거소지정권(제914조)을 행사하여 미성년자가 있어야 할 곳을 지정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은 주거권의 실현을 위해서 행위능력 제한, 친권자의 거소지정권 행사 등의 곤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과의 수급을 분리할 때도 이를 설명하거나 증명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정책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안하려 한다.

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관련 법과 정책의 개선

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앞서 언급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급한 범위에서 민법상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예외 규정을 두었다. 자립지원대상인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라도 자립과 관련하여 신청, 수령, 수령한 자원과 급여의 처분, 이의제기 등에서 행위능력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지원자를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다른 법정대리인과 달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대리행위에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견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민법상 행위능력 규정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던 원래의 규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지만, 적어도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급하고 사용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의사결정과 행위능력을 존중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사례 중 영국의 경우에도 만 16세부터 부모가 질병으로 입원해있거나 수용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직접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급한 자산이 사기 등의 피해나 친권남용 등이 우려된다면 바우처나 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허민숙 외, 2023). 국내에서는 영유아 보육료와 같은 사업이 대표적으로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은 서점, 음식점, 미용실, 편의점, 영화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허민숙 외, 202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제23조(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행위능력)** ① 「민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개별지원자는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대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그 대리행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행위능력에 관한 예외 규정 개정

한편 행위능력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면 이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적어도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하여 이용하고 무상으로 수급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행위능력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대체로 이견이 없으리라 예상된다. 이에 주거급여를 비롯해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에 대한 기본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행위능력 예외 규정과 「디자인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특허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활용하여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적어도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는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둘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표 5-1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00조 행위능력 특례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4장 급여의 실시, 제○○조의○〈신 설〉”	제4장 급여의 실시 제○○조의○(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행위능력) ① 「민법」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비롯한 급여에 관련한 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급여의 처분, 기타 수급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가정 밖 청소년임을 확인한 사람 〈신 설〉

3) 거래의 상대방이 위험을 분담하는 계약 형식 활용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제한 건너편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미성년자에게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촉구하거나(제15조 제1항), 이를 철회(제16조 제1항) 또는 거절(제16조 제2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상대방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국가, 공공단체, 공기업,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이라면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상대방으로서 어느 정도

위험을 부담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화형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LH와 민간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관에서는 자기 부담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과 계약을 맺거나 주거 기반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특화형 매입임대 중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회주택들이 있다. 다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다수의 경쟁기관들이 생기지 않으면 소수의 운영기관이 가정 밖 청소년을 심사하여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미성년자를 위한 전형으로 소년소녀가정 대상 임대가 있는데, 미성년자인 동안 차임이나 전세보증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민법」 제618조)는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의무(「민법」 제610조제1항 및 제654조)와 계약 종료 시 임차주택 반환의무 및 원상회복 의무(「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가 발생하므로, 미성년자가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민법」 제5조 제1항 후문)라고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우려가 있다. 취소의 위험은 국가 등 거래의 상대방이 지더라도, 취소로 인해 다시 청소년이 주거 위기에 빠질 위험을 발생 시킨다.

또 다른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일반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나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수익자를 가정 밖 청소년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맺는 방식도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세임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가정 밖 청소년이 미성년자인 경우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점유권만 수익하게 되므로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므로 임대인이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되거나, 관련 법 정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4) 법정대리 관련 제도의 활용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

미성년자일지라도 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후문), ② 법정대리인이 처분해도 된다고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제6조), ③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영업에 관련된 행위(제8조 제1항), ④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업무(제117조) 등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⑤ 법률상 혼인을 하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이를 성년의제라고 한다(제826조의2).

또한 「민법」 제918조 제1항에 따라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면서 제3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사를 표시하면 친권자는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따로 지정한 재산관리인이 대신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에 대한 점유권을 무상으로 부여하거나 주거비를 지원하면서 친권자의 관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다면, 가정 밖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추후 이를 쳐분하거나 관리하려 할 때 막을 수 있다. 제3자가 무상으로 수여했기 때문에 위 권리만을 얻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도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제3자의 의사를 공시할 방법이 필요한데, 현재는 공시 방법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른 친권 제한의 경우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를 기록하게 되면 가정 밖 청소년에게 낙인으로 남을 우려가 있어 별도의 공시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민법」

-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 ①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삼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한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자 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 ③ 제삼자의 지정한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관리인을 개임할 필요있는 경우에 제삼자가 다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④ 제24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25조 전단 및 제2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한편,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하는 등 친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활용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친권자의 사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등),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및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민법 제928조). 또한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 친권의 제한이나 정지, 상실을 하지 않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출산지원시설
 -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가정 밖 청소년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나 금융, 소송 등 법정대리인의 업무가 자주 필요하다면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 안정적으로 주거 및 주거권에 관련된 행위능력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후견인이 된 시설의 장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시설 운영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정대리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정대리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끝으로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결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 청소년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22조의2). 또한 청소년이 아동학대 피해아동인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보호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9호).

친권과 관련하여 위의 절차들을 누구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쉬운 제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의 절차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법률구조나 권익옹호활동, 긴급 지원 제도 등이 필요하다.



나. 거소지정권 관련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들

친권자는 자녀가 있을 곳을 지정할 수 있고, 자녀는 친권자가 지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민법」 제914조). 2021. 4. 20. 개정되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규정으로는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아동학대가 원인이 되어 입소한 경우에는 그 가정 밖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피해서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원가정으로 복귀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표 5-1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2 개정안들

박대출 의원안 (2110852) 2021. 6. 17. 발의	제32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당사자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려 한다. ③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정청래 의원안 (2112317) 2021. 8. 31. 발의	제32조의2에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여 당사자에게 쉼터 이용에 관한 동의권을 부여한다. ③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 중 청소년이 충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해로움의 위험에 직면함이 인정되거나 아동학대 또는 가정 내 성폭력의 피해자일 때 등의 경우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며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청소년의 부모, 보호자 등에 대한 동의, 또는 허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조은희 의원안 (2117281) 2022. 9. 7. 발의	제32조의2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여 퇴소시키지 않는 사유를 아래 연락하지 않는 사유로 변경하려 하였다.
윤후덕 의원안 (2118846) 2022. 12. 9. 발의	①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청소년쉼터에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가정 밖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원가정 복귀를 강요했다거나, 보호자가 쉼터에 찾아와서 데리고 돌아간 경험을 말하기도 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켜서는 아니된다고 하는데도 결국 청소년들을 설득해 퇴소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연령에 따른 차별 및 불안정한 주거로 인해 협상력이 부족하고, 바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거소지정권을 포함한 친권 관련 절차에 대한 사법접근성이 낮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을 개별적으로 사례관리하는 이들의 감수성과 역량을 향상하고, 청소년이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동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앞서 언급한 법률구조나 권리옹호, 긴급 지원 제도 등 친권의 제한 등에 관한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다. 단독 가구 세대분리 및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증명의 완화

각종 급여 신청시 부양의무제가 폐지된 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청소년의 단독세대 구성이 문제되고, 아직 부양의무제가 적용되는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경우나 이로 인해 보호를 받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기 수월한 편이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면담을 통해 원가정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교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 신청이 거부되는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의 진술과 가정 밖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증명방법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현장의 담당 공무원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5. 탈시설을 위한 정책

2019. 9.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을 통해 시설보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이후(CRC/C/KOR/CO/5-6, para. 32(a)), 2022. 10.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아동의 탈시설을 재촉했다(CRPD/C/KOR/CO/2-3, para 42(b), 2022. 7.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는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체계를 검토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4. 13.자 브리핑 참고). 탈시설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국제 사회의 주요 인권 정책일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



가.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 권리 선언 및 로드맵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아동·청소년이 머무는 시설의 종류는 아동양육시설 외에도 매우 다양하며,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통일부까지 여러 관계부처에 걸쳐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들 관계부처들이 통합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들의 탈시설화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전히 쉼터나 자립지원관의 역할은 필요하다. 하지만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기조를 탈시설화로 삼게 되면,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아지는 대신 주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방문이나 동행을 통한 사례관리의 증가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이 전환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일시쉼터와 자립지원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을 찾아가는 일부터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하기까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가정 밖 청소년의 탈시설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다부처에 걸쳐 있는 모든 가정 밖 대안 양육체계를 검토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

나. 인권실태 모니터링 실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연구 참여자로부터 장기간 생활한 쉼터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가정 밖 청소년이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 인권침해 진정을 한다면 당연히 방문조사가 가능하겠지만, 청소년쉼터의 특성상 문제제기를 하기보다는 퇴소를 선택하기 쉽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설 방문조사 대상에 청소년쉼터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 규정한 다수인 보호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이나 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 한부모가족지원시설 등을 포함되어 있지만 청소년복지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단기·중장기쉼터를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표 5-19〉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8. (생략)</p>	<p>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p>1. ~ 8. (생략)</p> <p>9.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시설’,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신설〉</p>

다. 청소년복지시설 최저주거기준 적용

청소년복지시설이 1인 1실을 확보하고, 공간 내에서 악취, 소음, 진동으로부터 안전하고 채광과 환기가 잘 이루어지는 등 적정 주거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 설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다인실로 운영하는 쉼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이 긴장을 풀고 개인의 시간을 오롯이 갖기 어렵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쉼터와 같은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주거 공간으로 전환한다고 할 때, 임시로 머무는 공간일지라도 최저주거기준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5-20〉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요약

구분	건물 형태		침실		화장실, 목욕실	
고정형 일시쉼터	단독건물 또는 상가건물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남 · 여용 구분 설치	채광, 환기, 냉난방 가능공간	남 · 여용 구분 설치	수세식 화장실, 세면 · 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단기 · 중장 기 쉼터	단독건물, 연립주택, 상가건물, 아파트 등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채광, 환기, 냉난방 가능공간	남 · 여용 구분 설치	수세식 화장실, 세면 · 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구분	건물 형태		침실		화장실, 목욕실	
청소년 자립지원관(숙박형)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1인당 연면적 11제곱미터	남·여용 구분 설치	채광, 환기, 냉난방 가능공간	남·여용 구분 설치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청소년 치료재활 센터	남·여용 구분 설치 1개의 공동생활시설은 5~7명의 청소년 및 보호·자립지원 요원 1명이 가족 형태로 생활 채광·환기 및 냉난방이 가능한 침실을 설치 휴식을 취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간단한 요리가 가능한 시설 설치 변기,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갖춰진 위생 공간 및 간단한 세탁을 위한 설비 마련				남·여용 구분 설치	수세식 화장실, 세면·샤워 설비 및 온수 공급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단독주택, 연립주택, 상가건물 또는 아파트 등	1명당 연면적 11제곱미터 최소 5명 이상 생활	채광, 환기, 냉난방 가능공간		수세식 화장실 목욕실은 세면·샤워 설비를 갖추고 온수 공급이 가능한 공간	

「주거기준법」[별표]에 따르면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소 주거 면적은 14제곱미터이다. 즉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은 「주거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주거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제정된 이후 여전히 변경되지 않고 있어 최저주거기준은 현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감안하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적정한 주거와 매우 거리가 있다.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최소한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의거 채광, 환기, 냉난방은 물론이거니와 방음,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의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청소년 복지 시설의 1인당 면적 기준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상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냉난방이나 방음, 소음, 진동, 악취 등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능하면 주택건물을 활용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다.

최저주거기준

제3조(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주택은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및 하수도시설이 완비된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주택은 안전성·쾌적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영구건물로서 구조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아가 최저주거기준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을 의미한다. 적정한 주거는 이보다 더 상향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청소년복지시설의 주거기준을 최저주거기준보다 상향하여 적용해야 한다. 특히 1인실 구조가 더욱 널리 일반화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상향하여 가정 밖 청소년들이 넉넉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에 가정 밖 청소년은 자신의 상흔을 보듬고 자기만의 주거와 삶을 찾아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청소년쉼터 등 거주시설의 최저주거기준 적용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아니므로, 청소년 주거권 보장과 병행하거나 후속 해야 할 개선책이어야 한다.

제3절 | 소결

이 장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그러한 원칙을 토대로 물리적 주거 공간 지원과 더불어 주거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정책 등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주거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가정 밖 청소년에게도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주거권의 보장이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가정으로부터 이탈된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가정 밖 청소년을 주거권의 주체로 인정하여 안전하고 평등한 주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차별 없는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탈가정 경로에 따라 관할 부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부처별, 탈가정 경로별 주거 등의 지원에 있어서 차별이 심각하다. 따라서 가정 밖 청소년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우징퍼스트의 관점으로 모든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하고 평등한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를 지향해야 한다. 탈가정 이후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일시 거주지로서 시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시설이 정규 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거권의 주체인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법과 제도를 제안하였다.

먼저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삶의 궤적을 고려해보면, 이용한 시설이나 보호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자립준비청년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 지원 등 자립지원의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미 존재하는 자립지원정책에 차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선 시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기도 하다. 이를 위하여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으로 분절화된 지원체계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둘째,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권뿐 아니라 관련 인권 보장을 위한 통합적인 주거 기반 서비스가 필요하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 취업, 건강, 진로 등의 사회서비스가 주거를 기반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특히 필요한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잘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상황

과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실무자와 기관, 논의하고 결정할 사정 및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절된 팀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현재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인력과 예산의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상황 등에 대한 실태를 적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주거지원법」 제20조(주거 실태조사)에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거 복지 대상에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해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주거 약자 정의에 각각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노숙인 등 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개정하여 연령 제한의 삭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단독 가구로 주거급여를 비롯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독립적으로 급여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화형 매입임대나 소년소녀가정 대상 전세지원 등을 활용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등이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방안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연구를 거치면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친권에 관련된 다양한 사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를 연계하거나 자립지원기관 등이 권익옹호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사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는 거소지정권에 대응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



다섯째, 범정부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 탈시설 권리 선언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시설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임시 주거지가 될 수 있으나 장기 주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정 밖 청소년 주거의 탈시설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실현해 가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탈시설화를 지향하고 단기적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상황 등 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에 청소년복지시설이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에 거주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최소한의 주거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의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주거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이상으로 상향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지나 (2015). 빈곤 청소년의 빈곤대물림 경험과 진로전망. *학교사회복지* 31. 253–279.
- 국가인권위원회 (2016.11.24). *가정 밖 청소년 인권보호 정책 개선 권고*. 보도자료
- _____ (2020). *주거권 국제기준 자료집*.
- _____ (202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 _____ (2021).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자유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 고문방지위원회 일반논평*.
- 국토교통부 (2013).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
- _____ (2022). *2022년 주거종합계획*
- 고순청 · 김다은 · 이창한 (2016). 청소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범죄학* 10(3): 37–63.
- 고문현 (2021). 주거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 *법학논총*, 제50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권영실 · 마한얼 · 송지은 · 유원선 · 이호연 · 정제형 (2020). *청소년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재단법인 동천.
- 김기현 · 문호영 · 황세영 · 유민상 · 김균희 · 이용해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소임 (2007). *인정패러다임에 비추어 본 가족상황차별 담론 분석 – 가족 관련 법 및 신문 기사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수갑 · 여경수 (2005).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헌법학연구* 11(2).
- 김승경 (2010). 가출경험 중고등학생의 개인특성, 가족특성 및 폭력피해 경험과 가출빈도 관련성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93–111.
- 김시아 (2021).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소년법상 통고경험*. 이화여자대학교.
- 김연미 (2015). 법이념으로서 복지국가. *전남대학교법학논총*. 35(3).
- 김용창 (2013).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의 주거권 규정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3)



- 김은정 · 백혜정 · 김희진 (2019).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모색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0(2): 113-144.
- 김정남 · 박미랑 (2021).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 취약성과 범죄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1): 53-83.
- 김지연 · 김승경 · 임세희 · 최은영 (2020). 청소년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 백혜정 · 김미향 (2022). 2022년 시설청소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옥 (2010). 비주택 거주민의 실태와 요구되는 대책. *복지동향* 2010: 2, 136호
- 김현경 (2015).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 김현철 (2015).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철학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법학논집*. 19(4).
- 김희정 (2019).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 *현법학연구* 15(1)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이미영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영정 · 김소형 · 김순남 · 김원정 · 김현경 · 이유나 (2021). *가족실천 및 가족상황 차별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가족구성권연구소.
- 남미애 · 홍봉선 · 육혜련 (2012).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류은숙 (2019). *사람을 옹호하라*. 코난북스
- 마한얼 (202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미류 (2010). 사람답게 살기 위해 살만한 집이 필요한가. *복지동향* 2010: 1, 135호.
- 민태욱 (2013). 보편적 주거복지관련 법제의 법적검토. *토지공법연구* 제62집
- 박병수 (2009). *주거권의 의미와 현실 –강제철거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연구원*.
- 박세훈 외 (2016). *해비타트Ⅲ와 한국 도시정책에의 시사점*, 국토연구원.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2017).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백혜정 · 좌동훈 · 남기곤 · 정경석(2015). *가출 청소년 실태 및 청소년쉼터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보건복지부 (2022).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l2에서 2023. 10. 26. 인출
- 보건복지부 (2023).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2015). 주거복지 관련 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서동진 · 김주연 (2022). 장소정체성을 위한 장소성의 다의적 개념 비교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17(3). 363-374.
- 서종균 (1995). 주거권이란 무엇인가 – 주거권 연구를 위한 노트 -. **도시와 빈권** 1995. 4.
- 서종균 (1998). 주거권 토론회와 주거기본법 입법운동, **복지동향** 1998:12, 3호
- 서종균 (2001). 만인의 권리로서의 주거, **복지동향** 2001:2, 28호
- 서종균 (2005). 주거권 보장과 인권, **복지동향** 2005:5, 79호
- 서지연 · 김상겸 (2022). 주거권과 주거복지에 관한 헌법적 연구. **법학논집** 35(2)
- 송인주 · 오문준 · 이경란 · 고은 (2020). 지원주택 운영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사회복지재단.
- 신명호 · 하성규 · 남원석 · 이호 · 홍인옥 · 김선미 (2004).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 국
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가족부 (2017. 10. 23.). 가정 밖 청소년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23). 2023년 청소년사업 안내
- _____.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_____. (2023). 여성 ·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_____.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유서구 (2017). 가출팸 경험과 비행행동의 차이, **비판사회정책**, 52-80.
- 유엔 (2009).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 (A/RES/64/142)
- _____. (2016). 적정 생활 수준을 누리기 위한 권리의 요소로서 주거권 (A/71/310)
- 유엔 경제적 ·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1991) 일반논평 4호: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규약 제11조 1항) (E/1992/23)
- _____. (1997) 일반논평 7호: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규약 제11조 1항): 강제퇴거 (E/1998/22)
- _____. (2007) 일반논평 19호: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규약 제9조) (E/C12/GC/19)



- _____ (2009. 11. 20). 대한민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C.12/KOR/CO/3)
- _____ (2017. 10. 6.).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E/C.12/KOR/CO/4)
- _____ (2018)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결과보고서 (A/HRC/40/61/Add.1)
- 유엔 세계 주거회의 (1979) 인간 정주를 위한 벤쿠버 선언
_____ (1996) 인간 정주를 위한 이스탄불 선언
_____ (1996) 해비타트 의제
_____ (2016)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에 대한 키토 선언
_____ (2016) 새로운 도시 의제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정부의 제5-6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CRC/C/KOR/5-6)
_____ (1996) 대한민국 정부의 제1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CRC/C/15/Add.51)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대한민국 정부의 제2-3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 (CRPD/C/KOR/CO/2-3)
- 유하얀 · 김미옥 (2012). 장애인거주시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지원 경험.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3).
- 이보람 (2020).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 푸른들녘.
- 이상정 · 류정희 · 김지연 · 김무현 · 정희선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 김지민 · 류정희 · 김지연 · 김무현 (2020a). *아동 ·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 김지민 · 류정희 · 허은영 · 박세경 · 임성은 · 김지연 · 황정하 · 김무현 (2020b).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 김지민 · 류정희 · 조정우 · 흥문기 · 안은미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준 (2011).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 위험 · 보호요인의 효과: 가출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71-291.

- 이은기 (2016).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공법연구** 44(4),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 이주영 (2019). 사회권의 재판규범성. **노동법연구**. 46. 서울대노동법연구회.
- 이승현 · 권수진 · 박선영 · 고기원 (2021). 보호소년 사회정책 지원사업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재)한국소년보호협회를 중심으로-,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 임숙녀 · 박희원 (2016). **주거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임지봉 (2007).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 – 정부의 개헌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기본권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헌법학연구** 13(4)
-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 (2020).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조사**
- 장애여성공감 (2020). **시설사회**, 와온
- 장은혜 (2014).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8(1)
- 장주현 · 김정애 (2015). 퇴소를 앞둔 중장기 쉼터입소 가출청소년의 퇴소준비과정에 관한 현상학적 접근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1-24.
- 전찬희 (2020). 어떻게 주거권을 보장할 것인가. **미국헌법연구** 31(1),
- 정문진 · 김수정 (2016). 쉼터 청소년 자립준비 경험 연구. **사회과학연구** 42(1): 177-207.
- 정선욱 (2022).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긴급 진단 간담회. 아동보호체계에서 바라본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의 이슈와 과제
- 정현목 (2013). 전통적인 장소의 변화와 ‘비장소(non-place)’의 등장: 마르크오제의 논의와 적용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9(1). 107-141.
- 조효제 (2011). **인권을 찾아서 –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한울아카데미, 경기
- _____ (2018). 인권 실현의 통합적 접근, **인권연구**. 1(1).
- 주소영 (2010). 아동학대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3(2): 45-62.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2019). **청소년과 주거권의 만남: 청소년 주거지원 정책의 현재와 대안 탐색**
- 추주희 (2016). 탈가정 십대의 이동과 주거 공간의 선택 및 적응. **청소년복지연구** 18(1): 23-51.
- _____ (2016). ’탈가정‘ 십대의 주거 형태와 공간의 (재)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6(1): 89-126.
- 하성규 (1999). 적절한 주거와 주거권 보장. **주택연구** 7(1)



한국도시연구소 (2022).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지옥고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도시연구소

한수웅 (2022). 헌법학 제12판. 경기:법문사.

허민숙 (2021.6.). 흄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 – 정책과제,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2023).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 박재연 (2023.11.)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 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 NARS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허순희 · 김순옥 (2010). 부모의 관계특성이 청소년의 가출충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생활과학 13: 93-111.

황여정 · 김지경 · 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황여정 ·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 임희진 · 정은주 · 유설희 · 정윤미 (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황진구 · 김지연 (2020). 가출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재구조화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na Gear. (2010). Redirecting human rights: Facing the challenge of corporate legal humanity. Springer.

Centrepoint. (2018). The Homelessness Reduction Act: Will it work for young people?. London: Centrepoint.

Choi, S. K., Wilson, B. D. M., Shelton, J., & Gates, G. (2015). Serving our youth 2015: The needs and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questioning youth experiencing homelessness. Los Angeles: The Williams Institute with True Colors Fund.

Durso, L. E., & Gates, G. J. 2012. Serving Our Youth: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of Service Providers Working With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Who Are Homeless Or At Risk Of Becoming Homeless. Los Angeles: The Williams Institute with True Colors Fund and The Palette Fund.

- Gaetz, S. (2013). A Framework for Housing First. In S. Gaetz, F. Scott & T. Gulliver (Eds.), *Housing First in Canada: Supporting Communities to End Homelessness*. Toronto: Canadian Homelessness Research Network.
- _____. (2014). *A Safe and Decent Place to Live: Towards a Housing First Framework for Youth*. Toronto: Canadian Observatory on Homelessness Press.
- Harner, R., Janker, S. (2016). "Preventing Youth Homelessness through Housing First?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in Vienna." *Homeless in Europe – Preventing Youth Homelessness: Case Studies from across Europe and North America*. Feantsa.
- Laura Abreu, (2015) Constituency Casework: A guide to age related legislation, House of Commons.
- Serge, L., Kraus, D., Eberle, M. (2006). What works – effective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homeless population in Canada.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 Sharma, S.(2009) "Baring Life and Lifestyle in the Non-Place," *Cultural Studies*, 23(1): 129–148.
- Ralph, E. (1976/2005). 김덕현.김현주.심승희(역), 『장소와 장소상실』, 서울: 논형.
- 유엔 인권이사회 (2014) *Thematic report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live independently and to be included in the community* (A/HRC/28/37)
- UN habitat (2015).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Fact Sheet No, 21.

[신문기사 검색]

- 연합뉴스. 2017.1.24. “가출 청소년→가정 밖 청소년…인권위 용어 개정 권고”, <https://www.yna.co.kr/view/AKR20170124167400004>에서 2023.4.25. 인출
- MBC 기사. 2009. 1. 20. “용산 철거민 농성 진압..6명 사망·22명 부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0092001>에서 2023. 10. 26. 인출
- 한겨레신문. 2021. 6. 10. “민권운동 인정받은 광주대단지 사건, 50년 만에 제 이름 찾았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98805.html>에서 2023. 10. 26. 인출



한겨레신문. 2018. 11. 9. “종로 고시원 화재, ‘창문값’ 월 4만원이 삶과 죽음을 갈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9571.html에서
2023. 10. 26. 인출

오마이뉴스. 2018. 10. 3. ““집이 아니라 삶 짓누르는 ‘짐’” 서글픈 민달팽이들의 행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76781에서 2023. 10. 27. 인출

SBS, 2023. 8. 12. “[뉴스토리] 어느 청년의 쓸쓸한 죽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305679에서
2023. 12. 3. 인출

경향신문, 2022. 8. 24. “보호종료 청년 또 극단선택 … 사회적 보살핌 절실”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8241716001#c2b>에서
2023. 12. 3. 인출

시사인, 2022. 9. 29. “모두가 잘못 알고 있던 두 청년의 죽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488>에서 2023.
12. 3. 인출

경향신문, 2023. 9. 10.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한 사람이 71명 담당…청년 5명 중 1명은 연락 끊겨”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101416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에서
2023. 12. 28. 인출

[인터넷 검색]

<https://www.acf.hhs.gov/fysb/law-regulation/runaway-and-homeless-youth-program-authorizing-legislation>

<https://www.ncsl.org/human-services/youth-homelessness-overview>

<https://homelesslaw.org/wp-content/uploads/2019/04/AWAH-report.pdf>

<https://publications.gc.ca/site/eng/305295/publication.html>

<https://www.gov.uk/guidance/homelessness-code-of-guidance-for-local-authorities/overview-of-the-homelessness-legislation>

<https://www.gov.uk/guidance/homelessness-code-of-guidance-for-local-authorities/overview-of-the-homelessness-legislation>

<https://www.feantsa.org/en/toolkit/2005/04/01/ethos-typology-on-homelessness-and-housing-exclusion>

<https://nn4youth.org/presidentialagenda2020/>

<https://www.thetprojectsg.org/>

<https://www.homelesshub.ca/about-homelessness/homelessness-101/housing-first>

<https://www.salaambaalaktrust.com/full-care-residential-programme.php>

<https://www.baangerda.org/>

<http://www.jarip-hope.or.kr/about/01.php>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Id=WLF00001146>

<https://change.beautifulfund.org/8645/>

부록 1 연구 참여자 설명서

| 연구 참여자 설명서 |

연구과제명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참여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읽은 후 연구 참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보고 연구의 참여 의사를 밝혀주세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비롯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과 제도를 구체적으로 제안하기 위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경험을 듣고자 합니다.

2. 연구 참여자

- 이 연구의 참여자는 참여를 희망한 가정 밖 청소년입니다.
- 이하 조건에 1개 이상 충족하는 가정 밖 청소년(9세~24세)
 - 1개월 이상 시설(아동양육시설, 단기.중장기 쉼터, 피해자지원시설, 교육부, 법무부 등의 보호시설 등) 거주경험이 있는 청소년



- 1개월 이상 주거 위기를 경험했지만 거주시설(이동쉼터, 일시쉼터 제외)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 1개월 이상 비적정·비정규 주거(고시원, 찜질방, 모텔, 타인의 집 등)에서 살고 있거나 경험했던 청소년

3.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의 역할

- 만일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연구자와 총 1~3번의 면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면담은 보통 1~2시간이 소요되고 이야기의 주제는 탈가정 맥락, 탈가정 이후 주거지, 주거 상황 등입니다. 실제 경험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솔직하고 성실하게 이야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연구 참여 기간

- 귀하는 이 연구를 위해 2023년 8-9월의 기간 동안 면담의 참여를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

-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향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에게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됩니다.

6. 연구 참여자 보호

- 연구 참여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정보나 경험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연구 참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요소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연구자에게 꼭 이야기 해주세요.

7.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의 보장

- 이 연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는 경기도교육연구원 남미자(연구책임자, 031-8012-0937)입니다.
- 연구 과정에서 수집되는 자료는 개인정보(이름, 소속, 연락처 등), 면담 녹음 내용, 제공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 및 자료는 분석 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익명화하여 사용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됩니다.
-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조사 자료는 현행 법률과 연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및 학술적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이야기한 내용은 녹음되고 문자로 입력될 것입니다. 수집된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귀하가 원할 시, 연구보고서 발간 전에 보고서 내에 수록된 귀하의 경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자발적 연구 참여와 종지

-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구책임자에게 이야기해주세요.

9. 연구관련 문의

-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남미자(연구책임자) 연락처: sisi@gie.re.kr / 031-8012-0937



| 동의서 |

연구과제명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모두 읽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서명:

서명일:

동의취득자(연구진)

이름:

서명:

서명일:

| 동의서 |

연구과제명 :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 상황 실태조사

연구책임자 : 남미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서를 모두 읽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2. 나는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에 대하여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

이름:

서명:

서명일:

법정대리인 동의

- 나는 상기의 동의 내용 및 상기인의 연구 참여에 동의합니다.

법정대리인

이름:

서명:

서명일:

연구 참여자와의 관계 :

동의취득자(연구진) 이름:

서명:

서명일:



부록 2 면담 질문지

0. 주거 관련 생애사

- 성별, 나이, 재학 여부, 탈가정 기간, 시설 경험 여부
- 탈가정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주거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탈가정 맥락 & 주거 기대]

1. 탈가정의 시점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가 있었고, 그것을 신고했던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이후 과정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와 판단이 고려되었는지?
2. 이전 주거지(원가정, 시설 포함)에서 성정체성, 외모, 정치 성향, 학력 등으로 차별이나 폭력(신체적, 언어/정신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3. 탈가정 이후 달라진 것들은 무엇인가요?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
4. 탈가정 이후 나를 어렵거나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회적 시선, 혼자라는 외로움, 경제적 기반, 기타)
5.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은가요? (혼자,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친구/연인)
6. 살고 싶은 사람과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탈가정 이후 주거 선택 과정]

1. 탈가정 이후 머물렀던 공간은 어디인가요? 주거 이동이 있었다면 주거 이동의 과정을 설명해주세요(예: 아동양육시설, 쉼터, 피시방, 찜질방, 고시원, 친구집, 친척집)

2. 탈가정 이후 주거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 지역 / 주거컨디션 / 동거인 / 직장과의 거리 / 주거비용 등)
3. 시설에 갔다면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 (쉼터 경험이 있는 경우)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입소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 (쉼터이외에) 동거했던 사람들 (예: 친척,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원래 학교 친구 등) 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함께 살면서 불편했던 경험, 억지로 맞추거나 뭔가 감수해야 했던 경험
 - 시설을 가지 않았다면 그 이유(예: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등)와, 갔더라도 '나의 집'으로서 오래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을 택했다면 그 이유는?
4. 탈가정 이후 거주지가 내 뜻과 상관없이 정해졌거나 내가 원치 않았던 주거의 형태로 타의에 의해 이동해본 경험 또는 원하는 방식과 형태로 주거한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예: 쉼터 입소 시 부모동의 / 나의 동의 및 상의 없이 이사 / 시설 거주 시 갑자기 이동 등)
5. 주거 제공을 전제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요구를 받아본 경험 혹은 살고 있던 곳에서 강제로 쫓겨난 경험이 있나요? (예: 시설 거주시 규칙, 동거인의 요구 등)
6. 탈가정 이후 주거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나요?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예: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주거복지센터 등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탈가정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자립지원, 주거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안내받은 경험)
 - 주거고민 상담 경험(서비스의 지속성 여부)
 - 주거지원을 받았을 때 시행착오의 기간이 충분히 주어졌나요? 한 달을 살아보고 결정을 바꿀 수 있다든지, 나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다른 선택지가 제시되었는지, 상의할 사람이 있었는지.
7. (관련 경험이 있는 참여자) 탈가정 후 공공/민간 주택 청약이나 계약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시도를 포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도했을 때 당면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예: 나이제한, 가족관계여부, 시설 경험 등)



8. 집을 계약하거나 입주과정 등에서 차별적이라고 느껴졌던 경험이 있나요? (예: 집주인의 부당한 요구, 청소년 등의 이유로 계약과정에서의 불이익)
9. 집주인과 잘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10. 주거 지원 요청 경험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요청했는지, 그리고 요청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또는 지원 요청을 했지만 지원받기 위한 자격조건(범죄 경력, 동행자와의 분리 등)에 맞춰지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탈가정 이후 주거 상황]

1. 탈가정 주거지에 나만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공간, 사적 공간이 있나요?
2. 탈가정 주거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나요? (예: 맞거나 그로 인해 다친 적 /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듣거나 지속적인 괴롭힘 /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 등의 피해 / 범죄 피해나 범죄에 연루될 위험 등)
3. 자신의 성정체성, 성적지향, 이주배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4.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 또는 기관이 있나요? (예: 친구, 경찰, 선생님, 1388, 성폭력상담소 등) 없었다면(하고 싶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현재 주거 환경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6. 탈가정 주거지의 주거 수준은 어땠나요?
7.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거 공간의 환경은 어떤가요? (예: 별이 잘 듣다, 나만의 공간이 있다, 방음, 냉난방, 위생 등)
8. 수도, 가스, 전기, 난방 등의 상태는 어떤가요?
9. 최소/이상적 주거 기준, 즉 자신이 생각하는 주거의 최소 주거 환경과 가장 알맞은 주거 환경과 현재의 주거지를 비교해 본다면?
10.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의 주변 환경을 평가한다면? (대중교통 접근, 동네분위기, 학교, 병원, 경찰서, 가로등, 공원 등 주변 환경)

[탈가정 이후 주거 관련 경험]

1. 탈가정 이후 주 생활권역이 동일하거나 달라졌는지,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나요?
2. 탈가정 주거지에서 지역의 구성원이라고 느껴지거나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이 지역에서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역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3. 청소년 지역활동, 커뮤니티 등에 참여하고 있는지(반상회, 자치회, 소모임 등), (18세 이상이라면) 투표할때 안내자료를 받았는지
4.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연락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5. 탈가정 상황에서 가장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예: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범죄 가해를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당장 머물 곳이 없었을 때, 생활비, 식비 등이 다 떨어졌을 때 등)
6. 탈가정 이후 건강과 관련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했나요?(예: 응급실 등에 가지 못했거나, 아파도(신체적, 정신적)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을 수 없었던 상황, 코로나 시기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 부재, 불규칙하거나 불완전한 식사로 인한 건강의 문제 등)
7. 학업(학교교육)을 지속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8. 탈가정 이후 일한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일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9.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였는지 혹은 불법 일자리나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놓였던 경험 및 차별 경험)
10. 탈가정 이후 학습, 훈련 등을 원했던 적이 있는지, 이후 학습, 훈련 등이 가능했다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불가능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1. 지역사회에서(동네주민/주민센터/학교 등) 나이, 가족 및 주거 형태, 성별, 성정체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경험하거나 차별적인 발언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혹은 행동의 제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예: 가출청소년이라는 낙인, 여성 청소년의 흡연, 집에 놀러오는 동성 연인 등)



[주거 관련 기대 및 요구]

1. 탈가정 이후 주거와 함께 필요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외로움의 해소, 일자리/돈, 안전의 확보, 교육, 상담과 방문, 기타)
2. 독립적인 주거를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가요? (주거지, 생활비, 심리상담, 취업관련, 의료, 돈 관리, 일상생활 관리하기, 동료모임, 자립지원서비스, 자립지원담당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법률지원 등)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인쇄 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 일 | 2023년 12월 22일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04551 서울시 종구 삼일대로 340 나라기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문의전화 | 아동청소년인권과 02)2125-9641

F A X | 02)2125-0929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제작 | Design세창 1544-1466

ISBN : 978-89-6114-999-0 93300 비매품

ISBN : 978-89-6114-999-0 93300